연구총서 23-B-18

www.kicj.re.kr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 강화 방안

Understanding and Responding to Stalking

윤정숙 · 이승현 · 한민경 · 김지연

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 강화 방안

연구책임자

윤 정 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 승 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 민 경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 지 연 신시네티 대학, 형사정책학 박사

연 구 지 원

조 병 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
윤 가 영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발간사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행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지 22년 만에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으로, 최근 스토킹 사건들이 점차로 흉폭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분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반하고 접근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 및 재판 단계나 보호관찰단계에서 가해자가 비구금 상태에 있을 때 사법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접촉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가 극도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들이 일어나므로, 스토킹 범죄자의 사법적 감시와 병합한 위험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을 살펴보고 경찰단계의 피해자지원, 스토킹처벌법의 개선방안 등 스토킹 범죄의 대응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스토킹 사건 중 징역형을 받은 사건의 수사재판기록조사와 함께, 스토킹 범죄자의 심리검사 및 심층면담조사 등을 통해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범죄유발요인을 확립하고 보호관찰단계에서의 위험성 관리나, 수강·이수명령과 같은 심리치료적 개입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비구금 상태에 있는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자 보호·지원의 실태와 미비점을 진단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타당성 등을 법리적 검토하고 시행상 피해자 보호·지원(응급조치, 잠정조치명령)의 미비점을 분석하여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자료 협조와 인력 지원을 아끼지 않은 법무부 교정본부 심리치료과와 전국 교도소의 심리치료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수사재판

기록조사를 위해 자료협조를 제공해주신 대검찰청과 전국 지방검찰청의 기록보존과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찰단계의 피해자지원조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해주신 경찰청 스토킹정책계와 일선 경찰서의 지역경찰관, 스토킹전담경찰관, 여청수사관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본 연구는 내외부 연구진을 비롯하여 많은 학계 전문가와 현장의 실무가분들께서 참여하시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입법검토와 정책 대안 등에서 전문적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해준 이승현 선임연구위원, 경찰의 피해자 지원현황 조사와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님,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 조사와 분석을 위해 저희 내부 연구진 이상으로 큰 수고를 해주신 김지연 박사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전체 연구의 수월한 진행과 현장 조사를 조율하면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준 조병철 조사연구원과 윤가영 인턴연구원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향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이 한층 강화되도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정책을 지원할 것입니다. 보고서를 읽는 내·외부 전문가분들과 독자들께서도 저희 연구에 끊임없는 격려와 자문 및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선임연구위원 **윤 정 숙**

목 차

국문요약 ····· 1

제1장 윤정숙 · 김지연

서론 ····· 19

제1절 서론 ····· 2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4

제2절 스토킹 범죄 발생 및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 26

1. 스토킹 사건 112 신고 현황 ····· 26
2.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현황 ····· 26
3. 범죄피해 조사상의 발생 현황 ····· 28
4.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 29

제3절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에 관한 선행연구 ····· 30

1. 스토킹 개념 및 정의 ····· 30
2. 스토킹의 유형 ····· 33
3. 스토킹 가해자의 특성 ····· 42
4. 스토킹과 폭력성 ····· 47
5. 스토킹 범죄의 재범, 위험성 평가와 대응방법 ····· 52

제2장 윤정숙 · 김지연

스토킹 범죄자 특성 조사 ····· 65

제1절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 기록 조사 및 위험성 평가 ····· 67

1. 조사 개요 ····· 67
2. 스토킹 범죄와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 ····· 73

3. 스토킹 범죄자의 유형별 분석 ····· 82
4. 스토킹 가해자의 위험성 평가 ····· 88
5. 종합 분석 ····· 97

제2절 스토킹 범죄자 심리검사 ····· 101
1. 조사 개요 ····· 101
2. 타당도 확인 ····· 108
3. 신경증 및 정신병 척도군 ····· 111
4. 성격장애 및 물질관련 척도군 ····· 118
5. 치료고려척도군 및 대인관계 척도 ····· 123
6. 종합 분석 ····· 125

제3절 스토킹 범죄자 심층면담 조사 ····· 127
1. 조사 개요 ····· 127
2. 라포형성 및 스토킹 범죄 인지 점검 ····· 129
3. 어린 시절 및 사회화 과정 ····· 131
4. 사회정서적 기능 ····· 138
5. 스토킹 범죄 진행과정 및 피해자에 대한 인식 ····· 145
6. 본인이 지각하는 가장 큰 문제 및 프로그램 니즈 ····· 149
7. 종합 분석 ····· 156

제3장 한민경

경찰단계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현황 조사 ····· 159

제1절 초점집단 면접조사 ····· 161
1. 조사 개요 ····· 161
2. 조사 결과 ····· 166
3. 조사결과 요약 및 종합 ····· 211

제2절 인식조사 ····· 214
1. 조사 개요 ····· 214
2. 조사 결과 ····· 226
3. 조사결과 요약 및 종합 ····· 269

제4장 이승현

스토킹처벌법의 쟁점과 개선과제 ····· 275

제1절 「스토킹처벌법」의 입법배경과 주요내용 ····· 277
1. 「스토킹처벌법」의 입법배경 ····· 277
2. 제정 「스토킹처벌법」의 주요내용 ····· 278
3. 개정 「스토킹처벌법」의 주요내용 ····· 282
4. 「스토킹처벌법」의 주요쟁점 ····· 290

제2절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의 쟁점 ····· 292
1.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정의 ····· 292
2. 스토킹 행위 유형의 기술방식 문제 ····· 293
3. 온라인스토킹 규율의 한계 ····· 301
4. 보충적 구성요건의 필요성 ····· 303
5. 스토킹행위·범죄 판단의 어려움 ····· 305

제3절 스토킹범죄 사건처리절차의 쟁점 ····· 309
1. 스토킹범죄 사건처리절차 ····· 309
2. 보호조치 승인절차에 따른 이행 지연문제 ····· 310
3. 응급조치의 실효성 문제 ····· 311
4. 긴급응급조치의 실효성 문제 ····· 312
5. 잠정조치의 실효성 문제 ····· 315

제4절 스토킹범죄 피해자보호의 쟁점 ····· 318
1. 현행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규정 ····· 318
2. 제한된 피해자 개념 ····· 320
3.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 어려움 ····· 324
4. 신변안전조치의 미흡 ····· 327
5. 피해자의 정보보호 미흡 ····· 331

제5절 스토킹범죄 처벌규정의 쟁점 ····· 333
1. 스토킹 범죄의 처벌 규정 ····· 333
2. 가중 처벌 규정의 부재 ····· 335
3. 반의사불벌죄 삭제에 따른 보완 필요성 ····· 341

제6절 「스토킹처벌법」의 개선과제 ····· 347
1. 스토킹범죄 구성요건 규정의 정비방안 ····· 347

2. 스토킹 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 ····· 352
3.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 356
4. 스토킹범죄 처벌규정 개정방안 ····· 360

제5장 윤정숙 · 이승현 · 한민경

연구요약 및 정책 제언 ····· 36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365
1. 스토킹 범죄의 특성 ····· 365
2. 경찰단계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개선방안 ····· 371
3. 스토킹 처벌법의 현황과 과제 ····· 376

제2절 정책 제언 및 결론 ····· 380
1. 스토킹 특성을 고려한 가해자 위험 관리 ····· 380
2. 경찰단계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개선방안 ····· 393
3. 스토킹처벌법의 개선방안 ····· 400

참고문헌 ····· 405

Abstract ····· 425

부록 ····· 441

1. 수사재판기록조사지 ····· 441
2. 심층면담질문지 ····· 444
3. 경찰 대상 설문지 ····· 448

표 차례

[표 1-2-1] 스토킹 사건 112 신고 현황 ····· 26
[표 1-2-2] 스토킹처벌법 위반 현황 ····· 27
[표 1-2-3] 스토킹처벌법 위반 선고형 결과(형사공판사건 스토킹 재판 1심) ····· 27
[표 1-2-4] 평생 스토킹 행위 유형 ····· 28
[표 1-2-5] 긴급응급조치(법원결정) ····· 29
[표 1-2-6] 잠정조치(법원결정) ····· 29
[표 2-1-1] 수사재판기록 소재지 정보 ····· 68
[표 2-1-2] 수사재판기록조사 항목 ····· 72
[표 2-1-3] 스토킹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N* = 112) ····· 74
[표 2-1-4] 스토킹 가해자의 전과이력 및 정신병리적 이력(*N* = 112) ····· 75
[표 2-1-5] 스토킹 범죄 사건 특성 기술통계(*N* = 112) ····· 77
[표 2-1-6]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판결 결과 ····· 79
[표 2-1-7]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추가처분 판결 결과 ····· 80
[표 2-1-8] 스토킹 범죄 피해자 특성 기술통계 ····· 81
[표 2-1-9] 스토킹 가해자 유형별 빈도와 평균나이 ····· 82
[표 2-1-10] 스토킹 가해자 유형에 따른 전과 이력 및 교제시 폭력여부 ····· 83
[표 2-1-11] 스토킹 가해자 유형에 따른 약물남용 이력 ····· 84
[표 2-1-12] 스토킹 가해자 유형에 따른 정신병력 이력 ····· 85
[표 2-1-13] 스토킹 가해자 유형별 가해자-피해자 관계 ····· 85
[표 2-1-14] 스토킹 가해자 유형별 스토킹 지속기간 ····· 86
[표 2-1-15] 스토킹 가해자 유형별 스토킹 사건 중 (성)폭력범죄 여부 ····· 87
[표 2-1-16] 스토킹 가해자 유형별 스토킹처벌법 상의 행위 빈도 ····· 88
[표 2-1-17] SAM 스토킹 특성(N) 요인과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N = 112) ····· 89
[표 2-1-18] SAM 가해자 위험(P) 요인과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N = 112) ····· 90
[표 2-1-19] SAM 피해자 취약성(V) 요인과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N = 112) ····· 91
[표 2-1-20] 스토킹 가해자 유형에 따른 SAM 요인별 점수 ····· 92
[표 2-1-21] 스토킹 가해자 유형에 따른 SAM 재범 위험성 ····· 93
[표 2-1-22] SAM의 P요인-N요인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 ····· 95
[표 2-1-23] SAM의 V요인-N요인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 ····· 97

[표 2-2-1] 심리검사 실시 여부에 따른 나이, 형량, 위험성 평균 비교 ····· 102
[표 2-2-2] PAI 척도 ····· 103
[표 2-2-3] PAI 신경증척도군의 대척도 및 소척도 ····· 105
[표 2-2-4] PAI 정신병척도군의 대척도 및 소척도 ····· 106
[표 2-2-5] PAI 성격장애척도군의 대척도 및 소척도 ····· 107
[표 2-2-6] 유효사례수의 타당도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일반성인규준) ····· 110
[표 2-2-7] 신경증척도군 전체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 112
[표 2-2-8] 스토킹유형별 신경증척도군 전체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 112
[표 2-2-9] 재범위험성별 신경증척도군 전체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 113
[표 2-2-10] 스토킹 유형별 신경증척도군 하위척도 평균 및 표준편차 ····· 114
[표 2-2-11] 정신병척도군 전체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 116
[표 2-2-12] 스토킹유형별 정신병척도군 전체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 116
[표 2-2-13] 재범위험성별 정신병척도군 전체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 117
[표 2-2-14] 스토킹 유형별 정신병척도군 하위척도 평균 및 표준편차 ····· 117
[표 2-2-15] 성격장애척도군 전체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 119
[표 2-2-16] 스토킹유형별 성격장애척도군 전체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 119
[표 2-2-17] 재범위험성별 성격장애척도군 전체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 120
[표 2-2-18] 스토킹 유형별 성격장애척도군 하위척도 평균 및 표준편차 ····· 120
[표 2-2-19] 물질관련척도군 전체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 122
[표 2-2-20] 스토킹 유형별 물질관련척도군 전체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 122
[표 2-2-21] SAM 위험성별 물질관련척도군 전체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 122
[표 2-2-22] 치료고려척도군 전체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 123
[표 2-2-23] 대인관계척도군 전체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 124
[표 2-3-1] 심층면담대상자 정보 ····· 127
[표 2-3-2] 심층면담 주요 조사 항목 ····· 128
[표 2-3-3] 심층면담 주요 조사 결과 ····· 156
[표 3-1-1] 초점집단 면접조사 참여 경찰관 특성 ····· 163
[표 3-1-2] 초점집단 면접조사 내용 ····· 165
[표 3-2-1] 설문조사 시나리오 예시(1):
교제관계(전·현 연인 또는 배우자)×신체적 폭력 수반 ····· 219
[표 3-2-2] 설문조사 시나리오 예시(2):
교제관계(타인과의 교제 의심)×신체적 폭력 수반 ····· 219
[표 3-2-3] 설문조사 시나리오 예시(2):
교제관계(전·현 연인 또는 배우자)×신체적 폭력 미수반 ····· 219

[표 3-2-4] 설문조사 시나리오 예시(4):
교제관계(타인과의 교제 의심)×신체적 폭력 미수반 ····· 219
[표 3-2-5] 경찰관 집단별 스토킹범죄 조치 내용 ····· 220
[표 3-2-6] 스토킹 통념 수용 문항(1): McKeon et al.(2002, 2015) ····· 223
[표 3-2-7] 스토킹 통념 수용 문항(2): Kamphuis et al.(2005) ····· 225
[표 3-2-8] 조사참여 경찰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226
[표 3-2-9]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 체감 ····· 229
[표 3-2-10]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의 피해자 보호 효과 평가 ····· 233
[표 3-2-11] 스토킹처벌법 개정 논의사항의 피해자 보호 효과 전망 ····· 237
[표 3-2-12] 스토킹 통념 수용 문항 요인분석 결과 ····· 242
[표 3-2-13]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경찰관 집단별 평균 ····· 244
[표 3-2-14]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경찰관 집단별 등급 ····· 246
[표 3-2-15] 스토킹범죄에의 조치 결정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판단(1): 지역경찰관 ····· 248
[표 3-2-16]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현행범인 체포 필요성 판단: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별 ····· 250
[표 3-2-17] 스토킹범죄에의 조치 결정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판단(2):
스토킹전담경찰관 ····· 253
[표 3-2-18]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임시숙소 이동 필요성 판단: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별 ····· 255
[표 3-2-19]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민간 신변경호 필요성 판단: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별 ····· 258
[표 3-2-20] 스토킹범죄에의 조치 결정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판단(3): 여청수사관 ····· 260
[표 3-2-21]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 판단: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별 ····· 262
[표 3-2-22]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유치 필요성 판단: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별 ····· 266
[표 3-2-23]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구속 필요성 판단: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별 ····· 268
[표 3-2-24]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 판단: MANOVA 및 ANOVA 분석결과 ····· 273
[표 4-1-1] 스토킹행위 구성요건의 변화 ····· 283
[표 4-1-2] 스토킹행위 사건처리절차의 변화 ····· 285
[표 4-1-3]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절차의 변화 ····· 287
[표 4-1-4] 스토킹범죄 처벌규정의 변화 ····· 289

[표 4-3-1]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의 유형 ····· 310
[표 4-3-2]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결정 소요기간 ····· 311
[표 4-3-3] 스토킹범죄 긴급응급조치 현황 ····· 312
[표 4-3-4]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신청 및 승인 현황 ····· 316
[표 4-3-5]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현황(2021.1~2022.6) ····· 317
[표 4-4-1] 개별 특례법에서 피해자보호 규정 비교 ····· 319
[표 4-4-2] 개별법에서 피해자 정보관련 규정 비교 ····· 332
[표 4-5-1] 스토킹범죄 112 신고 현황 ····· 334
[표 4-5-2] 스토킹범죄 검거 및 구속 현황 ····· 334
[표 4-5-3] 「스토킹처벌법」 위반 1심판결 처벌 현황 ····· 336
[표 4-6-1] 보충적 구성요건 신설(안) ····· 348
[표 4-6-2] 새로운 스토킹유형 신설(안) ····· 350
[표 4-6-3] 상대방의 의사관련 규정 개정(안) ····· 351
[표 4-6-4] 상대방등의 개념 확대 개정(안) ····· 351
[표 4-6-5] 스토킹범죄 개념의 개정(안) ····· 352
[표 4-6-6] 긴급응급조치 규정의 개정(안) ····· 354
[표 4-6-7] 잠정조치의 변경절차 개정(안) ····· 355
[표 4-6-8] 잠정조치의 유형 개정(안) ····· 356
[표 4-6-9] 피해자 개념규정 개정(안) ····· 357
[표 4-6-10]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도입(안) ····· 358
[표 4-6-11] 피해자 정보보호 관련규정 개정(안) ····· 360
[표 4-6-12] 스토킹범죄 처벌 규정 개정(안) ····· 361
[표 5-2-1] 스토킹 범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 모듈 예시 ····· 392

그림 차례

[그림 2-2-1] 전체 대상자의 타당도척도 프로파일 ····· 111
[그림 2-2-2] 스토킹 유형별 신경증 척도군 하위척도의 프로파일 ····· 115
[그림 2-2-3] 스토킹 유형별 정신병척도군 하위척도의 프로파일 ····· 118
[그림 2-2-4] 스토킹 유형별 성격장애척도군 하위척도 프로파일 ····· 121
[그림 2-2-5] 스토킹 유형별 치료고려척도군 프로파일 ····· 124
[그림 2-2-6] 스토킹 유형벌 전체척도 프로파일 ····· 125
[그림 3-2-1]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 체감: 경찰관 집단별 평균 ····· 232
[그림 3-2-2]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의 피해자 보호 효과 평가: 경찰관 집단별 평균 ····· 236
[그림 3-2-3] 스토킹처벌법 개정 논의사항의 피해자 보호 효과 전망: 경찰관 집단별 평균 ····· 240
[그림 3-2-4]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전체 문항 평균: 경찰관 집단별 ····· 243
[그림 3-2-5]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경찰관 집단별 및 요인별 평균 ····· 245
[그림 3-2-6]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현행범인 체포 필요성 판단 ····· 249
[그림 3-2-7]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민간 신변경호 필요성 판단 ····· 257
[그림 3-2-8]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 판단 ····· 261
[그림 3-2-9]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유치 필요성 판단 ····· 264
[그림 3-2-10]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구속 필요성 판단 ····· 267
[그림 4-2-1]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구조 ····· 305

국문요약

1. 스토킹 범죄의 특성

1) 스토킹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수사재판기록조사(N=112)를 통해 파악한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스토킹 가해자의 대다수는 남자였으며, 40~50대의 중장년층이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45.63세로 나타난다. 이들의 결혼 상태를 보면 약 42%가 별거, 이혼, 혹은 사별로 사건 당시 결혼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65.2%)가 혼자서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 66.1%이지만, 직업은 무직과 일용직을 합친 비율이 76.8%이다. 대다수는 전과를 가지고 있고 평균 전과 횟수는 11.28회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높은 범죄 경력이나 잦은 수형생활 등으로 정상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전체 표본의 52.7%가 만성적 음주 남용을 보고하였으며, 41.1%는 과거 정신질환 이력을 보고하는 등, 약물과 정신질환의 문제도 심각하다.

2) 스토킹 범죄 사건의 특성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스토킹처벌법 상에 나타난 다섯 가지 행위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유형은 '지켜봄' 행위와 '메세지 도달' 행위이며 다음은 '접근 행위'이다. 스토킹의 지속기간은 평균 8.63개월로 나타나며, 1년 넘게 지속한 스토킹은 15.2%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중 67%가 스토킹 사건에서 폭력범죄가 동반되었는데, 신체적 폭행이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었고, 그 외에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 등의 성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다양하였다.

전체 사건 중 30건(26.8%)을 제외한 82건(73.2%)이 한 가지 이상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부과 받았으며,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 응급조치 순이었다. 보호조치를 부과 받은 경우 위반하지 않은 가해자는 22.3%에 불과했으며 잠정조치 위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량은 전체 가해자의 67.9%가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의 형량을 선고받았으며, 2건을 제외한 모두 사건에 대해 징역형과 더불어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40시간 혹은 80시간)이 부과되었다.

3)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대다수의 사건이 피해자가 1명이었고 여성이었다. 피해자의 연령대로는 40대와 50대의 중장년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43.33세로 가해자 평균 연령(45.63세)과 비슷하였다.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사건의 61.6%가 '과거의 배우자 또는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며, 17%는 '잘 아는 사람(친구, 직장내 지인)', 11.6%는 '일면식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4) 스토킹의 세부 유형별 특성

Mullen의 스토킹 유형 분류법을 활용하여 스토커를 4개의 세부유형으로 분석해 본 결과, 전체 표본 중 67.9%가 '거절당한 자'에 해당되었으며, 다음이 '무능한 구애자(17%)', '친밀관계 추구자(8%)', '분개한 자(7.1%)'로 나타났다. '거절당한 자'의 교제 시 폭력 여부를 확인한 결과, 확인불가를 제외하고 72.4%가 교제 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로 스토킹 시 폭력의 동반 여부를 보면 '거절당한 자' 유형은 80.3%가 스토킹 범행시 폭력을 사용,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친밀관계 추구자'는 약 절반 가량이, '무능한 구애자' 유형은 약 1/3가량이, '분개한 자' 유형은 1/4가량이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거절당한 자' 유형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비율이 실제로도 가장 높음이 확인되었다.

5)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 평가

수사재판기록 상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토대로 SAM을 사용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본 결과, 전체 사건의 69.6%가 스토킹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64.3%는 스토킹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하여, 사례 관리 면에서 지속적 위험관리가 필요한 사건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 요인으로는 '분노', '반사회적 생활방식', '뉘우치지 않음' 등이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평정되었으며, 피해자 요인으로는 '불안정한 정서', '안전하지 않은 생활환경', '연인관계 문제', '가해자에 대한 일관성없는 행동'이 취약성 요인으로 높게 평정되었다. 전체 위험성 평가 점수의 합산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절당한 자'의 피해자 취약요인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전체 총점은 '거절당한 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거절당한 자'유형의 위험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즉 가장 위험한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피해자 취약성 요인, 즉 피해자의 비일관적 태도나 행동, 혹은 생활환경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 혹은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친밀관계에 있어 스토킹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크고 피해자의 대처 능력이 떨어져 있는 점 등이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스토킹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스토킹 범죄자가 가장 큰 수준의 문제를 보이는 임상적 영역은 우울감, 망상, 경계선적 특징, 반사회적 특징, 알코올 문제, 공격성, 자살관념, 스트레스, 비지지로 요약된다. 전체 임상척도에서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 대체로 65T점수 이상의 임상적 개입이 시급한 대상자는 4명 중 1명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심리적 개입의 필요성을 조명하는 결과이다.

스토킹 범죄자를 세부 유형으로 나눠 해석해보면, '거절당한 자' 유형(이하 거절형)은 지배성과 온정성이 성인 표본집단의 평균에 근접한, 대체로 타인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정도의 대상자들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거절형이 아닌 스토킹 범죄자들(이하 '비거절형')은 대인관계에서 통제와 독립성을 유지하는 정도가 일반성인 보다 낮은

유형의 사람들로 정신병적 상황에 따라 집착, 망상, 후퇴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적 문제를 보면, 신경증이나 정신증의 경우는 거절형보다는 비거절형 스토킹 범죄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비거절형 집단의 경우 슬픔이나 무쾌감 등을 자주 느끼며, 일상적 활동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고, 신체기능과 활동의 정도, 성적 관심이 저하되어 이성에 대한 적극적 구애는 쉽지 않은 소심한 유형의 사람들이 상당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다고 느끼고 대인관계에서 모욕과 멸시를 당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불행을 타인의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대인적 상황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사회적 고립 유형의 사람들도 상당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거절형은 경계선적 특징이나 알코올문제, 약물문제, 공격성 등에서 더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즉, 거절형이 B군 성격장애적 특징을 좀 더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과 대인관계에서의 공격성이나 분노표현, 적대감을 언어적, 신체적으로 표현하려는 성향이 강할 것으로 추정된다.

7) 스토킹 범죄자의 인생사 발달

심층면담 결과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스토킹 가해자의 인생사 발달을 종합 분석해보면 먼저, 스토킹 범죄자의 어린 시절 및 가정 환경은 아동기 양육자와의 불안정한 애착 형성, 가정폭력에의 노출로 가정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오히려 역기능적 상태에서 자란 경우가 많았다. 가정 내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 대상자들은 청소년기의 가출과 비행으로 이어졌고, 또래집단과의 일탈적 생활 속에서 성인기에 원치 않는 임신이나 이른 결혼, 조직폭력의 경험, 유흥업이나 불법업의 종사 등 부적응적 생활방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스토킹 범죄자의 사회정서적(socio-affective) 기능을 보면, 충동적 성격과 분노조절의 어려움, 육체적 싸움과 폭력적 성향이 주요 문제로 보고된다. 또한 무능형 가해자들을 중심으로 내향적 성향이나 타인에 대한 의심, 정신과적 문제 등이 주요 문제로 지목되었다. 청소년기 건전한 이성관을 확립하지 못한 결과로 여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외도를 일삼거나 상대의 거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강압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스토킹 범죄의 진행과정에서 자주 등장한 주제는 갈등 상황의 반복적 등장과 이에

대한 폭력적 대처, 그리고 알코올이 매개되는 것이었다. 또한 피해자의 이별요청에 대한 배신감, 과거 관계를 다시 곱씹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부당함, 원망감, 혹은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의심 등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감정을 더욱 배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형의 경우, 보복의 감정과 함께 미련의 감정이 범죄 진행 과정에서 많이 등장하였으며, 무능형의 경우 외로움과 성적 욕구, 그리고 상대방도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라는 비현실적(망상적) 사고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경찰단계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개선방안

1) 지역경찰관의 피해자 지원 현황 및 문제점

2023년 7월 11일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경찰단계에서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관련 현황 및 쟁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초점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관들은 맡고 있는 역할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상 문제점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정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의 영향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먼저, 지역경찰관들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및 개정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체감하고 있던 가운데,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사건처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들어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지역경찰관들의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여청수사관들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지역경찰관들의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점차 익숙해지고 있으나 신고 처리에 바쁜 현장에서 스토킹처벌법과 유사한 가정폭력처벌법과 혼동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역시 지역경찰관들에게 활용하기 익숙하거나 긴급응급조치 판단에 결정적으로 고려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스토킹 전담경찰관의 피해자 지원 현황 및 문제점

스토킹전담경찰관이 느끼는 주된 업무 스트레스는 스토킹 피해자를 만나 지역경찰

관과 여청수사관, 경찰과 가정폭력 상담소·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등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매개적 위치와 관련되어 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에게는 수사 등 강제적인 권한이 없다 보니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또한 피해자의 동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스토킹전담경찰관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정한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된다. 가해자 교정 상담이나 민간 신변경호 연계 등의 업무가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업무로 새롭게 추가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3) 여청수사관들의 피해자 지원 현황 및 문제점

여청수사관들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의 유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경험한다. 유치나 구속영장 신청에 비해 긴급응급조치의 경우에는 검찰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사후승인 단계를 거치게 되나 변경 또는 기각되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다. 이러한 맥락에서 긴급응급조치 결정에 대한 사후승인은 절차적 효율성 및 신속한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경찰이 직접 법원에 사후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여청수사관들은 스토킹처벌법 개정 중 가장 체감되는 내용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를 꼽았다. 동 규정 삭제는 스토킹행위자 및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 취지상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법이 한층 엄중해짐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스토킹 성립 여부를 좀 더 명확히 검토하여야 하므로 수사관들이 느끼는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여겼다.

4) 스토킹처벌법 개정내용에 대한 경찰관 인식

경찰관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 내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개정 내용 8가지를 제시하고 이들 개정사항을 어느 정도 체감하는지와 스토킹 보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반의사불벌죄 삭제'는 8가지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 중 스토킹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가장 높은 정도로 체감하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 중 절반 이상이 8개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 모두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제재 강화'는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이었다(83.69%, 472명). '반의사불벌죄 삭제'는 스토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집단 간에 피해자 보호 효과에 있어서의 평가 차이가 가장 엇갈리는 개정사항이었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찰관의 76.30%(264명) 및 스토킹전담경찰관의 80.82%(59명)가 '반의사불벌죄 삭제'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반면, 여청수사관의 53.79%(78명)만이 '반의사불벌죄 삭제'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3개 집단 중 여청수사관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른 피해자 보호 효과를 가장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금번 스토킹처벌법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이 피해자 보호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83.69%, 472명). 스토킹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이들 경찰관들의 의견은 추후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스토킹 처벌법의 현황과 과제

1) 스토킹처벌법의 입법배경과 주요내용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별하여 정의하고, 스토킹 행위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여 열거하였다. 스토킹행위 개념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까지 더해지면 스토킹범죄가 된다. 동법에서는 스토킹사건처리에 관한 절차특례규정(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을 마련하였고, 피해자전담조사제 규정과 스토킹범죄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스토킹처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스토킹행위의 해석기준이 모호하고, 피해자보호가 충실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하여 2023년 7월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마련되었다.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온라인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방법으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피해자등에

대한 잠정조치 변경·취소통지권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제17조의2),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제17조의3), 피해자변호사 선임특례(제17조의4) 규정을 신설하였다. 스토킹 범죄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벌 규정으로 변경하고,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폐지하였다.

최근 법개정으로 인해 피해자보호 관련 규정과 온라인스토킹 행위규제 관련 규정이 보강되긴 하였지만, 개정법 하에서도 스토킹행위를 판단하는데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고, 경찰의 신속한 사건 개입과 처리에 문제가 발견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보인다. 스토킹범죄 특성에 맞는 범죄자처벌규정의 재정비도 필요하다.

2)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의 쟁점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쟁점으로 먼저, 스토킹 행위유형 기술방식에 있어 문제가 있다. 스토킹 행위유형의 기술방식이 열거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 다양한 스토킹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와 함께 나날이 진화하는 스토킹 행위유형을 법에서 다 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으로 스토킹행위와 범죄의 판단기준이 엄격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는 '반한다'라는 고의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해자가 불명확하거나 피해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스토킹범죄에서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이기에 실제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유발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요구하고 있어 스토킹처럼 일정기간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3) 스토킹 사건처리절차의 쟁점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이 발생하면 응급조치(제3조), 긴급응급조치(제4조), 잠정조치(제9조)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조치들이 피해자보호에 직접 나아가는데 있어 경찰-검찰-법원단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침으로 인해 보호절차 이행에 있어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응급조치의 경우 경찰이 '진행 중인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앞에서 언급한 스토킹 행위 구성요건요소 모두를 판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긴급응급조치는 주로 오프라인에서의 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온라인 스토킹 대응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시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경고-보호명령으로 간소화하여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참고할만하다.

잠정조치는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제지를 위해 실효적인 조치로 이해하고 있고, 최근 법개정을 통해 일부 개선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잠정조치의 승인율이 낮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잠정조치의 유형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4) 스토킹피해자 보호의 쟁점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개념을 설정함에 따라 '직접' 피해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직접 피해자로 제한함으로 인해, 제3자를 통한 스토킹 피해, 피해자의 가족 외에도 직장 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스토킹 피해는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규정이 도입되었으나, 경찰 실무에서 신변안전조치 대상을 '피해자'로 한정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관계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직장이나 주거공간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정보보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범죄신고자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사·재판절차에서 인적사항 기재 생략(제7조), 인적사항 공개금지(제8조), 신원카드관리의 열람(제9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5) 스토킹범죄 처벌규정의 쟁점

스토킹범죄의 처벌은 단순 스토킹 행위와 흉기휴대행위로 나누어 규율되고 있다. 이외의 죄는 조치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대부분이다.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모두 스토킹 범죄에서 가중처벌되는 행위유형이 다양화되어 있다.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행위, 장기간 지속 행위 등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법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다.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는 만큼 수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의 비접촉이 강조되는 만큼 형사공탁제도를 통한 합의시도 기회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4. 스토킹 범죄의 대응 강화 방안

1) 스토킹의 4대 범죄유발요인 확립과 활용

본 연구의 수사재판기록조사와 위험성 평가, 심리검사 및 심층면담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스토킹 가해자의 범죄유발요인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인지적 왜곡이다. 스토킹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범죄를 지지하는 생각과 태도, 즉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 접근이나 연락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라도 본인은 그럴만한 정당한 이유나 권리가 있다는 사고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그들의 반사회적 생활양식에서 기인한다. 스토킹 사건 당시 이들의 인지적 왜곡, 즉 범죄를 지지하는 태도나 신념 등은 범죄의 비억제(disinhibition)에 이르게 하는 기제로 작용했을 확률이 높다.

사회정서적 기능은 친밀감 형성, 의사소통 기술, 공감능력 등 대인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술과 이의 바탕이 되는 정서적 능력, 즉 정서인식이나 정서조절 능력을 의미한다. 스토킹 가해자의 사회정서적 기능의 문제는 세부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거절형이 아닌 스토커들의 경우 대체로 정서적 우울감, 즉 슬픔이나 무쾌감을 자주 느끼며 일상 활동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고, 신체기능과 활동의 정도나 낮은 편이며, 성적 관심이 저하되어 있는 편이다. 또한 이들은 대인관계에서 모욕과 멸시를 당했다고 느끼는 피해망상의 성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거절형의 경우 B군 성격장애적 특성, 즉 경계선적 특징이나 반사회적 문제, 약물문제, 공격성 등에서 더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자기관리 기술의 결핍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연결된다. 스트레스

에 대처하는 방식에 부적응적 방식으로 분류되는 마약이나 알코올의 남용 혹은 의존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스토킹 사건의 범죄 진행 과정을 보면, 갈등상황에서 폭력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러한 대처에는 알코올이 매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수형자 자신들도 본인이 지각하는 가장 큰 문제로 알코올과 이로 인한 즉흥적, 폭력적, 충동적 사고방식과 대처를 제시하는 만큼,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 관리 기술의 결핍 문제가 약물, 특히 알코올에의 과다 의존과 연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PAI 심리검사를 통해 이들의 정신병리의 구체적 양상을 정리해 보면, 임상적 문제에서 가장 큰 수준의 문제를 보이는 영역은 우울감, 망상, 경계선적 특징, 반사회적 특징, 알코올문제, 자살관념 정도이다. 신경증 척도군에서는 불안감 중 신체적 증상에 대한 불안이, 우울감 중 특히 정서적 우울이, 정신병 척도군에서는 망상 중 특히 피해망상과 원한감, 그리고 조현병 척도의 사회적 위축척도가 비거절형 집단에서 상당히 높게 나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우울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자살관념 역시 비거절형 집단이 높게 나온다. 반면, 성격장애척도군과 물질관련척도군은 대체로 거절형이 비거절형보다 문제적 수준이 높게 나온다.

스토킹 가해자의 정신병리적 문제는 스토킹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서조절을 힘들게 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가령, 우울증이나 경계선 성격장애의 증상으로 보이는 자살사고 혹은 스토킹 행위나 폭력 행사만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극단적 생각, 반사회적 성격장애에서 보이는 폭력과 살인에 대한 사고 혹은 행동 계획, 고위험의 정신증적 사고 등은 스토킹 가해의 명백한 위험요인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만큼 위험관리 시 정신병리적 증상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스토킹 가해자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방식

스토킹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고 사회 내에 있는 수사나 재판단계 혹은 보호관찰 단계에서는 가해자의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험관리는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조치, 가령 접근금지나 전자장치의 부착 및 감시를 통해서 주요 동선을 추적하거나 통제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스토킹 가해자의 범죄유발요인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이에 기반한 위험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먼저 위험 평가도구가 현장 실무에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스토킹의 세부 유형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 유형 분류의 목적은 스토킹 행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하위 그룹 간에 나타나는 행동 패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선행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실증조사 결과 모두를 종합해 볼 때, 스토킹의 세부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Mullen 등의 세부유형 분류 준용): 1)거절당한 자(거절형), 2)친밀관계 추구자, 3)무능한 구애자, 4)분개한 자. 만일, 형사사법기관의 실무자들이 4개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적어도 1)거절형(거절당한 자)과 2)비거절형(친밀관계 추구자, 무능한 구애자, 분개한 자)으로 구분해서 위험을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거절형이나 비거절형 중 친밀관계 추구자는 낯선 관계가 아닌 연인관계나 지인을 상대로 스토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 중 폭력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경찰이나 보호관찰관은 낯선 사람 상대의 스토킹보다 지인 상대의 스토킹에 더 개입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의 세부 유형을 확인한 후, 스토킹 위험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각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와 총점의 산출, 위험등급 제시 순으로 평가 작업을 진행한다. 위험요인은 경찰, 보호관찰관 등 실무가가 평가하는 방식과 사례 관리자나 임상가 등 전문가가 평가하는 방식이 있겠다. 실무가 평가에서는 수사나 재판기록, 혹은 면담기록을 중심으로 각 위험요인의 존재 혹은 부존재, 존재 가능성 등이 수치로 평가될 수 있다. 이때 스토킹 가해자의 특성과 피해자의 특성, 그리고 사건의 특성, 이 세 가지의 영역은 필수적으로 평정되도록 하며, 영역별로 총점을 산출하도록 한다.

위험 등급의 산출은 위험성 점수의 총점을 활용하거나 실무가나 전문가가 주관적으로 등급을 할당하는 방식이 있겠다. 위험 평가에 숙련되지 않은 평정자의 경우 계량적 지표, 즉 총점을 활용하여 등급을 산출할 수 있도록 지침하는 한편, 숙련된 평정자는 사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므로 이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 또한 위험관리에서 위험 등급은 사건의 경중 정도를 판단하는 용도로만 활용하고, 각 위험요인이 정기적 평가에서 어떠한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와 그에 맞는 위험관리 계획을 세우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평정자는 각 위험요인의 존부를 평가한 후 이에 맞는 위험관리 계획을 세워 형사사법기관의 실무가와 피해자 지원기관의 사례관리자, 심리치료사 등과 공유한 가운데 다기관이 협력하여 사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한다. 해외의 전문가 판단 위험성 평가도구들을 보면 위험 관리 계획에는 가해자 감시 및 감독, 가해자 치료, 피해자 안전계획 수립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한편, 가해자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체계적인 평가 및 상담을 받도록 연계해야 할 것이다.

스토킹 사건은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있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행동이 매우 가변적일 수가 있어 정기적 위험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정기적 평가는 위험 등급이 높은 고위험 사건의 경우 최소 1~2달에 한 번, 혹은 위험도가 가장 높을 경우 그보다 자주 평가를 진행하여 스토킹 사건의 재발 위험성이나 폭력의 임박성, 혹은 사건의 지속성 면을 시의적절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히, 폭력의 임박성 측면에서는 스토킹 유형 중 거절형(거절당한 자)을, 사건의 지속성에서는 친밀관계 추구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험요인의 항목을 통해서 점점 사건이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긴장의 수준이 고조되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위험 요인의 평가에서는 사건의 폭력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스토킹 사건에서 폭력의 동반은 피해자에게 매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선행연구 결과나, 수사재판기록의 분석, 심리검사, 심층면담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스토킹 사건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요인으로는 가해자 측면에서는 분노 수준이 높아 피해자에게 지속적 위협을 하고 있는 경우, 평소 약물남용이 있으면서 면담 시 그 남용 혹은 의존 정도가 유지 혹은 상승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반사회적, 혹은 경계선적 성격장애의 주요 증상들이 현저하게 지속되고 있는 경우이다. 피해자의 측면에서는 피해자의 생활환경이 안전하지 않아 동선이 노출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일관성 없는 태도 혹은 행동으로 대처하고 있는 경우일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신변보호조치와 같은 감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감시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3) 스토킹 가해자에 특화된 심리적 개입

스토킹 가해자의 범죄유발요인에서 논의된 심리적 문제들은 가급적 빠르게 개입될수록 좋을 것이다. 특히,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 피해자에

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범죄 의지를 억지시켜줄 수 있는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 심리적 개입은 자발성에 기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스토킹 가해자의 특성 상 선술한 인지적 왜곡 등으로 인해, 본인의 문제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오히려 범죄를 지지하거나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성에만 맡겨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는 잠정조치의 '상담위탁' 신설 등을 통해 심리적 개입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해자의 형집행 단계(보호관찰, 교정 등)에서는 통상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는데, 이 단계의 심리적 개입은 재범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스토킹 범죄자의 심리적 개입이 경찰, 보호관찰, 교정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선술한 스토킹 범죄의 4대 영역을 기본으로 심리적 문제를 사례개념화하고 이를 평가하여 심리치료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4) 경찰단계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개선방안

유치나 구속영장 신청에 비해 긴급응급조치의 경우에는 검찰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사후승인 단계를 거치게 되나 변경 또는 기각되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 중한 처분을 포함하고 있는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종래의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지역경찰관이 결정하는 긴급응급조치에 있어서는 경찰이 법원에 사후승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기관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고려해 봄 직하다.

접근금지 위반이 성립하는 조건을 별도로 부가하지 않음으로 인해 접근금지 위반이 불가피하거나 참작할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잠정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의율하여야 하는 상황은 경찰단계에서 잠정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으로 입건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고 역설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스토킹행위의 성립에서와 마찬가지로 접근금지 위반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의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형사처벌되는 잠정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의 상황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와 분리하여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요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필요성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전이나 이후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당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잠정조치의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지만, 스토킹피해자들을 스토킹범죄 발생 직후 만나는 경찰관들의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추후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필요성은 재차 거론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최장 9개월까지 실시할 수 있는 잠정조치 기간이 모두 도과된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사례를 확인하거나,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시행 중인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스토킹처벌법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5) 스토킹처벌법의 개선방안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로 구분하여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② 정당한 이유 없이, ③ 7가지 행위유형에 속하는 행위로, ④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며, 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5가지 조건의 내용을 살펴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부분은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상대의 의사표시가 어떠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양당사자가 인식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스토킹 행위유형은 7가지 유형에 한하지 않는바, 본조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스토킹 유형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유형을 추가한다. "상대방 등에 대한 서비스를 신청하는 행위"와 "상대방등의 반려동물이나 장애인보조견에 대하여 하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하여도 스토킹행위에 포함하도록 한다. 셋째, 스토킹행위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만으로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스토킹방법을 모두 규율하기는 어려운바, 독일과 같이 보충적 구성

요건인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규정을 신설한다. 넷째, 보호조치의 실질화를 위해 ‘상대방등’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까지 확대하도록 한다. 다섯째, 스토킹범죄를 판별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는 반복성 의미 안에 지속성이 포함되고, 지속성은 가중처벌 요소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지속적” 부분을 삭제하고, 가중처벌 규정에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한다.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이 필요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에 대하여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절차단계의 개선이 필요함과 동시에 조치의 적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잠정조치 등의 내용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첫째, 긴급응급조치의 요소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위구성요건에서 지적한 바대로 “지속적으로 행할 우려” 부분을 삭제하고, 상대방등의 개념에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유형으로 주거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외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새롭게 추가해야 한다. 셋째, 잠정조치의 변경 등을 통지하는 대상을 검사, 피해자, 스토킹행위자로 하고 있으나, 잠정조치의 상황을 파악하고 행위자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은 경찰인 바, 통지 대상에 경찰을 포함하도록 한다. 넷째, 스토킹범죄자의 특성상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음주경력이 있는 경우가 다수인 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병원 또는 기타 요양소 위탁”,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을 추가하도록 한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개념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로 한정되어 있어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스토킹 피해를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피해자 개념이 확대되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절차도 피해자 정보보호 부분에서 보다 강화되어야 된다. 첫째, 피해자의 개념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피해의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직장동료 등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한다. 둘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한다. 스토킹처벌법의 내용에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의 관할,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 임시보호명령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은 가정폭력처벌법의 규정과 잠정조치 연장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3개월 단위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신고자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제7조), 인적사항의 공개 금지(제8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제9조)의 내용을 신설하도록 한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단순 스토킹행위 외에 흉기 휴대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스토킹범죄는 이후 다른 범죄로 나아가기 전 전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상습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도 하다. 이에 스토킹범죄의 가중요소를 개발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와 국내 타 법률의 가중처벌규정을 검토하여 '1년 이상 지속된 스토킹행위', '미성년에게 한 스토킹행위', '스토킹행위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론

윤정숙 · 김지연

제1장

서론

제1절 |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행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마련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지 22년 만에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으로, 최근 스토킹 사건들이 점차로 흉폭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분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사법기관의 피해자 보호조치 부재라는 입법적 공백을 메웠다는 점이다.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가·피해자를 분리함과 동시에 해당 범죄를 수사하고 피해자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안내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다(스토킹처벌법 제3조 응급조치). 또한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할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속으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긴급응급조치). 검사 역시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 시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혹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를 명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잠정조치). 2023년 7월 스토킹처벌법이 한 차례 개정되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고, 스토킹 행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잠정명령이 추가되었으며,

온라인 스토킹 행위가 처벌행위 유형에 추가되었다.

한편,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자료를 보면 스토킹 범죄자의 피해자 보호조치 명령 위반율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예로 2022년 수행된 연구에서는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 7월까지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 보호조치 불이행 비율이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13.1%, 잠정조치의 경우 8%로 나타난다(조제성 외, 2022). 해외의 한 연구에서는 약 30%의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한 상태에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보고하기도 한다(예: Marlsch, 2007). 이러한 연구들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전통적인 사법조치로 인한 범죄 억제가 이뤄지지 못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위해 스토킹 범죄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범죄적 특성, 폭력 위험성 등이 분석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에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의 진전을 억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 연구 필요성에도 불구, 스토킹 범죄는 주로 입법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져서 국내에는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실증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심각한 스토킹 사건들은 원치 않는 남녀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방적 괴롭힘·협박·통제를 비롯해, 연인·결혼 관계의 불화나 종료 등 친밀한 관계의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방적 접근과 폭력·협박 행사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 사건에서 피해자의 적극적 대응이 스토킹 중단에 영향을 주기보다 스토킹의 지속 및 심각한 살해로 이어지는 등, 범죄행위의 동기와 진전 과정, 양상 등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스토킹 범죄의 전진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본인의 심리사회적 문제, 합리적인 인간의 인지·정서적 특성을 넘어서는 병리적 문제를 진단하고 개입해야 한다. 이러한 진단·개입 없이 스토킹 범죄자의 단순 격리 조치만으로 범죄가 억지되기 쉽지 않은 만큼, 이들 범죄자에 대한 사회심리적 분석과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 대국민 교육 등 자료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사재판단계나 형집행 단계의 가용한 기록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심리검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스토킹 범죄자의 범죄동기, 범죄수법,

범죄의 진전 과정을 살펴보고, 인지적 왜곡이나 정서 및 행동의 이상성, 범죄자의 가정환경, 성인식 형성 과정, 피해자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사회심리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파일을 제공하고자 한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사법절차 내에서 관리에 난맥상을 초월한다. 특히, 수사 및 재판 단계나 보호관찰단계에서 가해자가 비구금 상태에 있을 때 사법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접촉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가 극도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들이 일어나므로, 스토킹 범죄자의 사법적 감시와 병합한 위험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위험성 관리는 범죄의 만성 위험요인(범죄유발요인, 대개 심리적 요인)과 급성 위험요인(정서적 변화, 약물남용 등)을 관리함으로써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중인 범죄자라 할지라도 이들을 집중 면담하고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사례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스토킹 범죄자를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을 구체화하여 위험요인을 제시하며, 위험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등, 범죄자 위험성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5년 이내의 구금 또는 벌금형과 함께 스토킹 행위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강명령 혹은 이수명령을 200시간 내에서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강·이수명령의 집행을 위한 스토킹 범죄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유죄판결을 받은 스토킹 범죄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심리적 특성, 범죄적 특성 등을 분석한 결과는 보호 관찰단계에서의 위험성 관리나, 수강·이수명령과 같은 심리치료적 개입방안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현재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을 감안한 보호관찰 상의 수강명령이나 교정단계의 이수명령 프로그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은 바, 이들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의 보호·지원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스토킹은 관계 기반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일상적인 행위와 범죄행위가 중첩되는 지점이 있고, 격리조치 등이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자 보호·지원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자가 비구금 상태에 있는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자 보호·지원의 실태와 미비점을 진단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스토킹처벌법상 시행되고 있는 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효과성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진단함과 동시에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의 대응강화 방안을 집중 연구하고자 한다.

한편,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폐지나 가해자 위치추적의 잠정명령 추가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 여전히 스토킹 범죄의 다양한 유형과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욕구 등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스토킹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타당성 등을 법리적 검토하고 시행상 피해자 보호·지원(응급조치, 잠정조치명령)의 미비점을 분석하여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선진국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사례를 검토하여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활용코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 내용으로 먼저, 교정시설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수용 중인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1]. 특히, 스토킹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심리적 특성(정신병리적 특성 포함), 스토킹 범죄자의 범죄적 특성(범죄동기, 범죄의 진전 과정,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전과경력 등), 스토킹 범죄의 범죄유발요인(criminogenic factors)등을 분석하였다.

둘째로, 스토킹처벌법 분석을 통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스토킹 범죄 행위유형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스토킹범죄 처벌규정의 합리성, 스토킹 사건처리절차의 문제점, 수사·재판실무와 법률규정의 한계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셋째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경찰 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의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지역경찰

1)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연구는 금년도는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징역형 수감자를 대상으로, 차년도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관에 의한 스토킹 범죄 피해 현장에서의 긴급응급조치 필요성 판단과 조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스토킹전담경찰관에 의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및 사후 모니터링, 그리고 여청수사관에 의한 잠정조치 청구 및 불이행 여부 확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스토킹 범죄 관련 국내외 문헌 및 검사도구, 각종 통계자료를 검토하였다. 특히 스토킹 범죄 특성 및 실태에 대한 국내외 문헌 검토, 스토킹 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통계자료 검토, 스토킹 범죄자 처벌 관련 국내외 입법례 검토,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내외 입법례 검토, 스토킹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등 각종 검사 도구를 검토하였으며, 기타 스토킹 범죄 관련 언론자료, 실무자료, 대응매뉴얼 등도 검토하였다.

조사연구로는 먼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범죄자의 기록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 6월까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스토킹 사범의 교정단계의 가용한 수용기록과 각 지방검찰청에 보존 중인 수사재판기록을 검토하였다. 스토킹 범죄자의 사회심리적 특징과 범죄의 발달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심리검사 및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사재판기록 상에 나타난 사건과 가·피해자 특징을 중심으로 스토킹 범죄자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Stalking Assessment and Management: SAM, Kropp, Hart, Lyon, & Storey, 2011)하였으며, 병리적 진단을 위한 심리검사(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 Morey, 2007)와 함께 심층면담에서는 성장환경, 범죄동기, 범죄 비억제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경찰단계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경찰관 대상의 설문 및 심층면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경찰관, 스토킹전담경찰관, 여청수사관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범죄 관련 학계 전문가, 관련 실무자들과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가해자 관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절 | 스토킹 범죄 발생 및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1. 스토킹 사건 112 신고 현황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이 의심되어 경찰의 112를 통해 신고된 사건[2]을 정리해 보았다.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10월 말까지 약 열흘 동안 1,192건, 11월 3,140건, 12월 3,206건이 신고되었다. 2022년과 2023년의 신고 건수를 보면 매월 2,000건 이상 3,000건 인근에서 스토킹 사건이 신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1] 스토킹 사건 112 신고 현황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1년	-	-	-	-	-	-	-	-	-	1,192	3,140	3,206	7,538
22년	2,510	2,105	2,356	2,355	2,542	2,403	2,300	2,213	2,834	2,768	2,575	2,604	29,565
23년	2,532	2,390	2,838	2,617	2,622	2,793	3,181	2,844	2,634	2,701	2,363	2,309	31,824

* 출처: 경찰청

경찰청이 2018년 6월 1일 112신고시스템에 스토킹 범죄코드를 신설한 이후, 2018년 2,767건,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이 신고되었다고 발표하였음을 감안할 때,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의 연간 총 신고건수는 29,565건, 2023년 31,824건[3]으로 스토킹 신고가 폭발적으로 급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현황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형사사법기관의 통계자료가 발간된 시점까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신고 및 검거, 유죄판결을 받은 스토킹 사건 수를 정리해 보았다. 2021년의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건수는 1,023건이었으며, 검거건수

2) 경찰청 스토킹 정책계 자료 참조
3) 2023년 3월 7일 소병훈 의원실 보도자료 참조(경찰청 스토킹 통계 부록 제시)

는 880건이었다(표 1-2-2 참조). 스토킹 검거인원은 남자가 669명(81.8%)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2022년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건수는 10,545건이었으며 검거건수는 9,895건으로 발생건수 대비 검거율이 2021년(86%)에 비해 93.8%로 상승하였다. 성별 비율은 남자가 80.5%, 여자가 18.7%로 2021년과 비슷하였다.

[표 1-2-2] 스토킹처벌법 위반 현황

단위: 건(비율)

년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전체) 위반						
	발생	검거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발생건수대비 검거율	소계	남	여	미상
2021	1,023	880	86.0	818 (100.0)	669 (81.8)	147 (18.0)	2 (0.2)
2022	10,545	9,895	93.8	9,999 (100.0)	8,051 (80.5)	1,868 (18.7)	80 (0.8)

* 출처: 경찰청범죄통계

2022년 스토킹 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공판사건으로 접수된 1,974건 중 선고 형량을 받은 959건의 판결 결과를 살펴보았다. 1심 기준으로 22.6%(217건)가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31.2%(300건)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5%(216건)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소가 기각된 경우가 11.8%(113건), 무죄가 선고된 경우가 11건(1.1%)으로 나타났다.

[표 1-2-3] 스토킹처벌법 위반 선고형 결과(형사공판사건 스토킹 재판 1심)

단위: 건(비율)

년도	접수	처리										
		합계	판결								소년부 송치	기타
			무기	유기	집행 유예	재산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공소 기각		
21	50	2 (100.0)	-	-	1 (50.0)	-	-	-	-	-	-	1 (50.0)
22	1,974	959 (100.0)	1 (0.1)	217 (22.6)	300 (31.3)	216 (22.5)	12 (1.3)	5 (0.5)	11 (1.1)	113 (11.8)	1 (0.1)	83 (8.7)

* 출처: 사법연감

3. 범죄피해 조사상의 발생 현황

현재 국내에서 발표된 스토킹 피해율 조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 여성폭력피해의 스토킹 통계가 유일하다. 2022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1년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응답자 중 평생 한 번이라도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5%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 스토킹 피해 경험을 보고한 사람은 0.2%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4)]

여성폭력피해조사에서 사용한 스토킹 피해 문항은 '스토킹 처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5가지의 행위, 즉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등의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이나 영상, 문자 등을 보내거나 물건을 두는 행위, 4)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영상,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 5) 재산이나 물건 등의 훼손 행위였다. 본 조사에서는 이외에도 'GPS 장치, 위치추적 어플을 이용하여 나 또는 동거인, 가족의 위치를 확인하는 행위'를 행위 유형에 추가하였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은 기타로 분류하였다(표 1-2-4 참조).

[표 1-2-4] 평생 스토킹 행위 유형

구분	명(비율)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84(47.2)
② 주거, 직장, 학교 등의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111(62.4)
③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이나 영상·문자 등을 보내거나 주거, 직장, 학교 등의 장소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0(28.4)
④ 우편·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영상·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	54(30.7)
⑤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9(5.2)
⑥ GPS 장치, 위치추적 어플을 이용하여 나 또는 나의 동거인, 가족의 위치를 확인하는 행위	11(6.3)
⑦ 기타	5(2.8)
계	178

*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2021.
주: 복수응답

4) 해외의 스토킹 평생 경험율(예: 30%, Marlsch, 2007)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로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에 조사가 이뤄져 스토킹에 대한 인지가 저조한 데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행위 유형별로 보면, 주거, 직장, 학교 등의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62.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47.2%), 우편 전화, 인터넷 등으로 문자나 영상,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30.7%)였다.

4.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경찰청의 자료[5]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의 법원 결정에 의한 집행건수는 법 시행월(21년 10월)에 103건으로 시작하여 11월 310건, 12월 400건에 이르렀고, 이후 매월 200건~400건 안팎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간 조치건수는 2022년 3,146건, 2023년 3,727건으로 집계되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법원 결정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잠정조치의 경우, 21년 10월 81건으로 시작하여, 11월 365건, 12월 423건이었고 2022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월과 10월에는 각각 728건, 76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23년의 경우 6월~9월에 매월 800건을 초과하였으며 2022년 6,417건보다 늘어난 총 8,560건을 기록하는 등, 잠정조치 결정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5] 긴급응급조치(법원결정)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1년	-	-	-	-	-	-	-	-	-	103	310	400	813
22년	283	218	273	225	213	261	244	216	318	345	293	257	3,146
23년	240	226	302	277	295	358	401	387	384	340	273	244	3,727

* 출처: 경찰청

[표 1-2-6] 잠정조치(법원결정)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1년	-	-	-	-	-	-	-	-	-	81	365	423	869
22년	411	339	500	521	535	512	521	432	728	765	609	544	6,417
23년	615	571	722	733	698	807	816	905	816	745	601	531	8,560

* 출처: 경찰청

5) 경찰청 스토킹 정책계 자료 참조

제3절 |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에 관한 선행연구

1. 스토킹 개념 및 정의

본 장에서는 국내·외에서 발표된 스토킹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재범예측 및 대응방법을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스토킹의 정의와 개념을 탐구하였다. 제2절에서는 스토커의 유형과 피해자-스토커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제3절에서는 스토커의 심리적/정신병리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제4절에서는 메타분석을 통한 스토킹 폭력의 특성, 특히 스토킹 폭력의 위험요인을 탐구하였다. 마지막 제5절에서는 스토킹의 재범, 재범 위험성 평가, 그리고 치료/개입 전략을 논의하였다.

가. 스토킹 정의의 다양성

스토킹의 정의는 다양하며 스토킹에 관한 연구마다 다른 정의를 사용한다. 스토킹에 대한 통일된 정의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첫째로, 스토킹 행위 성질양태가 매우 주관적이고 이질적(heterogeneous)이기 때문이다(Owens, 2016). 피해자가 보고한 스토킹 행동은 매우 포괄적이며 스토커의 범위도 다양하다. 둘째, 피해자가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따라서도 스토킹의 정의의 다양성이 영향을 받게 되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Owen, 2016). 예를 들어, 스토커는 종종 피해자와 과거 연인/남녀 관계가 많은데, 타인에게는 위협적이지 않고 정상적으로도 보이는 구애 행위나 연인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적인 위협들은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어 스토킹 행동 경계를 더욱 더 모호하게 만든다(Sheridan, Arianayagam, & Chan, 2019). 셋째, 범죄학자,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법학 학자, 정책 수립자 등 어떤 전문가가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스토킹의 정의가 달라지므로 보편적인 정의가 부재한 상태이다(Fox, Nobles, & Fisher, 2011). 스토킹에 대한 정의의 다양성, 다양한 종류의 표본, 그리고 연구 질문을 어떻게 제기했는지에 따라 연구결과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스토킹 특성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나. 스토킹 정의에 포함된 공통 개념

특정 행동에 대해 연구할 때 행동에 대해 어떠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내리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그 조작적 정의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스토킹 선행연구에서는 스토킹 행동을 연구하는 데 다음의 세 가지 정의를 자주 인용하였다. Meloy와 Gothard(1995)는 스토킹을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반복적 추적 및 괴롭힘"(p.258)으로 정의하였다, Kropp, Hart와 Lyon(2002)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이나 그들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 합리적인 두려움이나 우려를 느끼게 하는 원치 않는 반복적인 의사소통, 접촉, 또는 기타 행동"(p.590-591)이라고 스토킹 행위를 설명하였다. 또한, Mullen, Pathé 와 Purcell(2009)은 "다른 사람의 삶에 반복적이고 원치 않는 침해를 가하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고통, 걱정, 또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스토킹을 정의하였다(McEwan et al., 2018에서 재인용).

스토킹 행동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하지만, 앞 문단에서 살펴본 정의들에는 특정 핵심 요소들이 조작적 정의에 포함되고 있다. 첫째, 스토킹은 행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Marlsch, 2007; Marlsch, de Keijser, & Debets, 2011; Rosenfeld, 2004). 이는 스토킹이 중단하기 어려운 매우 강박적인 행동임을 반영한다(Marlsch, 2004; Marlsch et al., 2011; Spitzberg & Cupach, 2007). 둘째, 스토킹은 "원치 않는 접촉"(Rosenfeld, 2004, p.10)을 포함한다. 이는 원치 않는 의사소통 또는 직접적인 대면을 말한다(Mullen et al., 1999; 2001). 셋째, 스토킹 행동은 "피해자에게 간섭적(intrusive)이거나 위협적(threatening)으로 인식된다"(Rosenfeld, 2004, p.10).

세 번째 구성 요소는 스토킹을 다른 형태의 폭력과 구별한다. 이 행동의 발생은 스토커의 행동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반응에 의해 정의된다(James & MacKenzie, 2018).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특히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는지의 여부가 스토킹의 정의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스토킹의 조작적 정의에 불일치를 초래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Owen, 2016). 스토킹 방지 법규 정의의 대부분은 스토킹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 반응에 대해 '두려움' 혹은 그와 관련된 용어를 포함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꼈다고 함은 주관적인 감정으로, 합법적이며, 무해하게 보일 수도 있는 행동도 불안스럽고 범죄적으로 보이

게 만들 수 있다(National Criminal Justice Association, 1993 as cited in Owens, 2016, p.2198; White, Longpré, & Stefanska, 2022).

미국 대부분의 주(州)에서도 스토킹 정의에 '두려움'을 포함시키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두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주마다 다르다(Owen, 2016). 미국 일부 주에서는 스토킹 행동을 "상당한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신체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초래하는 의도로 설명한다(예: PA Code Section 18: 2709, rev. 1994 as cited in Brewster, 2000, p.42). 영국과 웨일스에서는 스토킹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이 고통을 받을 것, 놀랄 것, 또는 폭력이 그들에게 가해질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Metropolitan Police Service, 1997; White et al., 2022, p.3에서 재인용). 미국 내 다른 일부 주(州)에서는 피해자의 인식을 설명하는 데 더 유연하다. "괴롭힘을 받는다고 느끼며, 위협받고, 두려워한다" (Miller, 2012, p.496)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스토킹 행동에 포함한다(Meloy & Felthous, 2011).

'두려움'을 정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는 스토킹의 범죄가 없다"고 주장한다(Tjaden, 2009, p.266). 반면 스토킹의 정의에 '두려움'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스토킹 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는 아니라고 주장한다(Owens, 2016). 그 이유는 첫째, 두려움을 요구하는 것은 스토킹 행동이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단계로 확대되기 전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고(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2007 as cited in Owens, 2016, p.2198), 둘째, 두려움을 보고하지 않거나 두려움이 아닌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 그룹에서 배제하게 만들어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수를 과소평가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스토킹 피해와 그 결과에 대한 이해를 제한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Owens, 2016).

다. 그 외 중요 개념

위에 언급된 공통 개념 이외에도 스토킹 행위는 다른 종류의 폭력과 세 가지 면에서 다르다(Kropp et al., 2002). 첫 번째, 가장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스토킹이 대상을 지정한(targeted) 행동이라는 것이다. 즉, 행동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은 가해자에게 알려져 있거나 익숙한 자이다(Beatty, 2003). 이는 스토킹이 매우 개인적이며, 스토킹 행동의 특성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Kropp et al., 2002; 2008; Kropp, Hart, Lyon, & Storey, 2011).

두 번째, 스토킹은 암시적(implicit)이고 명백한(explicit) 위협 행동을 포함한다. 위협은 가해자 자신이나(즉, 자살 위협) 피해자(즉, 살인 위협)에게 해를 끼치려고 외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의도를 표현한다. 대개의 경우 위협은 암시적이고 간접적일 수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해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즉, 특정 행동이 두려움을 유발하려는 명확한 의도라는 것은 피해자만이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토킹 행위에는 종종 피해자만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는 물건을 배치한다(Kropp et al., 2002; 2011). 스토커가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범죄 행동을 하지 않고 암시적인 위협만을 가할 경우, 경찰은 스토킹 행동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Hehemann, van Nobelen, Brandt, & McEwan, 2017).

세 번째로, 다른 유형의 폭력과 달리(Kropp et al., 2011), 스토킹은 긴 기간에 걸쳐 지속되며 때로는 수년에 걸쳐 이어지기도 한다. 이는 가정 폭력이나 데이트 폭력과 같은 특정 대상을 향한 폭력과 유사하다(Kropp et al., 2002; 2011).

2. 스토킹의 유형

가. 스토킹의 유형

스토킹 행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이 행동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이론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자와 임상가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스토커 집단을 보다 관리 가능한 하위 그룹으로 분류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을 개발하였다(Marlsch et al., 2011; McEwan, Pathé, & Ogloff, 2011; Racine & Billick, 2014). 초기 연구 단계에서는 스토커를 정신병 환자와 비(非)정신병 환자 그룹으로 단순히 분류했다(Kienlen, Birmingham, Solberg, O'Regan, & Meloy, 1997). 하지만,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많은 스토커가 스토킹 행위 시에 정신병을 앓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이에 최근의 스토커 유형은 정신질환의 진단 범주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스토커와 피해자 사이의 과거 관계, 가해자의 주요 동기, 그리고 정신병리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분류하고 있다(MacKenzie et al., 2009; Mullen et al., 2009; Racine & Billick, 2014; Sheridan & Boon, 2002; Spitzberg & Cupach, 2007; Zona, Sharma, & Lane, 1993).

스토킹 유형 분류 목적은 단순히 각 유형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개발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MacKenzie et al., 2009). 유형 분류 목적 중 하나는 스토킹 행동을 더 잘 이해하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 스토커-피해자 관계 유형에서 하위 그룹 간에 다양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데,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스토커의 행동 패턴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White et al., 2022). 하위 그룹 간에 행동 패턴의 차이점이 확인되면, 행동의 예상 진행여부, 고조여부, 지속여부(McEwan et al., 2011; White et al., 2022), 폭력 행동 여부 등을 예측할 수 있다(Racine & Billick, 2014). 이러한 정보는 경찰과 같은 전문가들이 스토킹 현장의 긴급 상황에 개입할 때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MacKenzie et al., 2009).

1) Zona의 스토커 유형

Zona, Sharma, 그리고 Lane(1993)의 스토커 유형 접근법은 가장 처음 개발된 유형론 중 하나다. 스토커와 피해자 간의 관계, 스토커의 정신 건강 상태(정신질환의 특성을 가지거나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스토커의 동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 Zona의 스토커 유형은 세 가지로 스토커를 나누고 있다(Racine & Billick, 2014; White et al., 2022).

가) 단순 집착형(Simple obsessional) 스토커

단순 집착형에서 스토커와 피해자는 지인 관계(직장에서의 고용주-직원 관계나 의료 상황에서의 의사-환자 관계)이거나 연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이다. 가해자의 동기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목적이거나, 관계를 끝낸 것에 대한 보복이다. 스토커는 직장에서의 불공정한 대우(예: 해고)에 대한 복수를 원하기도 한

다. 단순 집착형 그룹은 Zona의 유형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스토커의 50% 이상이 단순 집착형 유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성격장애나 약물남용,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가진 남성이 단순 집착형 유형으로 분류된다(Miller, 2012; Racine & Billick, 2014). 단순 집착형 유형은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물리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가장 폭력 행위를 가할 확률이 높은 유형이다(Meloy, 1998; Schwartz-Watts & Morgan, 1998).

나) 애정 집착형(Love obsessional) 스토커

애정 집착형에서 스토커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거나 스토커만 피해자를 알고 있을 수 있다. 피해자는 스토커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난 사람일 가능성이 많으며, 연예인에게 집착하는 팬일 경우도 있다. 애정 집착형 유형은 전체 스토커 집단의 약 30%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애정 집착형 스토커는 망상에 의해 자신이 피해자를 사랑하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피해자는 그를 사랑하지만 표현할 수 없거나, 그에 대한 사랑을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스토킹의 동기는 피해자가 이러한 감정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Miller, 2012; Racine & Billick, 2014). 대체로 애정 집착형 스토커는 지속적이거나 중증인 정신병(예: 조현병, 분열정동, 양극성 장애 등)을 진단받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폭력 행위를 가할 확률은 적다(Racine & Billick, 2014).

다) 애정 망상형(Erotomanic) 스토커

애정 망상형 또는 에로토마니아 스토커는 망상장애 중 에로토마닉 망상(애정망상) 유형으로 진단받은 이들로(APA, 2013), 피해자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는다. 애정 망상형 유형의 스토커 대부분은 여성이며, 종종 젊은 여성이 고소득 사회계층에 속한 남성을 쫓는다. 애정 망상형 유형은 Zona의 스토커 유형에서 가장 드문 유형으로 스토커의 약 10%를 차지한다(Miller, 2012; Racine & Billick, 2014).

2) Mullen의 스토커 유형

Mullen의 유형 분류(Mullen et al., 2006; Mullen, Pathé, & Purcell, 2000; Mullen, Pathé, Purcell, & Stuart, 1999;)는 주로 스토커의 동기, 피해자와의 과거 관계, 스토

커의 정신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McEwan et al., 2018; White et al., 2022). Mullen의 유형 분류는 먼저 주요 피해자(primary victim)를 식별한 후,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를 결정한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를 알고 있다면, 과거 성적 파트너, 가족/친구, 전문적 관계, 일상적인 접촉, 또는 직장 내 접촉 등으로 분류된다.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 식별 가능한 낯선 사람(Identified stranger)이나 식별 불가능한 사람(Unidentified)으로 분류된다.

위의 관계 유형에 따라 초기 동기(initial motivation) -(1)관계 재개, (2)관계 파탄에 대한 보복, (3)복수, (4)친밀한 관계를 추구, (5)성적 동기, (6)알 수 없는 동기-가 분류된다. 이러한 초기 동기와 잠재적인 정신병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다섯 가지의 스토커 유형이 결정된다. 만약 동기와 관계를 알 수 없다면, 알 수 없음(Unknown) 유형으로 분류된다(Mullen et al., 1999; 2009). Mullen의 유형 분류는 유형에 따라 위험성 수준과 위험성 요인이 다르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Johnson & Thompson, 2016; Mullen et al., 2006).

가) 거절당한 자(The rejected stalker)

거절당한 자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관계(대체로 성적인 친밀관계)가 끝난 후에 스토킹을 시작하지만, 가족 간의 관계나 친구 사이의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McEwan et al., 2018). 스토킹 행위는 화해 또는 복수를 원하는 욕망에서 비롯되며, 때때로 두 동기가 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거절당한 자 유형의 스토커에게 관계는 결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며 자신의 과거 연인이 이를 인식하길 원한다(McEwan et al., 2018; Miller, 2012; Mullen et al., 2006). 이 유형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정신병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McEwan et al., 2018) 대부분이 남성이다(Mullen et al., 2000).

Mullen 등(1999)이 실시한 임상 연구에서는 유형별로 행동, 동기, 그리고 정신질환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탐색하였다. 거절당한 자의 대부분은 전 연인관계로, 하위 그룹 중 가장 큰 비율인 30%를 차지하였다. Mullen과 그의 연구진은 전 연인관계 스토커들이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행동을 보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위협과 신체적 폭행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을 밝혔다(Mullen et al., 1999; 2000). 그들의 감정과 동기의 강도를 고려했을 때, 거부당한 자들은 모든 측면에서 높은 위험성을 보인다.

나) 친밀관계 추구자(The intimacy seeker)

친밀관계 추구자는 지인, 낯선 사람, 또는 전문적인 관계에서 접촉한 대상을 스토킹하며 접촉 대상과 어떠한 관계에 있다고 믿는다. 친밀관계 추구자 유형의 스토커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애정 망상(erotomanic delusions)이 있거나 병적인 집착(morbid infatuations)과 관련되었다. 이러한 망상 때문에 스토커들은 피해자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거나, 피해자에게 구애를 계속하면 결국에는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피해자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만, 직업이나 사회적 계급과 같은 외부 상황으로 인해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믿기도 한다(McEwan et al., 2018; Miller, 2012; Mullen et al., 2006).

친밀관계 추구자 유형의 스토커는 주로 외톨이일 확률이 높다. 사회적으로는 고립되고 미숙하며 이성 관계를 맺은 적이 거의 없다(Miller, 2012; Racine & Billick, 2014). 이 유형의 스토커는 종종 많은 수의 편지, 이메일, 선물을 피해자에게 보낸다. 만약 피해자가 거절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주 작은 반응을 보이면 그것을 피해자의 비밀스러운 사랑의 증거로 제멋대로 해석하고는 한다(Miller, 2012). 많은 유명인 스토커 사례가 이 분류에 속한다(Miller, 2012; Mullen et al., 2006). 스토킹 행동은 보통 지속적이며, 미래에도 다시 같은 피해자를 스토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애정 망상으로 인해 폭력 가능성은 적다(Mullen et al., 2006).

다) 무능한 구애자(The incompetent suitor)

무능한 구애자의 특성은 친밀감 추구자의 특성과 상당 부분 겹치지만, 두 그룹을 구분하는 고유한 특징들이 있다. 친밀관계 추구자처럼 무능한 구애자는 원하는 개인에 대해 집착하며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를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친밀관계 추구자와 달리, 무능한 구애자는 일회성 데이트 상대를 찾거나 성적인 관계를 목표로 한다. 이 유형의 스토커 역시 사회적으로나 대인적으로 미숙하다. 접근 방식은 종종 간섭적이고 외로움이나 욕망에 의해 주도된다. 그러나 친밀관계 추구자와는 달리 무능한 구애자는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다(McEwan et al., 2018; Miller, 2012; Mullen et al., 2006).

무능한 구애자의 동기는 종종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권리감(sense of

entitlement)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피해자의 감정에 무관심하거나 감정적 상호주의의 부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Mullen et al., 2006; Racine & Billick, 2014). 무능한 구애자는 피해자가 단호하고 직접적으로 거절을 할 경우, 빠르게 피해자에 대한 구애를 포기한다. 하지만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면 구애 대상을 새로운 피해자로 전환하기도 한다. 또한, 그들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Miller, 2012; Mullen et al., 2006).

라) 분개한 자(The resentful stalker)

분개한 자 유형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불공평하게 해를 입거나 학대당했다고 믿으며 복수를 위해 스토킹을 하는 유형이다. 장기간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거나 신체적으로 가해할 가능성이 적지만, 피해자를 괴롭히고 위협함으로써 두려움을 조성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반적인 관계에서 결여된 권력과 통제감을 되찾으려 한다(McEwan et al., 2018; Miller, 2012; Mullen et al., 2006; Racine & Billick, 2014).

분개한 자 유형은 편집증 성향의 성격 이상(paranoid personality traits)이나 완전한 정신증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McEwan et al., 2018). 그들은 가장 침입적 혹은 침범적으로 관계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분개한 자 유형의 스토킹 행동에는 피해자의 친구나 지인 괴롭힘,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의 거주지·차량·소지품 파괴, 애완동물 납치 등이 포함된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을 가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만약 폭력이 일어날 경우 극도로 폭력적일 수 있다(Miller, 2012; Mullen et al., 2006).

마) 성적 약탈자(The predatory stalker)

성적 약탈자는 대체로 낯선 사람(예: 94%, McEwan, Mullen, MacKenzie, & Ogloff, 2009)이나 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스토킹 동기는 주로 성적이며 비정상적인 만족감(deviant gratification)에 의해 주도된 성적 성향의 폭행이다. 성적 약탈자 유형의 스토킹 행동은 대상을 추적하며 폭행 준비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공격에 대한 연습과 상상을 하며 관음증적인 쾌락을 얻는 것 등을 포함한다. 추적은 보통 피해자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비밀리에 이루어지지만, 일부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피해자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본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에서 쾌락을 느낀다(McEwan & Pathé, 2013; Mullen et al., 2006).

성적 약탈자 유형은 대체로 심각한 정신질환은 없지만 성도착증, 약물남용, 성격장애, 우울증, 편집증에 의한 정신장애 같은 진단이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이러한 정신병의 존재는 폭력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McEwan & Pathé, 2013; Mullen et al., 2006). 성적 약탈자 유형의 스토커는 주로 남성이며, 대부분이 과거 범죄 경력이 있다. 비록 하위 유형 중 가장 낮은 비율이지만 그들의 행동은 연쇄 강간이나 연쇄 살인과 같은 보다 심각한 범죄의 전조가 될 수 있다(Miller, 2000; Schlesinger, 2002; Schlesinger & Miller, 2003).

3) The RECON 스토커 유형

Mullen의 스토커 유형 분류법은 임상적 표본에 기반을 두고 있어 임상 분야 외 형사사법체계의 전문가들이 활용하기 어렵다. 이에 Mohandie, Meloy, McGowan과 Williams (2006)가 대안으로 개발한 분류법은 RECON(Relationship and Context; 관계와 맥락 기반) 유형이다. 우선 RECON 유형 중 관계(RE) 기반 분류법은 스토커와 피해자 사이의 과거 관계 형태에 따라 유형(TYPE) I과 유형(TYPE) II로 나뉜다. 유형 I은 스토커와 피해자 사이에 이전의 관계가 있었던 경우, 그리고 유형 II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별로 관계가 없었거나 우발적인 접촉만 있었던 경우이다(Marlsch et al., 2011; McEwan et al., 2011; Racine & Billick, 2014). 그다음으로 관계 맥락(CON)에 기반을 둔 유형은 스토킹이 공개적인지 사적인지로 나뉜다. 즉, 유형 I의 하위 범주는 맥락에 의해 '친밀한 스토커'와 '지인 스토커'로 나눠지며, 유형 II는 '공인 스토커'와 '사적인 낯선 사람 스토커'로 나뉜다. 유형 II 스토커는 피해자와 접촉이 없었거나 우연히 만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는다. 모든 스토커 중 약 1/3에서 1/2이 이 범주에 속하지만, 행동의 익명성과 다른 범죄에 연관될 가능성이 작아 발견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더 많은 유형 II 스토커가 존재할 수 있다(Racine & Billick, 2014).

RECON 유형 분류법은 Mullen의 유형 분류법보다 간단해 임상관련 배경지식이 부족한 법 집행관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Marlsch et al., 2011).

가)친밀관계 스토커

친밀관계 유형의 스토커는 피해자와 과거에 친밀한 관계(예: 결혼, 데이트, 성적인 만남 또는 동거 등)이다. 전체 스토커 중 가장 큰 비율로 50%에 해당된다. 대체로 남성이고 가장 위험하고 폭력적이다. 접근 금지 명령, 구금 또는 기타 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이 높다(Racine & Billick, 2014).

나) 지인관계 스토커

지인관계 스토커는 피해자에게 알려졌지만, 친밀한 관계 또는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유형이다. 전문적인 상호작용, 비(非)친밀한 친구 관계, 치료사-환자 관계를 포함한다. 지인관계 유형 스토킹의 주요 동기는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며, 수년간 지속되는 간헐적 추적 패턴을 보여준다. 친밀관계 스토커에 비해 폭력에 의지할 확률은 낮지만 약 1/3은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다(Racine & Billick, 2014).

다) 유명인 비(非)친밀관계 스토커

유명인 비친밀관계 스토커는 자신과 관계가 없는 유명인을 스토킹한다. 이들은 대체로 여성이며, 남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고, 종종 정신증적(psychotic) 성향을 보인다. 이 유형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다(Racine & Billick, 2014).

라) 일반인 비(非)친밀관계 스토커

일반인 비친밀관계 스토커는 자신과 친밀관계가 전혀 없었던 낯선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다. 스토커 유형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심각하고 지속적인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인 비친밀관계 유형 중 1/3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가 있다(Racine & Billick, 2014).

나. 스토커-피해자 관계 이해의 중요성

스토커와 피해자 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지인이나 낯선 사람 관계보다 전 연인관계 스토커가 가장 일반적임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예: Sheridan & Davies, 2001;

Tjaden & Thoennes, 1998; White et al., 2022). 일부 연구는 스토킹 사건의 최대 80%가 현재 혹은 전 연인관계라고 했다(Coleman, 1997). 전 연인에 대한 스토킹은 종종 파트너에 대한 강한 감정적 의존성이나 질투심으로 인한 통제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일어난다(Brewster, 2000)

스토커-피해자 관계 등 다양한 유형법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행동 범위, 지속성, 그리고 폭력성 등 스토킹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White와 동료들(2022)의 연구에서는 스토커-피해자 관계에 기반하여 전 연인관계, 지인관계, 낯선 사람관계 스토커로 분류하고, 하위 그룹별로 어떠한 스토킹 행동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하위 그룹 간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다. 전 연인관계의 스토커들이 지인관계나 낯선관계 스토커에 비해 다양하고 폭력적인 스토킹 행동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스토커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른 분류가 스토킹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경찰이나 교정 전문가들이 자원을 할당하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스토킹 연구들은 관계 유형과 동기 유형이 스토킹 행동의 지속성과도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일반인 표본을 사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전 연인관계의 스토커들이 지인이나 낯선 사람 관계의 스토커들에 비해 더 오랫동안 스토킹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반대로, 낯선 관계의 스토커들은 스토킹 기간이 가장 짧았다(Bjorklund, Hakkanen-Nyholm, Sheridan, Roberts, & Tolvanen, 2010; Budd & Mattinson, 2000; Purcell, Pathé, & Mullen, 2002; Purcell, Pathé, & Mullen, 2004). 한편, 법의학 정신과 표본을 사용한 연구에서도 지인 관계의 스토커들이 다른 유형보다 더 오래가는 경향이 있었고 낯선 사람으로 분류된 스토커들의 스토킹 기간이 가장 짧았다(McEwan et al., 2009).

또한 여러 연구를 통해 피해자-스토커 관계가 잠재적 폭력의 중요한 예측 요인인 것이 발견되었다. 스토킹 연구들은 일관되게 전 연인 관계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할 위험이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Racine & Billick, 2014; White et al., 2022), 반면 낯선 관계 스토커는 신체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예: White et al., 2022). 전 연인에게 스토킹과 폭력을 당한 여성 피해자들은 종종 스토킹 사건 중에 상해를 입었다(Brewster, 2000). 또한 이전 연인관계에서 학대를 경험한 피해자

들은 같은 파트너에게 스토킹 당했다고 보고했다(Logan & Walker, 2009a, 2009b, 2017; White et al., 2022).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전 연인관계의 스토킹 위협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연관된 제3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전 연인관계 스토커 중 절반 이상이 제3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 불법 침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heridan & Davies, 2001; White et al., 2022).

스토커와 피해자 간 관계에 따른 스토킹 행동의 차이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한 연구에서는 경찰관들이 스토커가 피해자 지인일 경우보다 낯선 사람일 경우일수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Scott, Nixon, & Sheridan, 2013), 그러나, 전 연인관계 스토커가 가장 큰 폭력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경찰관들이 스토킹 행동을 다루는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스토커와 피해자 간 관계 유형에 따라 스토킹 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스토킹 행동을 식별하고 폭력성이 증가하기 전에 조기에 사건에 개입하며, 스토커와 피해자 관리와 치료를 위한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다(White et al., 2022).

3. 스토킹 가해자의 특성

스토킹은 가해자, 피해자, 행동 특성이 다양한 만큼 스토킹 범죄 자체와 위험요소 또한 다양하고 복잡하다. 본 절에서는 스토킹 가해자의 정신병리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즉, 애착 문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스토커의 정신병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에서 사용하는 정신질환 진단 매뉴얼인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에 분류되어 있는 정신병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DSM의 정신장애 분류체계와 정신장애 범주 중 스토커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발견되는 몇 가지의 정신질환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가. DSM의 정신병리 분류에 대한 개관

DSM은 그동안 다양한 축(Axes)과 기준을 사용하여 정신질환을 분류해 왔는데, 축을 사용한 분류법은 다섯 번째 버전인 DSM-5(APA,2013)로 개편되면서부터 사라졌다(APA, 2013). 하지만 대부분의 스토킹 연구는 개편 전의 DSM-IV-TR(APA, 2000)이나 이전 버전을 사용하여 연구되었다. 따라서 이전 버전에서 분류법으로 사용된 다중축을 사용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축 I(Axis I)과 축 II(Axis II)만을 설명한다.

축 II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은 성격장애와 정신지체이다. 축 I은 그 외의 모든 정신질환으로 분류된다. 축 II에서 성격장애는 다시 3가지 군집(Cluster)으로 분류된다. A군 성격장애는 타인이 보기에 특이하거나 기이한 행동을 하고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이다. 편집성(paranoid), 분열성(schizoid), 분열형(schizotypal)의 성격장애가 A군에 해당한다. B군 성격장애는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기 어려워하며 극적인 성격을 가진 유형으로 반사회적(antisocial), 경계성(borderline), 연극성(histrionic), 자기애성(narcissistic) 성격장애가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C군 성격장애에 해당하는 이들은 불안하거나 회피하려는 특성이 강하며 회피성(avoidant), 의존성(dependent), 강박성(obsessive-compulsive) 성격장애가 이에 포함된다.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은 기분장애나 약물사용 장애 등 다른 정신질환을 같이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APA, 2000).

나. 스토킹 가해자의 정신병리적 특성

스토킹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많은 스토킹 가해자가 DSM 진단의 축 I과 축 II에 해당하는 정신병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Racine & Billick, 2014). 스토커에게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정신질환은 B군 성격장애, 정신증(특히 망상장애), 그리고 약물남용이다.

B군 성격장애는 정신건강 평가를 받은 스토킹 가해자들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정신질환이다. 법정에서 정신건강평가 명령을 받은 204명의 스토커들을 분석한 결과, 표본 중 34%의 가해자가 성격장애로 진단을 받았다.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스토커 유형을 세분화해서 살펴본 결과 경계성과 반사회적(B군), 그리고 편집증적(A군) 성격

장애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게다가 표본 중 절반 정도가 한 가지 이상의 성격장애 특성을 보여 불특정형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 Not Otherwise Specified)로 분류됐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많은 스토커가 성격장애를 진단받고 그중 가장 흔하게 B군 성격장애를, 특히 경계성, 연극성, 그리고 자기애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음과 비슷한 결과이다(예: Mullen et al., 1999; Zona et al., 1993).

주목할 점은 성격장애가 여성 스토커들 사이에서도 높게 관찰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 스토커들은 일반적으로 남성 스토커와 비교하여 정신장애를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지만 성격장애가 여성 스토커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난다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평가를 필수적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Strand & McEwan, 2012).

정신증/망상장애와 관련하여 스토커들과 밀접하다고 언급되는 개념에는 애정망상(erotomania), 병적 집착(morbid infatuation), 병적 질투(morbid jealousy) 등이다.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스토커의 비합리적인 사고와 신념은 스토킹 행동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Rosenfeld, 2000). 이러한 비합리적인 사고와 신념은 관련 증상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달라져 스토킹 위험성에 영향을 끼친다. 애정망상을 가진 스토커는 상대방이 자신과 사랑에 빠졌다는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어 로맨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접근을 시도한다(Mullen et al., 2000; Zona et al., 1993). 애정망상을 가진 가해자는 상대방을 자신의 연인이 될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협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 스토킹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 그러나 비합리적인 사고로 인해 스토킹 행위는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Zona et al., 1993). 반면, 병적 질투와 같은 망상을 가진 가해자는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사고로 스토킹 행위나 폭력을 정당화하고 피해자나 잠재적 경쟁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가할 수도 있다(Mullen et al., 2000; Rosenfeld, 2000).

약물사용 장애나 약물남용 역시 스토킹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약물과 스토킹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일부 가해자에게 약물사용은 행동 비억제제(behavioral disinhibitor)로 작용하여 스토킹 행위를 저지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약물을 사용함으로 본인의 스토킹 행위를 정당화

하려고 할 수도 있다. 약물남용 전력이 있었던 가해자들은 가장 높은 폭력성을 보이기도 한다(Rosenfeld, 2004). 또한, 약물 사용은 정신증, 기분 장애, 성격장애 등으로 이미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Rosenfeld, 2000). 스토커 집단에서 가장 높이 나타나는 공병(comorbidity)은 성격장애와 약물사용 장애인데(예: Nijdam-Jones, Rosenfeld, Gerbrandij, Quick, & Galietta, 2018), 이 둘의 질환이 각각 나타날 때보다 공병으로 발견될 때 스토킹 재범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다(Rosenfeld, 2003). 약물로 인한 문제는 치료 동기를 감소시키거나 감독 사항을 따르지 않는 태도를 유발할 수 있어(Kropp et al., 2008; Rosenfeld, 2000) 스토킹 가해자들의 약물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다. 스토커의 애착문제

애착이란 일반적으로 아동과 보호자 간의 강한 애정적 유대관계로 정의된다(Bowlby, 1969). 애착 이론(Attachment theory)에 따르면 애착은 유아기에 시작하여 유아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때 형성된 애착은 성인이 된 후에도 개인의 정신건강이나 행동 문제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Bowlby, 1988). 안정적인 애착(secure attachment)을 형성한 이들은 타인을 쉽게 신뢰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어려움 없이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반면, 불안정한 애착(insecure attachment)을 보인 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타인을 신뢰하기 어렵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Bartholomew & Allison, 2006).

Meloy(1992)는 스토킹 행동을 설명하는데 애착 이론을 처음 적용한 학자이다. Meloy는 스토킹을 불안전한 애착 유형에 대한 표현이라고 설명하며, 경계성 및 자기애적 성격장애 특성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Meloy, 1992; 1996; Parkhill, Nixon, & McEwan, 2022).

애착이론에 기반한 다른 연구로 Patton, Nobles와 Fox(2010)는 단순 안정-불안정 애착유형이 아닌 불안정한 애착 유형을 세분화하여 스토킹 행동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안정한 애착 유형 중에도 특히 불안정-불안(insecure-anxious) 애착 유형이 스토킹 행동과 유의미하게 연관이 있었으며 불안정-회피(insecure-avoidant) 애착 유형은 스토킹 행동과 유의미하게 연관되지 않았다.

이는 타인에게 비정상적으로 의존하는 불안형이 과거의 관계에 매달리며 피해자에게 필요 이상 집착하는 '과거 친밀관계 유형'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다.

한편, Kienlen과 연구진, Birmingham, Solberg, O'Regan, 그리고 Meloy(1997)는 많은 수의 스토커가 피해자와 불안정한(insecure) 애착 관계를 맺고 있으며 불안정한 애착 관계는 연속적으로 거절당한 상황에서 더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분노, 질투, 통제 필요성 등과 같은 감정이 스토킹 행동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Davis, Davis, Swan, 그리고 Gambone 등(2012) 역시 Kienlen 등(1997)과 비슷한 결과를 발견하였는데, 이들은 성인의 애착 이론에 근거하여 불안정한 애착관계와 스토킹 행동의 연관성을 보고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안정한(특히, 불안한) 애착은 대인관계에서 감정적 고통(emotional distress)에 대한 자기조절에 실패할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상실을 경험했을 때 강제적으로 상대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높아진다.

MacKenzie, Mullen, Ogloff, McEwan, 그리고 James(2008)는 스토킹 행동은 단순히 애착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아 가치를 회복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스토커 집단이 일반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성인으로서 불안전한 애착 유형을 가지며 자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확률이 더 높았다. 또한 부모에게서 감정적인 학대나 방치를 받은 경험이 있고 강박, 부정적인 생각/감정, 인지적 왜곡이 더 높았다.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스토킹 가해자의 정신병리적 문제는 스토킹 특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하지만, 본 연구를 포함한 추후 국내의 스토킹 가해자 연구에서는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 스토킹 초기 연구에 비해 최근 연구들은 연구 표본에서 정신병리적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예: Nijdam-Jones et al., 2018). 이는 스토킹의 초기 연구에서 정신병의 발생 빈도가 과장되었을 수 있으며(Tjaden & Thoennes, 1998), 임상가들이 스토킹 행위나 스토커를 지나치게 병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Nijdam-Jones et al., 2018).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가해자의 특성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4. 스토킹과 폭력성

가. 스토킹 폭력의 특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토킹은 특정 대상을 향한 폭력이 수반되는 특징이 있어 다른 폭력 범죄와는 달리 잠재적 피해자를 미리 식별할 수 있다(MacKenzie et al., 2009). 따라서 폭력의 잠재적 위험과 대상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으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하기 전에 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토킹 행동은 이질적이며,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고, 강도와 심각성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어 예측이 어렵다(MacKenzie et al., 2009). 또한, 일반 폭력과 관련된 위험 요인과 스토킹에서의 폭력 위험 요인은 다르다(Rosenfeld, 2004). 스토킹 행동에서 나타난 신체적 폭력은 주로 주요 피해자를 향하지만,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까지 폭력이 확대될 수 있다(Meloy, 1999b; Mullen et al., 2000). 이는 스토킹에서 폭력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스토킹 폭력을 이해하는 것은 스토킹 행동의 다양성과 심각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Kropp et al., 2008). 스토킹에서 폭력의 유무는 피해자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 빈도, 심각성과 연관되어 있다(Kropp et al., 2008). 본 절에서는 Rosenfeld(2004)와 Churcher과 Nesca(2013)가 메타분석을 통해 밝혀낸 스토킹 폭력의 위험 요인에 대해 논의한다.

1) 메타분석

지난 20년 동안 축적된 스토킹 문헌에 따르면, 모든 스토커가 폭력적이지는 않으며(Sheridan, Bendlin, & House, 2021), 폭력성이 반드시 스토킹 행동으로부터 유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상당수의 스토커가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발견되었고(Spitzberg & Cupach, 2007), 때때로 스토커의 폭력은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James & Farnham, 2003; MacKenzie et al., 2009). 따라서, 스토킹 관련 폭력의 이질적인 면은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

메타분석은 연구 논문들의 정량적인 통합체이다. 메타분석은 각 연구의 효과 크기가 계산된 후, 모든 연구에 대한 평균 효과 크기가 계산되어 비체계적 문헌 검토(예:

narrative review, ballot box approach)와 비교하여 더 객관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Schmucker & Lösel, 2011). '스토킹 폭력'에 대해 메타분석을 한다면, 관련 주제를 분석한 문헌들을 모아 각 연구의 효과 크기를 코딩하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Rosenfeld(2004)는 스토킹 폭력과 관련하여 첫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10개 연구 분석, n = 1,055). 그가 분석한 스토킹 폭력 위험요인은 위협, 이전 친밀관계, 정신증, 성격장애, 약물남용 전력, 범죄경력, 그리고 폭력 전력 등 7가지 요인들이다. 두 번째 메타분석은 1995년과 2011년 사이에 출판된 27개의 연구(n = 5,114)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다(Churcher & Nesca, 2013). 두 연구를 통해 스토킹 폭력 특정의 위험 요인(예: 피해자와의 과거관계 등)과 일반적인 폭력 행동의 위험 요인(예: 범죄경력, 폭력전과, 약물남용 전력 등; Churcher & Nesca, 2013)이 발견되었다. 스토킹의 폭력 행동과 일반적인 폭력 행동 위험 요인 중 일부는 함께 발생하기도 하고 서로 강한 관련성을 갖기도 한다.

2) 스토킹에서의 폭력 행동 비율

스토킹 폭력에 대한 첫 메타분석에서는 스토킹 범죄자 중 38.6%가 폭력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Rosenfeld, 2004). 하지만 사용된 표본 출처(Davis & Frieze, 2000), 스토킹, 폭력, 피해자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스토킹 내 폭력 행동 비율은 적게는 10%, 많게는 50% 가까이 차이를 보인다(예: Bendlin & Sheridan, 2019; Meloy, 2002). 최근의 메타분석에서는 스토커의 3분의 1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사용했으며, 약 28.4%의 피해자가 폭력으로 신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스토커의 폭력 행동 비율도 남성 스토커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Churcher & Nesca, 2013).

나. 스토킹 폭력의 위험요인

1) 위협

위협은 스토킹 문헌에서 '해를 끼치려는 의도의 표현'으로 정의된다(Meloy, 1998, 1999a). 위협은 스토킹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며, 약 30%에서 60%의 스토킹 피해자가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스토커로부터 위협을 받는다(Brewster, 2000; McEwan et al.,

2011; Mullen et al., 1999; Spitzberg & Cupach, 2007). 위협은 주로 주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변 인물을 장애물로 인식할 때는 주변인들도 위협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Meloy, 1998; Mullen et al., 1999; Purcell et al., 2002). 이는 위협이 스토킹에서 폭력의 전조 행동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Churcher & Nesca, 2013; Meloy, 2002).

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협이 폭력으로 확대될 위험과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한 초기 연구에서는 표본의 종류에 따라 위협과 폭력으로의 확대될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Deitz et al., 1991).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위협이 폭력으로의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예: Harmon, Rosner, & Owens, 1998; Meloy, 1998, 1999a; Palarea, Zona, Lane, & Langhinrichsen-Rohling, 1999; Rosenfeld & Harmon, 2002; Sheridan & Davies, 2001). 폭력 변수를 더 구체적으로 탐색한 연구에서도 구두(verbal) 위협이 '폭력의 존재', '폭력 발생 횟수', '폭력으로 인한 부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Brewster, 2000).

위 메타분석 연구들은 스토킹 행동에서의 위협은 잠재적 폭력의 지표가 될 수 있으며, 구두 위협은 미래에 일어날 폭력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인다는 사실을 제공한다(Brewster, 2000). 따라서 스토킹 사례에서 위험성을 평가할 때, 협박은 가장 위험한 요인 중 하나(Churcher & Nesca, 2013; Rosenfeld, 2004)이며, 특히 스토커와 피해자가 과거 친밀한 관계였다면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Meloy, 2002; Racine & Billick, 2014).

2) 과거 친밀 관계

낯선 사람이 스토킹할 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대중들의 인식과는 달리 여러 연구에서는 과거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흔한 형태라는 사실을 알린다(예: Tjaden & Thoennes, 1998). 앞서 제2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다른 관계보다 과거 친밀한 관계가 더 많은 신체적 폭력을 가하고 스토킹을 더 지속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준다(Harmon et al., 1998; Hehemann et al., 2017; Mullen et al., 2000; Mullen et al., 2006; Palarea et al., 1999; Rosenfeld & Harmon, 2002; Sheridan et al., 2021).

Rosenfeld(2004)의 메타분석은 과거의 친밀한 관계와 폭력 사이에 유의한 연관성을

보여주었지만, 전반적인 효과 크기는 0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Rosenfeld는 과거의 친밀한 관계가 더 높은 폭력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Churcher과 Nesca(2013)의 최근 메타분석에서는 과거의 친밀관계가 다른 위험요인과 비교해 가장 큰 효과 크기(r = .36)를 보였다. 이 결과는 과거 친밀관계였던 피해자가 더 큰 폭력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개별 연구의 발견과 일치한다.

과거의 친밀관계와 폭력 사이의 유의한 연관성은 관계 파탄에 대한 기본적인 분노(Meloy, 1998; 1999b)와 복수에 대한 동기 때문일 수도 있고(Rosenfeld, 2004), 신체적 근접성(Brewster, 2000), 접근 가능성(예: McEwan et al., 2009; Palarea et al., 1999)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스토킹 자체가 친밀한 파트너 폭력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Churcher & Nesca, 2013). 하지만 피-가해자 관계 자체가 이유인지, 아니면 다른 서로 관련된 요인이 역할을 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과거의 친밀한 관계가 더 높은 폭력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법 집행 관계자에게 조기 개입과 위험관리의 기회를 제공한다(Hehemann et al., 2017).

3) 정신병리적 요인

가) 약물남용

커뮤니티 기반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137명의 스토킹 범죄자를 조사한 연구에서 Nijdam-Jones 등(2018)은 약물남용 장애가 있는 스토커들(n = 63) 사이에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했다. 이들 스토커는 첫 체포 당시 나이가 더 어리고, 과거 체포된 횟수가 훨씬 많으며, 약물 사용 장애가 없는 스토커들에 비해 과거 스토킹 유죄가 더 많았다. 기존의 연구들도 일관되게 약물남용이 스토킹 중에 폭력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 있음을 보여준다(예: Harmon et al., 1998; Mullen et al., 1999; Rosenfeld & Harmon, 2002). 나아가 약물남용은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과거 유죄전력, 또는 약물남용 전력과 같은 스토킹 폭력의 위험 요인과 함께 발견될 때 특히 두드러진다(Mullen et al., 2006).

Rosenfeld의 연구에서는 정신병리학적 위험 요인(즉, 정신질환의 존재, 성격장애, 약물 남용 전력) 중 약물남용 전력이 스토킹 관련 폭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 발견되었다(Rosenfeld, 2004). 또 다른 메타분석도 약물남용을 스토킹 폭력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Churcher & Nesca, 2013).

약물남용을 줄이는 것이 스토킹 폭력의 위험성 자체를 줄이는지, 형사사법 체계와의 접촉을 줄이는지 혹은 둘 다 감소시키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약물남용을 해결하는 것은 스토킹 관련 폭력을 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Nijdam-Jones et al., 2018). 더불어 약물남용과 스토킹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고, 약물남용 장애를 가진 스토킹 가해자들에 대한 치료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 연구도 필요하다.

나) 성격장애

Rosenfeld(2004)의 메타분석에 포함된 개별 연구들은 성격장애가 스토킹 폭력의 위험 요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효과 크기는 크지 않았는데(Churcher & Nesca, 2013; Rosenfeld, 2004), Churcher과 Nesca(2013)는 효과 크기가 약한 이유가 모든 성격장애 유형을 하나로 묶어서 분석하였기 때문으로 추측한다. 개별 연구에서 B군 성격장애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예: Meloy et al., 2000; Mullen et al., 1999; Rosenfeld, 2003 등) 성격장애를 하나의 변인이 아닌 군집 유형별로 검사하거나 더 세분화하여 분석하게 된다면 성격장애와 스토킹 폭력 사이의 더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다) 정신증의 부재

일부 연구에서는 정신증이 있는 스토커(psychotic stalker)는 정신증이 부재한 스토커(nonpsychotic stalker)보다 폭력성이 낮은 것으로 발견되었는데(예: Mullen et al., 1999), 두 메타분석에서도 모두 정신증과 스토킹 폭력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정신증이 존재하는 경우, 폭력의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Churcher & Nesca, 2013; Rosenfeld, 2004), 하지만, 많은 정신장애가 공병 상태(co-morbidity)로 나타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여러 정신장애의 증상이 겹쳐서 나타날 가능성과 정신장애 간 상호작용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Rosenfeld, 2004).

4) 범죄자 전력

가) 폭력 전력

폭력 전과는 일부 연구에서는 스토킹 폭력을 예측하는 강한 위험성 요인으로 발견되는 반면(예: Palarea et al., 1999), 다른 연구에서는 폭력을 예측하지 못해(예: Brewster, 2000) 확고한 결론을 짓지 못했다. 하지만, 두 메타분석에서 폭력 전력 변수는 작은 효과 크기이지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폭력 전력이 있는 스토커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Churcher & Nesca, 2013; Rosenfeld, 2004).

나) 범죄경력

범죄경력은 일반 재범과 일반 폭력 재범을 예측하는 데 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Bonta & Andrews, 2017). 하지만 스토킹 범죄에서는 범죄경력이 늘 정적인 상관관계(Brewster, 2000; Mullen et al., 1999; Mullen et al., 2006)를 가진 재범요인은 아니다(Palarea et al., 1999; Rosenfeld & Harmon, 2002). Churcher과 Nesca(2013)의 메타분석에서는, 비록 효과크기는 작았지만, 범죄경력이 스토킹 폭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 범죄전력이 있는 스토커가 더 폭력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과는 첫 번째 메타분석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인 것이지만, 일반 폭력 연구들에서 꾸준히 발견되는 범죄경력과 폭력성 재범의 정적인 관계와 일치함을 보였다.

5. 스토킹 범죄의 재범, 위험성 평가와 대응방법

가. 스토킹 범죄의 재범

1) 스토킹 재범 연구의 제한점과 필요성

재범 연구에서는 재범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스토킹 재범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고려하여 분석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첫째, 재범의 임계값(threshold for recidivism), 즉 재범의 기준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체포, 기소, 유죄판결, 감금, 혹은 규칙 위반이 될지를 결정해야 하며(Marlsch

et al., 2011; Rosenfeld, 2003), 둘째 재범결과의 유형을 스토킹 재범 한정으로 할지 일반 범죄 재범, 일반 폭력범죄 규칙 위반 등으로 확대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Rosenfeld, 2003). 세 번째는 재범 추적 기간의 기준이다. 대부분의 재범 추적 연구는 추적 기간이 짧은데 스토킹 연구에서는 더 긴 추적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Coupland et al., 2022). 짧은 추적 기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스토킹의 지속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스토킹은 짧게는 6개월 이내, 길게는 몇 년에서 몇십 년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McEwan, Mullen, & MacKenzie, 2009; McEwan, Daffern, MacKenzie, & Ogloff, 2017, Purcell et al., 2002) 추적 기간을 짧게 잡는 것은 지속적인 스토킹을 하는 가해자의 재범을 포착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Coupland et al., 2022).

재범 연구에 있어 위와 같은 제한점이 존재하지만, 스토킹 범죄 역시 재범연구가 필수적이다. 스토킹이 지속될수록 피해자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심각해진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Purcell et al., 2005.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가족과 지인들, 나아가서는 형사사법체계와 지역사회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McEwan et al., 2011).

2) 스토킹 재범기간과 위험요인

Rosenfeld(2003)는 정신건강 평가 소견을 받은 스토커들을 중심으로 최대 8.5년까지의 추적기간을 통해 적어도 세 번 이상 보고된 스토킹 사례의 재범을 연구하였다. 이 추적 연구는 약 49%의 유죄판결을 받은 스토커들이 재범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범 스토커 중 80%는 유죄판결을 받은 1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음을 보고했다. Marlsch와 그의 동료들 (2011) 또한 유사한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약 5년간의 재범 추적 기간 중 53%의 스토커들이 재범하였다. 스토킹 관련 범죄만을 재범한 이들은 전체 중 11%였고, 이들의 50%는 유죄판결을 받은 7개월 이내에 재범하는 것을 발견하며 스토킹 범죄나 스토킹 관련한 범죄에 대한 재범속도가 가장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Eke, Hilton, Meloy, Mohandie, 그리고 Williams(2011)는 경찰 단계에서의 스토커들을 대상으로 약 9년간의 추적을 하였는데 재범률이 56%였다. 평균 재범기간은 1년 이내였고, 50% 이상의 재범자들은 3개월 이내에 재범했다.

Rosenfeld(2003)의 연구에서는 스토킹과 일반 재범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나이), 피해자-가해자의 관계 특징, 첫 형사사법체계 접촉 이전의 스토킹 기간, 스토킹으로 인한 첫 체포 이전의 범죄경력, 현재 스토킹 사례와 관련 없는 폭력전과, 망상적인 믿음과 진단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해자가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자와 과거 친밀관계가 있었으면 재범할 위험이 높았다. 또한, 반사회적, 자기애성, 혹은 경계선 장애와 같은 B군 성격장애가 있는 이가 다른 일반 범죄자나 다른 군의 성격장애가 있는 가해자들보다 위험성이 높았다. 특히 성격장애와 약물중독 전력을 가진 가해자는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재범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망상장애가 있는 가해자는 재범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osenfeld, 2003).

Eke 등(2011)도 과거 친밀관계의 스토커가 대부분 폭력 재범을 한다고 보고했다. 이 스토커들은 조건부 석방 조건을 위반하거나 폭력범죄 재범과 비폭력범죄 재범을 모두 했다. 심지어 새로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한편, Eke 등(2011)은 Rosenfeld(2003)의 연구와는 조금 다른 위험 요인, 즉, 정신병전력, 범죄경력, 약물남용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다른 성격을 가진 표본 선정(즉, 정신보건 표본 vs. 경찰단계 표본)의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Eke et al., 2011).

나. 스토킹의 재범 위험성 평가

1) 구조화된 전문가 판단(SPJ) 위험성 평가 도구

현재 교정 분야에서 위험성 평가 개발과 사용은 '위험성, 필요성, 반응성' 원칙(The Risk-Need-Responsivity[RNR] Principles; Bonta & Andrews, 2017)에 따라 이뤄지며, 이는 범죄자의 재범 위험관리에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경험적으로 검증(empirically based)된 접근법이다(Bonta & Andrews, 2017). RNR 모델에서의 '위험성(Risk)' 원칙에 따르면, 치료와 감독의 강도는 범죄자의 위험 수준에 맞춰져야 한다. 즉, 강도 높은 치료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위험 원칙은 또한 위험 수준은 구조화된(structured) 위험성 평가를 사용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명시한다(Andrews, Bonta, & Hoge, 1990; Andrews et al., 2011; Andrews et al., 1990).

현재 구조적 접근법을 사용한 위험성 평가가 비구조적(unstructred) 접근법에 비해 더 정확하고 일관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수없이 증명되었다(Schwalbe, 2008). 구조적 접근법에는 증거기반(evidence-based) 위험성 평가로 사용되는 보험계리적(actuarial) 모델과 구조화된 전문가 판단(Structured Professional Judgment; SPJ) 모델이 존재한다.

보험계리적 위험성 평가는 재범과 연관된 것으로 검증된 위험 요인에 기반하여 개발됐다. 총점수는 최종 위험 수준(risk level)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며, 위험 수준은 "고정된 명확한 규칙"에 따라 최종 결정이 이루어진다(Meehl, 1954/1996, Kropp et al., 2011, p.304에서 재인용). 일반범죄나 일반폭력범죄의 재범을 예측하는 기존 위험성 평가도구들은 보험계리적 접근법을 사용한다.

반면, 구조화된 전문가 판단(SPJ)은 평가자가 의사 결정 과정과 최종 위험 수준 결정을 한다. 치료의 필요성과 빈도에서 평가자의 재량에 따른 독립적인 판단을 제공하여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Kropp et al., 2011; Vincent, 2016). 따라서 SPJ 도구는 총점이나 기준 점수(cut-off score)를 사용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 대신 요약된 위험성 등급(summary risk ratings)을 사용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준다(Foellmi, Rosenfeld, & Galietta, 2016). SPJ 접근법은 비구조화된 임상판단(clinical judgement)과는 다르게 규정(guideline)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훈련을 받는 것이 필수이다. SPJ 접근법에 '전문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Desmarais & Singh, 2013; Vincent, Guy, & Grisso, 2012).

2)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 평가 목적

위험성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재범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재범 확률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을 결정하고 안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위험성 평가는 범죄자의 위험성 단계에 맞추어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 범죄자의 재범위험 요인(risk/need factors)과 반응성(responsivity)을 분석해 가장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 관리 계획을 제공하는 네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스토킹 행동과 관련된 재범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단지 미래의 재범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재범과 피해자에게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방지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범인이 저지를 스토킹의 임박성, 심각성, 빈도수"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Kropp et al., 2011, p.303) 단순한 재범 예측은 허사일 것이다. 따라서 스토킹 위험성 평가는 스토킹 행동의 재범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요인들이 다뤄져야 하는지를 인식하고(MacKenzie et al., 2009)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감시(monitor), 감독(supervise)하고 관리(manage)하는 전문가에게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스토킹 범죄의 관리를 위한 스토킹 위험성 평가는 SPJ 접근법을 사용한다. 보험계리적 접근법을 사용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단순히 실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범죄나 폭력 범죄에 비해 스토킹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시작되었다. 따라서 대표 표본(representative sample)에 대한 전향적 연구(prospective studies)가 제한적이고, 보험계리적 평가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Kropp et al., 2011; Mullen et al., 2006). 두 번째는 스토킹 상황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SPJ 접근법이 보험계리적 접근법보다 실질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Kropp & Cook, 2014; Kropp et al., 2011; McEwan et al., 2011; Shea, McEwan, Strand, & Ogloff, 2018). SPJ 접근법은 평가자가 스토킹 상황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결정 과정에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McEwan et al., 2011). 또한, 치료의 강도(intensity)를 지침하는 보험계리적 접근법과는 달리, SPJ 접근법을 사용한 도구는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에 의해 지침된 치료의 성격과 유형을 적용한다(Kropp et al., 2011). 더불어, SPJ 접근법은 폭력의 가능성(probability)뿐만 아니라 위험 판단을 할 때 긴급성, 재발, 잠재적 심각성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든다(Douglas & Ogloff, 2003; Douglas & Skeem, 2005)

기존의 위험성 평가를 스토킹의 위험성 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를 일으킨다. 첫째, 일반적인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도구들은 스토킹 행동에 대한 폭력을 적절하게 개념화하지 못한다. 스토킹을 계속하거나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스토커라도 반드시 일반 범죄 성향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는 않으므로 일반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로는 정확하게 식별되지 않는다(McEwan et al., 2011). 둘째,

위험성 평가가 올바른 요인을 측정한다고 해도(예: 미래에 폭력적일 위험성) 기존의 도구들은 스토커 특유의 위험요인(예: 위협, 망상적 믿음,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놓치므로 스토커들의 적절한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없다(McEwan et al., 2011). 또한, 기존의 위험성 평가는 스토커의 동기에 대해 거의 고려하지 않는데 스토킹에서 동기는 스토킹 행동의 패턴, 지속성, 재발, 그리고 폭력의 가능성에 근본적이므로 기존의 위험성 평가에서는 치료개입에 중점이 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놓치게 된다(McEwan et al., 2011). 이러한 이유로 스토킹 범죄의 재범 예측만을 위한 위험성 평가가 개발되었다. 이 두 위험성 평가는 모두 SPJ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3) 스토킹 위험성 평가 I: SAM

가) SAM의 개관

The Guidelines for Stalking Assessment and Management(SAM; Kropp, Hart, & Lyon, 2008)은 스토킹 행동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첫 번째 SPJ 위험성 평가이다. SAM은 스토킹 이력이 있거나 스토킹 이력이 의심되는 경우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쓰인다(Shea et al., 2018). 이 도구는 스토킹 상황이 발생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의 검증 연구들은 SAM이 경찰(예: Belfrage & Strand, 2008) 및 임상-법의학(예: Kropp et al., 2011) 분야에서 모두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SAM은 스토킹 행동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개발된 근거 기반의 실증적 도구이다(Kropp et al., 2011). 도구 개발 시기인 2001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스토킹 관련 연구가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SAM 연구자들은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과 정신장애와 관련된 폭력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도구를 만들었다(Kropp et al., 2011). SAM의 예비 버전은 스토킹 처벌 전문 경찰과 법의학 정신과 외래 클리닉에서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캐나다 전역의 경찰 기관들, 형사사법, 의료, 그리고 직장 환경에서 추가적인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고 2007년과 2008년에 최종 수정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 된 만큼 SAM은 형사사법, 정신 건강, 보안 분야에서 근무하며 스토킹 가해

자와 피해자를 다루는 전문가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Kropp et al., 2011). SAM의 검증 연구들은 경찰과 임상-법의학 분야 등에서 해당 도구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예: Belfrage & Strand, 2008; Kropp et al., 2011).

SAM은 평가 마지막에 구조화된 전문적 판단을 한다. 이를 위해 6단계의 정보수집 과정을 거친다. '1단계: 사건 정보(Case Information)'에서는 관련 배경 정보를 수집하고 가장 최근의 스토킹 행동 패턴과 과거 스토킹 행동을 요약한다. '2&3 단계: 위험 요인의 존재와 관련성(Presence and Relevance of Risk Factors)'에서는 과거 및 현재 스토킹 행동에 대한 위험 요인의 존재를 결정한다. 이러한 위험 요인을 기반으로 미래의 관리/전략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의 관련성을 결정한다. SAM은 (1) 스토킹의 특성, (2) 가해자 위험요인, 그리고 (3) 피해자 취약성 요인의 세 가지 요인으로 나뉘며, 요인마다 10개의 항목으로 총 30개의 항목을 포함한다. 2 & 3단계에서는 이 30개 위험요인에 대한 과거, 현재 및 관련성을 존재(present)하거나, 가능하거나 부분적으로 존재(possibly or partially present)하거나, 없음(absent)으로 평가한다. 각 요인에서 10개의 위험요인 외에도 "기타 고려 사항"이 포함되어 각 요인에서 논의되지 않은 위험 요인 또한 기록할 수 있게 하여 위험성을 더욱 완전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Kropp et al., 2008).

'4단계: 위험 시나리오(Risk Scenarios)'에서는 스토킹의 특성, 심각성, 임박성, 빈도/지속 기간 및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래 스토킹에 대한 가장 가능성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5단계: 관리 전략(Management Strategies)'에서는 스토킹 위험 관리를 위한 전략을 세운다. 관리 전략에는 감시, 치료, 감독 및 피해자 안전 계획이 포함된다. SAM은 SPJ 접근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정된 점수나 기준 점수가 아닌 전문가의 판단에 기반하여 전체 위험 등급을 낮음, 중간, 높음으로 분류한다, '6단계에서는 결론적 의견(Conclusory Opinions)'을 기록하여 사례의 우선순위(낮음/일상적, 보통/상승, 높음/긴급)에 대한 요약 판단, 스토킹 지속성(낮음/보통/높음), 심각한 신체적 피해 위험성(낮음/보통/높음), 두려움의 타당성(너무 높음/적절함/너무 낮음) 및 즉각적인 조치 요구(없음/긴급)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재검토, 재평가를 위한 예정 시기를 기록한다(Kropp et al., 2008).

나) SAM의 심리계량적 속성

SAM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중간정도의 내적 신뢰도 값(α = .60 - .70; Foellmi et al., 2016)과 충분한 평가자 간 신뢰도를 보여주었다(예: ICCs = N 요인= .64 - .77, P 요인= .68 - .88, V 요인= .39 –.80; Foellmi et al., 2016; Kropp et al., 2011; Storey, Hart, Meloy, & Reavis, 2009).

일반 폭력과 사이코패시 특성과 공변 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측정한 연구에 의하면, SAM은 Psychopathy Checklist: Screening Version(PCL:SV; Hart, Cox, & Hare, 1995)과 보통에서 보통 이상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PCL:SV의 총점은 각 SAM 위험 요인의 점수와 '스토킹 지속성,' '사례의 우선순위,' '심각한 신체적 피해 위험성'과 같은 모든 결론적 의견에 대한 총점과 요약 위험등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Storey et al., 2009).

그러나 SAM 요인 영역과 결론적 의견은 일반 폭력 위험성 평가인 Violence Risk Appraisal Guide(VRAG; Quinsey et al., 2006) 총점과는 약한 상관관계만 있었다. VRAG에서 싸이코패시 항목을 제외하면, 총점은 SAM에서 "심각한 신체적 피해" 위험성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폭력 위험 평가의 표준 측정 도구가 스토킹 사례에 대해 효과적인 예측 도구가 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Kropp et al., 2011). 또한, 동시 타당성에서 발견된 낮은 상관관계는 PCL:SV나 VRAG가 스토킹과 관련된 위험 요인의 전체 범위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Kropp et al., 2011).

4) 스토킹 위험성 평가 II: SRP

가) SRP의 개관

SAM과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Stalking Risk Profile(SRP; MacKenzie et al., 2009)은 호주에서 스토킹 관련 임상전문가/연구가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SRP 역시 SAM처럼 SPJ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고 도구를 개발한 임상전문가와 연구자들의 임상경험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SAM과는 다르게 SRP는 법의학/임상 환경에서 스토커를 상대하는 정신의학 전문가들이 쓰이도록 설계되었다(Kropp et al., 2011; McEwan et al., 2011). 이 도구는 정신의학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 법집행

자가 쓰기에는 한계가 있는 단점이 있지만 (즉, 법집행자가 사용할 경우 임상 전문가가 함께 평가해야 함) 스토킹의 동기(motivation)를 기반으로 스토킹의 다면적인 특성을 평가(McEwan et al., 2011) 할 수 있는 장점이 더 많은 도구이다. SRP만의 독특한 구조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RP는 스토커의 주요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중점을 둔다. 스토킹 행위에서 동기는 가해자-피해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스토커 개인의 임상적 특성과 범죄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McEwan et al., 2011; Mullen et al., 2006). 또한, SRP는 스토킹의 일반 특성뿐만 아니라 폭력성, 지속성, 반복성 등의 재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하여 Mullen(2009)의 유형법을 바탕으로 스토커를 분류한다. Mullen의 유형법으로 분류된 각 유형의 스토커는 공통된 위험요인과 유형별 위험요인으로 탐색된다 (MacKenzie et al., 2009; McEwan et al., 2011).

둘째, 재범위험은 스토킹 폭력(violence), 지속성(persistence), 반복성(recurrence)의 영역으로 세분화된다. 각 위험 영역에서는 모든 유형의 스토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일반 위험요인(general risk factors)과 스토커 유형별 위험요인이 측정된다. 따라서, 스토커가 폭력을 저지를 위험이 없더라도 미래에 스토킹을 지속할 것인지 스토킹이 반복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MacKenzie et al., 2009; McEwan et al., 2011).

셋째, SRP는 추가적으로 각 위험영역의 위험성을 높일 수도 있는 '스토커의 심리사회적 손상 요인(Risk of Psychological Damage to Stalker)'을 평가한다. 이는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스토커 자신에게도 해가 되어 결국에는 피해자에 대한 손상과 더불어 재범위험에 상호작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재범영역과는 달리 스토커의 심리사회적 손상 요인 영역에서는 11개의 일반 위험요인(예: 스토킹 관련 망상, 사회적 고립, 분노에 대한 문제 등)만이 측정된다(MacKenzie et al., 2009; McEwan et al., 2011).

넷째, SRP에서는 스토커에게는 드물지만, 존재할 경우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위험요인을 측정한다. '경고신호(red flag)' 요인이라고도 불리는 위험 요인들은 자살에 대한 생각, 살인에 대한 생각, 최후 수단에 대한 생각, 고위험 정신증적 현상, 그리고 사이코패시에 대한 증거를 측정한다. 평가자는 가해자가 다른

위험영역에서 고위험으로 평가되지 않더라도 이 영역에서 고위험에 해당되면 가해자가 임박한 폭력의 높은 위험수준이라고 판단하고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황에 따라 스토커가 이 영역의 요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MacKenzie et al., 2009; McEwan et al., 2011).

모든 위험성 영역과 스토커 유형에서의 위험요인은 총 81개이다(McEwan et al., 2018). SAM과 마찬가지로 각 요인은 존재(Y)하거나, 가능하거나 부분적으로 존재(?)하거나, 없음(N)으로 평가된다(MacKenzie et al., 2009; McEwan et al., 2011). 위험성 등급에 대한 판단(저위험, 중간위험, 고위험)은 각 위험영역 마지막에 평가하게 되어 있어 영역별로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RP의 재평가는 4~6개월마다 시행되도록 추천하고 있다(MacKenzie et al., 2009; McEwan et al., 2018).

나) SRP의 심리계량적 속성

SRP는 임상분야의 전문적인 배경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SAM과 비교하여 심리계량적 속성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McEwan 등(2018)은 SRP에 대한 첫 신뢰도와 타당도를 측정했다. 평가자 간 신뢰도는 영역별로, 폭력(ICC = 0.89), 지속성(ICC = 0.90), 반복성(ICC = 0.70-0.76), 스토커의 심리사회적 손상 요인(ICC = 0.74)을 보이며 중간부터 상당한 수준의 평가자 간 신뢰도 범위를 보였다. 예측 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추적 기간 동안, 고위험 스토커들이 중간/저위험 스토커들보다 동일한 피해자에게 더 자주, 더 빠르게 재범함을 발견했다. 반면, 저위험과 중간위험 스토커 간의 생존율에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지속성과 반복성 판단에 대한 예측은 전체 추적 기간 동안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재범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차이를 보이며 효과적으로 이 두 그룹을 구별할 수 있음을 보였다.

다. 스토킹 범죄의 재범 대응방법

1) 스토킹 심리치료 효과의 경험적 검증

스토킹 재범과 관련해 구조화된 위험성 평가도구가 개발되었음에도 스토킹 가해자의 특성에 맞춘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다. 이는 스토킹의 행위와 특성이 다양하고 스토킹 가해자들에게서 관찰된 정신질환의 다양성 때문에 일관된

치료가 어렵기 때문이다(Racine & Billick, 2014). 따라서, 스토킹 행위를 다루는 심리치료에 대한 소개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효과 분석 연구는 더더욱 찾기 힘들다(Jerath, Tompson, & Belur, 2022). 현재까지 경험적 검증을 거친 연구의 수는 제한적이다.

Rosenfeld 등(2007)은 스토킹 가해자를 대상으로 경계성 성격장애의 치료에 쓰이는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ur Therapy; DBT)를 적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스토킹 가해자 치료에 DBT를 사용한 이유는 성격장애를 가진 스토커 유형이 폭력과 재범률이 높은 위험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DBT는 통찰력이나 태도의 개선보다 문제행동 교정을 주된 목표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스토커에게 적용된 DBT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좌절과 도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스토킹 가해자의 위험한 행동을 제거하고 감정 조절, 대인관계 효과성과 같은 행동 기술을 가르친다.

Rosenfeld 등이 진행한 연구에서는 총 29명의 남성 스토커가 참여, 매주마다 그룹 세션과 개인세션 치료에 임했다. 치료기간은 총 6개월로 치료가 끝난 후에는 최대 12개월을 추적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29명 중 치료 프로그램의 모든 세션을 끝까지 마친 14명의 스토커는 치료 프로그램을 끝마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이들에 비해 재범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치료 프로그램 완료에 영향을 미친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은 참여자가 치료 초기에 '예약접수 만남'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였다. 예약접수 만남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됐다(Rosenfeld et al., 2007). 하지만 비무작위 표집방법과 적은 표본수는 DBT를 사용한 치료가 스토커들의 재범을 방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 시사할 뿐 치료의 어떠한 요소가 얼마나, 혹은 어떻게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었는지는 추측하기 어렵다.

최근의 연구(Rosenfeld et al., 2019)는 앞서 언급한 2007년의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randomized control trial) 설계를 사용해 진행됐다. 109명의 스토커가 무작위로 스토킹 가해자 표본에 맞게 설계된 DBT(DBT-S)와 인지행동을 기반으로 한 분노조절치료(anger management intervention)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완료 후에는 12개월간 추적을 하였고, 치료 참여자들은 치료프로그램 참여 전후로 자기보고 형태의 설문을 완료했다.

추적 결과, 치료에 참여한 스토커들은 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스토커들에 비해 낮은 재범률을 보였다. 하지만 치료 종류에 따른 효과가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치료완료 여부도 치료효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따라서, 스토킹 가해자의 문제 행동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집중적인 치료적 개입이 스토킹 재범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어떤 치료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치료의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준 것인지는 밝혀내지 못하였다(Rosenfeld et al., 2019).

2) 스토킹 재범 대응방법을 위한 추천

SRP 도구 개발의 연구진은 스토킹 가해자들의 효과적인 관리와 치료를 위해 몇 가지 추천사항을 강조하였다. 첫 번째는 가해자들에 대한 정신 건강 평가(mental health evaluation)이다. 많은 가해자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이들이 정신질환 평가를 받도록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Mackenzie et al., 2006). 이에 모든 스토킹 가해자는 정신건강 평가를 받아야 하며, 스토커와 이들의 행동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훈련된 전문가가 평가해야 한다(MacKenzie & James, 2011).

두 번째는 수사 및 법정 단계에서 정신과나 심리학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하여 가해자의 위험성과 관리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전문가적 판단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위험성 평가도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위험성 평가도구는 최근의 임상적 증거와 함께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스토킹 행동에 특화된 위험성 평가는 스토킹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이다(MacKenzie & James, 2011).

자신의 행동이 스토킹 행위이며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 행동인 것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행위에 대해 교육하는 것만으로도 이들의 행동을 멈출 수도 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심각하고 만연한 문제로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는 가해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세 번째, 정신과 및 심리학 요소가 포함된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MacKenzie & James, 201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동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DBT나 일반범죄자나 폭력범죄자에게 주로 쓰여 효과가 입증된 인지행동치료(CBT)도 효과적일 수 있다. 스토커들의 행동 패턴이나 동기는 다양하지만, 지속

해서 스토킹 행동을 하게 하는 근본적인 왜곡된 인지와 태도, 기술적 결함이 있다(MacKenzie & James, 2011; Marlsch et al., 2011). CBT를 통해 왜곡된 인지를 바로잡고 대인관계에서의 부족한 상호작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치료 프로그램에서 반응성 원칙(responsivity principle)에 따라 개별 스토커의 독특한 특성에 맞게 치료책을 선택하는 것이다(Andrews et al., 1990; Andrews, Zinger, et al., 1990; MacKenzie & James, 2011). 다시 말해, 적절한 종류의 치료나 개입뿐만 아니라 개인 차이를 인식해 프로그램 참여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배울 수 있는지를 고려해 치료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Bonta & Andrews, 2007; Latessa, Listwan, & Koetzle, 2014).

개인 맞춤 치료 프로그램에서 유의할 점은 스토킹 가해자를 다양한 범죄자들과 함께 그룹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점이다. 스토킹 가해자를 그룹세션에 참여시킬 때 주의할 점이 있다. 그룹세션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인지장애가 있는 자, 심한 분노를 표출하는 자, 자기애성 특성을 가진 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성향을 보인 자들은 그룹 내부의 조화에 방해가 되고 결국 전체 치료효과를 저하시킬 것이다(MacKenzie & James, 2011). 또한 변화에 대한 동기(motivation to change), 인지 능력, 정신질환, 부족한 언어 능력 등(MacKenzie & James, 2011; MacKenzie et al., 2010)은 치료의 효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치료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일 것이다. 따라서 치료 이전에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이며 치료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동기강화 인터뷰(motivational interview)와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스토킹 범죄자 특성 조사

윤정숙 · 김지연

제2장

스토킹 범죄자 특성 조사

제1절 |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 기록 조사 및 위험성 평가

1. 조사 개요

가. 수사재판기록 대상자 선정

1) 수용 기록 추출

본 연구에서는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먼저, 스토킹 사건과 관련한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과 범죄자의 특성, 피해자의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사재판기록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사재판기록 대상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확정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용 중인 스토킹 사범들이다[6]. 법무부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및 정보통계단의 협조를 얻어, 2023년 4월 1일자, 6월 1일자 두 차례를 거쳐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처분을 받은 수감자들의 수용 기록을 추출하였다. 조회 일자 기준으로 138명의 수용자가 기록 조사의 대상자로 추출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기본정보(사건개요, 범죄경력, 선고형량 등)가 제공되었다.

2) 기록소재지 확인

교도소 수용기록이 추출된 138명의 대상자에 대해 법무부 심리치료과(사건 번호

6) 수사재판기록조사는 연구예산과 인력 등을 고려하여 2년에 걸쳐 수행될 예정으로, 금년도는 교정시설내 스토킹 사범을 대상으로 하며, 차년도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조사할 예정이다.

확인) 및 대검찰청(기록 소재지 확인)의 협조를 받아 수사재판기록의 소재지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각 대상자의 기록이 소재하는 지방 검찰청에 기록의 열람을 신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35개의 검찰청에서 기록 열람을 승인하는 답신을 주었다. 일부 기록의 경우에는 소재지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피해자 정보 공개 우려 등을 이유로 열람 불승인의 회신을 받았다. 열람이 승인된 기록소재지를 대상으로 출장기간, 인력, 예산 등을 고려하여 출장지를 압축하였다. 이에 따라 21개의 기록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총 112명의 대상자에 대한 수사재판기록 조사가 실시되었다. 분석된 수사재판기록의 소재지별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2-1-1] 수사재판기록 소재지 정보

순번	구분	기록수	비율
1	고양지청	2	1.8
2	광주지검	3	2.7
3	군산지청	2	1.8
4	남원지청	1	0.9
5	논산지청	1	0.9
6	대구서부지청	4	3.6
7	대구지검	8	7.1
8	대전지검	4	3.6
9	마산지청	2	1.8
10	목포지청	2	1.8
11	부산동부지청	4	3.6
12	부산서부지청	5	4.5
13	부산지검	4	3.6
14	부천지청	9	8.0
15	서울남부지검	4	3.6
16	서울동부지검	2	1.8
17	서울북부지검	6	5.4
18	서울중앙지검	4	3.6
19	성남지청	3	2.7
20	수원지검	9	8.0
21	순천지청	3	2.7
22	안산지청	2	1.8
23	안양지청	2	1.8

순번	구분	기록수	비율
24	영덕지청	1	0.9
25	울산지검	2	1.8
26	원주지청	2	1.8
27	의정부지검	1	0.9
28	인천지검	7	6.3
29	전주지검	3	2.7
30	제주지검	1	0.9
31	진주지청	1	0.9
32	청주지검	2	1.8
33	춘천지검	2	1.8
34	통영지청	2	1.8
35	포항지청	2	1.8
전체		112	100

나. 기록조사지 구성

수사재판기록 조사지는 선행연구 검토와 수차례의 자문회의, 연구진 회의 등을 걸쳐 구성되었다. 수사재판기록 조사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수사 및 재판기록상에 나타난 가·피해자의 정보나 사건정보를 탐색하여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분석하는 한편, 기록에서 서술된 풍부한 사건정보와 가·피해자 정보를 활용하여 스토킹 행위자의 위험성을 전문가 판단방식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수사재판기록 조사지는 크게 가해자 정보와 범죄개요, 피해자 정보, 위험성 평가로 구성되었다. 먼저, 가해자 정보에는 연령, 직업, 월수입, 혼인상태, 동거상태 등 사회인구학적 정보와 약물남용여부, 정신과적 경력, 전과 경력 등이 포함되었다. 일부 항목은 교도소 수용기록에도 값이 있었으나, 수사재판기록 상의 내용은 여러 차례의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이들 정보에 대한 탐색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추가로 조사되었다. 둘째로 범죄 개요 분류에는 스토킹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포함되었다. 본 사건에 나타난 죄명, 스토킹 유형, 스토킹 처벌법 상의 유형, 스토킹 시 (성)폭력범죄 동반 여부, 스토킹 지속기간,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조치 부과,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여부, 판결과정 및 형량, 추가처분 부과 항목이 포함되었다. 특히, 스토킹 유형은 앞서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Mullen의 스토킹

세부유형(거절형, 친밀감 추구형, 무능한 구애형, 분개형, 성적 약탈형)이 스토킹의 구체적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유형 분류라고 판단되어 이후 모든 분석에서 활용되었고 이에 따라 5개의 세부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셋째로, 피해자 정보에는 피해자 성별,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수가 기재되었다.

한편, 수사재판기록상에 나타난 정보를 근거로 각 사건의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위험성 평가 도구로는 SAM(Stalking Assessment and Management)을 사용하였다. 연구진은 SAM의 사용을 위해 개발자인 P. Randall Kropp 교수가 실시하는 온라인 화상교육을 수강하였다. 온라인 화상교육은 SAM의 전문가판단 접근방식 설명, 세부 문항에 대한 설명 및 직접적인 사례에의 적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상교육에서는 교육자료 및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는 퀴즈가 포함되어 있으며, 몇 차례의 평가과정을 통과하면 수강증이 수여된다.

연구진은 관련 교육 이수 후, SAM의 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문항 번역은 해당 교육을 이수한 박사급 연구진들이 주도하여 번역된 용어를 상호 교차 확인하였다. 또한 SAM의 사용 매뉴얼을 활용, 조사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들에게 사용법을 훈련시켰다. SAM의 30개 문항(사건 영역 10문항, 가해자 영역 10문항, 피해자 영역 10문항, 표 2-1-2 참조)들은 수사재판기록조사 시 관련 정보를 숙독하여 평가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위험요인이 있음, 없음, 가능성(부분 존재) 3개의 선택지로 평가되었다. 실제 SAM이 실무에서 사용되는 경우 각 문항을 코딩할 때 과거(past)와 현재(present)의 시점과 관련성을 평가하게 하고 이후 4~6개월마다의 정기적 평가를 통해 위험관리 계획을 도출하고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제 대상자와의 면담이나 조사과정이 없이 수사재판기록을 통해 스토킹 행위를 분석하는 만큼 가장 최근의 스토킹 사건(본 건)에 대해서만 체크하였다. SAM의 모든 항목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786의 알파값이었다. SAM 매뉴얼에서는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지만 통계 분석의 목적을 위해 각 사례의 모든 문항에 대해 위험요인의 존부에 대한 평가를 마친 후 본 사건의 전반적 위험성을 고, 중, 저(등급)로 평가하도록 하였다.[7)]

앞서 선행연구 검토에서 선술하였듯이 SAM은 보험계리적 도구가 아니므로 위험성

7) 연구 대상자가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들인 만큼, 위험성 등급이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차년도 보호관찰대상자의 기록과 합하여 해석하는 것이 전체 스토킹 범죄자의 위험성에 대한 타당한 해석임을 미리 밝혀둔다.

등급이 향후 폭력에 대한 재범위험을 예측하기보다 스토킹 사건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경중의 의미, 즉 사건이 재발할 임박성이나, 심각성의 정도 혹은 스토킹 범죄자를 치료하기 위한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경중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실제 SAM의 항목들은 정적 위험요인(변화하지 않는 요인)으로 구성된 보험계리적 도구와 달리 스토킹 사건과 행위자, 피해자의 동적(dynamic) 특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리적 도구의 방식대로 재범의 위험성을 판별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SAM 평가 시 수사재판기록 상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은 기록지에 별도로 메모하여, 심층면담이나 심리검사(PAI)의 결과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였다.

한편, SAM은 전문가판단도구이기 때문에 각 위험요인의 평가나 전체 위험성 평가에서 평정자별로 상이한 판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평정자 간 판단일치(interrater reliability)를 확인하기 위해 총 112개의 사례 중, 20개의 사례에 대해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를 사용하여 교차점검을 실시하였다. 스토킹의 특성(N) 요인 각 문항의 평가자 간 신뢰도는 중증도 신뢰에서 높은 신뢰를 나타냈고(ICC = .636 – 1.000, 평균 ICC = .904), 가해자 위험(P) 요인의 각 문항은 중간에서 높은 신뢰도를(ICC = .762 – 1.000, 평균 ICC = .942), 피해자 취약(V) 요인의 각 문항은 비교적 낮은 신뢰도에서 높은 신뢰도 범위(ICC = .562 – 1.000)를 보였지만, 평균 신뢰도는 매우 높았다(ICC = .912). SAM 전체(즉, 문항 전체와 위험성 등급)에 대한 평가자 간 신뢰도는 매우 높은 범위(ICC = .807 – 1.000)와 평균(ICC = .927)을 보였다. 이는 SAM 전체에 대해 연구자 간에 평가한 측정이 평균 92.7% 일치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실시된 사례 대부분, 위험요인이나 전체 위험성 평가에서 판단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평정자 간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각 위험요인을 '있음'으로 할 것인지 혹은 '부분존재/가능성'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평정자 간 불일치가 발생한 항목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의 주도하에 연구진과의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최종판단을 확정지었다. SAM 평가항목을 포함한 수사재판 기록 조사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2-1-2] 수사재판기록조사 항목

구분	영역		세부조사항목
Part1	가해자 정보		성별
			나이
			직업
			월수입
			혼인상태
			동거인 유형
			만성적인 약물 혹은 음주 남용 여부
			과거 정신질환 이력
			전과 이력
Part2	범죄 개요		판결문 사건번호
			죄명
			스토킹 유형(Mullen 등)
			스토킹처벌법 상의 행위 유형
			스토킹 시 (성)폭력범죄 동반여부
			스토킹 지속기간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조치 부과 여부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여부
			판결(선고)과정 및 형량
			추가 처분 부과
Part3	피해자 정보		피해자 성별
			피해자 나이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피해자 수
Part4	SAM 위험 요인 존재 평가	스토킹의 특성 요인	N1. 피해자에 대해 의사소통
			N2. 피해자와 의사소통
			N3. 피해자에게 접근
			N4.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
			N5. 피해자를 겁줌/위협
			N6. 피해자를 협박
			N7.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함
			N8. 스토킹이 지속됨
			N9. 스토킹이 고조됨
			N10. 감시 위반을 수반한 스토킹
		가해자 위험요인	P1. 분노
			P2. 집착하는
			P3. 비합리적인

구분	영역		세부조사항목
			P4. 뉘우치지 않는
			P5. 반사회적 생활방식
			P6. 연인 관계 문제
			P7. 비연인 관계 문제
			P8. 불안정한 정서
			P9. 약물 사용 문제
			P10. 고용 및 경제 문제
		피해자 취약성 요인	V1. 가해자에 대한 일관성 없는 행동
			V2. 가해자에 대한 일관성 없는 태도
			V3. 충분한 자원 접근 가능성
			V4. 안전하지 않은 생활 환경
			V5. 피보호자를 돌보는 문제
			V6. 연인 관계 문제
			V7. 비연인 관계 문제
			V8. 불안정한 정서
			V9. 약물 사용 문제
			V10. 고용 및 경제 문제
		스토킹 재범 위험성 평가(저, 중, 고)	

2. 스토킹 범죄와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

가. 스토킹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스토킹 가해자의 성별을 보면 전체 112명 중 97.3%(n = 109)가 남자, 2.7%(n = 3)가 여자였다. 가해자 연령은 18세부터 68세까지 분포하였으며,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연령대는 50대로 전체표본 중 30.6%(n = 3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40대 23.4%(n = 26), 30대 16.2%(n = 18), 60대 15.3%(n = 17) 순으로 나타났다. 과반수가 중·장년층이었으며, 전체표본의 평균 연령은 45.63세(SD = 13.22)였다.

[표 2-1-3] 스토킹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N* = 112)

특성	세부 카테고리	빈도(%)	M(SD)
성별	남	109(97.3)	-
	여	3(2.7)	
연령	10대	4(3.6)	45.63(13.22)
	20대	13(11.7)	
	30대	18(16.2)	
	40대	26(23.4)	
	50대	34(30.6)	
	60대	17(15.3)	
결혼여부	미혼	54(48.2)	-
	기혼, 동거	7(6.3)	
	별거. 이혼. 사별	47(42.0)	
	알 수 없음	4(3.6)	
학력	무학	2(1.8)	-
	초졸	10(8.9)	
	중졸	23(20.5)	
	고졸	59(52.7)	
	대졸	15(13.4)	
	미상	3(2.7)	
직업	무직	43(38.4)	-
	일용직	43(38.4)	
	자영업, 회사원, 기술직, 서비스 등	24(21.6)	
	기타 (학생, 프리랜서 포함)	2(1.8)	
동거여부	가족 혹은 지인과 거주	36(32.1)	-
	혼자 거주	73(65.1)	
	알 수 없음	3(2.7)	

가해자 중 미혼이 48.2%(*n* = 54)였고, 기혼 혹은 동거 중인 가해자는 6.3%(*n* = 7)에 지나지 않았다. 별거, 이혼 혹은 사별로 현재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가해자는 총 42.0%(*n* = 47)로 미혼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가해자의 대부분이 현재 배우자가 없음을 나타냈다.

가해자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과반수인 52.7%(*n* = 59)이었고, 중학교 졸업자가 20.5%(*n* = 23), 대학교 졸업자가 13.4%(*n* = 15)였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는 10.7%(*n* = 12)였다.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과 일용직이 각각 38.4%(*n* = 43)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직업을 가진 가해자는 자영업, 회사원, 기술직, 서비스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군에서 나타났다. 동거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혼자서 거주하는 가해자들이 65.1%(*n* = 7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배우자, 부모(조부모 포함), 형제, 자녀 등 가족이나 친구, 여자친구 등 지인과 거주하는 이들은 32.1%(*n* = 36)로 나타났다.

나. 스토킹 가해자의 전과, 약물남용, 정신질환 이력

전체표본에서 전과가 있는 가해자가 93.8%(*n* = 10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과 횟수는 1회부터 54회까지 다양했으나 전체 가해자 중 절반 이상(59.8%, *n* = 67)이 10회 미만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횟수가 확인 불가한 수용자를 제외한 평균 전과 횟수는 11.28회(*SD* = 11.7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2-1-4] 스토킹 가해자의 전과이력 및 정신병리적 이력*(N* = 112)

이력	세부사항	빈도(%)	M(SD)
전과	있음	105(93.8)	-
	없음	5(4.5)	
	확인불가	2(1.8)	
전과 수[1]	1 - 10	67(59.8)	11.28(11.70)
	11 - 20	20(17.9)	
	21 - 30	11(9.8)	
	31 - 40	2(1.8)	
	41회 이상	5(4.5)	
만성적인 약물남용	음주	59(52.7)	-
	음주 & 약물	3(2.7)	
	마약	2(1.8)	
	기타약물	3(2.7)	
	없음	23(20.5)	
	확인불가	22(19.6)	
정신질환	있음	46(41.1)	-
	없음	29(25.9)	
	확인불가	37(33.0)	

Note.
[1] *n* = 110

스토킹 가해자 중, 만성적 음주 남용을 경험한 자가 52.7%(n = 59), 음주 남용과 약물남용을 모두 한 자는 2.7%(n = 3), 마약 남용자는 1.8%(n = 2)로 나타났다. 마약의 종류는 메스암페타민과 코카인이었다. 음주와 약물을 모두 한 3명(2.7%)의 가해자는 불명의 약물이나 다수의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정신질환 이력이 있었던 가해자는 41.1%(n = 46)였다. 정신질환 이력은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수준부터 약물치료, 통원치료, 입원치료를 받은 중증 정신질환까지 다양한 병적 수준을 포함하였다. 정신질환 이력이 있었던 가해자들은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을 동시에 앓는 동반질환(comorbidity)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신질환 종류로는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를 포함한 기분장애와 불안장애, 망상장애, (편집성) 조현병, 지속성 망상장애 등의 정신증 관련 장애였다. 또한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분열형 인격장애 등 인격(성격)장애와 알코올, 도박의 중독 및 의존, 분노조절장애, 충동조절장애, 간헐적 폭발성 장애, 수면장애, 자해, 자살시도 등 다양하게 발견되었다. 과거 정신질환 이력이 없는 가해자는 25.9%(n = 29)였으며, 33.0%(n = 37)은 수사 재판 기록상으로는 확인이 불가했다.

다. 스토킹 범죄 사건 특성

스토킹 범죄 사건의 특성 중 스토킹 행위유형, 지속기간, (성)폭력여부, 피해자 보호조치 부과와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우선, 스토킹 행위유형은 스토킹처벌법 제1장제2조(정의)에 기술되어 있는 '가'에서 '마'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포함한다. 각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는 한 가지 이상의 스토킹 행위유형을 보였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 사건의 행위유형은 다중응답분석(multiple response analysis)을 이용해 빈도(퍼센트)와 케이스 중 퍼센트를 계산하였다. 퍼센트는 응답의 총합인 100%를 기준으로 상대적 비율을 나타내고, 케이스 중 퍼센트는 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 얼마나 응답을 했는지를 나타낸다.

법률상에 나타난 다섯 가지 행위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유형은 '지켜봄' 행위[8]와 '메세지 도달' 행위[9]로 각각 27.4%(n = 96; 케이스 중 85.7%)를 차지했다. 그다음으

8)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로 높은 빈도를 보여준 행위는 '접근' 행위[10]로 24.3%(*n* = 85; 케이스 중 75.9%)였고, '물건 등 훼손' 행위[11]는 7.1%(*n* = 25; 케이스 중 22.3%), '물건 도달' 행위[12]는 4.3%(*n* = 15; 케이스 중 13.4%)를 차지했다.

'기타' 행위유형은 스토킹 가해자가 위의 유형 외에 추가적으로 저지른 행위유형으로 법률상 정의에 나열되어 있지 않았지만, 스토킹 행위유형에 포함되는 유형을 말한다. 기타 행위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유형으로는 '주거침입'이었고, 그 외에 '출입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 '위치 추적기를 차량에 부착'하거나 '위치 추적을 설치한 휴대폰을 차량에 넣어두는' 행위, '1일 가구 주거정보 찾는 앱을 설치'하는 행위, '주거지를 낙서'하는 행위, '미행하며 카메라 촬영'을 하는 행위, '멀리서 망원경으로 지켜보는' 행위,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악의적 거짓말을 퍼뜨리는' 행위, '피해자가 키우는 반려동물 납골당에 찾아가 이를 훼손한' 행위, '피해자 거주지나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물건을 절취하는' 행위 등으로 다양했다.

[표 2-1-5] 스토킹 범죄 사건 특성 기술통계(*N* = 112)

사건 특성	세부사항	빈도(%)	케이스 중 %
행위 유형	1. 접근	85(24.3)	75.9
	2. 지켜봄	96(27.4)	85.7
	3. 메시지 도달	96(27.4)	85.7
	4. 물건 도달	15(4.3)	13.4
	5. 물건 등 훼손	25(7.1)	22.3
	6. 기타	33(9.4)	29.5
스토킹 지속기간	1개월 이내	41(36.6)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26(23.2)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17(15.2)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11(9.8)	-
	1년 초과	17(15.2)	-

9)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10)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11)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12)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사건 특성	세부사항	빈도(%)	케이스 중 %
(성)폭력 여부	있음	75(67.0)	-
	없음	37(33.0)	-
보호조치	긴급응급조치	41(31.5)	50.0
	응급조치	28(21.5)	34.1
	잠정조치	61(46.9)	74.4
보호조치 위반 여부[1]	위반하지 않음	25(22.3)	-
	위반함	54(48.2)	-
	알 수 없음	3(2.7)	-
보호조치 위반	긴급응급조치위반	22(33.8)	40.7
	응급조치위반	8(12.3)	14.8
	잠정조치위반	35(53.8)	64.8

Note.
[1] n = 82

스토킹 지속기간은 평균 8.63개월(SD = 20.28)이었고, 최소 1일부터 최대 약 14년(175개월)까지 그 범위가 다양했다. 1개월 이내의 스토킹 기간은 41건(36.6%)이었으며, 1개월 초과부터 1년 이내까지의 지속기간은 54건(48.2%), 1년을 넘게 지속한 스토킹은 17건(15.2%)이었다.

스토킹 사건 중 (성)폭력범죄[13] 동반여부를 살펴보았다. 빈도 분석 결과, 스토킹 사건 중 67.0%(n = 75)의 사건에서 폭력범죄가 동반되었다. 가장 높은 빈도의 폭력행위는 신체적 폭행이었다. 그 외에 (특수)상해, (특수)주거/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직장이나 영업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행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강간 등에 해당하는 성폭행, 피해자 옆구리에 칼을 들이미는 등의 특수협박, 감금 등 다양한 형태의 폭행 범죄가 스토킹 사건에 동반되었다.

스토킹 사건 중 피해자 보호조치를 부과받은 사건을 살펴보았다. 전체 112건의 사건 중 어떠한 보호조치도 받지 않은 사건은 30건(26.8%)이었다. 한 가지(혹은 한번)라도 보호조치를 받은 사건(73.2%, n = 82) 중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사건은 31.5%(n

13) 본 연구에서 폭력범죄는 스토킹 사건 기간 중 가해자가 주피해자에게 저지른 (성)폭력 행위로, 스토킹 처벌법 외의 죄명으로 기소된 사건과 더불어 처벌되지 않은 행위 역시 수사재판 기록에 진술되어 있으면 포함시켰다. 단, 스토킹 처벌법과 경합된 스토킹 이외의 사건은 제외하였다. 성폭력 범죄는 신체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도 포함하였다.

= 41), 응급조치를 받은 사건은 21.5%(*n* = 28)이었고, 잠정조치를 받은 건은 46.9%(*n* = 61)로 가장 많았다. 보호조치를 부과받은 이들 중 이를 위반하지 않은 이들은 22.3%(*n* = 25)에 불과했고, 잠정조치 위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 = 35, 53.8%, 케이스 중 64.8%).

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량 및 추가 처분 판결 결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혹은 그와 경합된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가 부여받은 최종 형량은 적게는 4개월에서 최대 무기징역[14]으로 다양한 형량을 받았다. 이 중 1심에 대해 항소한 건은 총 81건(44.6%)이었으며, 이 중 항소에 대한 기각은 31건이었다. 2심에 대한 상고는 총 12건(10.7%)으로 그중 10건은 기각되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최종 형량을 보면, 1년 미만의 형량을 선고받은 이는 17명(15.2%)이었으며,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의 형량을 선고받은 이는 76명(67.9%),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은 15명(13.4%)이었다.

[표 2-1-6]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판결 결과

판결 및 선고		빈도	비율(%)
최종 형량	1년 미만	17	15.2
	1년 이상 – 3년 미만	76	67.9
	3년 이상 – 5년 미만	15	13.4
	5년 이상	2	1.8
	10년 이상	1	0.9
	무기징역	1	0.9

징역형과 더불어 추가처분을 받은 판결 결과를 보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40시간 부과받은 이들이 87.5%(*n* = 98)로 가장 많았으며, 80시간을 부과받은 이들이 10.7%(*n* = 12)였다. 전체 수용자 중 1.8%(*n* = 2)는 스토킹 관련 이수명령을 받지 않았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40시간을 받은 이는 17.9%(*n* = 20)이었으며, 80시간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이는 단 한 명(0.9%)뿐이었다. 수강명

14) 스토킹 사건과는 별도의 살인사건과 경합하여 무기징역 선고받음

령을 받은 이 또한 한 명(0.9%)이었다.

가해자 중 27명(24.1%)은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3년, 5년, 10년), 기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예: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압수된 증거 (예: 칼, 손도끼, 전기충격기, 위치추적기, 휴대폰 등) 몰수 등의 추가 처분 또한 판결받았다.

[표 2-1-7]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추가처분 판결 결과

추가처분	세부사항	빈도	비율(%)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98	87.5
	80시간	12	10.7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20	17.9
	80시간	1	0.9
수강명령	40시간	1	0.9
기타[1]	보호관찰	2	1.8
	신상 공개 및 고지	3	-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 제한 명령	10	-
	(스토킹, 성폭력 외)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	-
	압수된 증거 몰수	18	-
	편취금 지급 명령	1	-
	벌금	2	-
기타 합계		27	24.1

Note.
[1] 복수 응답

마. 스토킹 피해자 특성

본 연구에서 스토킹 피해자는 판결문에 언급된 스토킹 범죄 사건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이를 뜻한다. 대다수 사건에서 피해자가 1명인 것에 반해 8건(7.2%)의 사건에서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5)]

15) 피해자가 2명 이상인 사건은 통계분석의 편이를 위해 주피해자 한 명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대다수가 여성(95.5%, n = 107)이었다. 15세부터 83세의 나이 분포에서 40대 25.0%(n = 28), 50대 25.9%(n = 29)로 40-50대 중장년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43.33세(SD = 14.43 Mdn = 44.50)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는 '과거 부부 또는 연인' 관계가 61.6%(n = 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잘 아는 사이'가 17.0%(n = 19), '일면식 있는 사람'이 11.6%(n = 13)였다. '잘 아는 사이'는 친구, 직장 내 지인 등을 포함하며 어느 정도의 친밀관계가 형성된 주인과 손님(예: 가게/노래방/포차/호프집/식당 등의 운영자와 손님, 임대인과 임차인 등) 관계가 주를 이루었다. '일면식 있는 사이' 역시 영업장의 주인과 손님 관계가 많았으나 '잘 아는 사이'보다는 친밀관계가 약한 관계(예: 마트 운영자와 손님, 네일샵 운영자와 손님, 이웃 관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현재 부부 혹은 연인관계'와 '모르는 사람/불특정인' 관계가 각각 3.6%(n = 4)를 차지했다. '모르는 사람/불특정인'은 피해자가 특정 가게의 운영자나 아르바이트생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명인(예: 정치인, 연예인 등)이 2.7%(n = 3)을 차지하였다.

[표 2-1-8] 스토킹 범죄 피해자 특성 기술통계

피해자 관련		빈도(%)	M(SD)
피해자 수	1명	104(92.9)	-
	2명	6(5.4)	
	3명	2(1.8)	
성별	여성	107(95.5)	-
	남성	5(4.5)	
나이	10세 - 19세	4(3.6)	43.33(14.43)
	20세 - 29세	22(19.6)	
	30세 - 39세	14(12.5)	
	40세 - 49세	28(25.0)	
	50세 - 59세	29(25.9)	
	60세 이상	15(13.4)	
피해자-가해자 관계	과거 부부, 연인	69 (61.6)	-
	잘 아는 사람 (친구, 직장 내 지인 등)	19 (17.0)	
	일면식 있는 사람	13 (11.6)	
	모르는 사람/불특정	4 (3.6)	
	현재 부부, 연인	4 (3.6)	
	유명인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인 등)	3 (2.7)	

3. 스토킹 범죄자의 유형별 분석

가. 세부유형별 가해자 특성

1) 가해자 유형별 연령

본 연구는 Mullen 등(1999; 2000; 2006)의 스토커 유형을 참고하여 범죄 동기와 가해자-피해자 관계를 바탕으로 스토킹 가해자의 세부 유형을 분석하였다. 전체표본 중 67.9%(n = 76)가 '거절당한 자(rejected)'에 해당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무능한 구애자(incompetent suitor)'가 17.0% (n = 19), '친밀관계 추구자(intimacy seeker)'가 8.0%(n = 9)이었으며, '분개한 자(resentful)' 유형이 7.1%(n = 8)로 나타났다. Mullen의 스토커 유형 중 '성적 약탈자(sexual predator)'는 본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16]

[표 2-1-9] 스토킹 가해자 유형별 빈도와 평균나이

스토커 유형	N(%)	나이		
		M(SD)	Mdn	범위
1. 거절당한 자	76(67.9)	43.18(13.23)	45.00	18 – 68
2. 친밀관계 추구자	9(8.0)	49.44(14.00)	53.00	26 – 68
3. 무능한 구애자	19(17.0)	51.68(11.43)	53.00	33 – 67
4. 분개한 자	8(7.1)	50.13(11.51)	54.50	30 – 61
5. 성적 약탈자	0(0.0)	–	–	–
합계	112(100)	45.63(13.22)	48.50	18 – 68
t검정[1]	$t(110) = -2.93$, $p = .004$, $d = 0.57$			

Note.
[1] 거절형(n = 76) v. 비거절형(친밀관계 추구자 + 무능한 구애자 + 분개한 자) (n = 36)

스토킹 가해자 유형별 평균 나이는 '거절당한 자' 유형이 가장 낮은 평균 연령(M = 43.18, SD = 13.23)을 보였고, '무능한 구애자' 유형이 가장 높은 평균 연령(M = 51.68, SD = 11.43)을 보였다. 가해자 유형을 '거절당한 자' 유형(혹은 '거절형' 유형)과 '비(非)거절형' 유형(즉, '친밀관계 추구자,' '무능한 구애자,' '분개한 자' 유형의 합)으로 나누

16) 성폭행을 목적으로 스토킹하는 '성적 약탈자' 유형의 경우,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죄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혹은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등으로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연구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어 평균나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유형 간에는 7.60의 평균 차이가 있었으며 그 차이는 $t(110) = -2.93$, $p = .004$로 유의미하였다. 효과 크기는 중간(Cohen's $d = 0.57$)으로 나타났다.

2) 가해자 유형별 전과이력

스토킹 가해자 유형에 따른 전과 이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모든 유형에서 대다수의 가해자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횟수를 스토킹 가해자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거절당한 자' 유형은 평균 11.73번의 전과기록이 있었고 '친밀관계 추구자'는 16.09번($SD = 11.98$)으로 가장 높은 평균 횟수를, '무능한 구애자' 유형은 7.79번($M = 7.79$, $SD = 4.22$, 범위 = 0 - 14)으로 가장 낮은 평균 횟수의 전과가 있었다.

[표 2-1-10] 스토킹 가해자 유형에 따른 전과 이력 및 교제시 폭력여부

스토킹 가해자 유형	전과 여부				전과 횟수	교제시 폭력여부
	없음	있음	확인 불가	합계	평균 (표준편차)	
거절당한 자	4(5.3)	70(92.1)	2(2.6)	76(100.0)	11.73 (11.98)	있음 ($n = 55$, 72.4%)
						없음 ($n = 13$, 17.1%)
						확인불가 ($n = 8$, 10.5%)
친밀관계 추구자	0(0.0)	9(100.0)	0(0.0)	9(100.0)	16.09 (11.98)	-
무능한 구애자	1(5.3)	18(94.7)	0(0.0)	19(100.0)	7.79 (4.22)	
분개한 자	0(0.0)	8(100.0)	0(0.0)	8(100.0)	9.75 (14.87)	
합계	5(4.5)	105(93.8)	2(1.8)	112(100.0)	-	

추가적으로 '거절당한 자' 유형은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가 교제할 당시 데이트 폭력(혹은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전체 76명의 거절당한 자 중에 72.4%($n = 55$)가 데이트/가정폭력이 있었음을 발견했다. 나머지 17.1%($n = 13$)는 교제시 폭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10.5%($n = 8$)는 수사재판기록 상으로는 확인이 불가했다.

3) 가해자 유형별 약물남용 이력

스토킹 가해자 유형에 따른 약물남용(즉, 음주 마약 모두 포함) 이력을 살펴본 결과, '거절당한 자,' '친밀관계 추구자,' '분개한 자' 유형에서는 60%가 넘는 비율이 약물남용 이력이 있는 반면, '무능한 구애자'는 47.4%(n = 9), 만이 약물남용 이력이 있었다. 유형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스토킹 유형('거절형' v. '비거절형')과 약물남용 이력 간에는 유의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 = [2, N = 112] = 1.01, p = .60).

[표 2-1-11] 스토킹 가해자 유형에 따른 약물남용 이력

스토킹 가해자 유형	약물남용 이력			
	없음	있음	확인불가	합계
거절당한 자	13(17.1)	48(63.2)	15(19.7)	76(100.0)
친밀관계 추구자	2(22.2)	6(66.7)	1(11.1)	9(100.0)
무능한 구애자	6(31.6)	9(47.4)	4(21.1)	19(100.0)
분개한 자	1(12,5)	5(62.5)	2(25.0)	8(100.0)
합계	22(19.6)	68(60.7)	22(19.6)	112(100.0)
x^2 검정[1]	x^2(2, N = 112) = 1.01, p = .60 (거절형 v. 비거절형)			

Note.
[1] 거절형(n = 76) v. 비거절형(친밀관계 추구자 + 무능한 구애자 + 분개한 자) (n = 36)

4) 가해자 유형별 정신병력 이력

스토킹 가해자 유형에 따른 정신병력 이력을 살펴본 결과, '무능한 구애자'와 '분개한 자' 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로(각각 68.4%, 62.5%)로 정신병력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거절당한 자'와 '친밀관계 추구자' 유형에서는 약 1/3에 해당하는 가해자가 과거 정신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로 '거절형'과 '비거절형' 간의 정신병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거절형'과 '비거절형'의 정신병력 이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χ^2 = [2, N = 112] = 10.17, p = .006) 효과 크기는 중간(Cramer's V = 0.30)이었다. 다만 수사재판기록상으로는 정신병력 이력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가해자가 많았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2-1-12] 스토킹 가해자 유형에 따른 정신병력 이력

스토킹 가해자 유형	정신병력 이력			
	없음	있음	확인불가	합계
거절당한 자	26(34.2)	25(32.9)	25(32.9)	76(100.0)
친밀관계 추구자	1(11.1)	3(33.3)	5(55.6)	9(100.0)
무능한 구애자	1(5.3)	13(68.4)	5(26.3)	19(100.0)
분개한 자	1(12.5)	5(62.5)	2(25.0)	8(100.0)
합계	29(25.9)	46(41.1)	37(33.0)	112 (100.0)
x^2 검정[1]	x^2 (2, N = 112) = 10.17, p = .006, V = 0.30 (거절형 v. 비거절형)			

Note.
[1] 거절형(n = 76) v. 비거절형(친밀관계 추구자 + 무능한 구애자 + 분개한 자) (n = 36)

나. 세부 유형별 사건 특성

1) 가·피해자 관계

스토킹 가해자 유형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거절당한 자' 유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는 '과거 부부/연인'이 89.5%(n = 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잘 아는 사이'와 '현재 부부/연인' 관계가 각각 5.3%(n = 4)로 나타났다. '친밀관계 추구자' 유형에서는 '잘 아는 사이'가 66.7%(n = 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모르는 사이,' '일면식 있는 사이.' '유명인'이 각각 한 명씩(11.1%) 포함되어 있었다. '무능한 구애자' 유형에서는 '일면식 있는 사이'가 52.6%(n = 10)로 가장 높았으며, '잘 아는 사이'가 26.3%(n = 5), 마지막으로 '모르는 사이'와 '유명인'이 각각 10.5%(n = 2)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개한 자' 유형에서는 '잘 아는 사이'가 50.0%(n = 4)로 가장 높았다.

[표 2-1-13] 스토킹 가해자 유형별 가해자-피해자 관계

단위: 빈도(%)

스토킹 가해자 유형	가해자-피해자 관계						합계'
	모르는 사람	일면식 있음	잘 아는 사람	현재 부부/연인	과거 부부/연인	유명인	
거절당한 자	-	-	4 (5.3)	4 (5.3)	68 (89.5)	-	76 (100.0)
친밀관계 추구자	1 (11.1)	1 (11.1)	6 (66.7)	-	-	1 (11.1)	9 (100.0)

스토킹 가해자 유형	가해자-피해자 관계						합계'
	모르는 사람	일면식 있음	잘 아는 사람	현재 부부/연인	과거 부부/연인	유명인	
무능한 구애자	2 (10.5)	10 (52.6)	5 (26.3)	-	-	2 (10.5)	19 (100.0)
분개한 자	1 (12.5)	2 (25.0)	4 (50.0)	-	1 (12.5)	-	8 (100.0)
합계	-	-	-	-	-	-	112 (100.0)

Note.
' % 스토킹 유형 내 합

2) 지속기간

스토킹의 지속기간은 적게는 하루, 길게는 14년가량으로 분포가 매우 넓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절당한 자' 유형은 가장 짧은 평균 지속기간(M = 7.13개월, SD = 22.06)을 보인 반면, '친밀관계 추구자'는 가장 긴 평균 지속기간(M = 19.23개월, SD = 21.64)을 보였다.

[표 2-1-14] 스토킹 가해자 유형별 스토킹 지속기간

스토킹 가해자 유형	지속기간 (개월)	
	범위	M(SD)
거절당한 자	0.70 - 181.97	7.13 (22.06)
친밀관계 추구자	0.59 - 60.00	19.23 (21.64)
무능한 구애자	0.03 - 60.00	9.20 (14.13)
분개한 자	0.66 - 60.00	10.48 (20.28)

3) 폭력의 동반 정도

[표 2-2-15]에는 스토킹 사건 당시 (성)폭력 동반 여부의 빈도를 제시한다. '거절당한 자' 유형에 해당하는 80.3%(n = 61)의 가해자가 스토킹 범행 시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여부의 빈도가 높은 만큼 이 유형에 해당하는 폭력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다양한 신체폭력(예: 상해, 폭행, 감금, 특수협박 등), 성폭력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폭력이 포함되었다.

'친밀관계 추구자' 유형에서는 성폭행, 재물손괴, 폭행, 상해 등의 폭력범죄가 동반되었고, '무능한 구애자' 유형에서는 주거침입, 폭행, 행패/업무방해 등의 범죄가 동반되었다. '분개한 자' 유형에서는 상해와 성폭행(통신매체이용음란)이 동반되었다.

'거절당한 자' 유형에서 스토킹 사건 중 유난히 폭력범죄의 동반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유형별 가해자-피해자 관계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절당한 자' 유형에서는 이미 친밀한 관계로 알고 지낸 사이가 대다수였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관계이며 신체적으로 가까이 대면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관계이다. '무능한 구애자'는 반 이상이 일면식 있는 관계로 피해자에게 근접할 기회가 다소 부족한 반면, '친밀관계 추구자'는 과반수가 잘 아는 관계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기회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표 2-1-15] 스토킹 가해자 유형별 스토킹 사건 중 (성)폭력범죄 여부

스토킹 가해자 유형	(성)폭력 여부 빈도(%)		합계[1]
	없음	있음	
거절당한 자	15(19.7)	61(80.3)	76(100.0)
친밀관계 추구자	4(44.4)	5(55.6)	9(100.0)
무능한 구애자	12(63.2)	7(36.8)	19(100.0)
분개한 자	6(75.0)	2(25.0)	8(100.0)
합계	37(33.0)	75(67.0)	
x^2 검정[2]	x^2 (1, N = 112) = 18.90, p 〈 .001 phi = .41		

Note.
[1] % 스토커 유형내
[2] 거절형 v. 비거절형(친밀관계 추구자 + 무능한 구애자 + 분개한 자)

(성)폭력범죄 여부의 유형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거절형'과 '비거절형'과 (성)폭력범죄 여부 간에는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 [1, N = 112] = 18.90, p = 〈 .001). 효과크기는 중간 이상이었다(phi = .41).

4) 스토킹 행위 유형

[표 2-2-16]은 스토킹 가해자 유형에 따른 스토킹처벌법 상의 행위 빈도를 나타낸

다. 모든 유형에서 접근, 지켜봄, 메시지 도달 행위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거절당한 자' 유형에서는 '메시지 도달' 행위가 가장 높게(93.4%, n = 71) 나타났다. 이는 이 유형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과거 부부/연인관계이거나 현재 부부/연인관계, 그리고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유형이라 여겨진다. 그와는 반대로 '무능한 구애자'는 '지켜봄' 행위유형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 유형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만은 아닌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기보다는 지켜보는 행위가 더 적합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2-1-16] 스토킹 가해자 유형별 스토킹처벌법 상의 행위 빈도

스토킹 가해자 유형	행위유형(있음, 빈도[%†])						합계
	접근	지켜봄	메시지 도달	물건 도달	물건 등 훼손	기타	
1. 거절당한 자	58 (76.3)	64 (84.2)	71 (93.4)	9 (11.8)	21 (27.6)	21 (27.6)	76 (67.9)
2. 친밀관계 추구자	7 (77.8)	7 (77.8)	7 (77.8)	1 (11.1)	3 (33.3)	2 (22.2)	9 (8.0)
3. 무능한 구애자	14 (73.7)	18 (94.7)	11 (57.9)	5 (26.3)	1 (5.3)	8 (42.1)	19 (17.0)
4. 분개한 자	6 (75.0)	7 (87.5)	7 (87.5)	0 (0.0)	0 (0.0)	2 (25.0)	8 (7.1)
합계	85 (75.9)	96 (85.7)	96 (85.7)	15 (13.4)	25 (22.3)	33 (29.5)	112 (100.0)

Note.
† 스토킹 가해자 유형 내 %

4. 스토킹 가해자의 위험성 평가

가. SAM의 '스토킹의 특성 요인'(N)

수사재판기록 상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토대로 SAM의 N(Nature of Stalking Factors; 스토킹의 특성)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결과 살펴보면, '피해자를 겁줌/위협(N5)'(있음 = 93.8%, 이하 비율은 있음의 표시)과 '피해자와 의사소통(N2)'(89.3%), '피해자에게 접근(N3)'(83.9%)항목이 위험요인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78.6%)이나 '피해자 협박'(75.9%)은 그다음을 차지하였다. '피해

자에 대한 의사소통(N1)'문항[17]을 제외하고 스토킹 행위의 초기 단계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체 사건의 절반 정도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체 사건의 69.6%가 스토킹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정하였으며, 64.3%는 스토킹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 66.1%가 감시위반을 수반했다고 평가되어 위험관리가 필요한 사건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이 사건이 현장의 실무자들에 의해 평정되었을 경우 스토킹의 지속성과 심각성 부분의 높은 평정 결과를 고려할 때 표본의 상당수가 집중적 위험관리가 필요한 사건들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 0에서 20의 총점 범위에서 N요인은 평균 14.78점(SD = 3.74)을 나타냈다.

[표 2-1-17] SAM 스토킹 특성(N) 요인과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N = 112)

SAM 요인 및 문항	평정 빈도(%)				문항 평균점수
N (스토킹의 특성) 요인	없음(0)	가능성/부분존재(1)	있음(2)	확인 불가	M(SD)
N1.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통	58(51.8)	7(6.3)	46(41.1)	0(0.0)	0.89(0.97)
N2. 피해자와 의사소통	11(9.8)	1(0.9)	100(89.3)	0(0.0)	1.79(0.60)
N3. 피해자에게 접근	16(14.3)	1(0.9)	94(83.9)	1(0.9)	1.70(0.71)
N4.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	22(19.6)	2(1.8)	88(78.6)	0(0.0)	1.59(0.80)
N5. 피해자를 겁줌/위협	6(5.4)	1(0.9)	105(93.8)	0(0.0)	1.88(0.46)
N6. 피해자를 협박	21(18.8)	6(5.4)	85(75.9)	0(0.0)	1.57(0.79)
N7.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함	55(49.1)	3(2.7)	54(48.2)	0(0.0)	0.99(0.99)
N8. 스토킹이 지속됨	14(12.5)	20(17.9)	78(69.6)	0(0.0)	1.57(0.71)
N9. 스토킹이 고조됨	21(18.8)	19(17.0)	72(64.3)	0(0.0)	1.46(0.79)
N10. 감시위반을 수반한 스토킹	34(30.4)	3(2.7)	74(66.1)	1(0.9)	1.36(0.92)
N 총점	-	-	-	-	14.78(3.74)
N의 내적합치도	α = .617				

나. SAM의 '가해자 위험 요인'(P)

수사재판기록 상의 정보를 토대로 표본 집단의 SAM의 P(Perpetrator Risk Factors; 가해자 위험)요인에 대한 평정 결과를 살펴보면, '가해자의 분노(P1)'(87.5%), '반사회

17) 스토킹 처벌법 개정 이전의 사건들로 온라인 스토킹 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결과로 유추된다.

적 생활방식(P5)'(84.8%), '뉘우치치 않음(P4)'(83.9%), '연인관계 문제(P6)'(83.9%), '고용 및 경제문제(P10)'(71.4%), '집착(P2)'(67%)항목이 위험요인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반면, 가해자의 사고형태나 내용이 비정상적인지 혹은 조직화되지 않고 왜곡된 사고를 가졌는지를 평가하는 '비합리적인(P3)' 문항(49.1%)은 위험요인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가장 낮았다. P요인 또한 0에서 20점까지의 총점 범위로 평균총점은 15.92점(SD = 3.23)으로 나타났다.

[표 2-1-18] SAM 가해자 위험(P) 요인과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N = 112)

SAM 요인 및 문항	평정 빈도(%)				문항 평균점수
P (가해자의 위험) 요인	없음 (0)	가능성/ 부분존재 (1)	있음 (2)	확인불가	M(SD)
P1. 분노	2(1.8)	12(10.7)	98(87.5)	0(0.0)	1.86(0.40)
P2. 집착하는	6(5.4)	30(26.8)	75(67.0)	1(0.9)	1.62(0.59)
P3. 비합리적인	32(28.6)	25(22.3)	55(49.1)	0(0.0)	1.21(0.86)
P4. 뉘우치지 않는	3(2.7)	15(13.4)	94(83.9)	0(0.0)	1.81(0.46)
P5. 반사회적 생활방식	6(5.4)	11(9.8)	95(84.8)	0(0.0)	1.79(0.52)
P6. 연인관계 문제	2(1.8)	12(10.7)	94(83.9)	4(3.6)	1.85(0.41)
P7. 비연인 관계 문제	8(7.1)	17(15.2)	70(62.5)	17(15.2)	1.65(0.63)
P8. 불안정한 정서	8(7.1)	23(20.5)	74(66.1)	7(6.3)	1.63(0.62)
P9. 약물 사용 문제	19(17.0)	14(12.5)	69(61.6)	10(8.9)	1.49(0.79)
P10. 고용 및 경제 문제	14(12.5)	16(14.3)	80(71.4)	2(1.8)	1.60(0.71)
P 총점	-	-	-	-	15.92(3.23)
P의 내적합치도	α = .593				

다. SAM의 '피해자 취약성 요인'(V)

마지막으로 SAM의 V(Victim Vulnerability Factors; 피해자 취약성)요인의 평정결과를 살펴보면, N요인 및 P요인과는 달리 V요인에는 '확인불가'한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수사재판기록상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평정결과를 보인 문항은 '불안정한 정서(V8)'(79.5%), '안전하지 않은 생활환경(V4)'(61.6%), '연인관계 문제(V6)'(50.9%), '가해자에 대한 일관성 없는 행동(V1)'

(49.1%)이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일관성 없는 행동이나 태도(V1, V2)'는 '부분존재/가능성'의 평정 비율이 높음을 고려할 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인해 불안정한 정서와 부정적 감정이 높아 대처 능력이 떨어지며, 가해자에게 동선이 노출된 생활환경에서 살고 있고, 과거에도 폭력적인 배우자나 연인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가해자의 연락에 종종 답을 하거나 먼저 연락하는 비일관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높음을 암시하고 있다. V요인의 평균총점은 8.43점(*SD* = 3.53)으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확인불가'에 해당하는 결측값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2-1-19] SAM 피해자 취약성(V) 요인과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N* = 112)

SAM 요인 및 문항	응답 빈도(%)				문항 평균점수
V (피해자 취약성) 요인	없음 (0)	가능성/부분존재 (1)	있음 (2)	확인불가	M(SD)
V1. 가해자에 대한 일관성 없는 행동	38(33.9)	19(17.0)	55(49.1)	0(0.0)	1.15(0.90)
V2. 가해자에 대한 일관성 없는 태도	43(38.4)	27(24.1)	42(37.5)	0(0.0)	0.99(0.88)
V3. 충분한 자원 접근 불가능	73(65.2)	16(14.3)	7(6.3)	16(14.3)	0.31(0.60)
V4. 안전하지 않은 생활 환경	23(20.5)	18(16.1)	69(61.6)	2(1.8)	1.42(0.82)
V5. 피보호자를 돌보는 문제	62(55.4)	12(10.7)	29(25.9)	9(8.0)	0.68(0.89)
V6. 연인 관계 문제	12(10.7)	16(14.3)	57(50.9)	27(24.1)	1.53(0.73)
V7. 비연인 관계 문제	30(26.8)	6(5.4)	3(2.7)	73(65.2)	0.31(0.61)
V8. 불안정한 정서	3(2.7)	11(9.8)	89(79.5)	9(8.0)	1.83(0.45)
V9. 약물 사용 문제	19(17.0)	15(13.4)	3(2.7)	75(67.0)	0.57(0.65)
V10. 고용 및 경제 문제	36(32.1)	24(21.4)	36(32.1)	16(14.3)	1.00(0.87)
V 총점	-	-	-	-	8.43(3.53)
V의 내적합치도	α = .753				

라. 스토킹 유형에 따른 위험성

스토킹 유형에 따른 SAM의 요인별 평균 총점과 SAM 전체 총점은 [표 2-1-20]에 제시되었다. 스토킹 특성(N) 요인에서는 각 유형이 13.11에서 15.18의 평균점수를 보였고, '거절당한 자' 유형이 평균 15.18점(*SD* = 3.51)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거절형'과 '비거절형'의 평균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그룹의 평균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t[110] = 1.69, p = .09).

가해자 위험(P) 요인에서는 각 유형이 15.50에서 17.33의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네 유형 중 '친밀관계 추구자'가 17.33점(SD = 1.50)으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거절형'과 '비거절형'의 평균차이는 0.45점으로 두 그룹의 평균차는 유의미하지 않았다(t[110] = -.68, p = .50). 마지막으로 피해자 취약 요인(V)의 평균점수는 5.26에서 9.57의 분포였으며 '거절당한 자'가 9.57점(SD = 3.08)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거절형'과 '비거절형'의 평균차이는 3.54로 두 그룹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110] = 5.58, p 〈 .001). 두 그룹 차이의 효과 크기는 컸다(Cohen's d = 1.12).

[표 2-1-20] 스토킹 가해자 유형에 따른 SAM 요인별 점수

스토커 유형	N 총점		P 총점		V 총점	
	범위	M(SD)	범위	M(SD)	범위	M(SD)
1. 거절당한 자	5-20	15.18 (3.51)	7-20	15.78 (0.32)	3-17	9.57 (3.08)
2. 친밀관계추구자	9-18	14.78 (3.31)	15-20	17.33 (1.50)	2-11	7.67 (3.04)
3. 무능한 구애자	2-19	13.11 (4.40)	7-20	16.00 (3.42)	1-9	5.26 (2.98)
4. 분개한 자	6-20	14.88 (4.22)	10-20	15.50 (3.38)	2-13	6.00 (3.74)
평균차이[1]	-	1.27	-	0.45	-	3.54
t검정[2]	t(110) = 1.69, p = .09		t(110) = -.68, p = .50		t(110) = 5.58, p 〈 .001, d = 1.12	

Note.
N=스토킹의 특성, P=가해자 위험 요인, V=피해자 취약성 요인
[1] [2] 거절형 (n = 76) vs. 비거절형 (n = 36)

[표 2-1-21]은 스토킹 가해자 유형에 따른 SAM의 총점과 위험성 수준을 보여준다. N, P, V요인의 각각 총점을 합한 SAM의 총점은 '무능한 구애자'가 34.37점(SD = 9.10)으로 가장 낮은 총점을 보였지만, '거절당한 자' 유형이 40.53점(SD = 7.06)으로 가장 높은 총점을 보였다. '거절형'과 '비거절형'의 SAM 총점에 대한 평균차이는 4.36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고(t[110] = 2.87, p = .005), 그 효과 크기는 중간(Cohen's d = 0.56)이었다.

SAM 위험성 평가 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상당수가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2-1-21]에 따르면, '분개한 자' 유형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에서 위험성 '높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2-1-21] 스토킹 가해자 유형에 따른 SAM 재범 위험성

스토커 유형	위험성 등급(빈도[%])			SAM_총점	
	낮음(1)	중간(2)	높음(3)	범위	M(SD)
1. 거절당한 자	5 (6.6)	15 (19.7)	56 (73.7)	22-54	40.53(7.06)
2. 친밀관계 추구자	0 (0.0)	0 (0.0)	9 (100.0)	32-47	39.78(5.89)
3. 무능한 구애자	0 (0.0)	6 (36.8)	12 (63.2)	11-47	34.37(9.10)
4. 분개한 자	0 (0.0)	4 (50.0)	4 (50.0)	20-47	36.38(8.59)
t검정[1]	-	-	-	$t(110) = 2.87$, $p = .005$ $d = 0.56$	

Note.
[1]거절형 (n = 76) vs. 비거절형 (n = 36)

마. SAM 위험성 요인의 상관관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특성이 스토킹 사건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N(스토킹의 특성) 요인에 대한 P(가해자 위험) 요인과 V(피해자 취약성) 요인의 이변량 상관분석(bivariate correlation analysis)을 실행하였다. P요인과 N요인의 이변량 상관분석에서 7개의 P문항과 P요인 총점이 N요인의 문항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2-1-22] 참고).

이 중 '집착하는(P2)', '뉘우치지 않는(P4),' '약물 사용 문제(P9),' 그리고 '고용 및 경제 문제(P10)' 문항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문항들은 스토킹 범죄에 있어 가장 우려가 되는 위험성 - 즉 폭력성, 지속성, 그리고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집착하는(P2)' 문항은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몰두하거나 집착함을 나타낸다. 이 집착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서 모든

스토킹 가해자 유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다. P2 문항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N4)' (r = .205, p < .05),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함(N7)' (r = .262, p < .01), '스토킹이 지속됨(N8)' (r = .528, p < .01), '스토킹이 고조됨(N9)' (r = .233, p < .05), 그리고 N요인 총점(r = .410, p < .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스토킹이 지속됨' 문항과 상관관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하는 가해자의 특성이 스토킹 지속성과 높은 연관이 있음을 나타낸다.

'뉘우치지 않는(P4)' 문항은 스토킹 행동의 심각성과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전적으로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준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후회하지 못하는 특성을 말한다. P4 문항에 '있음'으로 표시된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거나 최소화했다. 이 문항은 본 연구의 대상자들에게도 흔하게 나타나 [표 2-1-18]에서 문항별 응답 빈도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문항 중 하나였다. P4 문항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N4)' (r = .191, p < .05) '감시위반을 수반한 스토킹(N10)' (r = .222, p < .05)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 자신의 스토킹 행동을 최소화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나 행동이 피해자와 대면 접촉 시도를 하게 만들고 공식적인 제제나 경고(예: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나 명령)를 위반하는 행동과 연관이 있음을 나타냈다.

'약물 사용 문제(P9)' 문항은 술이나 불법약물 사용, 남용, 의존으로 인해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문항이다. 이 문항은 '피해자를 겁줌/위협(N5)' (r = .199, p < .05), '피해자를 협박(N6)' (r = .283, p < .01),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함(N7)' (r = .200, p < .05), '스토킹이 지속됨(N8)' (r = .223, p < .05), 스토킹이 고조됨(N9)' (r = .208, p < .05), '감시위반을 수반한 스토킹(N10)' (r = .410, p < .01), 그리고 N요인 총점(r = .271, p < .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스토킹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동과 폭력성, 지속성, 다양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고용 및 경제 문제(P10)' 문항은 가해자가 안정적인 직업을 확립하거나 유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리킨다. 실직, 저소득 취업, 불안정하거나 일관성 없는 근무 이력은 경제적 자립의 문제를 야기해 심리적 불안성과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된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들에게 직업이 없다는 것은 헛되이 보내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며 피해자나 스토킹 행동에 대해 몰두할 수 있게

한다(Kropp et al., 2008). 동 문항은 '스토킹이 지속됨(N8)' 문항과 정적인 상관관계(r = .280, p 〈 .01)를 나타내어 스토킹 가해자의 고용/경제 문제가 스토킹의 지속성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동 문항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함(N7)'과는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r = -.217, p 〈 .05)를 보였다. 이는 실직이나 고용문제가 스토킹 행동의 빈도 증가와는 연관이 있지만 피해의 심각성과는 연관이 없다는 선행연구(예: James & Farnham, 2003)와 비슷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V요인과 N요인의 이변량 상관분석에서는 4개의 V문항에서 N요인의 문항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표 2-1-23] 참고). 이 중 특히 주목할 만한 문항은 '가해자에 대한 일관성 없는 행동(V1)', '가해자에 대한 일관성 없는 태도(V2)',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생활환경(V4)'이다.

[표 2-1-22] SAM의 P요인-N요인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

구분	N1	N2	N3	N4	N5	N6	N7	N8	N9	N10	N Total
P1	.08	.24*	-.01	.07	.03	.18	.06	.00	.14	.08	.15
P2	.12	.09	.18	.20*	.15	.14	.26**	.53**	.23*	.14	.41**
P3	.08	-.08	.04	.10	.18	.06	-.05	.06	.18	.27**	.15
P4	.03	.08	.09	.19*	.08	.07	.11	.12	.01	.22*	.18
P5	-.01	.01	-.04	-.04	-.11	-.17	-.06	-.09	-.02	.11	-.03
P6	.08	.17	-.02	-.06	.03	.02	-.02	.18	.15	.02	.07
P7	-.14	-.04	.03	.06	.23*	-.13	-.12	.02	.04	.04	-.03
P8	.02	-.06	-.03	.07	.11	.11	-.08	.03	.01	.12	.01
P9	-.07	-.06	-.07	.10	.20*	.28**	.20*	.22*	.21*	.41**	.27**
P10	.06	-.15	-.09	-.13	.08	-.11	-.22*	.28**	.05	.16	-.03
P 총점	.12	.03	.02	.14	.22*	.17	.07	.24**	.24*	.39**	.31**

Note.
SAM = Guidelines for Stalking Assessment and Management
P요인 = 가해자 위험 요인
N요인 = 스토킹 특성 요인
*p 〈 .05, **p 〈 .01

가해자에 대한 일관성 없는 행동(V1) 문항은 가해자의 스토킹 행동이나 가해자가 일으킬 위험에 불명확하거나 적절하지 않게 대응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명백하지

않은 피해자의 반응은 가해자에게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자기 보호에 방해가 될 수 있다(Kropp et al., 2008). 이 문항은 '피해자와 의사소통(N2)' (r = .283 p 〈 .01)과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함(N7)' (r = .343, p 〈 .01) 문항과 N요인 총점(r = .263, p 〈 .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실제로 기록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가끔은 문자에 답을 하거나 심지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만나주는 일관성 없는 행동을 보인 경우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은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가해자에 대한 일관성 없는 태도(V2) 문항은 피해자가 스토킹에 대해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가해자가 스토킹을 멈췄으면 싶다가도 다음에는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나, 만약 경찰 신고 시 스토킹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등 가해자의 스토킹 행동이나 위험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하거나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함(N7)' (r = .239, p 〈 .05), '스토킹이 지속됨(N8)' (r = .200, p 〈 .05) 문항과 N요인 총점(r = .222, p 〈 .05)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피해자의 모호한 태도가 가해자에게 폭력을 가할 기회를 제공하고 스토킹이 지속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전하지 않은 생활환경(V4) 문항은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 또는 일상 활동과 관련된 안전 또는 보안 상태에 관한 것이다. 피해자의 안전하지 않은 생활환경, 즉 고립된 지역에 혼자 거주 중이거나 일반 대중이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등 일상생활이 가해자의 접근이 쉬운 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생활환경은 '피해자를 겁줌/위협(N5)' (r = .258, p 〈 .01), '피해자를 협박(N6)' (r = .385, p 〈 .01), '감시위반을 수반한 스토킹(N10)' (r = .284, p 〈 .01) 문항, 그리고 N요인 총점(r = .290,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처럼 안전하지 않은 생활환경은 피해자를 가해자에게 더 쉽게 노출시키고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며,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반하는 스토킹 행위 등과 연관이 있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취약한 환경에 방범 시설을 강화시키는 표적 강화(target hardening)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표 2-1-23] SAM의 V요인-N요인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

구분	N1	N2	N3	N4	N5	N6	N7	N8	N9	N10	N Total
V1	-.07	.28**	.10	.12	.16	.17	.34**	.17	.08	.09	.26**
V2	-.05	.03	.07	.17	.17	.13	.24*	.20*	.06	.19	.22*
V3	-.07	-.17	-.06	-.03	.14	.19	.07	.01	.13	.18	.07
V4	.14	-.08	.03	.18	.26**	.39**	.07	.13	.16	.28**	.29**
V5	.08	.18	-.05	-.08	.01	.01	.04	.03	-.14	.19	.04
V6	-.11	.21	-.15	.05	.13	.14	.10	.06	.05	.11	.08
V7	.22	.16	-.13	-.50**	.13	.09	-.07	.08	.18	.01	.00
V8	-.03	.18	-.10	-.07	-.10	-.01	.00	-.02	-.06	.27**	.03
V9	.03	.15	.03	-.02	.16	-.03	-.01	.11	.11	.20	.08
V10	-.05	.20	.07	.09	-.07	.16	.06	.13	.11	.03	.13
V 총점	.04	.22*	-.01	.05	.24*	.32**	.28**	.25**	.14	.28**	.34**

Note.
SAM = Guidelines for Stalking Assessment and Management
V요인 = 피해자 취약성 요인
N요인 = 스토킹 특성 요인
*p < .05, **p < .01

5. 종합 분석

수사재판기록조사를 통해 파악한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스토킹 가해자의 대다수는 남자였으며, 50대가 가장 많고, 40대, 30대, 20대 순이며, 평균 연령은 45.63세로 나타난다. 미혼이 절반을 차지하고 42% 정도는 별거, 이혼, 혹은 사별로 현재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가해자이다. 표본 집단의 평균 나이가 45.63세임을 고려할 때 90% 정도가 현재 배우자가 없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들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 66.1%이지만, 직업은 무직과 일용직을 합친 비율이 76.8%이다. 대다수(65.2%)가 혼자서 거주하고 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스토킹 가해자의 대다수는 전과를 가지고 있고 평균 전과 횟수는 11.28회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전체표본의 52.7%가 만성적 음주 남용을 보고하였으며, 41.1%는 과거 정신질환 이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스토킹 사건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스토킹처벌법 상에 나타난 다섯까지 행위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유형은 '지켜봄' 행위와 '메세지 도달' 행위이며 다음은 '접

근' 행위이다. 법률상 정의에 나열되지 않았지만 주거침입이나,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악의적 거짓말을 퍼뜨리는 행위 등 다양한 행위들이 포착되었다. 스토킹의 지속기간은 평균 8.63개월로 나타나며, 1년 넘게 지속한 스토킹은 15.2%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중 67%가 스토킹 사건에서 폭력 범죄가 동반되었는데, 신체적 폭행이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었고, 그 외에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등의 성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다양하였다. 전체 사건 중 30건(26.8%)을 제외한 82건(73.2%)이 한 가지 이상의 보호조치를 받았으며,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 응급조치 순이었다. 보호조치를 부과받은 경우 위반하지 않은 가해자는 22.3%에 불과했으며 잠정조치 위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량은 전체 가해자의 67.9%가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의 형량을 선고받았으며, 2건을 제외한 모두 사건에 대해 징역형과 더불어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되었다.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대다수 사건이 피해자가 1명이었고 대다수가 여성이었다. 피해자의 연령대로는 40대와 50대의 중장년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43.33세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의 61.6%가 과거의 배우자 또는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며, 17%는 잘 아는 사람(친구, 직장 내 지인), 11.6%는 일면식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잘 아는 사이는 어느 정도의 친밀관계가 형성된 관계로 주로 가게/노래방/술집/식당 등의 운영자와 손님,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주를 이루었다. 일면식 있는 사이로는 영업장의 주인과 손님 관계가 많으며 친밀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이다. 유명인(예: 정치인, 연예인)을 상대로 한 스토킹은 2.7%(3건)를 차지하고 있다.

Mullen의 스토킹 유형 분류법을 활용하여 스토커를 세부유형으로 분석해 보니, 전체표본 중 67.9%가 '거절당한 자'에 해당하였으며, 다음이 '무능한 구애자(17%)' '친밀관계 추구자(8%)', 분개한 자(7.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표본은 징역형을 받은 수용자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표본이다. 따라서 Mullen의 임상적 표본과는 여러 방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한 자'가 하위그룹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는 것은 Mullen(199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가해자 유형별로 연령을 보면 '거절당한 자' 유형이 가장 낮은 평균 연령(43.18세)을 보이며, '무능한 구애자' 유형이 가장 높은 평균 연령(51.68세)을 보인다. 전과이력은 평균적으로 '친밀관계 추구형'이 가장 이력이 많으며(16.09회) '무능한 구애자'형은 가장 낮은 수치(7.79회)를 보인다. '거절당한 자'의 교제 시 폭력 여부를 확인한 결과 확인불가를 제외하고 72.4%가 교제 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남용 이력은 '거절당한 자'나 '친밀관계 추구형', '분개한 자'에 비해, '무능한 구애자'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신병력이력은 '무능한 구애자'와 '분개한 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각각 68.4%, 62.5%), '거절당한 자'와 '친밀관계 추구자'는 다소 낮게 나타난다(각각 32.9%, 33.3%). 스토킹 사건의 지속기간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친밀관계 추구자'가 가장 긴 평균 지속 기간(19.23개월)을 보이며, 이는 '거절당한 자'(7.13개월)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는 이전 연구들에서 언급된 전연인 관계 스토커들이 지인이나 낯선 사람 관계보다 더 오랜 기간 스토킹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결과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유형별로 폭력의 동반 여부를 보면 '거절당한 자' 유형은 80.3%가 스토킹 범행 시 폭력을 사용,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친밀관계 추구자'는 약 절반가량이, '무능한 구애자' 유형은 약 1/3가량이, '분개한 자' 유형은 1/4가량이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Mullen의 연구에 따르면 '거절당한 자' 유형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폭행을 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반면 '분개한 자' 유형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가해할 가능성이 작았다. 본 연구의 표본에게서도 비슷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거절당한 자' 유형은 스토킹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율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의 종류 또한 다양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것처럼, 과거 친밀관계와 폭력의 연관성은 가·피해자 간 신체적으로 근접하거나 접근 가능성이 높기 때문(Brewster, 2000; McEwan et al., 2009; Palarea et al., 1999)인 것으로 보인다.

'거절당한 자' 유형과 반대로 '분개한 자'의 폭력범죄 동반 비율은 아주 낮게 발견되었다. 이 결과 또한 Mullen의 유형 연구와 일치하는 점이다. 이처럼 유형별 폭력여부 혹은 폭력빈도는 유형에 따라 폭력이 더 심화되기 전 경찰의 적극적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거절당한 자' 유형 외에는 표본 수가 다소 적었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해 스토킹 가해자 유형과 폭력 간의 연관성을 재확인해

야 할 것이다.

수사재판기록 상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토대로 SAM을 사용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본 결과, 전체 사건의 69.6%가 스토킹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64.3%는 스토킹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하여, 사례 관리 면에서 지속적 위험관리가 필요한 사건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이 사건들이 현장의 실무자에 의해 평정되었을 경우 스토킹의 지속성과 심각성의 높은 평정결과를 고려할 때 상당수가 집중적 위험관리 사건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 가해자 요인으로는 '분노,' '반사회적 생활방식,' '뉘우치지 않음' 등이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평정되었으며, 피해자 요인으로는 '불안정한 정서,''안전하지 않은 생활환경,' '연인관계 문제,' '가해자에 대한 일관성없는 행동'이 취약성 요인으로 평정되었다. 즉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인해 불안정한 정서와 부정적 감정이 높아 대처 능력이 떨어지며, 가해자에게 동선이 노출된 생활환경에 살고 있고 과거에도 폭력적인 배우자나 연인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가해자의 연락에 종종 답을 하거나 먼저 연락을 취하는 비일관적 행동을 보이는 행동이 사건을 범죄에 이르게 하는 주요 취약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위험성 평가 점수의 합산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절당한 자'의 피해자 취약요인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전체 총점은 '거절당한 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SAM의 스토킹 가해자 특성 중 사건 특성과 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집착'과 '뉘우치지 않음,' '약물문제,' '고용 및 경제문제'로 나타났으며 (1)'집착'은 '스토킹의 지속'과, (2)'뉘우치지 않음,' '약물문제'는 '감시 위반'과, (3)'고용 및 경제 문제' 역시 '스토킹의 지속'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AM의 피해자 특성 중 사건 특성과 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가해자에 대한 일관성 없는 행동', '가해자에 대한 일관성 없는 태도',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생활환경'이었다. '가해자에 대한 일관성 없는 행동과 태도'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함'과, '안전하지 않은 생활환경'은 '피해자 협박'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토킹 사건의 위험관리 및 정책 시행의 세부 내용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제2절 | 스토킹 범죄자 심리검사

1. 조사 개요

가. 조사 준비 및 실시

스토킹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보다 타당하게 파악하기 위해 PAI-PS(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for Prison Settings; Morey, 1991; 교정용 성격평가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는 수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정신병리적, 심리적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설정하고 평가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객관적 자기보고형 성격검사이다(Morey, 1991). PAI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표준화 표본으로 삼고 교도소 수감자 등 특수 장면의 대상자들에게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이러한 규준에 근거하여 프로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일반인과 생활환경이 전혀 다르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차이를 보이는 교도소 수용자에게 일반인 규준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간주되어 2018년 수용자 집단의 규준을 제공하는 PAI-PS(이수정 외, 2019)를 개발하였다.

PAI를 다룬 연구 결과를 보면, 검사에서 평가하는 정신병리, 성격, 치료관련 변인은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행동화할 위험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유용하다고 보고하고 있다(Morey, 1991). PAI는 총 3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타당성척도, 11개의 임상척도, 5개의 치료척도, 2개의 대인관계척도 등 서로 다른 영역을 평가하는 척도들을 포함하고 있다. 문항에 반응하는 방식은 4점 평정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중간이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한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스토킹 사범의 심리적 특성, 즉 반사회적 성격특징, 경계선적 성격특징, 알코올문제, 약물문제 및 공격성 등은 PAI 검사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AI는 4년 정도의 교육수준이면 누구나 읽고 이해하기 쉬운 문항으로 기술되어 있어 일반인에 비해 다소 학력 수준이 낮은 교도소 수용자들도 응답하는 데 문제가 없으리라 보인다. 다만, 수용자 중, 정신질환이 발현 상태인 경우나 무학인 경우 문항

해독에 어려움을 보일 수가 있어, 심리검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하였다.

PAI를 통한 심리검사는 법무부 교정본부의 협조를 얻어 진행되었다. 수사재판기록에 응한 대상자 112명 중, 교정본부 심리치료과의 협조를 통해 심리검사 참여 동의 여부를 조사하였고 총 68명의 수용자가 검사 참여에 동의하였다. 심리검사 동의자에게 검사의 목적과 개인정보 보안, 사례금, PAI-PS 검사 실시 시 주의사항[18] 등을 서술한 안내장을 검사지와 함께 동봉하여 심리검사 참여자가 복역하는 교도소로 발송한 뒤 응답지를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심리검사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실시되었으며, 개별 대상자의 심리검사 실시는 각 교도소의 심리치료과(팀) 직원의 안내와 협조를 통해 집행되었다.

한편,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심리검사 참여자 68명과 미참여자 44명 간에 사회인구학적 변인, 형량, 위험성 등 주요 변수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가령, 심리검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검사 참여자가 심리검사 미참여자에 비해 위험성이 낮은 대상자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확인 결과, 두 집단의 평균 나이나 1심 선고 형량, SAM 위험성 평가와 같은 주요 변수 간에 통계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표본 집단인 심리검사 참여자에 대한 결과를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확인된다.

[표 2-2-1] 심리검사 실시 여부에 따른 나이, 형량, 위험성 평균 비교

구 분		N	나이		형량(1심)		SAM 위험성등급 (1~3)[19]	
			M	SD	M	SD	M	SD
심리검사 참여여부	검사 참여	68	44.51	12.90	22.85	16.56	2.66	0.61
	검사 미참여	44	47.34	13.67	21.45	12.71	2.73	0.45
	T 검정		1.11		0.47		0.61	

18) 주의사항에는 정신과약물 복용으로 집중하기 힘든 수용자, 무학 수용자는 검사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검사 환경으로 교도소 내의 조용한 환경을 선택하고, 심리검사가 끝났으나 반응 편향이 있을 경우 재검을 독려해 줄 것 등, 제반 주의사항과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영치금)에 대한 안내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9) SAM 위험성 등급의 값은 '1'은 '위험성 낮음', '2'는 '위험성 중간', '3'은 위험성 높음'으로 평정되었다.

나. 문항 구성 및 내용

1) PAI 대척도

PAI는 크게 타당성척도, 임상척도, 치료고려척도 및 대인관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타당도 척도는 수검자의 검사 태도를 판단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다. 교도소의 수용자들은 문항에 대해 성의 없이 반응하거나,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나 증상을 과장되게 보고하거나,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데 PAI의 타당도 척도를 통해서 이러한 반응 편향을 분석해 볼 수 있다. 타당도 척도는 비일관성, 저빈도, 부정적 인상, 긍정적 인상의 4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수검자의 정신병리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평가해야 하는 척도는 크게 임상척도, 치료고려척도 및 대인관계 척도가 있다. PAI 심리검사의 임상 척도는 신체적 호소, 불안, 불안관련 장애, 우울, 조증, 망상, 조현병, 경계선적 특징, 반사회적 특징, 알코올문제, 약물사용을 측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치료고려척도와 대인관계척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치료고려척도에는 공격성, 자살관념, 스트레스, 비지지, 치료거부를 측정하는 척도가, 대인관계척도에는 지배성과 온정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포함된다. 각 척도의 세부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기로 한다.

[표 2-2-2] PAI 척도

척도(척도명, 문항 수)		내용
타당성 척도	비일관성 (Inconsistency, ICN/10개의 문항쌍)	수검자가 문항을 읽고 답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반응하였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적 또는 부적 상관이 높은 10개의 문항 쌍으로 구성
	저빈도 (Infrequency, INF/8)	부주의하거나 무선적인 또는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반응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 문항 내용은 정신병적인 측면에서 중립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
	부정적 인상 (Negative Impression, NIM/9)	지나치게 나쁜 인상을 주거나 꾀병을 부리는 태도
	긍정적 인상 (Positive Impression, PIM/9)	자신을 지나치게 좋게 보이려 하고 사소한 결점도 부인하려는 태도
임상 척도	신체적 호소 (Somatic Complaints, SOM/24)	신체화장애, 전환장애와 관련이 있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집착과 신체적 불편감에 대한 호소
	불안 (Anxiety, ANX/24)	여러 가지 반응양식으로 나타나는 불안 경험과 불안의 객관적 징후

척도(척도명, 문항 수)		내용
	불안관련 장애 (Anxiety-Related Disorders, ARD/24)	강박장애, 공포증, 외상적 스트레스와 같은 구체적인 불안과 관련이 있는 증상과 행동
	우울 (Depression, DEP/24)	우울의 증상과 현상
	조증 (Mania, MAN/24)	조증과 경조증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증상
	망상 (Paranoia, PAR/24)	망상장애와 망상적 성격장애의 증상
	조현병 (Schizophrenia, SCZ/24)	조현병에서 나타나는 광범위한 증상
	경계선 특징 (Borderline Features, BOR/24)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대인관계, 충동성, 정서적 가변성과 불안정성, 통제할 수 없는 분노 등을 포함하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
	반사회적 특징 (Antisocial Features, ANT/24)	범죄행위, 권위적 인물과의 갈등, 자기중심성, 공감과 성실성의 부족, 불안정, 감각추구 등과 같은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특징
	알코올문제 (Alcohol Problems, ALC/12)	문제시되는 음주와 알코올 의존적 특징
	약물사용 (Drug Problem, DRG/12)	약물사용에 따른 문제와 약물 의존적 특징
치료 고려 척도	공격성 (Aggression, AGG/18)	분노, 적대감 및 공격성과 관련된 특징과 태도
	자살관념 (Suicidal Ideation, SUI/12)	무력감과 자살에 대한 일반적이고 모호한 생각과 자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스트레스 (Stress, STR/8)	일상생활에서 현재 또는 최근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비지지 (Nonsupport, NON/8)	가용한 지지의 수준과 질을 포함하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부족
	치료거부 (Treatment Rejection, RXR/8)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변화에 대한 동기
대인 관계 척도	지배성 (Dominance, DOM/12)	대인관계에서 개인적 통제와 독립성을 유지하는 정도를 평가
	온정성 (Warmth, WRM/12)	대인관계에서 지지적이고 공감적인 정도를 평가

출처: PAI-PS 교정용 성격평가질문지, p.9.

2) PAI 대척도별 소척도

PAI의 임상척도는 4개의 군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신경증 척도군은 신체적호소(SOM), 불안(ANX), 불안관련(ARD), 우울(DEP)로 구성된다. 각 척도는 다시 소

척도로 분류되는데, 신체적 호소는 심리적 긴장, 스트레스가 신체로 전환되는 증상을 측정하는 전환(SOM-C), 다양한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신체화(SOM-S), 건강염려(SOM-H)를 측정하는 3개의 소척도가, 불안은 인지적 불안(ANX-C), 정서적 불안(ANX-A), 신체생리적 불안(ANX-P)을 측정하는 3개 소척도가 있다. 불안관련 장애는 강박장애(ARD-O), 공포증(ARD-P), 외상적 스트레스(ARD-T)를 측정하는 3개 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우울 역시, 인지적(DEP-C), 정서적(DEP-A), 신체생리적(DEP-P) 우울감을 측정하는 3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2-2-3] PAI 신경증척도군의 대척도 및 소척도

척도(척도명, 문항 수)		내용
신체적 호소	전환 (Conversion, SOM-C/8)	전환장애와 관련이 있는 증상, 특히 감각적 또는 운동적 역기능
	신체화 (Somatization, SOM-S/8)	다양한 신체적 증상에 대한 호소와 건강과 피로감에 대한 모호한 호소
	건강염려 (Health Concerns, SOM-H/8)	건강상태나 신체적 문제에 대한 집착
불안 (ANX)	인지적 (Cognitive, ANX-C/8)	최근에 직면한 문제에 대한 반복적 염려와 이로 인한 주의력과 집중력의 저하
	정서적 (Affective, ANX-A/8)	과도한 긴장이나 이완의 어려움 및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감
	신체생리적 (Physiological, ANX-P/8)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한 외현적인 신체적 징후
불안관련 장애 (ARD)	강박장애 (Obsessive-Compulsive, ARD-D/8)	잠입적 사고 또는 행동, 경직성, 우유부단, 완벽주의 및 정서적 위축
	공포증 (Phobias, ARD-P/8)	사회적 상황, 대중교통, 높은 장소, 폐쇄된 공간 또는 다른 특정 대상에 대한 공포
	외상적 스트레스 (Traumatic Stress, ARD-T/8)	지속적으로 불편과 불안을 가져다주는 외상적 사건에 대한 경험. 이러한 사건 때문에 자신이 근본적으로 바뀌거나 손상을 받고 있다는 느낌
우울(DEP)	인지적 (Cognitive, DEP-C/8)	무가치감, 무망감, 개인적 실패 뿐 아니라 우유부단과 집중력 저하
	정서적 (Affective, DEP-A/8)	슬픔, 일상적 활동에 대한 관심의 결여, 무쾌감
	신체생리적 (Physiological, DEP-P/8)	신체기능, 활동과 에너지 수준의 변화, 수면 장애, 성적 관심의 저하, 식욕상실과 체중의 감소

둘째, 정신병 척도군은 조증(MAN), 망상(PAR), 조현병(SCZ)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조증 척도에는 사고과정과 행동이 고양되는 활동수준(MAN-A), 자존감 등 과대감을 측정하는 과대성(MAN-G), 빠른 기분변화 등을 측정하는 초조성(MAN-I)이 포함된다. 망상 척도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의심과 불신 등을 측정하는 과경계(PAR-H),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다고 느끼는 피해망상(PAR-P), 다른 사람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했다고 느끼는 원한(PAR-R)이 들어간다. 조현병 척도에는 비일상적 지각을 측정하는 정신병적 경험(SCZ-P), 사회적 고립을 측정하는 사회적 위축(SCZ-S), 정신적 혼란과 사고과정의 혼란을 측정하는 사고장애(SCA-T)가 포함되어 있다.

[표 2-2-4] PAI 정신병척도군의 대척도 및 소척도

척도(척도명, 문항 수)		내용
조증 (MAN)	활동수준 (Activity Level, MAN-A/8)	부적절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일에 과다하게 관여하고 사고과정과 행동의 가속화
	과대성 (Grandiosity, MAN-G/8)	고양된 자존감, 과대감 및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있다는 믿음
	초조성 (Irritability, MAN-I/8)	참을성의 부족, 욕구좌절을 참아내는 능력 및 빠른 기분변화
망상 (PAR)	과경계 (Hypervigilance, PAR-H/8)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과 불신, 실제적이거나 가상적인 위협을 가정하여 주변 환경을 감시
	피해망상 (Persecution, PAR-P/8)	자신이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빼앗기 위해 모의하고 있다는 믿음
	원한 (Resentment, PAR-R/8)	대인관계에서 모욕과 멸시를 당했다고 느끼고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림
조현병 (SCZ))	정신병적 경험 (Psychotic Experiences, SCZ-S/8)	비일상적인 지각과 감각, 마술적 사고, 망상적 신념을 포함하는 비일상적 아이디어
	사회적 위축 (Social Detachment, SCZ-S/8)	사회적 고립, 대인적 상황에서 느끼는 불편감
	사고장애 (Thought Disordr, SCZ-T/8)	정신적 혼란, 집중력의 문제, 사고과정의 혼란

셋째, 성격장애 척도군에는 경계선특징(BOR), 반사회적특징(ANT)이 포함된다. 단, 본 연구에서는 성격장애 척도군에 반사회적 특징과 관련이 높은 공격성을 추가하여 살펴보았다. 경계선적 특징은 갑작스럽고 극단적인 기분동요, 분노와 통제력의 결여

등, 정서적 통제의 어려움을 측정하는 정서적 불안정성(BOR-A), 중요한 인생의 문제에 있어 자기정체감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정체감문제(BOR-I), 양가적이고 강렬한 대인관계 등을 측정하는 부정적 관계(BOR-N), 자기손상적이고 자기파괴적인 충동적 성향 및 행동을 측정하는 자기손상(BOR-S)이 들어간다. 반사회적 특징은 불법행동 등에 관여하는 정도인 반사회적 행동(ANT-A), 공감능력이나 타인에 대한 착취를 측정하는 자기중심성(ANT-E), 강한 자극과 흥분, 무모한 성향을 측정하는 자극추구(ANT-S)가, 공격성척도에는 공격적 태도(AGG-A), 언어적 공격(AGG-V), 신체적 공격(AGG-P)이 포함되어 있다.

[표 2-2-5] PAI 성격장애척도군의 대척도 및 소척도

척도(척도명, 문항 수)		내용
경계선적 특징 (BOR)	정서적 불안정성 (Affective Instability, BOR-A/6)	정서적 반응성, 빠른 기분변화 및 정서적 통제의 어려움
	정체감 문제 (Identity Problem, BOR-I/6)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불확실성과 목적의식의 상실, 공허하고 지루한 느낌
	부정적 관계 (Negative Relationship, BOR-N/6)	양가적이고 강렬한 대인관계. 배신감과 적대감의 경험
	자기손상 (Self-Harm, BOR-S/6)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충동성
반사회적 특징 (ANT)	반사회적 행동 (Antisocial Behaviors, ANT-A/8)	반사회적 행동과 불법적 활동에 관여
	자기중심성 (Egocentricity, ANT-E/8)	공감능력의 부족,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향
	자극추구 (Stimulus Seeking, ANT-S/8)	흥분과 자극을 추구하고 지루한 것을 싫어하고 무모하게 위험행동을 할 가능성
공격성 (AGG)	공격적 태도 (Aggressive Attitude, AGG-A/6)	적대감, 분노표현을 통제하기 어려움 및 공격성을 수단적으로 사용
	언어적 공격 (Verbal Aggression, AGG-V/6)	주장적인 표현, 비난, 욕설을 사용하여 분노를 언어적으로 표현
	신체적 공격 (Physical Aggression, AGG-P/6)	재물파손, 신체적 싸움, 폭력 위험 등을 통해 분노를 신체적으로 표현하려는 경향

넷째, 물질관련 척도군은 알코올문제(ALC), 약물문제(DRG)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치료고려척도로 공격성(AGG), 자살관념(SUI), 스트레스(STR), 비지지(NON), 치료거부(RXR)가 포함되며, 대인관계척도로는 지배성(DOM)과 온정성(WRM)이 들어가 있다. 이들 척도는 별도의 소척도가 없다.

2. 타당도 확인[20)]

먼저, 대상자의 수검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타당도 척도의 점수 및 규준집단 내에서의 분포도, 보충척도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수검자들의 사례가 분석하기에 적합한지를 판별하고, 적합하지 못한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격적으로 수검자의 정신병리와 심리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4개의 척도군과 치료고려척도 및 대인관계척도에서 전체 표본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고, T점수 65점 이상의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사례 비율을 살펴보았다. 또한 PAI 각 대척도와 일부 소척도에서는 스토킹유형 분류(거절형 vs. 비거절형)와 SAM으로 평가한 위험성정도(고위험군 vs. 중저위험군)로 집단을 분류하여 집단별로 척도 값을 비교하고 통계적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가. 반응의 비일관성

PAI의 비일관성척도(ICN)은 일반적으로 T점수가 64점 미만일 경우 수검자가 일관성있게 반응했고 문항내용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해석하고, T점수가 중간정도(64~72점)로 상승할 경우 수검자의 부주의나 정신적 혼란, 인상관리 시도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여 일관성 있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높게 상승한 경우(T〉72)에는 수검자가 매우 비일관성있게 반응하였음을 지적한다(Morey, 1991). 본 연구에서 T점수 64점 이상으로 해석에 유의를 요하는 사례 수는 17명이었고, 수검태도가 비일관적이어서 해석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는 4명이었다.

---

20) 타당도 확인을 포함 본 연구의 PAI 심리검사 점수에 대한 해석은 PAI-PS 매뉴얼의 해석을 따른 것이다.

나. 무선반응

저빈도 척도(INF)는 무선반응, 무관심, 부주의, 정신적 혼란, 독해력 결함 등으로 문항에 대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수검자를 찾는 데 유용하다. T점수가 75점 이상으로 높으면 수검자가 문항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Morey, 1991). 저빈도 척도가 75점 이상인 경우는 4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들의 학력이 낮아 검사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임했거나, 심리검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했으나 실제 검사에 임할 때는 정신적으로 집중하기 어려워 문항을 주의 깊게 읽지 못했을 수도 있다.

다. 꾀병 또는 부정적 왜곡

부정적 인상척도(NIM)는 바람직하지 못한 인상을 과장하기 위해 반응을 왜곡하거나 매우 기이한 증상과 관련된 문항을 포함한다. 자신의 상태를 실제보다 더 좋지 않게 보고하여 환자 역할을 하거나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할 때 상승할 수 있다(Morey, 1991). 부정적 인상척도의 점수가 높을 경우(75점 이상) 수검자가 자기 자신을 매우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표본에서 7명의 참여자가 7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라. 방어 또는 긍정 왜곡

긍정적 인상형성(PIM)은 자신을 매우 바람직하게 보이고자 하거나 사소한 결함도 부인하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Morey, 1991). 긍정적 인상척도의 T점수가 68점 이상으로 높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흔한 결점조차 전혀 없다는 식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표본에서 68점 이상을 보이는 수검자는 없었다.

마. 타당도 척도 해석을 통한 유효사례수 선정

PAI에서 타당도 척도 점수를 확인한 결과, 긍정적 인상왜곡척도는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제되는 사례는 없었고, 나머지 3개의 척도에서 수검태도에 문제가 있는 사례 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일관성척도, 부정적 인상척도, 저빈도 척도의 3개 값 중 1개의 척도에만 문제가 있는 사례는 표본 수의 부족이나 명확한 판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유효사례에 포함하였고, 적어도 2개 이상의 타당도 척도가 일반성인 표준화표본의 타당도 척도 값과 비교하여 높은 점수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분석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3명의 대상자가 확인되었고, 3명의 PAI 검사 프로파일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1명의 대상자는 부정적 저빈도척도 T점수가 164점(일반성인, 수형자 규준집단 대비 백분위 100%)으로 비정상적으로 높고, 부정적 인상 T점수가 89점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왜곡의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보충지표인 부정적 인상판별점수(HNDF, 김영환, 홍상황, 2002), 꾀병지표(MAL; Morey, 1991) 및 부정왜곡척도(NDS, Mogge et al., 2010)를 확인한 결과, 꾀병지표 5점이상(수형자 T점수 97점, 일반 성인 T점수 87점), 부정왜곡척도 25점(수형자 T점수 163점, 일반성인 T점수 100점), 부정적 인상판별점수 0.251(수형자 T점수 67, 일반성인 T점수 80)로 본인의 증상을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이려고 왜곡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판별되어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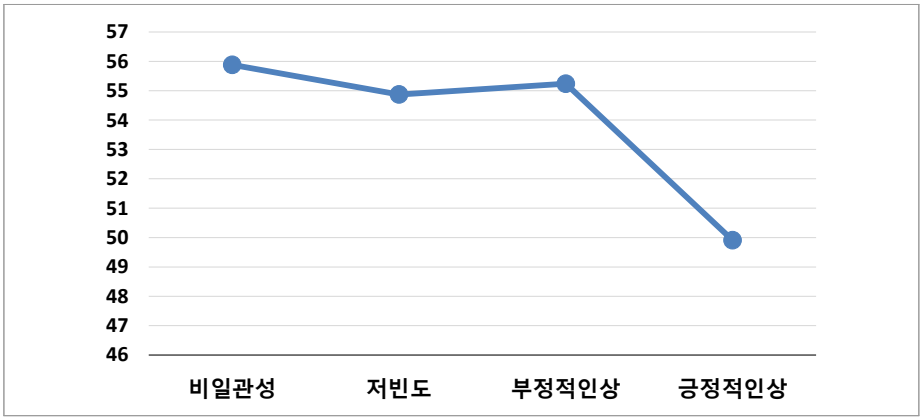
나머지 2명의 경우 2개의 척도(비일관성, 부정적 인상)가 높았으나, 실제로 수사재판기록을 대조한 결과 실제로도 정신병리를 상당 수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정적 인상의 상승이 꾀병이나 정신병리의 가장과 연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심리검사 분석에 유효한 사례 수는 67개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해당 사례 수의 타당도척도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표 2-2-6] 유효사례수의 타당도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일반성인규준)

구 분	척도명	M	SD
PAI 타당성 척도	비일관성(ICN)	55.88	10.91
	저빈도(INF)	54.87	17.36
	부정적 인상(NIM)	55.24	15.24
	긍정적 인상(PIM)	49.91	10.55

전체 타당도척도 프로파일을 보면 비일관성(ICN), 저빈도(INF) 척도, 부정적 척도는 일반성인의 평균(50T)에 비해 경도로 상승해 있으나, 이는 해석적 타당성을 저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1] 전체 대상자의 타당도척도 프로파일



3. 신경증 및 정신병 척도군

가. 신경증 척도군 전체 척도 분석

먼저 신경증 척도군에 속하는 각 척도 T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T점수 65점 이상의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사례 수를 확인해 보았다. 신체적호소, 불안척도, 불안관련 장애, 우울척도 모두 표본 집단의 평균 점수가 일반성인 규준적용 T점수 혹은 수형자 규준적용 T점수에서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개의 척도 중 우울척도가 일반성인 규준적용 54.9T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척도에서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임상적 유의미군(T>=65)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신체적 호소의 경우 11명(16.4%), 불안척도의 경우 8명(11.9%), 불안관련장애 11명(16.4%), 우울척도 16명(23.9%)으로 나타났다. 우울척도의 경우 일반성인 집단과 비교하여 약 4명 중 1명이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형자 표본집단과 비교하였을 때는 14.9%의 비율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형자들이 일반성인보다 우울감의 정도가 심한 것에서 기인함을 추정할 수 있다.

[표 2-2-7] 신경증척도군 전체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N	SOM (신체적호소)		ANX (불안척도)		ARD (불안관련 장애)		DEP (우울척도)	
		M (SD)	임상적 유의미군 (T≥65)	M (SD)	임상적 유의미군 (T≥65)	M (SD)	임상적 유의미군 (T≥65)	M (SD)	임상적 유의미군 (T≥65)
일반성인 규준적용 T점수	67	52.64 (14.87)	11명 (16.4%)	52.04 (11.23)	8명 (11.9%)	52.72 (11.52)	11명 (16.4%)	54.90 (13.72)	16명 (23.9%)
수형자 규준적용 T점수	67	52.24 (13.34)	10명 (14.9%)	53.15 (11.31)	8명 (11.9%)	52.96 (10.59)	11명 (16.4%)	53.00 (12.31)	10명 (14.9%)

다음은 신경증척도군의 각 척도(일반성인 규준적용 T점수)를 스토킹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스토킹 유형은 표본의 수를 고려하여 거절형과 비거절형 집단, 두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신체적 호소, 불안척도, 불안관련 장애, 우울척도 4개 모두 전체적으로 거절형보다 비거절형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4개의 척도 중 두 집단 간 비교에서 통계적 유의도를 보인 척도는 신체적 호소였다(t = 2.29, p 〈 .05). 이러한 결과는 거절형이 아닌 친밀감 추구형이나 무능한 구애형, 분개형 스토커들이 신경증의 정도가 높고 특히 신체적 호소나 우울감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8] 스토킹유형별 신경증척도군 전체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 분		N	SOM (신체적호소)		ANX (불안척도)		ARD (불안관련 장애)		DEP (우울척도)	
			M	SD	M	SD	M	SD	M	SD
스토킹 유형	거절형	48	49.63	11.91	51.21	10.69	52.40	11.62	53.21	12.51
	비거절형	19	60.26	18.83	54.16	12.56	53.53	11.54	59.16	15.97
	T 검정		t=2.29*		t=.97		t=.36		t=1.62	

신경증척도군의 각 척도(일반성인 규준적용 T점수)를 SAM 위험성 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고위험군과 고위험군이 아닌 집단의 경우, 우울척도를 제외하고 거의 평균 차이가 없었으며, 우울척도 역시 통계적 유의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9] 재범위험성별 신경증척도군 전체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 분		N	SOM (신체적호소)		ANX (불안척도)		ARD (불안관련 장애)		DEP (우울척도)	
			M	SD	M	SD	M	SD	M	SD
재범 위험성	고위험군	48	52.88	15.39	52.33	11.24	52.75	11.87	56.23	13.58
	고위험군 아님	19	52.05	13.85	51.32	11.49	52.63	10.90	51.53	13.87
	T 검정		.20		.33		.04		1.27	

나. 신경증척도군 하위척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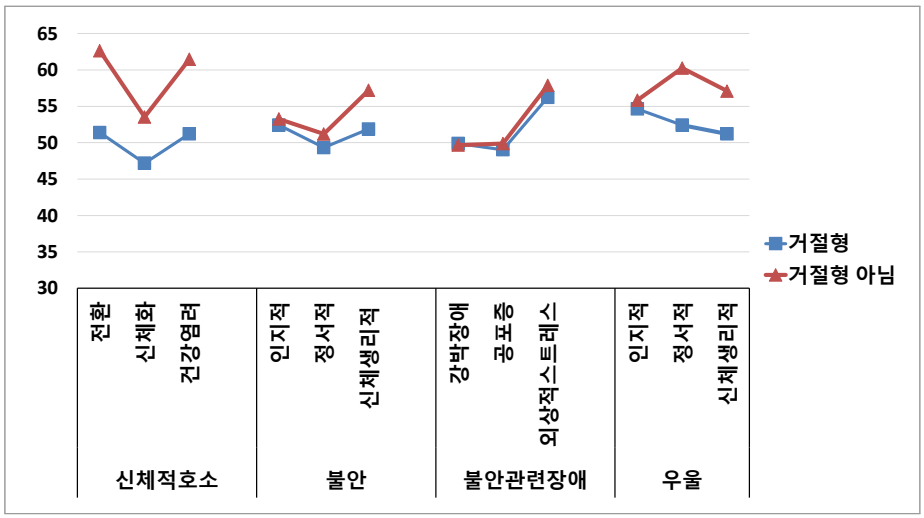
신경증척도군의 각 소척도를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위험성별 집단은 대척도에서 집단간 차이가 없었으므로 분석하지 않았으며, 스토킹 유형별로만 하위척도의 평균값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신체화척도를 구성하는 3개의 소척도는 모두 비거절형 집단이 거절형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전환, 신체화, 건강염려에서 거절형보다는 비거절형 집단이 임상적으로 더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이나 불안 관련 장애를 구성하는 소척도에서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값이 없었으며, 우울척도에서는 인지적 부분보다 정서적 혹은 신체생리적 부분에서 비거절형 집단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특히, 정서적 우울감(DEP-A)에서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 = 2.30, p < .05).

[표 2-2-10] 스토킹 유형별 신경증척도군 하위척도 평균 및 표준편차

척 도		스토킹 유형				
		거절형		비거절형		T검정
		M	SD	M	SD	
SOM (신체화)	SOM-C (전환)	51.40	12.68	62.63	18.13	2.88*
	SOM-S (신체화)	47.19	10.36	53.53	14.68	2.00*
	SOM-H (건강염려)	51.23	11.61	61.47	18.29	2.27*
ANX (불안)	ANX-C (인지)	52.42	11.20	53.26	11.22	.28
	ANX-A (정서)	49.33	8.84	51.21	11.63	.71
	ANX-P (신체생리)	51.88	12.11	57.21	13.30	1.58
ARD (불안관련 장애)	ARD-O (강박)	49.90	8.81	49.68	9.76	.09
	ARD-P (공포)	49.04	9.59	49.89	12.43	.30
	ARD-T (트라마)	56.23	13.83	57.89	14.31	.44
DEP (우울)	DEP-C (인지)	54.65	11.99	55.84	13.89	.35
	DEP-A (정서)	52.42	11.84	60.26	14.37	2.30*
	DEP-P (신체생리)	51.21	11.92	57.11	15.50	1.67

하위척도의 프로파일을 보면, 거절형보다는 비거절형 집단이 신체적 호소나 불안, 정서적, 신체생리적 우울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비거절형 집단의 경우 슬픔이나 무쾌감 등을 자주 느끼며, 일상적 활동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고, 신체기능과 활동의 정도, 성적 관심이 저하되어 이성에 대한 적극적 구애는 쉽지 않은 소심한 유형의 사람들이 상당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2-2] 스토킹 유형별 신경증 척도군 하위척도의 프로파일



다. 정신병척도군 전체 척도 분석

다음으로 정신병척도군에 속하는 각 척도 T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T점수 65점 이상의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사례 수를 확인해 보았다. 조증척도, 망상척도, 조현병척도 중 조증척도는 일반성인이나 수형자 규준집단의 평균을 다소 하회하는 것으로 보이며 망상의 경우 일반성인 규준집단보다 상회하는 수준, 조현병척도는 일반성인 규준집단이나 수형자 집단의 평균에 가까운 특성을 보인다. 3개의 척도 중 망상척도가 일반성인 규준적용 T점수가 55.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척도에서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임상적 유의미군(T>=65)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조증의 경우 4명(6%), 망상척도의 경우 16명(23.9%), 조현병척도는 10명(14.9%)으로 망상척도가 임상적 개입수준이 필요한 사람이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났다. 망상척도의 경우 일반성인 집단과 비교하여 약 4명 중 1명이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정도의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형자 표본집단과 비교하였을 때는 14.9%의 비율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형자들이 일반성인보다 망상의 정도가 심한 것에서 기인한다.

[표 2-2-11] 정신병척도군 전체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 분	N	MAN (조증척도)		PAR (망상척도)		SCZ (조현병척도)	
		M (SD)	임상적 유의미군 (T≥65)	M (SD)	임상적 유의미군 (T≥65)	M (SD)	임상적 유의미군 (T≥65)
일반성인 규준적용 T점수	67	47.57 (8.85)	4(6%)	55.49 (13.96)	16(23.9)	50.37 (13.16)	10(14.9)
수형자 규준적용 T점수	67	48.85 (8.59)	4(6%)	52.88 (12.31)	10(14.9)	52.10 (11.91)	10(14.9)

다음은 정신병척도군의 각 척도(일반성인 규준적용 T점수)를 스토킹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조증, 망상, 조현병 3개 척도 모두 전체적으로 거절형보다 비거절형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3개의 척도 중 망상과 조현병 척도가 비거절형 집단이 거절형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고, 두 집단 간 비교에서 통계적 유의도를 보인 척도는 조현병 척도였다($t = 2.36$, $p < .05$). 이러한 결과는 거절형이 아닌 친밀감 추구형이나 무능한 구애형, 분개형 스토커들이 정신병의 정도가 높고 특히 망상이나 조현병 척도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12] 스토킹유형별 정신병척도군 전체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 분		N	MAN (조증척도)		PAR (망상척도)		SCZ (조현병척도)	
			M	SD	M	SD	M	SD
스토킹 유형	거절형	48	47.52	9.93	53.52	12.62	48.06	11.72
	비거절형	19	47.68	5.46	60.47	16.21	56.21	15.05
	T 검정		.09		1.87		2.36*	

정신병척도군의 각 척도(일반성인 규준적용 T점수)를 SAM 위험성 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고위험군과 고위험군이 아닌 집단의 경우, 조현병 척도에서만 고위험군이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표 2-2-13] 재범위험성별 정신병척도군 전체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 분		N	MAN (조증척도)		PAR (망상척도)		SCZ (조현병척도)	
			M	SD	M	SD	M	SD
재범 위험성	고위험군	48	47.42	7.87	55.88	13.42	51.98	12.57
	고위험군 아님	19	47.95	11.19	54.53	15.60	46.32	14.09
	T 검정		.22		.35		1.61	

라. 정신병척도군 하위척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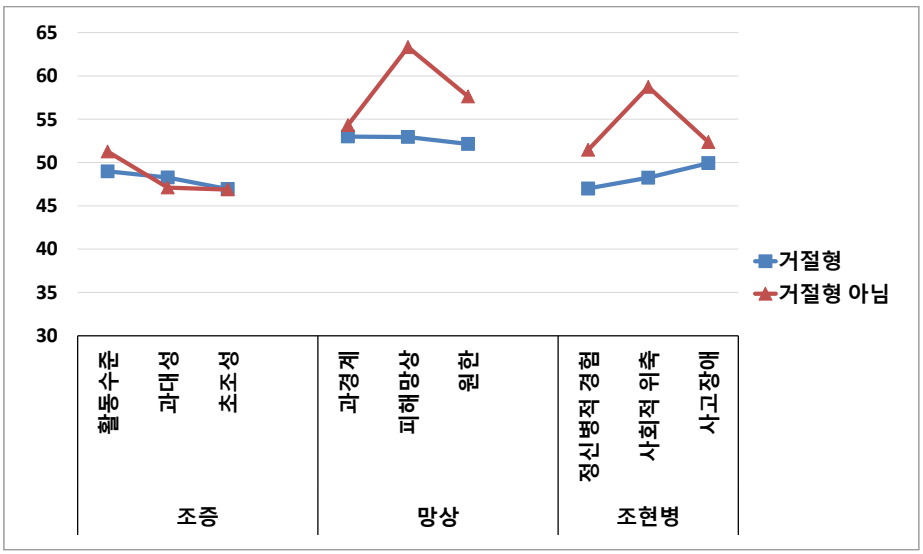
정신병척도군의 각 소척도를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위험성별 집단 차이는 대척도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분석하지 않았으며, 스토킹 유형별로만 하위척도의 평균값 등을 살펴보았다. 망상을 구성하는 3개의 소척도는 모두 비거절형 집단이 거절형보다 높았으며 특히 피해망상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조현병을 구성하는 3개의 소척도 역시 거절형보다는 비거절형 집단이 더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사회적 위축(SCZ-S)에서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 = 2.94, p < .05).

[표 2-2-14] 스토킹 유형별 정신병척도군 하위척도 평균 및 표준편차

척 도		스토킹 유형				
		거절형		비거절형		T검정
		M	SD	M	SD	
MAN (조증)	MAN-A (활동)	48.98	9.32	51.26	7.23	.96
	MAN-G (과대성)	48.27	10.15	47.11	10.90	.42
	MAN-I (초조)	46.94	9.22	46.89	8.68	.02
PAR (망상)	PAR-H (과경계)	53.00	12.59	54.32	13.34	.38
	PAR-P (피해망상)	52.94	9.05	63.32	21.53	2.03
	PAR-R (원한)	52.15	11.59	57.63	12.31	1.72
SCZ (조현병)	SCZ-P (정신병)	47.00	11.30	51.47	14.01	1.36
	SCZ-S (사회적위축)	48.25	12.20	58.74	15.36	2.94*
	SCZ-T (사고장애)	49.94	11.24	52.37	13.75	.75

하위척도의 프로파일을 보면, 거절형보다는 비거절형 집단이 망상, 조현병 수준을 더 많이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피해망상과 사회적 위축에서 이러한 경향이 가장 두드러진다. 비거절형 집단의 경우 자신이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다고 느끼고 대인관계에서 모욕과 멸시를 당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불행을 타인의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비거절형 집단의 경우 대인적 상황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사회적 고립 유형의 사람들이 상당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2-3] 스토킹 유형별 정신병척도군 하위척도의 프로파일



4. 성격장애 및 물질관련 척도군

가. 성격장애척도군 전체 척도 분석

다음으로 성격장애 척도군에 속하는 각 척도 T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T점수 65점 이상의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사례 수를 확인해 보았다. 경계선 척도, 반사회성척도, 공격성 척도는 일반성인 집단의 평균을 상회하였고, 특히 반사회성 척도가 가장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척도 모두 수형자 집단의 평균치에는 근접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3개의 척도에서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임상적

유의미군(T>=65)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경계선의 경우 17명(25.4%), 반사회성척도의 경우 16명(23.9%), 공격성 척도는 11명(16.4%)으로 경계선과 반사회성 척도가 임상적 개입수준이 필요한 사람이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났다. 경계선과 반사회성척도의 경우 일반성인 집단과 비교하여 약 4명 중 1명이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5] 성격장애척도군 전체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 분	N	경계선(BOR)		ANT(반사회성)		공격성(AGG)	
		M (SD)	임상적 유의미군 (T≥65)	M (SD)	임상적 유의미군 (T≥65)	M (SD)	임상적 유의미군 (T≥65)
일반성인 규준적용 T점수	67	54.99 (12.55)	17(25.4)	58.49 (10.54)	16(23.9)	53.85 (11.93)	11(16.4)
수형자 규준적용 T점수	67	52.78 (10.42)	11(16.4)	51.30 (8.47)	7(10.4)	51.93 (9.82)	8(11.9)

성격장애척도군의 각 척도(일반성인 규준적용 T점수)를 스토킹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경계선과 공격성은 거절형이 비거절형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표 2-2-16] 스토킹유형별 성격장애척도군 전체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 분		N	경계선(BOR)		ANT(반사회성)		공격성(AGG)	
			M	SD	M	SD	M	SD
스토킹 유형	거절형	48	55.50	13.02	58.29	10.88	54.88	12.58
	비거절형	19	53.68	11.50	59.00	9.89	51.26	9.94
	T 검정		.53		.25		1.12	

성격장애척도군의 각 척도(일반성인 규준적용 T점수)를 SAM 위험성 정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경계선과 공격성은 위험성이 높은 집단이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표 2-2-17] 재범위험성별 성격장애척도군 전체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 분		N	경계선(BOR)		ANT(반사회성)		공격성(AGG)	
			M	SD	M	SD	M	SD
재범 위험성	고위험군	48	55.46	12.43	58.00	10.49	54.98	11.58
	고위험군 아님	19	53.79	13.09	59.74	10.86	51.00	12.65
	T 검정		.49		.60		1.24	

나. 성격장애척도군 하위척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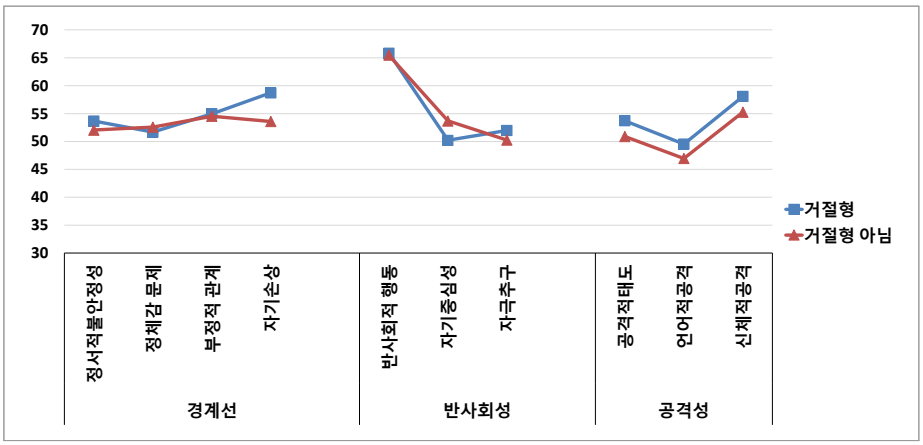
성격장애척도군의 각 소척도를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각 소척도에서 정체감문제와 자기중심성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거절형이 비거절형 집단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경향이 감지되고 경계선에서는 자기손상이 두드러지나, 통계적 유의도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표 2-2-18] 스토킹 유형별 성격장애척도군 하위척도 평균 및 표준편차

척 도		스토킹 유형				
		거절형		비거절형		T검정
		M	SD	M	SD	
경계선 (BOR)	BOR-A (정서불안)	53.67	13.23	52.05	10.25	.48
	BOR-I (정체감문제)	51.69	11.25	52.58	11.22	.29
	BOR-N (부정적관계)	54.96	11.19	54.53	10.68	.14
	BOR-S (자기손상)	58.73	14.08	53.58	13.53	1.36
ANT (반사회성)	ANT-A (반사회행동)	65.85	10.51	65.47	8.76	.14
	ANT-E (자기중심)	50.21	9.65	53.68	14.18	1.16
	ANT-S (자극추구)	51.98	11.68	50.26	9.37	.57
공격성 (AGG)	AGG-A (태도)	53.71	11.90	50.89	9.73	1.00
	AGG-V (언어적)	49.54	11.33	46.95	10.05	.87
	AGG-P (신체적)	58.08	12.22	55.26	9.43	.90

하위척도의 프로파일을 보면, 거절형과 비거절형 집단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경계선의 자기손상 영역이나 공격성에서 거절형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즉, 거절형이 B군 성격장애적 특징을 좀 더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과 대인관계에서의 공격성이나 분노표현, 적대감을 언어적, 신체적으로 표현하려는 성향이 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2-4] 스토킹 유형별 성격장애척도군 하위척도 프로파일



다. 물질관련척도군

다음으로 물질관련 척도군에 속하는 각 척도 T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T점수 65점 이상의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사례 수를 확인해 보았다. 알코올 문제는 일반성인 집단의 평균을 상회하였고, 약물은 일반성인 집단이나 수형자 집단의 평균에 근접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알코올과 약물 중 약물문제는 수형자 규준에 적용했을 때 문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로 보인다. 2개의 척도에서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임상적 유의미군(T>=65)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알코올의 경우 18명(26.9%), 약물의 경우 8명(11.9%)으로 알코올의 경우 약 4명 중 1명이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9] 물질관련척도군 전체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 분	N	알코올문제(ALC)		약물문제(DRG)	
		M (SD)	임상적 유의미군 (T≥65)	M (SD)	임상적 유의미군 (T≥65)
일반성인 규준적용 T점수	67	57.85 (13.32)	18(26.9)	51.78 (12.92)	8(11.9)
수형자 규준적용 T점수	67	51.58 (10.28)	9(13.4)	43.01 (11.54)	3(4.5)

물질관련척도군의 각 척도(일반성인 규준적용 T점수)를 스토킹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알코올과 약물 모두 거절형이 비거절형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표 2-2-20] 스토킹 유형별 물질관련척도군 전체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 분		N	ALC(알코올문제)		DRG(약물문제)	
			M	SD	M	SD
스토킹 유형	거절형	48	58.54	13.04	52.02	14.29
	비거절형	19	56.11	14.22	51.16	8.86
	T 검정		.67		.24	

물질관련척도군의 각 척도(일반성인 규준적용 T점수)를 SAM 위험성 정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알코올은 위험성이 높지 않은 집단이, 약물은 위험성이 높은 집단이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두 척도 모두 통계적 유의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표 2-2-21] SAM 위험성별 물질관련척도군 전체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 분		N	ALC(알코올문제)		DRG(약물문제)	
			M	SD	M	SD
재범 위험성	고위험군	48	57.46	12.95	52.33	13.16
	고위험군 아님	19	58.84	14.54	50.37	12.55
	T 검정		.38		.56	

5. 치료고려척도군 및 대인관계 척도

가. 치료고려척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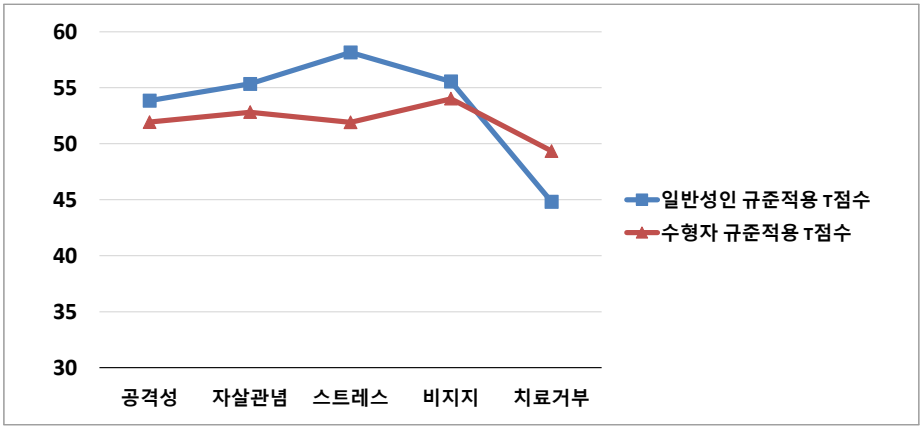
다음으로 치료고려척도군에 속하는 각 척도 T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T점수 65점 이상의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사례 수를 확인해 보았다. 공격성, 자살관념, 스트레스, 비지지 척도가 일반성인 집단의 평균을 상회하였고, 치료거부는 일반성인 집단의 평균에 훨씬 못 미쳤다. 즉, 일반성인에 비해 공격성, 자살관념, 스트레스, 비지지 정도는 높고, 치료에 대한 거부는 낮은 성향으로 해석된다.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임상적 유의미군(T>=65)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공격성의 경우 11명(16.4%), 자살관념의 경우 15명(22.4%), 스트레스는 20명(29.9%), 비지지는 17명(25.4%), 치료거부는 단 2명(3%)이었다. 자살관념이나 비지지는 약 4명 중 1명이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스트레스의 경우 30%에 달하는 대상자들이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거부 성향이 높은 대상자는 매우 적었다.

[표 2-2-22] 치료고려척도군 전체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 분	N	공격성(AGG)		자살관념(SUI)		스트레스(STR)		비지지(NON)		치료거부(RXR)	
		M (SD)	임상적 유의미군 (T≥65)	M (SD)	임상적 유의미군 (T≥65)	M (SD)	임상적 유의미군 (T≥65)	M (SD)	임상적 유의미군 (T≥65)	M (SD)	임상적 유의미군 (T≥65)
일반성인 규준적용 T점수	67	53.85 (11.93)	11(16.4)	55.34 (16.39)	15(22.4)	58.15 (13.29)	20(29.9)	55.55 (15.21)	17(25.4)	44.82 (11.46)	2(3.0)
수형자 규준적용 T점수	67	51.93 (9.82)	8(11.9)	52.81 (12.48)	9(13.4)	51.90 (10.55)	9(13.4)	54.01 (12.49)	11(16.4)	49.34 (10.43)	6(9.0)

하위척도의 프로파일을 보면, 일반성인에 비해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공격성, 자살관념이나 자살 계획,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높고, 가용한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다. 그러나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변화에 대한 동기는 오히려 일반성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치료적 접근을 시도하기에 적절한 집단일 것을 추정된다.

[그림 2-2-5] 스토킹 유형별 치료고려척도군 프로파일



나. 대인관계척도군

다음으로 대인관계척도군에 속하는 각 척도 T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T점수 65점 이상의 사례 수를 확인해 보았다. 지배성은 일반성인 평균 수준에 가깝고 온정성은 일반성인 수준을 다소 상회한다. 지배성의 경우 7명(10.4%), 온정성의 경우 12명(17.9%)이 65점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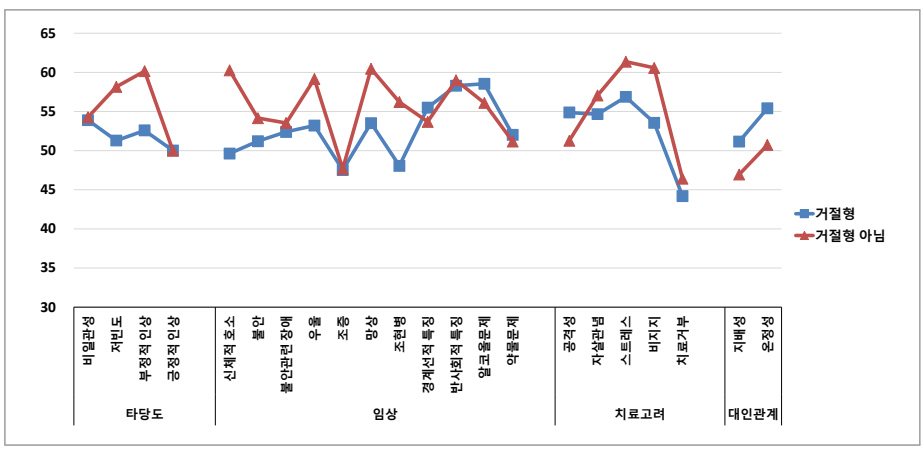
[표 2-2-23] 대인관계척도군 전체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 분	N	지배성(DOM)		온정성(WRM)	
		M (SD)	임상적 유의미군 (T≥65)	M (SD)	임상적 유의미군 (T≥65)
일반성인 규준적용 T점수	67	49.97 (10.42)	7(10.4)	54.09 (11.35)	12(17.9)
수형자 규준적용 T점수	67	48.13 (11.10)	7(10.4)	49.94 (10.60)	8(11.9)

6. 종합 분석

스토킹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PAI 검사의 평균 점수나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사례 수의 비율 등으로 해석해 보면 임상적 문제에서 가장 큰 수준의 문제를 보이는 영역은 우울감, 망상, 경계선적 특징, 반사회적 특징, 알코올 문제, 공격성, 자살관념, 스트레스, 비지지 영역으로 요약된다. 즉, 스토킹 범죄자는 우울의 증상과 현상, 특히 정서적 우울이 일반성인 평균에 비해 다소 상승해 있고, 망상장애나 망상적 성격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대상자들이 상당수 있으며, 경계선적, 반사회적 특징의 성격장애 문제가 일반 성인 표본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문제시되는 음주 습벽과 알코올의 의존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살에 대한 관념이나 스트레스 경험정도가 높으면서 타인에 대해 적대감과 분노 등 공격적 태도 혹은 행동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 특히, 치료고려척도 중 스트레스 경험 정도가 타 척도에 비해서 높고 일반성인 표본집단의 평균 수치보다 많이 상승한 것으로 미루어, 일상생활에서 현재 또는 최근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가용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은 일반성인 집단에 비해 낮은 편으로 해석되어 이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방식 개선에 대한 심리치료나 교육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전체 임상척도에서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 대체로 65T 점수 이상의 임상적 개입이 시급한 대상자는 4명 중 1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2-6] 스토킹 유형별 전체척도 프로파일



스토킹 범죄자를 세부 유형으로 나눠 해석해 보면(그림 2-2-6 참조), 거절형은 지배성과 온정성이 성인 표본집단의 평균에 근접한, 대체로 타인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정도의 대상자들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거절형이 아닌 스토킹 범죄자들은 대인관계에서 통제와 독립성을 유지하는 정도가 일반성인 보다 낮은 유형의 사람들로 정신병적 상황에 따라 집착, 망상, 후퇴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적 문제를 보면, 신경증이나 정신증의 경우는 거절형보다는 비거절형 스토킹 범죄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비거절형 집단의 경우 슬픔이나 무쾌감 등을 자주 느끼며, 일상적 활동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고, 신체기능과 활동의 정도, 성적 관심이 저하되어 이성에 대한 적극적 구애는 쉽지 않은 소심한 유형의 사람들이 상당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다고 느끼고 대인관계에서 모욕과 멸시를 당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불행을 타인의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대인적 상황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사회적 고립 유형의 사람들도 상당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거절형은 경계선적 특징이나 알코올문제, 약물문제, 공격성 등에서 더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즉, 거절형이 B군 성격장애적 특징을 좀 더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과 대인관계에서의 공격성이나 분노표현, 적대감을 언어적, 신체적으로 표현하려는 성향이 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에서 폭력적 사고 혹은 표현은 범죄피해의 심각도와 깊은 연관이 있고, 폭력 범죄의 동반은 스토킹 행위로 인한 가장 부정적, 치명적 결과인 만큼, B군 성격장애적 특징에 대한 치료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 밖에 치료고려부분에서 자실관념이나 스트레스정도, 가용한 지지환경에 대한 인지 등은 비거절형 스토킹 범죄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보였다.

제3절 | 스토킹 범죄자 심층면담 조사

1. 조사 개요

가. 조사 준비 및 대상자 선정

스토킹 사범의 심리검사나 위험성 평가, 그리고 수사재판기록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대상자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조사는 수사재판기록조사의 대상자로서 아직 출소하지 않아 면담이 가능한 수용자중, 심층 면담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법무부 심리치료과의 협조를 얻어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는 최종적으로 12명으로 확정되었다. 모든 대상자에게는 연구 목적과 취지가 설명되었으며, 개인정보 보안 및 사례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심층면담조사는 8월~9월 중에 이뤄졌으며,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되었으며 추후 발화내용을 풀어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전체 면담 시간은 대상자에 따라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조사 참여자의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2-3-1] 심층면담대상자 정보

순번	연번	나이	수용기관	스토킹 유형	SAM 위험성 등급
1	1	33세	부산구치소	무능한 구애자	3
2	7	60세	부산교도소	거절당한 자	3
3	9	34세	소망교도소	거절당한 자	3
4	23	44세	경북1교도소	거절당한 자	3
5	25	59세	원주교도소	무능한 구애자	2
6	26	59세	진주교도소	분개한 자	2
7	32	58세	춘천교도소	거절당한 자	3
8	40	53세	부산교도소	무능한 구애자	3
9	47	34세	포항교도소	무능한 구애자	3
10	60	50세	대구교도소	무능한 구애자	2
11	72	24세	대전교도소	거절당한 자	1
12	74	42세	경북3교도소	거절당한 자	3

나. 조사 항목

심층면담조사의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문헌과 먼저 시행된 수사재판기록조사 상의 연구 결과 등을 참조하여 크게 다섯 파트 정도로 구성되었다(면담지 부록 참조). 먼저 첫 번째 파트는 면담대상자와의 라포를 형성하고 면담 목적을 설명하기 위한 질문으로 주로 교도소 생활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당일의 기분, 정신과 약물 복용여부 등을 점검하며, 간략하게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지나 본인 사건에 대한 인지 정도를 체크한 후, 면담 목적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스토킹 사범의 어린시절과 애착관계, 가정폭력에의 노출 정도 등을 탐색하고, 성격의 유형,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격 상의 특성이나 어려움을 탐색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피해자나 특정 대상에게 느끼는 분노감의 표출, 육체적 싸움의 정도, 분노조절의 문제 등을 살펴보면서, 여성에 대한 친밀감 형성의 문제를 탐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진행과정을 탐색하였다. 사건의 발생 계기와,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이별과정, 합의 요구,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인지, 위반 여부, 처벌법에 대한 인지 등을 탐색하였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나, 재범에 대한 인식 등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문제를 정리하게끔 한 다음, 스토킹 사범을 위한 심리치료가 시행될 경우 그 니즈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표 2-3-2] 심층면담 주요 조사 항목

구분	심층면담 주요 조사 항목
라포형성 및 면담목적 설명	1) 인사말 2) 교도소 생활에 대한 전반적 인식 3) 정신과 약물 복용여부 확인 4) 스토킹 범죄 인지 여부, 본인 사건 인지정도 5) 면담 목적 설명
스토킹 범죄자의 어린 시절 및 범죄 동기	1) 스토킹 사건 당시 평소 생활상(직업, 연애관계, 가족관계 등) 2) 부모와의 애착문제, 애착의 형태 3) 가정폭력에의 노출 문제 4) 성격 문제, 대인관계에서의 성격 유형

구분	심층면담 주요 조사 항목
	5) 감정 조절의 문제 6) 여성에 대한 생각
스토킹 범죄 진행 과정	1) 사건이 발생한 계기 2) 당시 피해여성에 대한 회고, 이별에 대한 인식, 성적 인식 등 3) 피해여성과의 합의 여부 4)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인식 5)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인식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	1)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인식 2) 피해자 재접촉 의사 확인(재범 의사 간접 추론)
스토킹 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1) 교정시설에서의 심리치료 참여 경험 2) 본인의 문제(범죄유발요인)에 대한 인식 3)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의 내용 4) 프로그램 니즈

2. 라포형성 및 스토킹 범죄 인지 점검

가. 교도소 생활 및 약물 복용 현황

심층면담에 참가한 스토킹 사범들은 형기의 절반을 넘긴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수용자의 경우 수형시설 내의 폭행으로 형량이 추가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면담대상자와 라포 형성을 위한 방편으로 교도소 내의 생활과 고충, 현재의 컨디션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응답자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주요 고충으로는 거실 내의 다른 수용자들과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다툼, 그리고 수면 문제를 토로하였다. 한편, 면담 당시의 기분이나 전날 수면의 질과 관련해서 면담이 불가능할 정도의 부정적 감정이나 불면을 호소한 대상자는 없었다.

정신과 약물 복용에 대해서는 일부 면담대상자들이 현재 약물 복용 중에 있거나 입소전 약물 복용이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면담대상자들은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 초조, 수면 문제, 행동조절장애, 분노조절장애, 품행장애, 약물남용(알코올중독) 등을 주요 정신과적 문제 혹은 진단명으로 열거하였다. 라포 형성 과정에서 면담대상자와의 대화 등을 통해 수용시설 내의 정신과 약물 복용이 심층 면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면담 참여를 우려할 정도의 상태를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단 1명의 수용자가, 진술 내용이 상당히 허황되고 질문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발화가 많았는데, 수사재판기록이나 심리검사 점수를 미루어 망상이나 습관적 거짓말의 발현

인 것으로 추정되는 바, 발화 내용의 사실 관계에 의심이 가는 내용은 모두 삭제하고 분석하였다.

나. 스토킹 범죄 인지 여부

스토킹 범죄에 대해 거의 모든 수용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범죄인지를 질문하였을 때 '(상대가) 원치 않는데 따라다니거나, 주위를 배회하고 지켜보거나, 전화통화, 문자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힌다.'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다. 본인의 사건이 스토킹 사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과 책임수용에 따라 달랐는데, 특히 자신의 범행을 스토킹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범행 축소나 부인 등이 매우 심각하였다. 아래의 발화 내용은 한 무능형 스토킹 가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를 스토킹한 것이 아니고 단지 피해자의 직장 주변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서성거렸는데 피해자가 스토킹이라고 신고했다고 변명하는 내용이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맞다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자면 (피해자를) 지켜본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다 와이파이 무료 와이파이 쓰는 공간이라 갖고 그냥 휴대폰에서 칩을 빼갖고 부모님이 압수하는 상태면 제가 쓸 수가 없으니까 무선으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밖에 나가 갖고 돌아다니면서 막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자분은 제가 막 쓰고 있는데 계속 쳐다보니까 스토킹이다 해갖고 신고해 버리고(1, 무능형).

일부 거절형 스토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를 걸거나 접근한 것에 대해, 스토킹이 아닌 그럴만한 객관적 혹은 구체적 사정(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음)이 있었다는 식으로 정당화 혹은 합리화하면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성향을 보였고, 연인 관계 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제공했던 금전적 도움, 호의 등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통화를 했을 때 주방 아줌마라는 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피해자의) 가게를 내 돈으로 차려준 가게거든요. 그래서 얼마에 인수했고, 얼마나 손해 봤나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 남자사장이랑 통화를 하려고 계속 전화를 했던 건데. 그 자리에 그 여자(피해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스토킹 범죄로 입건이) 됐습니다(32, 거절형).

한편, 무능형 스토킹 가해자의 경우,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을 특히 수치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에게는 면담의 목적과 필요에 대해 재차 설명하여 발화 내용을 끌어냈는데, 이들은 사건의 내용을 서술하면서도 본인의 입장을 강조하고, 사건의 책임 소재에 대해 피해자에게 귀인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스토킹 사건보다 병합된 폭력 건으로 인해 징역형을 받았다는 점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방어적 성향은 신경증적 특성이 강하고 피해자의 감정에 무감한 무능형 가해자들이 자신의 범죄를 수치스러워하는 데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그것(스토킹)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온 게 아니라고, 그것만 갖다 놨으면 그냥 해결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거 이제 폭력 사건 때문에 여기 들어온 거예요(25, 무능형).

3. 어린 시절 및 사회화 과정

가. 아동기 애착의 문제

면담에 참여한 스토킹 가해자 중 상당수는 부모가 이혼했거나 친모와 결별한 경우가 있었고 새엄마(들) 밑에서 자랐다고 보고하였다. 친모와 결별한 경우 대개 초등학교 연령의 어린 나이에 이별한 경우가 많았으며, 친모에 대해 어렴풋이 애정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거나 크게 기억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회고하였다. 친모의 가출이나 이혼 사유는 대개 친부의 술과 폭력 문제, 친모나 친부의 외도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 어머님은... 결정적으로 어머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지. 어머님은 내 동생하고 이제 거의 다 커서 나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른 여자분 데리고 와서... 그래가지고 그런 것(집을 나간 것) 같아(25, 무능형).

> 부모님이 이혼하신 건... 그니까 아버지가 이제 좀, 구타가 좀 심하고, 어머니하고도 좀 안 맞고 하니까는. 어머니도 외도도 좀 많이 하시고. 마약도 하시고... 집에 봐 줄 사람이 없어 친척집을 전전했습니다(23, 거절형).

가해자 중 상당수는 가정의 분위기를 가부장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특히 아버지를 가부장적인 성향의 사람, 술을 먹고 오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되게 희생 많이 하시고 그러신 분으로 기억을 하고요. 아버님은 정말 옛날 좀 가부장적인 집, 자체가 되게 가부장적인 집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머님이 많이 희생도 하시고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정말 그냥 옛날 말로 해서 시집오면 이제 이 집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 부부 싸움하셔도 항상 손해도 많이 보시고 약간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친정에도 자주 가지 않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고.(9, 거절형).

아버지가 조금 엄하셨어요. 잘못을 하면 심하게 때린다든가 그런...좀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때리고 그랬어요... 아버지 술만 많이 드시고 오면 그런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 생각은 했는데 그게 아버지를 보고 자라다 보니까 그게 좀 쉽지가 않아(47, 무능형).

일부 스토킹 가해자들은 부모의 사랑에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을 거의 못 느꼈다고 응답하거나,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등, 부모를 거리감이 있고 어려우며 냉담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부모의 이혼 후 아버지의 여자 문제로 다수의 새엄마 밑에서 자란 면담대상자는 무관심하고 폭력적인 아버지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면담자: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면담대상자: 아버지요? 최악이었죠.

면담자: 어떤 점에서?

면담대상자: 여자 좋아하고, 폭력적이고, 정이나 사랑이 없고.

면담자: 아버지한테도 폭력을 당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면담대상자: 많죠. 맞으면서 컸으니까.

면담자: 왜 이렇게 폭력을 하셨던 거예요?

면담대상자: 주로 이제 새엄마들의 말에 의해서 많이 맞았죠. 사실 저희는 새엄마들이 쟤는 말을 안 듣네 어쩌네 이러면, 우리 얘기는 안 듣고 새엄마들 말만 듣고, 왜 너는 엄마 말 안듣노 이러면서 귀 잡고 때리고 주로 그런 식이었죠...아버지가 암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때 다 됐다고. 죽기 전에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그때 만났죠. 6학년 집 나가고 난 이후에.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죽을 때 돼서 내가 갔다 왔는데(60, 무능형).

나. 아동기 가정폭력에의 노출

일부 스토킹 가해자는 성장기 가정환경을 언급하면서 아버지의 폭력을 자주 회고하였다. 특히 폭력의 대상이 가해자의 어머니인 경우가 많았고, 자신의 폭력적 성향이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회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 아버지가 폭력을 많이 써서 그런가는 몰라도 나도 좀 폭력적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돌아서 또 보면 내가 마음 아파가지고 이렇게 그래 할 때도 많거든요. 많은데 좀 아버지 엄마를 때린 적도 내가 많이 봤고, 엄마도 뚜드려 맞는 것도 보고 우리 엄마, 생모,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7, 거절형)

가정폭력의 목격 경험에 대해 고령의 수형자들은 모두 이전 시절에는 으레 그랬다는 식으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었다(예: 근데 그렇게 해도(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려도) 옛날에는 그러려니 했잖아요, 25, 무능형). 폭력 가정은 친모가 가출하거나 양모 가정인 경우가 많았으며, 가정에 애착을 느끼지 못한 대상자들이 비행이나 가출을 결심하는 상황들이 함께 회고되었다.

> 이제 나는 혼자 아버지 밑에서 맨날 두들겨 맞고, 새엄마 눈치 보고. 그게 싫었고. 또 누나를 죽게 한 거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일부러 했지.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랑 살고 있는 게 너무나 괴롭고, 그러니까 집을 나가버렸죠(60, 무능형).

다. 청소년기의 가출과 비행, 일탈적 생활방식

면담에 참여한 스토킹 사범 중 상당수는 가출 경험을 보고하였다. 가출을 결심하게 된 계기로는 새엄마와의 불화, 아버지의 지속적 체벌과 폭력, 부모의 무관심이나 방임, 빈곤한 가정환경 등이 주로 거론되었다.

> 아버지가 어머니랑 일찍 헤어지시고. 새엄마가 들어와 가지고 오랫동안 아버지하고 살고 하니까 집에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5살에 집을 나왔어요(26, 분개형).

> 줄로 맞아본 적도 있고 묶여가지고 좀 심했죠 그런 적도 있죠. 그런 게 싫으니까 집도 뛰쳐 나오고 예민하고 중학교 때 비행 소년이었지(7, 거절형).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부모님이 저희들을 버리려고 했거든요. 고아원에다가. 이후 집을 나왔어요(1, 무능형).

초등학교를 다니다 집을 여러번 나갔다 들어갔다 하고... 이유는 동네 분위기가 그렇고. (그런) 애들이 그 주변에 많고 그래서... 집을 나와서 부랑자 단속에 걸려서 고아원 같은 데도 있었고. 나와서 구두닦이도 하고 그렇게 컸습니다(32, 거절형).

중학교 1학년 때, 도저히 아버지 폭력에 못 이겨서 나왔죠. 나와서 그 당시에 여동생은 친구 집에서 거주하고, 학교는 가야 되니까. 나는 학교는 못 갔어요 아버지 때문에. 학교도 못 가게 하고, 그렇다고 또 집에도 못 들어오게.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해요. 뭐 거리, 떠돌이 생활했죠(23, 거절형).

가출 이후에는 절도, 이른 시기의 성경험, 담배, 술, 불법적 직업에의 연루 등을 회고하였는데, 비행 또래들과의 삶에서 대리 애착을 느꼈던 것으로 분석된다.

가출하고, 그때 배고프니까 남의 것을 훔쳐 먹을 것이고 또 집 나은 친구를 만나게 될 것이고. 집 나온 친구 만나면 둘이서 뭐 하겠어 도둑질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가정적으로 결손이 있는 집 얘들하고 친하게 되더라고(7, 거절형).

이제 신입이니까 모르잖아요. 야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갖고 나갔는데 1년 만에 돌아왔어요. 이제 너 밥 먹고 자고 뭐 어디서 했냐? 그러면 이제 그냥 여관방요 그러니까 누가 델고 갔어요? 그게 저의 형이요. 그래갖고 저뿐만 아니라 7명이 다 그 형 따라갔거든요...(1, 무능형)

청소년 시기의 잦은 가출과 비행청소년과의 문제 행동 등으로 인해 학교 생활은 연속되지 못하고 자퇴, 퇴학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였다. 청소년기 사회화의 한 축인 학교생활이 중요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비행을 저지르는 또래 무리들과의 집단적 생활, 사고의 동조, 비행의 학습으로 일탈적, 반사회적 생활양식이 점차로 확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퇴했어. 학교 다니기 싫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집에 엄마도 별로 없고.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열일곱인가에 그만두고 열여덟 열아홉부터 내 혼자서 유흥업소 전전을 하게 되는 거지. 미성년자지만 영업소에 다닐 수..야매로 있는 거죠. 밥 얻어먹으려고 밥도 얻어먹고 돈도 벌고 옷도 사 입고 담배도 피고, 폰도 잡아야하니까(7, 거절형).

제가 맞고 그대로 후배들한테 해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일진회라고 하죠. 가입도 안 했는데 가입하는 식으로 운동장에 있으면 그냥 불러갖고 선배들이니까 막 후임들 인사해. 그리고 흥신소 같은데 가갖고 용인가 뭔가 그려야 되고 뭐 그런 거 제안도 받고.. 그 생각이 없는데요 하면 니 학교 끝나고 뒤쪽으로 온나. 뒤쪽이 다 공터거든요. 완전히 공터인데 거기에 다 막혀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데리고 가고 빠따 때리고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1, 무능형).

그 당시 때는 뭐 올바른 집도 없고, 먹는 것도 옳지 않고, 뭐 옆에서 나쁜 사람 있으면 저 시키가 시켜가지고 뭐 때려가지고 돈 뺏고. 이게 죄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행동하는(23, 거절형).

일부 가해자의 경우,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폭력 및 신체 학대를 당한 경험이 성인기의 폭력 행사를 정당화했음을 시인하였다.

그냥 많이 맞았습니다. 뭐 하루에 두세 번도 맞고, 괜히 때리고. 여기 보면 여기 칼자국이 되게 컸었어요. 이게 수술을 한 건데. 어렸을 때 열 몇 살 때 칼로 이렇게 맞고 그때... 제가 제 후배들 때리고 이럴 때도 우리 세계는 나도 나를 때린 사람들을 원망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칼로 이렇게 해도 그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니네도 내가 막 때렸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32, 거절형).

한편, 청소년기에 학교 폭력의 피해를 보고한 가해자도 있었다. 대상자가 회고한 학교 폭력의 수준은 장기적이고도 극심하였으며, 이후 타지역으로의 전학과 어머니의 교우관계 통제 및 억압으로 인해 본인의 성격 및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회고하였다.

(학교폭력 경험 회고) 거의 맞다가 기절하고 맞다가 기절하고 맞다가 기절하고 이래갖고 세상이 흑백으로, 세 번 이상 맞다가 기절하면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그것까지 경험을 해봤어요...(이후 성격)싫은 소리를 못해요 제가. 누구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말대꾸를 시작하게 되면은 저는 진짜 당황하는 게 보이니까. 그게 나한테 약점이 잡혔고 내가 중학교 때 그렇게 두드려 맞지 않았었나 이렇게 싶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나를 만만하게 생각할 그거를 안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72, 거절형).

라. 성인기 원치 않는 임신, 이른 결혼 및 자녀 양육

청소년기 가출 경험을 보고한 대상자 중 상당수는 동거 경험을 보고하였고, 그중 일부는 원치 않았던 혹은 계획하지 않았던 (파트너의) 임신과 출산을 회고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무능이나 생활고의 어려움으로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의지하거나 고아원에 입양시켰던 경험 등을 회고하였고, 스스로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 가장 큰 거는 제가 아무런 준비 없이 아이가 생겼으니까.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이었고. 군대 갔다 와서 생각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모든 부분에서 직업도 없었고 뭐 하는 일마다 돈을 못 받는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모든 일을 다 했었어야 됐고. 작은 아버님 일이 임금이 체불이 되면 아버님한테 가서 공장 일을 하다가 밤에는 아버지 트럭 가지고 폐지나 이런 것도 주으러 다니고 이렇게 제가 와이프 전처를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없었어도 이어가려고 애만 바라보고 이렇게 했는데...(9, 거절형).

> 군대 가기 전에 여자 만나가지고 애를 임신을 했다가 좀, 저는 좀, 뭐랄까 여자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군대 가기 전에 연애했던 여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낳았어요. 아들내미를 낳았는데..그래가지고 뭐, 내가 키울 입장도 안 되고. 가니까 애가 고아원에 입양돼 있는데 얘가 그 다운 증후군에, 입양 절차가 끝났다고,, (중략)... 그러다 나중에 애가 죽었다는 걸. 첫 애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저는 굉장히 상처가 컸었죠.(23, 거절형),

마. 성인기 마약, 퇴폐업소 및 불법업 종사, 윤락여성과 쉽게 접함

상당수 면담대상자는 성인기가 되어서도 경제생활에 일정한 패턴 없이 주로 유흥업에 종사하며 불법적 수단을 상당히 활용하였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 윤락녀들을 관리하였고 여성을 금전적 수단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였다. 법이나 규칙 준수에 대한 관념이 매우 미약하고 반사회적 환경 속에 살면서 절도, 마약, 도박, 퇴폐업, 조직폭력배 생활, 알콜중독문제 등 각종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력을 서술하였다.

> 마약은 20대 초반부터 했어요.. 그때 의정부에 백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미군 부대 양색시들이 그거(마약) 했어요. 그때 누나들이. 누나들한테 조금씩 사가지고 좀 했던 것 같아요.. 교도소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했습니다.. (32, 거절형).

> 진짜 착하게 살아야 된다 몸으로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고 폼 잡고 이러는 것들이 더 좋았으니까 뭐 그런 게 더 좋고 그러고 또 도둑질하러 다니다 보면 또 왕창 돈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생활들의 연속이었죠(7, 거절형).

> 소위 말해서 남자들이 말하는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그 유흥이나 유흥을 다 하고 다니고 항상 힘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에. 저희 동네에 있던 사창가에서 관리도 해보고 유흥업소 관리도 해보고 대부업도 해보고 (그게 불법이어도) 돈이면 다지 돈이면 다 돼 이런 생각이었죠(9, 거절형).

> 카지노 친구들하고 돈놀이도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흥업도 하고..(74, 거절형).

> 그 건달 형님들이 돈을 더 상납을 해놔라. 그러니까 장부상에 어떻게 해라 뭐, 이중 장부 만들고 돈을 더 받아라. 그니까 그게 들키는 바람에 제가 지금 OO 바닥에도 있지도 못하고... 온 천지 건달이 저 잡으러 다니니까(23, 거절형).

바. 성인기 군대, 직장, 결혼 등 사회생활에서의 불행, 부적응

정신과 진단 경력이 있는 한 스토킹 가해자는 자신이 범죄자가 된 것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사회에 부적응한 단초는 군대에서의 구타 경험이라고 회고하였다. 군대 내에서의 부당한 구타경험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것이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회고하였다.

> 군대 같은 경우에는 계급 사회다 보니까 선임이 뭐 얘기를 하면 무조건 해야되는 곳인데 그런 걸 제대로 안 한다고 때리고 하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우울증을 진단받은 게 군대에서 진단을 받기는 했었거든요. 군대에서 좀 이게 구타도 당하고 하니까 안 좋아서 군 병원에서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해서 그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중략)...저는 시킨 거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이 보기에는 조금 모자라지 않나 싶어서 그런 상황(구타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계속 쌓이고 쌓이고 하다가 한 번 폭발이 돼서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그런 행동(폭력 행동)이 반복된 것 같아요..(47, 무능형).

군 생활 중 불법행위를 언급한 스토킹 가해자도 있었는데, 방위 복역 중 저녁에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군 생활을 하지 못하고 병역 위반법에 걸려 교도소 생활을 했다고 회고하는 등 성인기의 일탈적 삶을 보여주었다.

> 방위하면서 형들이랑 같이 저녁에 술집 생활하면서. 근데 거기는 경제활동이라고 해서. 원래는 일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근데 그냥 동네니까.하다 보니까 그게 낮에... 저녁 일은 나가는데. 이제 군생활을 안 나가니까 그때 누락이 돼서. 고소를 당해서. 위반법에 걸려서. 공무에 관한 위반법에 걸려가지고 3년 교도소 살았죠(74, 거절형)..

다른 스토킹 가해자는 삶의 가장 큰 불행과 자신의 우울감의 원인으로 혼인 생활에서의 불화나 젊은 시절 부인과의 사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였다.

> 그러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생활하는 것부터 집사람(외국인)은 좀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했고. 한국어라든가 이런 것도 노력도 하지 않고. 거기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거의 결혼하고 한 3년간 매일 싸웠죠.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술도 그 당시에는 좀 많이 늘었고. 제가 누구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60, 무능형).

4. 사회정서적 기능

가. 충동적 성격 및 분노조절 문제

스토킹 가해자는 전반적 행동이나 대인관계 방식에서 충동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마약이나 도박, 잦은 가출, 비행적 문화에의 오랜 동참 등으로 인해 제반 생활스타일에 숙고가 없이 자극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성향이 오랫동안 자리 잡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면담자: 혹시 스스로 이렇게 충동적이라고도 좀 느끼시나요? 내 성격이 충동적이다. 약간 폭력도 행사하고 도박도 즐기고 약물이나 이런 거 하면 약간 충동적이다..
>
> 면담대상자: 그렇죠, 그런 면이 있어요. 보통 사고를 저지르고 혼자 후회할 일을 지금 해버린단 말이야.
>
> 면담자: 깊게 생각 안 하고..?
>
> 면담대상자: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순간적으로 저지르는 행동들이 있죠. 그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땐 하얘지지 머릿속이
>
> 면담자: 일단 행동하고 나서..?

면담대상자: 그런데 이제 그게 그래서 사고를 쳐가지고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봤죠. 사람들한테 인식도 나빠지는 거고(7, 거절형)

한편, 스토킹 가해자들은 분노상황에서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특히, 과거 성장 시부터 그러한 성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고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아 폭력적 행위로 연결되었음을 회고하였다.

그때는 좀 옛날에 그런 것 같아요. 화를 못 참고 막 즉각적으로 내 차도 내가 박고 열받으면 다 때려 박아보고... 누가 들고 쳐다보면 쳐다본다고 시비걸고, 받치면 받친다고 싸우고 뭐 그런 현상들이 많았죠, 그때는...(7, 거절형)

일부 가해자의 경우, 화를 못 참고 즉각적으로 분출하기보다 화를 지나치게 억제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적극적인 거절형 보다 소극적이고 내성적 성향의 무능형은 분노를 주로 억제하다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서술하였다.

화는 없어요. 혈액형 O형이라서 한 번 욱하면 끝까지 가는 그런 성격이라서 쉽게 쉽게 막 화내고 이러는 건 없어요...(그런데) 일단 폭발을 하면은 말릴 수가 없어요(1, 무능형).

또 다른 무능형 가해자도 스스로 분노를 삭히는 편이고 마지막 지점까지 참다가 관계를 포기했을 경우 폭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편이라고 서술하였다.

면담자: 화를 좀 참는 편이세요?

면담대상자: 난 많이 참죠.

면담자: 참다 참다가 이제...

면담대상자: 안되면 이제

면담자: 그게 한꺼번에 폭발하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이렇게 푸시는 편은 아니신가봐요?

면담대상자: 그때그때 풀지 않아요. 매번 참지(25, 무능형).

분노 억제 유형은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기보다 곱씹는 스타일로 갈등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술이나 약물을 빌어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처방식으로 인해 스토킹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꽤 경과한 교도소 내에서도 피해자를 향한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 화나죠. 솔직히 개인적으로 화나고 욕 나오고 이제..이용 당했다는 생각이 없으면 제가 사람이겠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방에 있으면 막, 그런 거 제가 생각을 안 하려고, 마음을 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 생각하거나 갸(피해자)와 관련된 이런 생각하면 터질 것 같죠(23, 거절형).

나. 육체적 싸움과 폭력적 성향

스토킹 가해자들은 육체적 싸움이 상당히 습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과 상반되는 주장으로 인해 말씨름하거나 논쟁할 때 육체적 다툼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 그렇게 또 싸움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다투기는 많이 다투었죠 안 맞으면 싸우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 언쟁하다가 싸움하고? 바로, 육탄전 하는 거고... 폭력적인 게 있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도 그런 걸 또 눈으로 내 주위에서도 많이 봤고 형들이든 선배든 많이 봤다.. 친구도..(7, 거절형).

이러한 폭력적 성향은 연인관계 내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빈번하게 드러나며, 스토킹 가해자의 대다수가 교제 중 폭력을 행사하는 근원적 이유이자 피해자가 이별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한다.

> (동거녀의 외도를 알게 되고) 여섯 번 다 때렸습니다. 그냥 정말 딸같이 생각하는 마음이라서. 그냥 잘못했으면. 아버지들이 아들이 잘못하면은 혼내기는 하지만 보내지는 않듯이(9, 거절형).

다. 내향적 성향, 의심, 타인에게 고민을 잘 털어놓지 않음

스토킹 가해자 중 일부는 내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면서 타인에 대한 의심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타인에 대한 의심은 선천적 성향이라기보다 가출이나 이른 결혼, 순탄치 않은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타인을 믿지 못하는 성향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의심이 많은 편입니다. 혼자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이런 스타일이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그랬습니다. 원래 그러지는 않았어요. 원래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없이 다 두루두루 잘 지냈는데 일찍 결혼하고 일찍 애를 낳고 일찍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당한 것도 있고 돈적인 부분이나 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을 조금 의심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9, 거절형).

특히 무능형 가해자의 경우에는 내향적 성향으로 인해 사람을 잘 못 사귀고, 의심이나 경계를 많이 하며 타인에게 고민을 잘 털어놓지 못하는 편이라고 대답하였다.

>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럴 때는 또 누구하고 부탁을 하든지 대화를 해가지고 또 소신이 얘기하고 막 이런 걸 좀 터놓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또 내 혼자 스스로 마고마 아이고 마 말지 이런 성격인 것 같고(40, 무능형).

>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와서 그런지, 살아오면서 여자, 남자한테 이용을 많이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돈도 많이 뜯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 자체를 안 믿어요.,,(중략)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이런 소리를 하는 걸 잘 안 좋아해가지고, 고민이 생겨도 안털어놓아요....다른 사람한테 쉽게 제가 마음을 못 열어요....(중략)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대신에 남한테 도움받는 것도 싫어하고. 대신 또 겁은 좀 많고, 사람을 잘 못 사귀어요(60, 무능형).

라. 정신과적 문제, 자살사고, 치료 중단

면담에 참가한 스토킹 가해자 중 일부는 정신과적 진단, 입원 혹은 통원치료 경험이 있었고, 일부는 경계성 지능으로 의사소통능력이나 사회적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스토킹 사건이 정신과적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는 치료가 단절되어 있거나 자발적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임을 보고하였다.

> 따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때(스토킹 사건이 있었던 때)는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등)약을 계속 안 먹고 오래된 상태다 보니까 이제 몸이 제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냥 전화를 걸고 해서...따로 이게 도움이 된다거나 뭐 그런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손이 먼저 전화를 하고 있었던 거고(47, 무능형).

일부 스토킹 가해자는 평소 죽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 성년기에 이를 때까지 연속되는 삶의 불행, 가족의 해체, 친밀한 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고립감, 자신은 버려지고 외로운 존재라는 생각으로 인해 자살시도가 이어졌다고 회고하였다.

> 응. 내가 자살을 세 번 시도했거든요. 그때 죽었으면 오히려 좋았을 걸. 근데 모르겠어요. 세 번 시도하다가 다 실패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안 죽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죽을 때가 아닌가보다... (60, 무능형).

마.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외도, 강압적 행동

면담대상자 중 상당수가 유흥업소에 종사한 경험이 많았는데, 이에 따라 여성을 존중하거나 연애감정에 충실하기보다 쉽게 생각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혼은 이른 가출로 인한 임신으로 촉발되어 사랑 없이 한 경우가 많았으며 배우자에게 충실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한 스토킹 가해자는 결혼관계에 있을 때도 남성은 으레 '그런 기질이 있다(9, 거절형)'고 생각했다면서 혼외관계를 자주 했음을 시인하였다. 한 무능형 가해자는 전 부인과의 이혼에 대한 원인으로 본인의 외도를 언급하는 등(25, 무능형), 결혼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외도가 작용한 경우가 많았다. 여성에 대한 경험이 많았어도, 이성과의 진실한 연애감정은 느낀 적이 없다(7, 거절형)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 그 하루 얘들(유흥소 여자) 자체가 또 스타일이 그렇고 쉽게 쉽게 만나지니까 쉽게 또 헤어지기도 합니다마는 이제 조금 그 얘들도 와일드 한 부분이 있거든요. 즉흥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육체적인 그런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나이트 클럽 가서 어디고 가서 만나는 그런 거지(7, 거절형).

무능형의 경우, 여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말에 유달리 소극적인 대답을 하였고,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한 무능형 가해자는(1, 무능형)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성향이 강하며,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도 거짓말로 둘러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범죄와 관련한 인식에 대해서는 과거의 범죄든, 현재의 스토킹 사건이든, 교정시설 내에서의 폭력 건이든 간에 모두 범행을 부인하거나 최소화하는 경향을 보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을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 작동한 방어기제인 것으로 추론된다.

면담자: 혹시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다면은 근데 그런 여성한테 혹시나 거절당하는 거 이런 걸 평소에 두려워하시는지?

면담대상자: 그런 건 없어요

면담자: 그런거는 없으시고, 거절 당해본 적은 없어요?

면담대상자: 8번

면담자: 8번 정도, 거절 당했을 때 좀 어떠세요?

면담대상자: 싫어? 그래 알았어. 그 정도

면담자: 열받거나 분노하거나 심하게 낙담하거나?

면담대상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해 하고 나 너 좋아해 했는데 남자친구가 있다. 그러든지 말든지

면담자: 그렇게 쉽게 그냥 포기 그냥

면담대상자: 그냥 포기죠.(1, 무능형)

일부 가해자는 여성에 대한 인식에서 편협한 사고를 보였는데, 여성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으면 제 사람 아니라고 생각한다거나, 우리나라 여성들이 좀 유별나다고 생각하며, 페미니스트는 불편하다는 의식을 비추는 등 남성 위주 혹은 가부장적 사고를 보이기도 하였다. 나아가 한 가해자의 경우 이성에게 접근할 때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칼을 들고 위협하는 등' 강압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음을 회고하였다.

(제가 접근한 여자가) 같은 OO학교 학생이었어요. 학교 수업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잠깐 얘기하자 해가지고, 칼을 꺼내가지고 너 나하고 안 사귀면 나 죽을 거다. 이런 식으로.. 칼들고 위협했었거든.. 사귀자.(60, 무능형).

위 대상자의 경우 면담 중에 본인의 젊은 시절 연애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성에게 거절당했을 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있었고 그때도 집을 찾아가면서 스토킹을 했음을 인정하였다(60, 무능형). 또한 여성에 대한 성적 욕구가 강한 경우 성폭력에 대한 욕구도 있었음을 인정하였으며 그 원인으로는 아동기 시절 아버지의 잦은 외도로 생긴 여자에 대한 불신, 연애관계의 실패에서 생긴 불만으로 여성에게 세심한 접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육체적 관계에만 몰두하는 편이라고 회고하였다.

면담자: 혹시 평소 사회에 있을 때도 약간 그런 게 성적인 욕구가 있었으면... 여성을 딱 봤을 때,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봤을 때, 그런 생각도 좀 속으로 많이 하시기도 하셨나요? 약간 강렬한... 이게 좀 심한가? 이런 정도 수준으로?

면담대상자: 내 스스로 봤을 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단지 행동을 안 했을 뿐이지. 뒷통수 때릴까 이런 마음을 자주 먹었던 것 같은데?

면담자: 뒤통수를 때려서?

면담대상자: 그러니까 기절시키고 강간을 할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면담자: 근데 실제로는 안 하지만?

면담대상자: 네. 그런 생각은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중략)서로 알콩달콩 이렇게 주고받는 정신적인 교류 이런 거에게 별로 환상이 없죠. 그냥 남자 여자 뭐 있나. 그냥 섹스하고 사는 거죠(60, 무능형).

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미흡

스토킹 가해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에 미흡한 경향을 보였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원인이 되는 문제에 집중해서 해결하기보다, 술이나 마약에 탐닉하거나 곱씹으면서 삭히다가 술 등에 의존해 폭발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해소 방식은 문제 해결형 대처방식이 아닌, 오히려, 폭력성이나 분노를 증폭시키면서 집착과 의심을 심화시킬 수 있는 방식인 만큼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훈련할 필요가 있겠다.

> 스트레스 해소를 거의 하지 않는 편이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일만 하는 편입니다. 일만 하다 보면 이제 잊혀지기도 하고. 그게 나중에 되면 폭발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정말...네...나중에 되면 폭발하긴 하는데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은...이렇게 연결될 것 같은데 술 먹으면서 폭발을 다 시켜버리는 것 같은데(9, 거절형).

> 군대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술로 풀고 술을 또 먹다 보니까 좀 기분이 욱하는 게 있었는데.. 성격이 참고 참고 하는 편이다보니, 그래서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먹는 거나 술로 푸는 편입니다(47, 무능형).

일부 가해자는 고민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나눌 대화의 상대가 거의 없거나, 있어도 털어놓지 않는 편이라고 대답하였다.

> 친한 사람들 만나면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친하면 니가 뭔데 그래서 욕도 하고 막 하면서도 제 고민은 깊은 속마음으로 이렇게 털어놓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고민이 있어도 절대 털어놓고 그러진 않아요(26, 분개형).

5. 스토킹 범죄 진행과정 및 피해자에 대한 인식

가. 스토킹 범죄 진행과정

1) 갈등상황과 폭력적 대처, 알코올의 매개

스토킹 가해자들의 범죄 진행과정에서 먼저 드러나는 주제는 갈등 상황의 고조와 폭력이었다. 거절형의 경우 동거 과정에서 생활비, 외도에 대한 의심, 사업상의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게 되고 갈등 상황에서 폭력의 사용이 이별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 돈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 그러다가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보면 또 내가 무슨 폭력.. 다른 걸 때려 부시고 이러다 보니까 신고를 하게 된 거라. 그게 경찰서에 이제 신고가 돼가고 여성청소년계에 여청계의 선생님이 담당 형사님이 그러면 오라 해서 내가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그러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접근 금지를 받고 집에 가서 5일 동안 생각을 한 일주일인가 5일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이 나 죽겠는 기라요. 이게 누가 있어서 이러는 건가 혹시 다른 놈이 하나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나쁜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7, 거절형).

연인관계에서 폭력을 사용할 때 음주 상태인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면담대상자들의 음주 습벽을 탐색해 보니, 원래 알콜 남용이나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갈등 상황에서 음주로 도피한 상태에서 폭력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무능형의 가해자도 스토킹 행위가 비롯된 원인으로 알코올 문제를 지목하는 경우가 많았다(예: 25, 무능형).

2) 이별요청시 배신 감정, 외도에 대한 의심

스토킹 가해자는 이별 요청을 받았을 때, 연인관계 당시 자신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도움을 준 사항에 대해 배신의 감정을 느꼈으며 이별 요청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별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는 전 연인의 외도에 대한 의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는데, 이는 특별히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스토킹 가해자가 느끼는 상황적 의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다. 면담대상자 대부분이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의심이 분노감을 폭발시키며 폭력적 성향을 더욱 부추겼다고 보고하였다.

> 결국 그렇게 분노 분노하다 못 참고 찾아갔어요. 그때는 감정이 이 사람이랑 다시 되고 다시 뭔가 회복 관계가 회복되고 싶었다기 보다, 깨 부시고 싶더라고 작살내고 싶더라고.. 내가 극단적인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누군가가 있겠지..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7, 거절형).

3) 피해자에 대한 미련: 거절형의 경우

한편, 일부 거절형 스토커의 경우 지속적인 접촉이나 연락의 이유로 분노나 보복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들은 아직도 애정의 감정이 남아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 면담대상자: (스토킹을 했던 이유가) 미련 때문인 거 같아.
>
> 면담자: 피해자분은 더 이상 이제 접촉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데도 그걸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
> 면담대상자: 네.
>
> 면담자: 그게 피해자분한테 지속적으로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를 유발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그건 상관없으세요?

면담대상자: 그런 편지에 겁을 먹고 그럴 여자가 아닙니다(32, 거절형).

4) 외로움과 성적 욕구, 상대방의 감정 오인

한편, 스토킹 가해자들이 전 연인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집착했던 이유로 외로움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기 성장환경에서 지속적 애정과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친모의 부재로 애정이 결핍된 상태에서 성인기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대상에게 끌리는 것으로 보인다.

면담자: (피해)여성분한테 왜 마음을 이렇게 확 주신 거예요?

면담대상자: 일단 모정? 그런 게 사람을 좀 이렇게. 어머니한테 못 받은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같이 있는 거 자체를 좋아하는.

면담자: 같이 있는 거 자체가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있는 거. 그 기저에는 대상자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머니 정이 좀 고팠던 그 부분이 좀 큰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

면담대상자: 네(74, 거절형).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음란성 문자를 보낸 무능형 가해자도 주요 이유로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서였고, 외로움과 성적 욕구를 주요 원인으로 서술하였다.

면담자: 왜 그렇게 접근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외로워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은 이런 성적인 욕구가 있어서 그러신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면담대상자: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겠죠(25, 무능형).

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

1) 범행 인정, 범죄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면담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라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된 측면도 있고 형사 처벌에 대한 반응으로 감정적 정리가 된 경우들이 많았다. 피해자에게는 사고를 쳐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폭력 행사에 대해서도 후회하는 발언을 하였다.

> 미안하죠. 이런 사고도 안 겪게 해줄 수도 있었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거는 정말 진짜 놀랐을 거예요. 내가 칼 들고 올라갔는데 침실에 자고 있는데 문 열고 가서 어디 있어 차고 들어 댕겨서 칼 들고 이래 하니까 그런거 생각하면 조금 미안하지(7, 거절형).

> 처음에는 저도 들어왔을 때 '씨발 이게 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감이 되는 거죠. 되게, 쟤(피해자)가 나로 인해서 느꼈을 그 고통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때려서 멍 들고 그게 고통이 아니라, 적어도 되게 엄청난 공포심, 나도, 저도 알았잖아요. 중학교 때 애들한테 그렇게 맞고 다녀서 그에 대한 공포감이 뭔지 알았잖아요. 때려서 멍 들면은 그냥 그거 시간 지나면 나으니까 그만이에요. 근데 감정에서 그 공포심으로 해갖고 걔는 어떤 형태로든 트라우마가 남았을 거예요 분명히(72, 거절형).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감정이 있는 경우 형기가 죄에 비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 이만큼 1년 6월이지만 그 내가 한 행위는 좀 나빴어요.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나쁜 거야. 그 사람을 해하려 했던 거는 나쁜 거지 아예 나쁜 거지. 그냥 헤어지면 되지. 뭣이라고, 내가 그러합니까. 내가 나가면은 진짜 순한 사람처럼 누가 뭐라하면 예. 이러고 살려고요(7, 거절형).

2) 범행 축소, 피해자에게 해를 끼친 게 크게 없음

일부 무능형 가해자는 스토킹 사건의 일반적 인식이나 다른 사람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객관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자신의 스토킹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범행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에게 해를 끼친 게 없다고 축소하거나, 피해자가 오인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 폭력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게 같이 따라와서 붙은 거지. 이 사건이 병합이 된 거예요. 저는 심리적으로 그분들한테 물론 미안하지만, 크게 피해를 끼친 게 없어요. 내가 따라다니면서 뭐 지가 스토킹이라고 그러면서 사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tv에서 보고, 그런 식은 아니었었고. 그냥 주로 문자 내지 이런 데(25, 무능형).

> 거기서 절도를 했었고 절도를 하고 혹시 신고를 했을까 봐 연락을 계속했던 거고. 그냥 계속 그냥 아무 말 없이 전화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47, 무능형).

특히 무능형 가해자의 경우 가해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표하였는데, 자신의 문자 전송에 대한 피해자의 거절을 무시하는 성향을 보이거나 피해자가 지인이나 경찰을

부른 것을 다 한통속이라고 표현하고, 피해자에게 가졌던 이성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듯 상황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

> 나도 술 먹다가 이 여자(피해자)를 몇 번 봤어. 근데 공소장에는 내가 조금 기분 안 좋은 게 있어서 욕을 한 그런 것도 있어. 휴대폰으로 내가 문자로 욕을 한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 여자하고 내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스토킹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내하고는 거의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돈 문제가 있어서 내가 주인을 만나러가고 그다음에 또 경찰서에 또 신고를 해줘가지고 자꾸 그 사람(피해자)이 온다. 내가 알고 있는 10년간 알고 있는 본 주인을 알고 만나러 갔는데, 항상 나타난 사람이 그 사람(피해자)이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자꾸 얽히게 됐다 이 말입니다....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내가 볼 때는 다 한통속이라 생각되고 막 성이 나니까(화가 나나니깐) 자꾸 피하고 자기가 커버를 하고 경찰 부르고 막 이래 하니까 저는 더 제 나름대로는 폭발이 되는 게지 심적으로(40, 무능형).

피해자에게 억울함을 가지고 있고 형사처벌 과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형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 저한테 한 처벌예? 저는 억울하다 생각되지요. 저는 무슨 큰 죽을 죄를 지었다고 제가 2년을 제가 받아야 되고 억울하다 생각 됩니다(40, 무능형).

6. 본인이 지각하는 가장 큰 문제 및 프로그램 니즈

가. 본인이 지각하는 문제

1) 알코올, 즉흥적, 충동적 사고

면담에 참여한 다수의 스토킹 가해자는 본인의 가장 큰 문제를 '술'이라고 정리하였다. 가해자들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에 있거나 중독 수준으로 음주를 자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스토킹 가해자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술이나 마약에 탐닉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술한 바가 있다. 알코올의 빈번한 섭취와 폭음, 그리고 과도한 알콜 사용에서 비롯된 즉흥적 사고, 성찰이나 숙고 없는 충동적 사고의 문제점 및 개선 방법 등은 프로그램 내용으로 반드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가 똑바르게 올바르게 생각해야지. 술을 좀 줄이고. 내가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되새기면서 반성을 해야죠(25. 무능형).

일단 제가 술이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술은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내가 또 냉철하게 한번 생각도 해보고 이랬을 텐데, 그냥 술만 먹으면 그냥 거기 한번 꽂혀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일단 제 잘못이고...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런 게 연계가 되고 또 그 동안 술도 먹고 이런 게 또 취해다 보니까 그게 또 꽂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막 집착이 지더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누나가 있다거나 형님이 있고 이러면 주변에 보면 말리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혼자 고립이 돼 있는 상황이지 그때 당시는 마음적으로...그때 당시에 조금 술을 그냥 하루도 안 빠지고 먹을 정도로 좀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됩니다(40, 무능형).

술만 끊을 수 있다 그러면 교육은 충분히 받을 생각이 있습니다(47, 무능형).

나는 젊었을 때는 그걸 못 느꼈거든요? 근데 좀 충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집사람과 싸울 때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니까, 나도 모르게 이혼하자 소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 돌아가면 후회하지. 이건 아닌데...중략...(스토킹도) 후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 순간에 긍정적으로 나도 모르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죠. 재(피해자)도 나 좋아하는 거 맞다라고 생각했죠.(60, 무능형).

2) 집요한 성격, 미련의 감정

면담에 참여한 다수의 스토킹 가해자가 공통으로 본인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집요한 성격, 집착'이었다. 스토킹 피해자의 이별 요청 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과 원망, 배신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집착적이고 집요한 성격에서 기인하는데, 가해자들은 평소 부정적 사안에 대해서 곱씹는(ruminative) 인지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절형 스토킹 가해자 중 상당수는 이별 요청 후 상대에게 미련의 감정을 느꼈다고 보고하였으며, 과거 관계에서 느꼈던 가족 같은 친밀감을 잊지 못하여 미련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이 결국 보복의 감정으로 전환되는 것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용되었다는 데에 대한 억울함(예: 피해자의 돈 문제를 해결해 줌, 자신이 피해자의 아이들을 돌봐줌, 피해자의 집을 수리해 줌 등), 자신과 이별의 원인이 피해자의 외도라는 의심 등 부정적 추론으로 인해 분노의 감정이 증폭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는 제 가장 큰 문제가 예민하고 집요한 성격이라고 봅니다. 저는 제 사람, 제 사람 아닌 사람이 나눠지는 사람인데. 이거보다 제일 큰 거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제 분류 안에. 그러면 제가 그만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든 뭐 제가 두 대를 맞더라도 한 대라도 해야 된다라는 성격이 있고.... 그러다보니 제가 그 친구 집을 어떻게 알아냈겠어요. 그 친구 주위 집이 빈 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고 어떻게 계약을 하고 했을까요?(9, 거절형).

그냥 고집이죠. 미련이고. 지기 싫어하고 어떻게 이겨보려고 그러고(32, 거절형).

미련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헤어지면 마음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74, 거절형).

3) 욱하는 성격, 분노 조절의 문제

한편, 다수의 면담 참여자는 본인의 가장 큰 문제로 욱하는 성격을 많이 언급하였다. 재범 방지를 위해서 분노 조절 훈련과 갈등 상황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심리적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가 봤을 때 저한테 큰 문제는 저한테 욱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26, 분개형).

그러니까 술 먹고, 소주 사러 가다가 떨어지니까, 한 병 더 먹을까 하고 사러 가는데, 사러 간 김에 (피해자를) 보자, 보러 갔다가 꼬라지 보니까 열 쳐받는거야. 야 이럴 거면 (빌려간) 돈이나 주고 뭐 하는 대로 해라. 돈도 안 주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고. 뭐, 지랄하면서 막 욕 날아오고, 나는 근데 솔직히 욕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야는 욕을 달고 살아요. 열 안 받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화딱지 나가지고 집에 전기 끊고 막 해코지하고 한 것도, 어찌 보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진짜, 막 확 짤라뿐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약이 올라서 그런 건데(23, 거절형).

4) 타인에 대한 과한 의심, 경계

면담에 참여한 스토킹 가해자들은 타인에 대해 대부분 잘 믿지 못하고 경계하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성향이 병적으로 발전하고 고착되었을 때 일부 편집형 성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스토킹 가해자 중 편집형 성격장애가 일부 있음을 보고했고, 지나친 의심이나 타인에 대한 경계, 평가절하 등이 면담대상

자들의 발화에서도 보고된 만큼, 대인관계의 소통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면서 공감 능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 문제점이 있다면... 이제...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그런, 의심이나 이런 거는 좀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없애야 사람들하고도 막 그렇게 뒷감정을 가지지 않고, 사람들한테 온전히 그냥 이렇게 만나서 어울려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적으로 뒷생각하고 막 '저 새끼 나한테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거를 자꾸 염두에 두다 보니까, 가까워질 수 있음에도 나도 모르게 선을 긋고, 다음에 또 한 발짝 다가갔다가 또 선을 긋고 그러니까(72, 거절형).

나. 교정시설내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니즈

1)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인식

면담에 참여한 스토킹 가해자들은 대부분 아직 스토킹 심리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대신 교정시설 내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나, 알코올, 도박 치료 등에 참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술하였다. 교육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막연하게나마 긍정적으로 회고하였으며, 거실을 떠나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활동하는 것이 흥미롭다는 반응이었다.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마음갖기', '약물교육' 등을 가장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회고하였다.

> 다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이번에 애들 다른 친구들도 한 우리가 28명 30명 가까이 되는데 다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구나 싶어 보고(7, 거절형).

> 재밌고, 모르는 것도 알게되고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 만나서 소통도 하고.. 약물교육이 도움이 되었구요(32, 거절형).

> 마음을 자꾸 조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게 돼야 될 거.. 그러면은 나는 100감사 그런거 참 좋더라고. 감사한 마음을 자꾸 가져야 내가 못난 게 떠오르고 하니까 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우리를 갖다가 이런 걸 참여시켜가지고 참 우리 수형자 하나 하나를 다 이렇게 나라에서 신경을 쓰는구나.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 하찮은 거는 아니지만은 100감사에서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7, 거절형)

2)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반면, 비슷한 교육 내용에도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대상자도 있었다. 이는 강사의 전달력이나 진행 방법에서 오는 차이, 혹은 대상자의 교육 니즈에서 오는 차이일 수 있겠다.

> 나는 솔직히 말해서 감사 프로그램.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뭐 백감사 1일 오후감사 하는데. 별로 처방이..감사할 게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진짜 없는 말을 지어내려고 하니까 머리 아프더라고. 그래도 억지로 하긴 했어요. 하긴 했어요 왜 그거 하면은 인센티브를 준다니까...(60, 무능형).

교육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내용이 없다거나 그냥 막연히 좋았다며 형식적으로 답한 경우도 다수였는데, 이는 실제로 교육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잘 회고 못하며, 종합적 해석이나 의미 부여 등 추상적 정신 기능이 부족한 수형자들의 특성이기도 하겠다. 한편,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된 화상교육은 거의 부정적 평가가 많았는데 현장에서의 라포형성이나 집단 내의 역동이 없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 기억에 남는 내용이 그때는 코로나 이것 때문에 교육을 많이 안 하고, 그냥 거의 스크린 교육 거의 그렇게 했어요. 강사분들도 많이 오시지도 않고, 배려는 안 했어요.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받을 때 무슨 교육이나 우리가 공부 배고는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건가 싶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그랬어요(25, 무능형).

3) 상담에 대한 욕구: 본인의 말을 들어주는 것에 대한 욕구

면담대상자들은 비록 연구 목적이지만 심층면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많이 표시하였다. 상담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 개인적 상담으로 간주하는 대상자들도 있었고, 향후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개인 상담의 기회를 가지고 싶다고 욕구를 표현하였다.

> 근데 이게 보면은 (오늘 면담이) 내 과거부터 현재 지금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거 전부 다 질문 받고 내가 답변을 드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 이제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일대일로 들어주는 상담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수치심도 가질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25, 무능형)

>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지속적인 상담 같은 것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일대일 상담..여러 명이서 교육을 받게 되면 일대일로 대화하는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일대일로 하게 되면 개인적인 속마음 같은 것도 털어놓을 수 있고 그게 많이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47, 무능형).

> 면담대상자: (면담 종료 시점에) 그런데 이번 상담 이번에 이게 끝인가요? 더 있어요?

> 면담자: 이게 끝입니다. 이게 일회성이라서... 너무 좀 길으셔서

> 면담대상자: 아뇨아뇨 저는 좋은데? 너무 좋은데(72, 거절형).

4) 범죄의 계기에 대한 고찰 필요

면담대상자들은 본인이 범죄자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계기에 대해 짚을 수 있고, 대안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 이 사람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런 행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사건이 터지고 구속돼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항상 손가락질 받으면서 너는 이게 이게 잘못됐어 이게 잘못됐어라고 지적만 받고 그거에 대한 형을 받고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이유는 있었지 않을까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와버리니까 좀 그런 복수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제가 경찰서에서도 많이 만나봤었거든요. 근데 복수심이 굉장히 다들 많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복수심도 많고. 저도 지금도 제 시선이 아니라 피해자 시선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답이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고. 내가 여기서 뭐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ppt가 아니라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어떤 계기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도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해주는 이런 상담이면 좋겠습니다(9, 거절형).

교육의 방식이나 관점에 있어서 피해자 입장 중심으로 교육을 하기 보다 자신들의 문제 행동을 고찰할 수 있는 교육 내용에 중점을 맞혀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 이게 너무 여러 번 들어왔다고 무조건 저희만 나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데 너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대부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자주 들어오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 이런 경우들(47, 무능형).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기계식 강의보다는 개인별로 스토킹 행동을 하게 된 이유, 스토킹 행위자의 심리, 스토킹 범죄의 유발요인 등, 스토킹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탐색이 교육 내용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지금 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그 교육 내용이 이런 식이라면 저는 솔직히 재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교육 내용이 '스토킹하지 마세요. 하면 처벌받습니다. 징역이 얼마' 이런 뻔한 내용이면 저는 솔직히 또 할 것 같아요... (중략)...어찌 됐건 간에 니가 이 행동을 했으면 그에 대한 이유는 어딘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반작용 심리라고 해야 되나 그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순전히 그 사람만 알고 있겠죠. 그거는 상담하는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끌어내게끔 해서 이게 실제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게 문제여서 작용했었지 않을까, 이게 너한테 좀 되게 안 좋은 요인으로 작용해서 이게 결국은 스토킹이라는 그걸로 나타났구나(72, 거절형).

5) 수형생활 초기에 교육 시작 필요

일부 스토킹 가해자들은 수형생활 초기에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나긴 수형생활 중 성찰 없이 지내는 것보다 초기에 교육해서 자신의 행동을 고찰할 기회를 주고, 출소 전에 다시 한번 교육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서술했다.

>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을 초반에 받아야지 자기가 또 반성도 하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인식을 하고 생각하면서 조금, 집에 다 갈때 돼서 받고 내가 마음을 다지는 것보다는 수형생활을 하면서 기간에 내가 반성도 하는 시간이 조금 있고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하면서... 지가 교육 받은 거에 대해서 이래 했기 때문에 한번 반성할 시간도 되고 자숙의 기간도 조금 길어진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여 치이고 저 치고 하다가 집에 다 갈 때 이제 받고 하다 보면 안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40, 무능형).

6)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일부 스토킹 가해자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가부장적 사고로 여성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제안하였다.

> 여성을 가볍게 보고 여성을 그냥 단순히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그런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60, 무능형).

7. 종합 분석

심층면담 결과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스토킹 가해자의 특성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니즈를 종합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스토킹 범죄자의 어린 시절 및 가정환경은 아동기 양육자와의 불안정한 애착 형성, 가정폭력에의 노출로 가정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가 많았다.

[표 2-3-3] 심층면담 주요 조사 결과

구분	심층면담 주요 조사 결과
스토킹 범죄자의 어린 시절 및 가정 환경	- 아동기 애착의 문제 - 아동기 가정폭력에의 노출 - 청소년기의 가출과 비행, 일탈적 생활방식 - 성인기 원치 않는 임신, 이른 결혼 및 자녀 양육 - 성인기 마약, 퇴폐업소 및 불법업 종사, 윤락여성과 쉽게 접함 - 성인기 군대, 직장, 결혼 등 사회생활에서의 불행, 부적응
스토킹 범죄자의 사회정서적 기능	- 충동적 성격 및 분노조절의 어려움 - 육체적 싸움과 폭력적 성향 - 내향적 성향, 의심, 타인에게 고민을 잘 털어놓지 않음 - 정신과적 문제, 자살사고, 치료 중단 -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외도, 강압적 행동 -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미흡
스토킹 범죄 진행 과정	- 갈등상황과 폭력적 대처, 알코올의 매개 - 이별 요청 시 배신 감정, 외도에 대한 의심 - 피해자에 대한 미련: 거절형의 경우 - 외로움과 성적 욕구, 상대방의 감정 오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	- 범행인정, 범죄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 범행축소, 피해자에게 해를 끼친 게 크게 없음
본인이 지각하는 가장 큰 문제	- 알코올, 즉흥적, 충동적 사고 - 집요한 성격, 미련의 감정 - 욱하는 성격, 분노조절의 문제 - 타인에 대한 과한 의심, 경계
교정시설내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니즈	-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인식 -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상담에 대한 욕구: 본인의 말을 들어주는 것에 대한 욕구 - 범죄의 계기에 대한 고찰 필요 - 수형생활 초기에 교육 시작 필요 -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가정 내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 대상자들은 청소년기의 가출과 비행으로 이어졌고, 또래집단과의 일탈적 생활 속에서 성인기에 원치 않는 임신이나 이른 결혼, 조직폭력의 경험, 유흥업이나 불법업의 종사 등 부적응적 생활방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스토킹 범죄자의 사회정서적(socio-affective) 기능을 보면, 충동적 성격과 분노조절의 어려움, 육체적 싸움과 폭력적 성향이 주요 문제로 보고된다. 또한 무능형 가해자들을 중심으로 내향적 성향이나 타인에 대한 의심, 정신과적 문제 등이 주요 문제로 지목되었다. 청소년기 건전한 이성관을 확립하지 못한 결과로 여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외도를 일삼거나 상대의 거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강압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스토킹 범죄의 진행과정에서 자주 등장한 주제는 갈등 상황의 반복적 등장과 이에 대한 폭력적 대처, 그리고 알코올이 매개되는 것이었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자들 스스로 본인이 지각하는 가장 큰 문제로 알코올과 욱하는 성격, 분노조절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교육프로그램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이별 요청에 대한 배신감, 과거 관계를 다시 곱씹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부당함, 원망감, 혹은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의심 등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감정을 더욱 배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형의 경우, 보복의 감정과 함께 미련의 감정이 범죄 진행 과정에서 많이 등장하였으며, 무능형의 경우 외로움과 성적 욕구, 그리고 상대방도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라는 비현실적(망상적) 사고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보아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에서 그들의 인생사나, 사건의 계기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정리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스토킹법 위반으로 받는 처벌을 강조하기보다, 범죄의 계기를 고찰하고 개인별로 스토킹 행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정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유흥업소 여성과의 경험 등으로 왜곡된 이들의 여성관에 대한 개선 역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가급적 교육은 수형생활 초기에 시작하고 기회가 있으면 수형생활 마무리 시점에 부스터 세션(booster session: 유지보수교육)을 제공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한다.

경찰단계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현황 조사

한 민 경

제3장

경찰단계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현황 조사

제1절 | 초점집단 면접조사

1. 조사 개요

가. 조사 배경 및 목적

경찰은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거나 고소 등을 통해 스토킹범죄 사건을 인지함으로써 형사사법기관 중 가장 먼저 스토킹 피해자 및 가해자와 마주한다. 스토킹범죄가 살인, 감금, 강간 등 중한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스토킹 피해자를 마주하는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경찰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 현황을 분석할 실익 또한 인정된다고 하겠다.

한편, 본 연구를 수행하는 기간 중인 2023년 6월 21일에 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3년 7월 11일 시행되었다.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로 대표되는 경찰단계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는 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스토킹처벌법 개정은 경찰단계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있어 적지 않은 변화를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전후 경찰단계에서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관련 현황 및 쟁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초점집단 면접조사는 담당 경찰관들의 발화를 통해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 경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피해

자 보호조치와 관련한 쟁점 및 개선방안을 확인하는 동시에, 다수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지를 개발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 및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뒷받침하는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나. 조사 대상 및 방법

현재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크게 관여하고 있는 경찰관은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관(이하 지역경찰관), 스토킹전담경찰관, 여성청소년과 내 수사관(이하 여청수사관)의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21] 지역경찰관, 스토킹전담경찰관, 여청수사관은 경찰서 내 소속부서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의 역할도 상이하다. 지역경찰관은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불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스토킹 가해자를 현행범인 체포 또는 긴급체포할 수 있다. 소속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는 스토킹전담경찰관은 관할 지역 내 스토킹사건 및 피해자 보호조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후 콜백(callback)'이라 불리는 스토킹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여청수사관은 스토킹사건을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이처럼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마다 수행하는 역할이 기능 내지 부서별로 구분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경찰단계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현황을 조사함에 있어서도 지역경찰관, 스토킹전담경찰관, 여청수사관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 면접조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역할을 기준으로 지역경찰관, 스토킹전담경찰관, 여청수사관의 셋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지역경찰관의 경우 4교대 또는 5교대로 교대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방문하여 휴게시간에 같은 근무조(팀)에 있는 복수의 인원을 면접조사 하였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은 경찰서

21) 스토킹사건의 복잡성, 적용법조의 경합 등을 감안하여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합동회의가 개최되는 등 형사과 소속 형사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강력사건으로 발전되었을 때의 경우에 한하며 이 때에도 여성청소년과에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담당한다. 이와 같은 경찰실무를 고려하여 경찰단계에서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현황 및 쟁점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대상에서 형사는 제외하였다.

당 1~2명씩 담당하고 있는데, 광역 시·도 경찰청 단위로 3~4명을 면접조사 하였다. 한편, 여청수사관의 여성청소년과 내 소속팀은 크게 여성청소년수사팀(이하 여청수사팀)과 여성청소년강력팀(이하 여청강력팀)[22]으로 나뉘는데, 스토킹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는 드문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의 스토킹 사건은 여청수사팀에서 담당한다. 한 팀에는 통상 경감급 팀장 1명, 팀원 2~5명이 속한다. 이와 같은 소속 및 근무 상황을 감안하여 여청수사관 대상 면접조사는 여청수사팀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팀별로 팀장 및 팀원 2~4명을 대상으로 휴게시간 중 진행하였다. 아울러, 초점집단 면접조사는 참여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표 3-1-1] 초점집단 면접조사 참여 경찰관 특성

연번	구분	회차	소속 경찰서	성별	연령대	총 근무기간
1	지역경찰관	1	A	남	30대	5년 이상 10년 미만
2	지역경찰관	1	A	남	20대	5년 이상 10년 미만
3	지역경찰관	1	A	남	20대	3년 이상 5년 미만
4	지역경찰관	1	A	여	20대	3년 이상 5년 미만
5	스토킹전담경찰관	2	B	남	50대	20년 이상
6	스토킹전담경찰관	2	C	여	40대	10년 이상 20년 미만
7	스토킹전담경찰관	2	D	여	30대	5년 이상 10년 미만
8	스토킹전담경찰관	2	E	여	20대	3년 이상 5년 미만
9	여청수사관	3	F	남	30대	5년 이상 10년 미만
10	여청수사관	3	F	남	30대	5년 이상 10년 미만
11	여청수사관	3	F	여	30대	5년 이상 10년 미만
12	여청수사관	3	F	여	20대	5년 이상 10년 미만
13	지역경찰관	4	G	남	30대	5년 이상 10년 미만
14	지역경찰관	4	G	남	30대	5년 이상 10년 미만
15	스토킹전담경찰관	5	H	여	40대	10년 이상 20년 미만
16	스토킹전담경찰관	5	I	여	30대	5년 이상 10년 미만
17	스토킹전담경찰관	5	J	남	30대	3년 이상 5년 미만
18	여청수사관	6	K	여	50대	20년 이상
19	여청수사관	6	K	남	40대	10년 이상 20년 미만
20	여청수사관	6	K	남	30대	5년 이상 10년 미만
21	여청수사관	7	L	남	30대	5년 이상 10년 미만
22	스토킹전담경찰관	7	L	여	30대	3년 이상 5년 미만
23	스토킹전담경찰관	7	L	남	50대	20년 이상

22) 여청강력팀은 여성 또는 청소년이 관련된 범죄사건 발생 시 초동 수사와 수사 연속성 강화를 목적으로 2020년 신설되었으며,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 강간·강제추행, 공연음란 등 성범죄, 소재 불명 신상등록대상자 추적 등의 사건을 담당한다. 경찰서 내 복수의 팀이 있으며 4교대로 근무하는 여청수사팀과는 달리, 여청강력팀은 경찰서 내 단일팀으로 일과시간 중 근무한다.

경찰의 경우 인사이동 시기가 잦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업무 담당자의 경우 부서 이동이 빈번함을 고려하여 초점집단 면접조사에는 가급적 6개월 이상 스토킹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한 경찰관들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총 7회의 초점집단 면접조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지역경찰관 6명, 스토킹전담경찰관 9명, 여청수사관 8명, 총 23명이며, 주요 특성은 [표 3-1-1]과 같다. 초점집단 면접조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무하는 경찰서 단위가 다른 정도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파벳으로 구분하고 연령대와 총 근무기간을 범주화하여 표시하였다.

초점집단 면접조사는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소요되는 시간은 회당 1시간~2시간 내외였다. 초점집단 면접조사에서의 발화 내용은 참여 경찰관들의 동의하에 녹취되었으며, 참여 경찰관들에게는 녹취자료를 전사하여 연구에 활용하게 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다. 조사 내용

초점집단 면접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에 따라 진행하되, 참여 경찰관의 진술 흐름에 맞춰 질문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질문을 추가 또는 변경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스토킹 유형 인식, 스토킹 신고 현장 대응, 스토킹 사례관리, 형사절차상 스토킹 사건처리의 넷으로 구분하였으며,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참여 경찰관들이 수행하는 역할 차이를 고려하여 스토킹 유형 인식에 대해서는 면접조사 초반부에 공통적으로 질문하되, 면접조사 후반부에 이루어진 스토킹 피해자 보호 관련 질문은 지역경찰관, 스토킹전담경찰관, 여청수사관별로 달리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찰관에게는 스토킹 신고 현장 대응에 대해, 스토킹전담경찰관에게는 스토킹 사례관리에 대해, 여청수사관에게는 형사절차상 스토킹 사건처리에 대해 집중하여 질문하였다.

[표 3-1-2] 초점집단 면접조사 내용

분류	세부내용	지역 경찰관	스토킹 전담 경찰관	여청 수사관
스토킹 유형 인식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실무상 구분 실익 •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 – 스토킹과 가정폭력, 교제폭력의 교차 (relational stalking) – 정신질환에 기인한 스토킹 – 층간소음, 채권-채무관계 – 가해자 불상(non-acquaintance) 스토킹 – 보복범죄와의 관련성 • 스토킹 행위태양 – 온라인상에 한정된 스토킹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스토킹의 중첩	○	○	○
스토킹 신고 현장 대응	• 스토킹 관련 신고 및 사건처리 경험 – 스토킹 신고 현장 판단 기준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 긴급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구분 –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불이행 대응 •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체포 결정에의 고려요인 – 서면경고(응급조치 1호) 집행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인도(응급조치 4호)에 대한 피해자 동의 –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활용 –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를 원치 않는 피해자 – 응급조치(사법경찰관리) 및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의 판단 주체 – 여청수사관 합동 출동(“현장 코칭”)의 유효성	○		
스토킹 사례관리	• 스토킹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 피해자 동의에 기반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피해자가 유도 또는 유발한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불이행 • 사례관리 업무절차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의위원회 – 사후 콜백과 모니터링 •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지역사회·유관기관과의 연계		○	
형사절차상 스토킹 사건처리	• 잠정조치 및 구속 신청에의 고려요인 – 유치 결정율 및 구속영장 발부율 – 유치 및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법원의 심문절차 도입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 – 잠정조치 취소, 변경, 기각 • 적용법조 검토 • 가해자 형집행 종료·가석방·집행유예 관련 형사 사법기관 간 정보 공유			○

2. 조사 결과

가. 지역경찰관의 스토킹 신고 현장 대응

1) 스토킹 관련 신고 및 사건처리 경험

가) 스토킹 신고 현장 판단 기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가량 경과한 가운데, 스토킹처벌법 적용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지역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신고 현장에서 취할 수 있게 된 조치가 있게 된 부분을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 처음 스토킹(처벌)법 도입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사실 경찰이 개입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게 적용이 돼서 좀 업무가 늘어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실제 법 적응되고 뭔가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고요. 왜냐하면 막상 어떤 조치를 하고 오는 거랑 아무 것도 못하고 오는 거랑 느낌이 달라서. 실제로 하고 나면 효과도 굉장히 있었고요. 그 외에도 실제로 남녀 간의 그런 교제 관련 스토킹에서도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한 거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마음이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하면서 솔직히, 적용하기 좀 포괄적인 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도움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응이 되고 나서(#13).

지역경찰관들은 그간의 스토킹 신고 처리 경험을 토대로 스토킹 신고 현장을 판단하는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었다. 다만, 그 기준은 과거 신고이력, 경찰에의 협조 정도, 신체적인 폭력 유무,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 및 피해자 성별 등으로 각기 상이했다.

>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 신고 이력을 조금 보는 편입니다. 예전 신고 이력이 있나 없나 그것부터 제일 먼저 확인을 해요. 예전에 신고이력이 있다면 이건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1).

> 일단 제가 만약 가서 확인한다면 (가해자가) 협조적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먼저 볼 것 같고, 그리고 피해자가 뭐라고 진술하는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몇 번 피해가 있었는데도 신고 안 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피해자의 진술을 가장 먼저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2).

> 저는 일단은 신체적인 접촉, 폭력 그런 게 있었는지부터 확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핸드폰, 카카오톡 그런 연락 내용을 좀 확인을 해서 그거 보면 심각성 정도가 어느 정도 파악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신체적 접촉이나 아니면 핸드폰을 이용한 접근 내용, 그런 내용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3).

> 저는 피해자의 의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피해자한테 혹시 이 사건 접수를 원하냐 하면 대부분 원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해자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경우는 일단은 피해자 의사를 최대한 고려해서. 스토킹은 아무래도 반의사불벌죄다 보니까 피해자 의사를 조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4).

> 저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어떤 힘의 차이나 행위를 보고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을 예로 들어도 여자 혼자 산다든지, 아니면 엄마랑 딸이 살고 있는데 건장한 아래층 남자가 쫓아가서 행패 소란 하는 사안이랑 반대로 건장한 남자가 사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막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는 사안이랑 피해자, 가해자가 다르다 보니까 가해자가 좀 힘이 세다, 나중에 뭔가 대처가 안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 근데 오히려 피해자가 좀 힘이 세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은 (조치를) 조금 안 하는 편이고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여자 쪽이 스토킹 하는 것보다는 이제 남자가 하는 사안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더 조치를 합니다(#13).

나)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와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구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상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는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 제1호~제3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가 가능하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와 구분된다.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법원의 잠정조치 등 결정을 전제하지 않고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들의 요청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함으로써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가 살인, 강간 등 후속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입법목적을 강조하기 위하여 스토킹처벌법상 조치명을 가정폭력처벌법상 조치명과 달리 규정하였으나, 이러한 배경이 지역경찰관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는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와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임시조치를 취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경찰 실무현장에서는 조치명, 즉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와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를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지역경찰관들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의 목적 내지 입법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조치명 또한 각각 긴급임시조치와 긴급응급조치로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조치명을 다르게 하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여겼으며, 신고 처리에 바쁜 현장에서 두 조치명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음을 부정하지 않았다.

> 일단은 법의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가정폭력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토킹처벌법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니까. 가정보호가 목적이 아니니까, 그게(조치가) 구분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조치)내용에 관해서는 혼동은 많이 되지만 어쨌든 가정을 지키기 위한 거랑 그 사람을 이제 접근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랑 목적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2).

> 저는 헷갈리는 부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치 명칭을)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일단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히 명칭을 좀 다르게 하는 게 일선에서는 더 힘든 부분이 아닐까. 여전히 계속 헷갈리긴 해요. '응? 이게 긴급응급조치더라, 긴급임시조치더라?' 하는 그런 혼선

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면 아무래도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정신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헷갈려요(#1).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와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가)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보니까 퇴거 등 격리 이런 조항이 또 추가로 있더라고요. 약간 이런 차이점 빼고는 거의 비슷하고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일선 지(구대)·파(출소) 계신 분들은 이제 차이점이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기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뭐 사법경찰리나 사법경찰관이나, 이것도 어쨌든 실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다 그냥 하거든요(#3).

직원들끼리 얘기할 때 긴급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응급조치, 비슷한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서로 뭘 말하고 있는지 한두 번은 더 확인을 해야지. 이제 스토킹으로 하는 건지, 가폭으로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용어가 조금 비슷하다 보니까 그 부분 혼선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급응급(조치)은 이제 스토킹이고, 긴급임시(조치)은 가정폭력인데 명확한 단어로 외우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가폭 쪽, 스토킹 쪽,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인 게 다르다고는 하면서 느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비슷한 것 같아서 사실 엄청 무슨 큰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13).

한편,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와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구분한 결과, 긴급응급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경찰실무의 경향이 확인된다.

최근 들어서는 긴급응급조치 해당되면은 바로 하는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시작하기 전에는 층간소음 같은 거 가면은 그냥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화해시키고 더 큰 일 안 생기게 진정시키고 하는 선에서 멈췄으면 요즘은 좀 죄질이 나쁘면 바로 그냥 긴급응급조치하고. 또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요즘 뉴스 같은 데 심각한 범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직원분들도 좀 문제의식을 느끼셔서 그런지 웬만하면 하는 쪽으로. 보통 윗선에서도 웬만하면 하라고 이런 식으로 지시가 많이 내려오거든요(#14).

2)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체포 결정에의 고려요인

가) 응급조치 중 서면경고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

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스토킹처벌법 제3조 제1호). 지역경찰관들은 이미 경찰 업무용 휴대전화에서 가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형태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던 상황에서 서면경고로 변경된 것에 대해 '종이 없는 행정'에 역행한다고 보면서도 가해자의 스토킹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긍정하였다.

> 이미 (경고장 발부) 하고 있어요. 업무폰에 피해자 번호를 입력하면 안내문이 발송되고, 경고장 같은 경우에도 업무폰에서 바로 문자로 보내요. 이렇게 주로 문자로 보내는데 간혹 가다가 종이로 그냥 바로 현장에서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2).

> 구두경고보다는 서면경고가 조금은 더 (억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그 문구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가해자들이 받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읽어보더라고요. 이걸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고, 그때 체포까지도 설명을 해주면 좀 더 막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13).

>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법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경찰관과 무슨 법적인 문서를 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14).

한편, 스토킹처벌법이 개정 즉시 시행됨에 따라 지역경찰관들은 서면경고로의 변화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데 따른 장비 관련 문제를 겪기도 했다. 서면경고장 출력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가해자를 현장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 저희 배부되는 PDA(경찰 업무용 휴대전화)가 이제 블루투스와 연결이 돼야지, 프린터로 출력이 되는데 블루투스가 안 되는 휴대폰이, 저희 관내에 휴대폰이 5개 있는데 하나만 되거든요. 앱 업데이트는 계속하는데, 휴대폰 자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반에 얘기를 해도, 관리반은 사실 본인들이 (신고 출동) 가는 게 아니니까 빠릿하게 되는 느낌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 다섯 대 중에 한 대만 돼 가지고. 결국에 이제 안 되는 폰 두 개로 출동한 순찰차면 돌아와서 안에서 되는 걸로 뽑아가지고 줘야 되는데 가해자들은 현장을 떠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붙잡아 놔야 되는데, 또 피해자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근데 (가해자를) 붙잡아 놓는 게 조금, 어떤 근거가 희박한 느낌이라서. 다른 경찰관 분들이 저기(피해자 진술) 듣고 있으면 저는 여기 좀 계시라고 얘기하고 조금만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거지, 어디 가지 말라고 이렇게 팔 잡고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14).

나) 응급조치 중 '현행범인의 체포'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가정폭력처벌법(제5조 제1의2호)과는 달리, 스토킹처벌법 개정에는 현행범인 체포를 명시하는 부분은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경찰관들은 현행범인 체포 관련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현행범인의 체포를 하여야 할 상황에서 현행범인 체포를 하지 않지는 않겠지만 가정폭력처벌법과 마찬가지로 스토킹처벌법에도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된 규정이 포함된다면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아래 지역경찰관들의 언급을 통해 가정폭력범죄 및 가정폭력처벌법와 견주어 스토킹범죄 및 스토킹처벌법을 이해하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 경찰관들마다 성향이 또 조금씩 많이 다르잖아요. 체포를 엄청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상관없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이 조금 더 많은 그런 경찰관들은 (현행범인의 체포를 명시한) 그런 법 조항 하나 때문에 (체포를)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응급조치 항목에 현행범인의 체포가 있으니까 해야겠다.' 그리고 현행범인의 체포 항목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게 좀 더 중대한 범죄구나' 그런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3).

> 사실 실무적으로 따지면 법 조항 하나 때문에 현행범인의 체포를 안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만약에 그게 들어가게 된다면 (가정폭력처벌법뿐만 아니라) '여기도 현행범인의 체포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 '아, 현행범인의 체포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식의 반응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4).

다)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활용

지역경찰관들이 가정폭력범죄 및 가정폭력처벌법과 견주어 스토킹범죄 및 스토킹처벌법을 이해하는 데에는 신고 출동 현장에서 각각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와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절차적 유사성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경찰은 모든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출동한 지역경찰관은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평가해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토킹의 경우에도 현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필요성을 판단

하기 위한 자료로서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는 아직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23] 지역경찰관들에게 활용하기 익숙하거나 긴급응급조치 판단에 결정적으로 고려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고 보인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지역경찰관들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판단조사표를 작성하였으나 점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긴급응급조치 실시를 재고하거나[24] 긴급응급조치 실시 여부를 우선 결정해 두고 판단조사표 작성 결과를 통해 그 실시의 타당성을 담보하는 등의 보조적인 도구로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를 활용하고 있었다.

> 그게(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가) 약간 좀 한계를 짓는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작성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건데, 만약에 이 점수표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 '어? 이거 안 해도 되는 건가?' 싶거든요. 저는 주관적으로 생각을 한 건데, 표로 점수 매기면 객관적으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점수로 '낮음', '높음' 이렇게 나오는데 '낮음' 나오면 좀 괴리가 생겨가지고. 피해자 의사도 많이 듣긴 하는데 아무래도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점수가 낮다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는 게 좀 덜 한 것 같아요(#1).

> 보통은 일단 내심적으로, 이게 좀 심각하다 싶으면 일단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표를 입력해 가면서 그냥 좀 체크되는 게 많으면은 '내 판단이 맞았구나'라고 약간 좀 지지를 받는 느낌으로 하는 것 같고요(#13).

한편, 긴급응급조치 결정 및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작성 필요성 판단에는 경찰관으로서의 근무 경력, 연령, 계급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팀에서 저는 많이 하는 편이고 좀 젊은 직원들, 그리고 경사 이하, 소위 이제 실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하려고 하시는 편이고. 경위 이상을 비롯한 이제 주임님들은 좀 잘 안 하시고요. 반대로 팀장님들은(경감 이상) 또 이제 하라고 권유하시고, 안 하면 왜 안 했냐고 하시고,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13).

---

23)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는 2022년 7~8월 1차 시범운영 후 2022년 10월 전국 경찰서에서 활용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판단기준 개선… 내달 전국 시행, 2022년 9월 19일자).

24)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는 가해자 및 피해자 면담, 경찰 확인을 통해 작성하는 총 12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예'에 해당하는 경우 1점을 부여하고 4점 이상부터 긴급응급조치 필요성이 있는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라)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를 원치 않는 피해자

스토킹처벌법 주요 개정 내용 중 하나는 반의사불벌죄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지역경찰관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체감하고 있던 가운데,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사건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들어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지역경찰관들의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후술하는 여청수사관들의 인식과 다소 배치되는 것이다.

> 피해자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겠지만 (피해 정도가) 조금 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안 원한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사건 접수 안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규정(반의사불벌죄)이 사라진다면 조금 더 사건 접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정 직후니까 바로 막 엄청 다이나믹하게 그 비율이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피해자 의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보니까 그래도 (사건 접수하는 비율이) 한 20~30 프로(%)는 더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4).

> 일단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직권으로 할 수는 있지만 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고(#1).

> 반의사불벌죄가 없어져서 그거는 조금 더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반의사불벌죄 있을 때가 편할 수도 있는데, 저희 지역경찰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희가 봤을 때 해당되면 바로 접수하면 되니까. 만약에 반의사불벌죄인 상태에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느껴도 상대방이 반대하면 저희가 하기 어려우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더 나은 것 같아요(#13).

마)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의 판단 주체

스토킹처벌법상 응급조치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가 모두 할 수 있는 조치인 데 반해,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만이 할 수 있다. 이는 긴급응급조치를 한 이후 검사에의 사후승인 신청을 형사소송절차에 준해서 규정했기 때문인데, 경찰공무원 중 77.4%[25]가 사법경찰리에 해당하며 신고 현장에 출동하

25) 2021년 경찰공무원 총 정원 128,985명 중 순경 40,479명, 경장 32,736명, 경사 26,368명으로, 사법경찰리에 해당하는 순경~경사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총 정원의 77.4%에 해당한다(경찰청

는 경찰관은 대부분 사법경찰리임을 고려할 때 사법경찰관만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경찰실무와 배치되는 면이 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지역경찰관들은 사법경찰관만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실제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한 경찰관의 성명과 긴급응급조치 통보서상 경찰관의 성명이 불일치하기도 하는 상황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에 한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경찰관들에게 긴급응급조치는 마치 한층 중한 판단 책임이 따르는 조치로 인식되고 있었다.

> 저는 일단은 경사 이하(사법경찰리)로 가도 그냥 일단 조치는 다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약을 따로 느껴본 적은 없는데, 긴급응급조치는 그게 명의가 관으로 들어가요.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런 내용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교육자료가 계속 나왔었고, 쪽지나 메신저라든지 계속 그걸 보내왔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교육을 조금 시행을 했었고요. 그게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는 거에 크게 제약이 느껴지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번거로운 경우는 있죠. 왜냐면 저희가 신고 출동 나가면 거의 사법경찰리들이 그런 거 입력을 다 하게 돼 있는데,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려면 사실은 사법경찰관님의 아이디랑 비(밀)번(호)을 또 받아가지고 저희 거 로그아웃 해서 다시 입력해야 되고, 이런 절차상 번거로운 점은 있거든요. 전에 제가 저희 팀에서 (긴급응급조치)한 것 제 걸로 로그인 해가지고 (입력)했었는데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이거(처리자 명의) 다시 바꿔야 된다고(#3).

> 응급조치는 현장에서 빨리하기 위해서 사법경찰관리로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긴급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 같이 아무래도 사법경찰관 명의로 들어가는 거면 이게 (사법경찰)관까지 가야 할 정도로 더 큰 문제구나,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소극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법경찰)관까지 가는 거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더 큰 일이니까 더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하는 일이고 더 조금 중대한 사안이니까 '이거 내가 해도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2).

> 해버릇 하니까 좀 나아졌는데, 처음 할 때는 제가 이제 사법경찰관으로 이걸 결정을 하니까 조금 권한이 너무 센 느낌. 이런 걸 결정을 하니까 좀 그런 부담이 약간 있었는데요(#13).

> 제가 저번에 긴급응급조치한 것도 사실 재신고가 아니라 다른 조 신고인데, 이제 주임님(경위)하고 막내(순경)가 있어가지고 제가 도우러 간 거거든요. 근데 주임님도 할

(2022), 2021 경찰통계연보, 6쪽).

> 생각이 없어 보이고, 이제 안 돼도 당연히 그런 걸 결정을 못하죠. 하자 말자. 그래서 저랑 같이 갔던 경사 팀원분이랑 이거는 긴급응급조치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제 이름으로 했거든요. 사실 제 것(사건)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게(긴급응급조치 통보서) 제 이름으로 나가니까 나중에 가해자가 저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저를 계속 문제 삼는 거예요. 이게 리(사법경찰리)분들이 할 수 있어야지, 훨씬 일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14).

바) 현장 조치 및 판단이 어려운 상황

(1) 정신질환이 있는 가해자 조치

스토킹처벌법은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중 어디에도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에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을 두고 있는 것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수의 스토킹범죄가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다. 지역경찰관들은 가해자가 정신질환에 의해 스토킹범죄를 행했다고 추정되는 상황에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응급입원 밖에 없는데, 응급입원은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향후 위험성이 어떻게 발현될지 예측할 수 없는 가해자를 피해자와 현장에서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별수 없이 현행범인 체포를 택하기도 한다.

> 저희가 봤을 때도 정신질환이 이제 좀 심하면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정신질환보다는 그냥 행위가 심각한지에 따라서. 사실 조금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아도 일단 체포를 하고 데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데리고 가면은 이제 형사에서는 '이 사람 정신질환인 것 같은데 왜 체포해 왔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데리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왜냐면은 정신질환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응급입원밖에 없는데, 그거는 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14).

(2) 주거침입과의 경계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주거·건조물 등의 침입 내지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가 열거되어 있지 않고, 이에 경찰실무에서는 주거침입을 수반하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주거침입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의 경합으로 처리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건에 대해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역경찰관의 입장

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스토킹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한 차례의 주거침입 시도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지역경찰관들은 이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와 같은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할 수는 없으며, 현행범인 체포나 임의동행 등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기도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 일단 따라다니고 막 문 차고 하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이렇게 여러 번 했다는 전제를 한다면 당연히 저는 스토킹으로 볼 것 같은데 만약 이전에 신고 건수가 없다 그러면 일단 재신(재신고)을 먼저 요청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두들기든가 초인종을 누른다. 그럼 그때 이제 스토킹 관련 해가지고 그런 걸로 처벌을 한 번 고려는 해볼 수 있는데 스토킹 행위에 그게 포함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토킹으로 처벌하는 쪽으로는 안 갈 것 같긴 한데. (중략) 현체(현행범인 체포)를 하기에는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다짜고짜 문 두들겼다고 현장에서 현체하진 않고요. 임의동행 요구하고 안 되면 발생보고 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렇게 (현행범인 체포나 임의동행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4).

> 저는 조금 의문이었던 게 주거침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스토킹으로 하지 말고 주거침입으로 따로 의율를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스토킹 안에 주거침입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조금 의문이긴 했어요. 되게 많이 같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아예 별도로. 이해는 하는데, 주거침입 그건 형법이고 스토킹처벌법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래도 그것도 크게 보면 스토킹범죄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조항이 조금 추가된다면 판단하기에 편하지 않을까,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는(#1).

(3) 채권·채무 독촉의 스토킹범죄 포섭

지역경찰관들은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행위 포섭과 관련하여 채권·채무 관계에서 기인한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다.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상당 부분이 전·현 연인 또는 배우자 간의 교제폭력인 가운데, 이와 이질적인 성격의 채권·채무 독촉이 스토킹범죄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경찰실무는 지역경찰관들에게 여전히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보통 스토킹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성 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채무 독촉하러 온다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건에 제가 아직 나가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런 거 나간다면 이걸 내가 스토킹으로 처리를 해도 될까, 이런 정의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3).

(4)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확인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던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범죄가 되었다. 지역경찰관들은 형사처벌로 제재가 상향된 만큼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의 성립요건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여겼다. 예컨대, 이웃 간 층간소음에 취해진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동만으로 수시로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가해자의 아래층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m라는 게 기니까 조금 상식적이지는 않아서. 사실상 수시로 위반하는 거잖아요. 층간소음 같은 때 긴급응급조치 내려져 있으면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그냥 이동하는 것만도 계속해서 위반이 발생하는데. 이제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은 형사처벌인데(#13).

(5) 보호시설 연계를 원치 않는 피해자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역경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스토킹처벌법 제3조 제4호). 체포 등을 하지 않는 한 신고 현장에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보호시설로 이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하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보호시설로의 이동을 원치 않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지역경찰관들이 보호시설로의 이동을 강권할 수도 없는 상황이 문제가 된다. 가해자는 재차 피해자를 찾아와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음에도 피해자가 보호시설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스토킹범죄가 재발하도록 두고 볼 수 없는 지역경찰관은 피해자 곁에 계속 대기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

> 거의 그런 쪽(보호시설)은 설명을 드려도 잘 가시지 않는 것 같아요. 집을 알고 있고 여자 혼자 살고 있고 그 집 비밀번호도 다 알고 그러는 경우에는 좀 저희 입장에서 걱정이 돼서 비밀번호를 바꾸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찾아오면은 바로 신고해 달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밤중에 갑자기, 보통 여자분들인데 차도 없거든요. 밤중에 저희가 태워다 드린다고 해도 또 돌아오는 것도 문제니까 잘 안 가려고 하시고. 저희 입장에서도 가기 싫다는 거 보내기도 좀 그렇고. 집 비밀번호 바꾸고 언제든지 신고해라, 이런 식으로만. 그리고 저희가 정 진짜 마음에 걸리는 새벽에 몇 번 계속 대기해 보고, 그런 식으로만 합니다(#14).

나.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스토킹 사례관리

1) 스토킹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가) 피해자 동의에 기반한 보호조치

스토킹전담경찰관에게는 수사 등 강제적인 권한이 없다 보니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또한 피해자의 동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스토킹전담경찰관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정한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된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은 수사 진척 상황 등 가해자 정보에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가 처한 위험성을 면밀히 평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는 곧 자신이 처한 위험성을 미처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임시숙소 등의 이동을 거부하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설득하여야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조차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관련 위험성 평가를 '직권'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업무'가 되어 돌아온다.

> 수사관들은 수사 업무에 전문이지만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업무는 안전, 보호나 지원이죠. 그러니까 사후 관리 부분에서 보호와 지원 부분이 연계되고 융화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결과 도출이 안 된다. 이제 특히 스토킹 범죄자들의 특성은 우발적인 사고,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어떤 사건은 대다수가 예측 가능한데, '저놈은 살인자야. 다음에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스토킹 가해자는 절대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인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도 '나 지금까지 동거했어', '이 사람하고 뭐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 '저 사람 내 애인이었어' 하다 보니 '저 사람 나한테 해를 끼칠 거다' 그런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안전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 그러니까 안전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 자기가 같이 살던 사람을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상대적인 거거든요(#5).

저희가 피해자 보호라고 해서 이제 임시숙소 이런 거를 연계해 드리긴 하는데 사실 이런 거를 피해자분들이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내 집 놔두고 가는 게 제재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막 우리 집에 맨날 오거나 이러면 제재가 있어도 가실 수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또 사실 그 기간 자체도 길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편함을 감소하고 내가 다른 데를 간다는 것 자체가. 혼자 쓰는 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없는 데도 있거든요(#6).

안전조치가 저희는 거의 다 하기 때문에 너무 많고. 안전조치를 원래 수사관이 하는 게 맞는데 수사관이 안 하면 결국에는 또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체크리스트도 이제 만나서 적어야 되는데 피해자들은 원하지 않는데 위에서는 이제 안전조치 하라고 하면 체크리스트도 정확하게 하지도 못하고 피해자랑 통화하는데도 피해자는 하기 싫다고 하면 저희는 직권으로 맞춤형 순찰만 가능한데 그때도 체크리스트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피해자는 통화도 거부한 상태에서 체크리스트도 이제 정확하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진술조서 같은 거 보고 제 직권대로 체크리스트 하는 것도 있고(#8).

나)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변화

스토킹전담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는 여전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할 수 없는 반면,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의 처벌이 가능해진 상황을 목도하고 있었다.

저는 실제로 한 번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체감을 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전, 6월 말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번 한 적이 있던 남자였고 행위자가 여자였는데, 여자가 집착이 엄청 셌어요. 남자가 카사노바까지는 아니었는데 여자가 집착이 엄청나게 좀 셌던 케이스인데, 남자가 이제 좀 정말 순둥순둥한 사람이라 이제 명확하게 거절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남자는 처벌을 원치는 않고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일단 집에서 물러나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현장조치를 하고 말았고 제가 콜백 할 때도 지금 당장 처벌을 원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어요. 근데 7월 12일에 신고를 한 거죠, 두 번째

신고를. 그리고 현장에서 여자가 난동을 부리니까 다른 혐의가 아니라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 거예요, 지구대에서는. 그리고 사건이 여수로 들어와 보니까 남자는 처벌 원치 않는다고 똑같이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물론 대국민 홍보가, 법제처나 경찰이나 하고는 있지만 하루 만에 그 소식을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들으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못 듣는 사람이 생겼고. 이제 그 사람은 6월달이랑 달라진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반의사불벌제 폐지됐다고 여자친구라고 해야 될지, 전 여친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송치되게 생겼고. 그래놓고 피해자 조사 받던 날, 또 여전히 여자한테 문자해서 '나 조사 받고 나왔다. 너도 진짜 조사 잘 받아라'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고. 현장에서 그렇게 인적사항 제시 거부하고 난동 부린다고. 스토킹이 반의사불벌이었으면 과연 지(구대)·파(출소)에서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그거는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반의사불벌이 폐지됐고 현장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혐의가 있고 반의사불벌 아니고 그러면은 그냥 체포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인적사항 제시 거부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15).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막 잠정조치 걸고 엄청 강하게 했어요. 수사관들이 고생해서 막 (조치)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처벌불원한다고 하면 힘 빠질 것 같아서. 차라리 지금처럼 처벌 의사에 무관하게 쭉 가면은 업무는 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22).

2) 사례관리 업무절차

스토킹전담경찰관은 경찰서 내 스토킹 총괄담당자로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스토킹사건을 모니터링하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스토킹 신고 현장에 출동하는 것도, 스토킹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스토킹전담경찰관은 주로 스토킹 피해자를 만나 지역경찰관과 여청수사관, 경찰과 가정폭력 상담소·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등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이 느끼는 주된 업무 스트레스는 이러한 매개적 위치와 관련되어 있다.

전담경찰관으로서 또 여러 가지 고충은 있는데 일단은 전담경찰관이라는 데 있는 고충이라기보다는 수사관들이나 지역관서나 이렇게 연계하는 중간 단위 입장에서 조금 애매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17).

저희랑 지역경찰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이분들도 많이 아셔야 되는데, 사실

적극적인 직원들은 굉장히 잘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개 중에 한두 분이시고 대부분은 이렇게 못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6).

가) 지역경찰관과의 연계

스토킹전담경찰관들은 지역경찰관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스토킹처벌법 관련 주요 내용과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의 업무연락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스토킹전담경찰관들은 스토킹뿐만 아니라 폭행, 교통사고 등 다양한 112 신고 상황에 대해 두루 폭넓게 이해하여야 하는 지역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단발성의 순회 교육만으로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스토킹에 대하여 단기간에 높은 수준의 이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경찰 교육을 분기마다 가고 하는데도 지역경찰이 가폭하고 스토킹하고 헷갈려 해요. 가폭도 이제야 정착화가 됐는데 스토킹은 새로 생겼잖아요. 근데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도 저희 서는 거의 한 80%가 안 하거든요. 몰라요. 가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시고, '젊은 애들 너희만 믿어' 이런 식인 거죠. 제가 이제 안 돼 있으면, 저희가 시스템으로 확인되니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도 안 해 주세요. 그러면은 또 점검이 나오니까 그냥 제가 보고 판단해서 입력을 해요. 이건 또 적발되면 과장님도 신경 쓰시고 하니까.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만약 oo(지역명)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면 진짜 힘들 수도 있죠.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문제가 많은 부분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내부적으로 계속 교육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긴 한데, 사실 저희도 지구대 생활을 해봤지만 약간 이렇게 수동적이고. 사실 지구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이제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됐고 이렇게 해서 지구대에서 판단해서 와야 되고 이분들이 이제 폐지가 됐다고 하면 사실상 자기 면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접수해서. 사실 접수가 되면 이제 또 빼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개정이 됐다고 하나,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범죄자들이 양성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장점도 있죠. 우선은 예방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선도 필요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도 같고.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점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6).

저도 이제 2년 동안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스토킹으로 넘어왔는데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그게 뭔가 들리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는 전담이니까 이것만 하니까 이게 들리고 이해가 되는데 사실 지역경찰 같은 경우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얕게 다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깊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교육하라고, 이제 지역경찰 순회 교육을

> 돌아라, 라고 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바로바로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닐 게 뻔히 알면서도 다들 그냥 교육 가서 전달하고 교육자료 주고 사진 찍고 와서 저 이거 했어요 하고 보고 하는 거(#8).

> 이제 순회교육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순회교육을 해야 하는 팀이 oo개여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도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거의 한 달 동안 오전 시간을 다 나갔는데도 다 돌지도 못하고.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잘 듣지도 않고. 그런데 되고 또 교육을 하라고 해서(#6).

지역경찰관들이 가정폭력과 스토킹 관련 규정을 혼동하고,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와 같은 양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나 스토킹전담경찰관 개개인의 역할 및 노력만으로는 개선을 요구하기 쉽지 않은 면이 확인되었다.

> 지역경찰관들하고 연동 부분인데, 현장에 나가는 지역경찰에 분들이 이런 스토킹처벌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적응 단계가, 교육도 미흡하고 인식도 미흡하고, 아직도 가폭(가정폭력) 10년 전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하는 부분이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거의 90%가 안 한다(#5).

> 판단조사표랑 응급조치 보고서는 현장경찰관들이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판단조사표는 0점이어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긴급응급조치를 해버리기 때문에. 거의 서류 누락되기 때문에(#6).

나) 여청수사관과의 연계

1급서 경찰서를 기준으로 볼 때 스토킹전담경찰관은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에, 여청수사관은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소속되어 있다. 경찰청 단위에서는 스토킹전담경찰관 관련 업무는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안전기획과 내 스토킹대책계가, 여청수사관 관련 업무는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내 스토킹수사계가 담당한다. 이러한 경찰조직 체계상 차이로 인해 여청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관련 교육은 스토킹전담경찰관이 아닌 여성청소년수사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고, 스토킹전담경찰관과 교대근무를 하는 여청수사관 간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가운데 여청수사관은 매뉴얼 중심으로 업무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구대에서 모르면 수사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사관들 교육이 더 중요하긴 해요. 사실 현장 코칭하라고 해서 신고 떨어지면 (수사관들이 신고 현장에) 나가시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지구대는 모를 수가 있죠, 당연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뀌고. 근데 수사관도 교육은 없잖아요. 수사는 수사대로 하라고. 지구대는 교육하라고 하는데 수사관한테는 전파만 하고 끝이거든요(#7).

지금도 보면 수사관들은 맨날 매뉴얼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언제 그걸 다 보고 앉아 있어요. 그것도 지금 옛날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에서 좀 필요한 부분, 이렇게 좀 정리해서 본청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쪽지나 업무연락으로만 계속 내려오고, 똑같은 게 너무 많이 내려와서 헷갈리고. 이제 쪽지로 따로 내려오고 막 어떤 건 공문으로 오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통일되게 어떤 딱 게시판에서 업무연락을 좀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라도 있으면 그래도 좀 찾아라도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어려울 건 아닐 텐데, 그게 없더라고요(#6).

저희도 항상 수사팀과 이쪽에서의 마찰이 있는 게,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협력관계잖아요. 근데도 이런 임시 조치에 대해서 가장 이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임시조치(스토킹범죄의 경우 잠정조치이나 임시조치로 통칭)를 받고 나면은 할 일이, 또 이렇게 다 각자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다만 저희도 이제 임시조치를 신청해놓고 결정하면 또 피해자한테 통보하고 하느라 막상 스전(스토킹전담경찰관)들에게 못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스전들은 그걸 또 알아야지 시스템 등록하거나 할 수 있고(#22).

다) 사후 콜백과 모니터링

사후 콜백과 모니터링은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와 관계없이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스토킹전담경찰관 또한 경찰관으로 입직하여 스토킹전담경찰관으로 보직을 받은 것일 뿐, 상담에 대한 특수한 역량을 갖추었거나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님에도 연락을 잘 닿지 않는 피해자와 수시로 연락을 취해서 가해자 재범상황 등을 확인할 것이 기대되는 업무 내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부담감은 스토킹전담경찰관의 높은 교체율로도 반영되고 있다.

상반기 때 설문조사를 직원들 전반적으로 했더니 첫 번째가 제일 힘들다는 업무가 긴급응급조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였고, 두 번째는 모니터링이 힘들다. 아침마다 매일 하는 거. 그런데 사실 그거는 oo(지역명) 경찰뿐만 아니라 전 경찰의 문제겠죠.

그런데 사실 그 피해자가 정상적이다 생각하지만, 피해자들 중에서 이상한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 어떤 스킬이라고 하죠. 상담 스킬이라고 하는데 사실 상담 스킬 자체는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덕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생소하고, 업무가 생소하다 보니까, 그런 스킬 자체가 특성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교체율이 상당히 높은 직종이다. 전담 경찰관들이 사실 이제 상담이라는 개념 자체나 대화의 요령이나 그런 게 없고, 이렇게 천차만별의 민간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죠.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데.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몇 마디 해주면 저쪽에서 수긍해 줄 거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보니 모니터링이 무척이나 애로사항으로 다가온다(#5).

스토킹처벌법 (적용범위)이 워낙 이렇게 넓다 보니까 또 반의사불벌제도 폐지되고 하니까. 스토킹 피해자분들이 또 무분별하게 신고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담 업무를 좀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업무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모니터링 동일 관계 신고 이력 3회 이상 하면은 바로 위기 지정해버려서 주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니까, 집중 대상자가 늘어나고 또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무와 겸업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한데, 또 계속 스토킹이 새롭게 리뉴얼 되다 보니까 업무 부담이 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 순간 감정으로 확 신고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주취 상태에서 신고를 하신다거나. 그러면은 이게 신고 이력이 엄청 늘어나는데, 그러면 저희는 스토킹 모니터링 기준이 딱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신고 이력이 많다 하면서 집중 대상자로 그냥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16).

피해자 본인 자체가 이 사건 사법처리를 할 때 좀 소극적인 사람도 있어요. 특히 이제 보복이나, 아니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같다. 자기는 그냥 좀 조용히 이 사람과 얽히고 싶지 않다. 이 정도의 그런 말을 하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상에 보통 이상, 높음 정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피해자 본인 자체는 좀 되게 소극적이고. 피해 지원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피해자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21).

저도 요새 느끼는 게 모니터링, 항상 이게 하면 할수록 너무 소진되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작년부터 와서 지금 1년 반째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피해자한테 전화하는 거에, 제가 상담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피해자랑 매일 전화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이 굉장히 좀 사람을 소진되게 만든다고 할까. 그래서 한동안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모니터링 하는 것 자체가(#8).

사후 콜백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모니터링 하여야 하는 스토킹 피해자 수는 급속히 늘어나지만 인력이나 예산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시스템 또한 자동화되지 못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실시 기간 등과 같은 주요 정보조차 일일이 직접 입력하여야 하는 상황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자칫 공백이 발생할까 봐 노심초사하게 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 피해자까지 사후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건 가정폭력이 처음이었거든요.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워낙 많지, 계속 늘어나고, 담당자들 계속 망가지는데, 그거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는 많이 뒷받침되지 않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업무도 가져왔는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거만큼 상응하는 인력이나 예산, 이런 지원하는 게 충분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제도는 점점 좋아져요. 그런데 그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건 맞춰주는 속도가 좀 느리니(#16).

> 제가 시스템(APO)을 이용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시스템은 디지털인데 결국 이용은 아날로그로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항상 들어요. 잠정조치 기간을 입력해도 그게 자동으로 뜨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제가 마우스로 클릭해서 항상 고치고. 그런 뭔가, 시스템이 되어 있긴 하나 약간 뭔가 조금 모자라는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7).

라) 사례관리가 어려운 상황

(1) 사건 송치 이후

사후 콜백 및 모니터링에 큰 부담을 느끼는 스토킹전담경찰관들은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를 계속 보호해 줄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는 충족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스토킹범죄로 수용된 가해자가 석방된 후의 모니터링을 경찰에서 담당하도록 고려하는 것에 대해 업무 가중 우려가 제기되었다. 사건이 검찰송치된 이후에는 경찰단계에서 사건 관련 정보를 조회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업무가 경찰만의 업무가 아니고 검찰에서도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는 만큼 검찰송치 이후 단계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 이후 단계에서는 법원에서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피해자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한 스토킹전담경찰관은 타 형사사법기관이 자체적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노력을 소홀히 한 결과,

가해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자 관련 정보를 열람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 검찰도 수사관들이 있고 법원도 자체 인력으로 보호지원을 하든지 해야지, 왜 일이 터지면 경찰관이 법원 판결 날 때까지 모니터링하라고. 사실 오늘 판결인데 갑자기 징역 1년 떨어졌어요. 그럼 칼 들고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경찰 잘못입니까? 사건 송치가 다 끝났는데 왜 경찰이 잘못했냐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담당 경찰 잘못 하나도 없어요. 사건 송치 전 단계까지 안전하게 했고 이후에도 할 조치 다 했는데, 왜 우리한테 예산도 준 적이 없고 그런 시설을 준 적도 없는데 왜 경찰관 너희가 잘못했냐고, 그렇게 들어오냐라는 거죠. 이미 사건 송치된 것까지 하라고 그러면 사건이 계속 누적되는데, 1년, 2년까지도 계속되는데 어떻게 이걸 하라고. 사건접수 단계에서 (피해자가) 죽은 건 있어요. 그런데 수사 개시 단계에서, 송치 단계에서 죽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경찰관은 너무나 잘하고 있고 훌륭합니다. 근데 왜 송치 이후에도 우리보고 뭐라고 하는데요. 기소할지 안 할지는 검사의 역량이라면서요. 그러면 송치 이후에 기소되는 건을 왜 우리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송치가 끝나면 검찰이 책임져야죠. 그렇게(송치 후에도 경찰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스토킹전담경찰관, 이거 안 해야 됩니다(#5).

> 송치 이후까지 경찰관이 관리하는 거는, 물론 이제 조금 속된 말로 한가한 서나 이런 데서는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oo(지역명)도 좀 업무 과중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물론 경찰관이 사법처리의 최일선에 있고 민생에서 제일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주기적이고 계속 규칙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건 피해자에 대한 관리 차원인 거지, 다른 범죄는 그렇지 않은데 스토킹 수용자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관리를 한다는 거는 오히려 경찰한테 업무 가중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것도 이제 잠정조치 대상자나 안전조치 대상자 위주로 선별적으로 관리를 하긴 하는데, 본청 지침이 없어서. 근데 거기에 수용자 관리까지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업무상 과중만 발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용자 관리는 법무부 소관인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물론 경찰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민생에 가장 접해 있는 부분이다 보니 그런 지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지만 반대로 과연 경찰이 그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데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17).

> 피의자가 출석도 안 하고 계속 출석 거부하다가 저희 경찰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근데 법원에 가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니까 거기서는 열람을 다 시켜줘서 피해자가 좀 위험해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찰만 지금 피해자

보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일선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검찰이나 법원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16).

(2) 스토킹 신고 및 피해자 보호조치의 악용

지역경찰관에게와 마찬가지로 스토킹전담경찰관에게도 채권·채무 독촉, 층간소음 등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가 전·현 연인 또는 배우자 등 교제관계에 기반하지 않았거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스토킹 신고는 모니터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이었다. 스토킹처벌법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지역경찰관 역시 스토킹으로 신고가 된 사건에 대해 스토킹으로 사건발생보고를 하게 되면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 보호가 긴요하지 않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사안으로 계속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제관계로서의 스토킹 및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사안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채권·채무 독촉이나 층간소음은 스토킹처벌법 적용 사안 및 스토킹범죄로서의 모니터링 사안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기본 틀은 채권 채무고 불법 추심인데 저 사람이 돈을 안 갚아서 찾아온 건데, 그러니까 불법 추심이 되면 안 되는 것도 맞지만 최초 추심 단계에서부터 스토킹 신고를 하고 어떤 추심의 고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분도 있고. 이제 정신질환이 있거나 주취 상태에서 신고 들어오는 경우에도 신고 내용이 명확하게 스토킹인 것처럼 보이면 일단은 상황실에서는 스토킹으로 뜨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침이 다른 청은 또 모르겠는데 저희 청 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계속 스토킹 코드로 띄우라고 그러거든요. 코드 (변경) 놓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스토킹인 거예요. 저희서에 지금 한 2년째 지금 정신질환 때문에 피해망상으로 신고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폭 신고했다가 스토킹 신고했다가. 근데 잠정조치 신청하면 검사 청구 기각 나고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전에도 이제 경찰관에 대한 반감, 이런 게 있던, 정신적으로 약간 질환이 있는 피해자였는데 동성 연인 관계에서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풀려고 상대방이 찾아왔는데, 회사에도 한 번 찾아가고 집에도 찾아가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제 스토킹 신고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회사는 그렇다 치고, 집은 동거하던 집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스토킹 신고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이 피의자한테 합의금 요구하고 사건 취하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꽤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례를 이제 지(구대)·파(출소)에서 보면은 이게 정말 스토킹이

맞냐라고 연락이 오든가, 아니면은 지구대에서 보기에는 스토킹이고, 여수에서 보기에는 아닌데 일단 스토킹으로 띄우고 보거나. 사실 스토킹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 성향이 좀 있거든요. 워낙 광범위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대에서는 (사건발생 보고) 띄우기는 좀 편한 사건이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하거나 신고를 맞닥뜨리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스토킹에 맞느냐라는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서 조율하거나 질의응답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편이긴 합니다(#17).

사실 층간소음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랬고요. 어쨌든 간에 물론 층간소음도 그 적정 항의의 행동 정도를 넘어가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본인 주거의 평온에 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하고자 찾아 올라갔는데 그냥 올라가서 문도 두들겼다고 바로 스토킹 신고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태들이 있어서. 층간소음이 예민한 부분이 되긴 했지만 그 정도에 지나치지 않고 단순히 그냥 항의 차원에서 이제 문 두드리러 올라갔는데도 바로 신고를 해버린다거나. 그런 경우에 오히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가 역전돼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제일 큰 문제는 사실 정신질환자들. 물론 정신질환자들이 진짜 스토킹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1년 반 정도 근무하면서 스토킹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실제 피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채권 추심은 저희 서에서는 좀 드문 편이라 지금까지 한두 번 정도밖에 신고가 안 들어와서 그 부분까지는 크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요, 경미한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나 정신질환, 이 두 가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16).

저희도 층간소음이 가장 이슈였던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이 층간소음을 저희 여청에서 하는 게 맞나 하거든요. 그래서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여청에서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또 형사에서 하실 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층간소음은 이제 좀 논외로 그냥 (스토킹처벌법에서 제외)(#15).

피해 진술이 명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 진짜 정말 요즘 뭐 칼부림도 있고 너무 흉악범이 많아서 세상이 무섭고 누가 날 따라오는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 호소하는. 그게 약간 망상이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정신적으로 좀 그러신 분들도 안전조치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받아줘야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좀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게 조금 애로사항입니다(#22).

3)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지역사회·유관기관과의 연계

가)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연계

가정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각 범죄에 특화된 상담소 및 쉼터가 별도 존재하고 피해자들도 해당 보호·지원시설에 연계할 수 있는 데 반해, 스토킹범죄에 특화된 별도의 상담소 및 쉼터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 시행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즉, 스토킹방지법은 가정폭력방지법이나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업무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스토킹방지법 제8조 제2항 및 스토킹방지법 시행령 제6조).

이는 스토킹전담경찰관들에게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자원이 부족하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또한, 스토킹전담경찰관들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에 스토킹 피해자를 연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쌍방 폭행이 있다거나 하면 연계가 거부되는 사례를 경험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스토킹전담경찰관들은 자체적으로 관할 지역 내 위치한 심리상담소를 찾아 MOU를 맺거나 최대한 피해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가운 연계 가능한 유관기관의 폭을 넓혀 연계를 의뢰하고 있었다.

> 지금 우리한테는, 스토킹전담경찰관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가폭이나 이런 건 특성화되어 있어요. 상담소라든가 시설이 딱 있죠. 아동학대도 완전 특성화 돼 있어서 어디에 지원하고 아동한테 어떻게 보호를 하고 전담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구체화되고. 그런데 스토킹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스토킹 담당 보고 보호 지원을 하래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원은 무진장 많은데 실질적으로 특성화돼 있지 않으니까 보낼 때가 요원한 거죠. 반장(스토킹전담경찰관)님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임시숙소를 구해준다든가, 그것밖에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 스토킹 피해자들이 진짜 그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원과 상담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전담 경찰에 요구를 하라니. 그리고 누군가 또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일을 하니 얼마나 여기 있기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에 기대고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이 성격상 좀 여기서 남아주면 어떻겠나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스토킹 전담 경찰은 전반적으로 보면 다 착해요. 왜? 착하니까 남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타 범죄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한데, 근데 조건은 똑같지 않은데 똑같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인식은 갈수록 그런 범죄까지도 잡아주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국민의 인식, 범죄에 대한 인식은 고도화되어 있는데 여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기에는 완전히 그 맨땅에 헤딩하는 면이 있다(#5).

저는 주로 가정폭력 상담소에다가 많이 연계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위치상으로도 저희 서랑 가깝고 또 성폭력 상담소로 간다 그러면 이미 이름에서부터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상담을 물어봤을 때 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관계성이 어느 정도 있는 스토킹 피해자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가정폭력 상담소로 보냈었죠. 제 입장에서는 연계할 때 이러한 점도 있으니까 봐주세요라고 명분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피해자한테 얘기할 때도 이러한 부분이 껴 있으니까 그쪽에서 도와드릴 방법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다른 유형이 껴 있을 때 어려운 거는 없는데, 쌍피인 경우는 조금. 그러니까 스토킹은 스토킹대로 피해자인데, 데이트 폭력으로는 피해자가 쌍방 피의자인 경우, 쌍방 폭행이 껴 있다거나. 아니면 전 부부인데 성폭행 피해자가 전화로 협박을 했다든가. 이런 식이 껴 있으면은 상담소 측에서 약간 꺼려요(#15).

저희 oo도 지금 스토킹만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상담소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제 피해자 특성에 따라서 좀 맞춰서 각 기관에 의뢰하는 편이고. 1366이나 이런 데도 연계가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저는 1366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폭력 피해, 이제 연인 간의 스토킹이 아니고서는 그쪽에 연계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일상의 자립을 위한 심리치료나 이런 게 필요하면 보통 범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아니면 정신질환 그런 부분도 요즘은 정신건강센터에서 일반인 대상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담당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는 편이에요(#16).

숙소 연계하는 부분은 oo(지역명)랑 **(지역명)에만, 딱 두 군데만 있어서 만약에 저희 xx(지역명)에서 사시는 분이 멀리 가기 싫다 하시면 좀 그 부분이 좀 우려되기는 해요. 너무 멀다 해서 연계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15).

기존에는 상담소나 이런 것도 좀 열악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서들도 마찬가지로 관내에 있는 심리상담소를 연결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많이 MOU도 맺고(#22).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은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반려동물 동반 입소가 불가능하며 공동생활을 전제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상황은 스토킹전담경찰관으로 하여금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입소를 권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였다.

> 누가 대체해서 쓰게 해준다고 자기 핸드폰 포기하고 그거를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임시방편적인 부분이고. 시대에 맞게 이제 휴대폰 쓰도록 하든지. 보안상의 문제를 따지는데 사실 그 보호시설 내에서 보안상의 문제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보면서 다른 가족들한테 전화를 해서 알려지는데 대체폰이 지급된다고 그게 안 이루어지겠느냐. 왜냐하면 스토킹은 다 관계성, 동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연결선상에 있어서. 보호시설에서 대체폰을 받아요. 그럼 누구한테 전화해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은 어디 있다라는 걸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핸드폰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보안의 안전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제일 안전하다는 거는 아마 쥐 죽은 듯이 그냥 어딘가에 숨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데, 그게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핸드폰은 그냥 쓰는 게 맞는 거죠. 또, 요즘은 자기 아기는 안 데려가도 유모차에 강아지들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강아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혼자 방을 원하지 두세 명 쓰는 방 원하지 않아요. 벌써 시설부터 열악하다는 거죠. 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불편사항을 모두 감수하고 안전을 택한다? 그런 사람들은 요즘 없습니다(#5).

> 가정폭력도 이게 정착되기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지금 이제야 정착이 된 거고. 왜 가정폭력 이건 되는데 스토킹은 안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시간이 걸릴 건데, 우리 조직 자체가 사람한테 너무나 많은 치중을 하는 것 같아(#5).

> 숙소가 oo(지역명)에 하나, **(지역명)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여성(피해자)을 보내는 게 oo인 거예요. 근데 oo이 강남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강남권에 있는 시설인데 oo에 있는 거기가. 이제 그러니까 피해자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피해자분들이 '왜 oo까지 가야 돼' 이러면서 '너무 멀다'고(#22).

나) 스토킹 가해자 상담 연계

스토킹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 자체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스토킹 가해자 상담위탁을 들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가해자 상담위탁과 관련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의 하나로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제29조 제1항 제6호)에서 착안하여 가정폭력상담소 등과 MOU를 체결하여 스토킹 가해자 상담을 연계하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스토킹 가해자 상담 연계는 가해자에게 상담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스토킹전담경찰관은 자발적으로 상담을 희망하는 가해자를 찾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 저는 작년에 가해자 프로그램 했을 때 거의 의무적으로 몇 명 하라고 해서 한 적이 있어요. 올해는 안 해요. 이제 동의를 얻어내기가 힘들어요. 가해자 중에서도 하는 분들 중에서도 노쇼(no-show)도 있고. 근데 이제 원하시는 분은 자기가 진짜 원하시는 분은 끝나고도 또 하시는 분이 있어요(#7).

> 보통 가해자가 이제 그런 걸 하면 무슨 죄인 된 것처럼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내기가 우선은 어렵죠. 근데 저희는 '이거(상담) 되게 비싼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동의를 얻어냈죠(#8).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가해자보다는 경찰이나 법집행에 협조적인 가해자가 주로 상담에 참여하였으며, 어렵사리 상담을 연계하였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상담에 끝까지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에 면접조사에 참여한 스토킹전담경찰관들은 가해자 상담위탁이 피해자 보호에 실효적이라는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가운데 의무적으로 일정 수의 가해자를 상담에 참여하도록 한 제도의 틀에 맞춰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참여를 설득하여야 하는 과정에 회의감이 들었음을 언급하였다.

> 피해자 말고 이제 가해자를 바꿔보자 해서. 근데 또 예산이 없으니까 여성가족부 예산 지원받는 상담소랑 또 MOU를 맺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가해자를 상담소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나마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피해자는 상담할지 모르겠지만 가해자를 조금 바꿔보면 되지 않을까. 원래 가정폭력은 교정상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정폭력)는 법 조문이 있는데, 스토킹은 가해자 상담위탁이 없어서. 상담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 가해자 상담을 하게 되는 가해자들은 국가 시스템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고 이제 되게 협조적인 사람들만이 이 상담에 임하게 되는 거라서 결국에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상담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저도 공감이 갔었어요(#6).

> 가해자들을, 안 한다 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시키려고 하니까 여기 담당자들 다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뭘 한다는 건 힘든 거고 예산이 있으면 남으면 가져가면 되는데 이걸 다 쓰라고, 소진을 시키지 않으면 다음에 예산 안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직원들과 업무가 윈윈(win-win)이 돼야 되는데 (스토킹전담경찰관에게)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은 최악의 제도였어요. 업무를 소진하기도 버거운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한테

그 업무까지 가져가라. 누군가를 설득해서 하라. 그럼 내가 상담사가 되지 미쳤다고 그걸 하겠습니까? 업무를 보다가 가해자가 '저 상담 받겠습니다' 하면 연계만 시켜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찾아다니는 서비스라고 해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힘든 거죠(#5).

(스토킹 가해자 상담 연계) 안 되고 있어요. 원하지도 않지만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도. 저희가 연계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상담소에서도 가해자들의 경우에는 조금 가폭에 준하는, 이제 연인관계 이 정도에서의 가해자는 받지만, 진짜 이상한,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가해자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연계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가해자) 대부분은 좀 원하지 않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22).

다) 스토킹 피해자 민간경호 연계

스토킹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에는 민간경호업체를 통한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도 있다. 스토킹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 위치 등의 정보를 세세히 알고 있는 가해자가 언제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려고 할지 알 수 없고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의 곁을 늘 동행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선정된 민간경호업체 소속 경호원이 스토킹 피해자가 이동하는 경우에 동행하도록 한 것이다. 본래 제도상 민간경호는 여청수사관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민간경호 역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스토킹전담경찰관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다. 민간경호를 받게 된 피해자들은 자신의 일상을 경호원과 공유하여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갖기도 하였으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이었다. 이와 같은 민간경호 대상 피해자들의 반응을 접하고 스토킹 전담경찰관들은 민간경호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저 이번에 민간경호도 했었거든요. 민간경호도 하는데 서류 엄청 많더라고요. 원래 이것도 담당 수사관이 먼저 제의를 해야 되는 건데, 저희는 이제 과장님이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했는데. 수사관은 위험하다고, '위험한데 왜 하냐' 이런 식으로. 민간경호 서류를 수사관이 작성해야 되는데 저도 협조가 잘 안 되니까 제가 그냥 다 작성해서. 지금 o일 동안 진행을 해서 오늘까지 종료인데 피해자가 되게 부담스러워 해요. 처음에 경호 계획 같이 나갔는데 그냥 딱 경호원처럼 생긴 사람 두 명이 나와서 하는데 따라다니는. (피해자가) 가게를 운영해서 가게 앞에 서성이면서 위험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근데 (피해자와) 통화를 해보니까 그래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해자가) 거기 가게를 알아서 신청을 했는데

> 좀 부담스러우니까 가게를 며칠 안 나오고 필요할 때만, 나갔을 때. 청에서도 '피해자가 왜 부담스러워하는지 물어보고 부담스러워하면 종료를 해라'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보고, 종료를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 근데 가게를 뺄 수도 없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6).

> 어떤 면에서는 되게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가면은 이게 참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수요가 많아서 시행되자마자 예산 소진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이거를 딱 해보니까 오히려 이게 너무 심도 있게 이거를 하다 보니까,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는 막 그렇게 낭비되는 느낌도 없고. 오히려 필요한 곳에 진짜 (위험도 등급) '심각' 수준으로 관리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적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피해자는 오히려 부담스러워했어요.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민간경호업체에서 이렇게 막 보는 걸 부담스러워했지만. 근데 피해자가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이제 이런 걸 받아봤으니까 안심장비나 이런 것도 다 지인들한테도 권해주고. 처음에는 (민간경호) '이런 걸 왜 해' 이랬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산 들인 효과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22).

다. 여청수사관의 형사절차상 스토킹 사건처리

1) 잠정조치 및 구속 신청에의 고려요인

가) 유치와 구속영장 병행 신청 관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4호). 경찰실무에서 스토킹범죄에 있어서의 유치는 '(잠정조치) 4호'로 통상 일컬어진다. 유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 단기간만이라도 유죄 선고에 앞서 스토킹행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재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일견 유치와 구속 모두 가해자를 일정 기간 구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첩되는 면이 있고, 어느 하나를 택일하면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현재 경찰실무에서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유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드물게, '실적'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서 구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여겨지는 유치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한다.

> 이건 제 개인적인 건데 두 개를 놓고 같이 신청을 하면 판사가 좀 더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잠정(조치)을 결정하고 구속을 기각을 시켜버릴까 봐. 왜냐하면 진짜 구속이 돼야 되는데, 괜히 이것(잠정조치) 때문에 이게(구속) 날아갈까 봐 이것(구속)만 해요.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 일시에 맞춰서 잠정(조치) 4호를 다시 넣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동시에 신청하는 건 좀 (하지 않는 편)(#12).

> 저희도 이제 구속이든 (잠정조치) 4호든 뭘 하든 하면 당연히 다른 사건보다 고생을 많이 할 텐데, 약간은 보상 심리로, 이제 실적을 얻고 싶어서 구속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위에서 평가할 때는 구속이 일단 눈에 띄잖아요. 또 어느 사건이든 간에 구속이 제일 우선이잖아요(#11).

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청수사관들은 구속을 더 긴 기간 동안 스토킹행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조치와도 같이 간주하고 있었다. 즉,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법원에서는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여청수사관들은 스토킹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구속으로 인해 비롯되는 피해자로부터의 장기간 격리 효과에 주목하는 것이다.

> 잠정(조치) 4호 기간보다 구속이 되면은 사실 기간이 좀 더 길지 않습니까? 기간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구속이 확실히 효과적인 것 같기는 해요.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제 그때 피해자를 어디 다른 숙소로도 옮기고 번호도 좀 바꾸고 그런 기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잠정조치 4호는 그냥 구속이 안 될 걸 대비해서(#10).

> 결국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따지는 건데 저희는 재범의 위험성, 그러니까 수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저희 손을 떠난 이후에 다시 일이 벌어지지 않기만, 그 범죄만 예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재범의 위험성만을 두고 신청을 하지만 판사가 봤을 때는 구속영장이라는 건 또 거기에 맞는 요건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재범의 우려는 사실은 구속영장이 요구하는 건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로 보는 건데, 큰 틀에서는 재범의 우려를 보는 건 주된 목적이 아니니까요. 사실은 구속영장 입장에서는 그 취지에 안 맞다고 보는 것 같아요(#19).

> 이게 여청 사건의 특성상 사후에 뭔가 일이 터지면 수사관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 그래서 잠정(조치 4호)이 됐다가 풀려나면 저희는 또 풀려날 때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가해자가) 또 나와서 사고치고 복수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을 시켜버려야 수사관들이 이제 다른 일을 좀 할 수 있어요(#9).

이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상 유치는 구속이 결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상황에 '보험'과도 같이 구속과 함께 '세트'로 신청되는 관행이 자리잡게 되었다. 즉, 여청수사관들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유치는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별도로 신청할 실익이 크지 않은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잠정조치 4호하고 구속영장 병행 신청해요. 이게 딱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4호는 좀 발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자기도 보험을 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형식화 돼 있어요. 잠정조치 4호만으로도 충분하고 구속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쓰면서 잠정(조치) 4호를 딱 발부를 해요. 저희 입장에서도 구속영장이 기각 날 것을 염려해서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속 요건은 까다롭잖아요.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 이게 다 해당은 안 돼요. 근데 다만 이거(스토킹)는 보복의 우려가 우리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보험차 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구속이 기각될 줄은 알지만 그래도 (잠정조치) 4호라도 신청하자라는 취지로 2개를 신청하는 거고. 딱 그 이유. 법원에서도 이거(잠정조치 4호)는 좀 부담은 덜하거든요. 구속은 이제 60일, 30일 이렇게 가는데 얘는 그냥 딱 2주 정도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항소를 할 수가 있으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그냥 이건 한다(#21).

> 판사님이 좀 이렇게 실무적으로라도 (구속) 판단을 넓게 해 주시면 (잠정조치 4호는) 정말 사실 필요 없다고 봐요(#9).

나) 잠정조치 등 신청 기각

그러나 실제 경찰 실무에서는 구속영장 신청뿐만 아니라 유치 신청 또한 기각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경험한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한 수사관은 법원이 피해자의 성별 등을 이유로 재범위험성을 일률적으로 낮게 판단하여 유치를 거듭하여 재신청했을 때에 비로소 결정하거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던 사례를 언급하였다.

> 제가 겪어서 실제로 4호 집행을 했었던 사례들을 봤을 때 지금 숫자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3~4회는 확실합니다. 2회는 절대 아니고요. 3회, 4회 이상 그 정도 됐을

> 때 이제 4호 발부 됐던 것 같아요. 재발이 되어도 신체 위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괜찮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그거는 현장에서 상황이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재범 위험성의 변화 가능성) 들어서 신청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인용)되지 않는(#19).

> 사실은 구속의 요건에는 정확하게 들어있지 않지만 중대성이랑 증거 인멸의 염려, 이런 거 다 들어 있잖아요. 재범의 위험성이 진짜 너무너무 높아서 저희도 (구속영장 신청)친 거거든요. 도주의 우려 이런 걸 떠나서. 거기에 재범의 우려가. 사실 저는 피해자 보호의 측면 중에 하나가 저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냥 단지 (피해자가) 남자라는 이유로. 진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거는 오히려 또 별로 관심 없고. 저희 수사관들이 판단한 것 중에 스토킹 위험성이 거의 최상위급이었거든요. 만약 (피해자가) 여자였으면 (가해자인) 그 아저씨는 벌써 구속됐어요(#12).

여청수사관이 신청하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에는 유치 외에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호') 및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호')가 규정되어 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여청수사관들은 접근금지 또한 구속과 연동해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가 결정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려고 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 저는 제가 (잠정조치) 2호, 3호를 (신청)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거 위반하면 너 구속시킬 거야. 그냥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거 위반하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사실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잠정조치도 벌칙이 있으니까. 그래서 위반했을 때 가서 현행범인 체포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만 그거를 기화로 어떻게 신병을 좀 이렇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 거잖아요. (잠정조치 2, 3호를) 이제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전 단계로 저는 보는 거죠(#12).

한편, 유치나 구속영장 신청에 비해 긴급응급조치의 경우에는 검찰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사후승인 단계를 거치게 되나 변경 또는 기각되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다.

이러한 맥락에서 긴급응급조치 결정에 대한 사후승인은 절차적 효율성 및 신속한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경찰이 직접 법원에 사후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 긴급응급조치 결정은 현장에서 지역경찰관들이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나서 이제 사후승인을 판사한테 보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후승인을 검사 단계에서 기각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무조건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판사도 웬만하면 다 승인을 하고. 제가 그것도 기각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검사한테 그걸 올리고 검사가 다시 판사한테 올리고. 이게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긴급응급조치 결정 사후승인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직접 사후승인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21).

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변화

(1)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여청수사관들은 스토킹처벌법 개정 중 가장 체감되는 내용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를 꼽았다. 동 규정 삭제는 스토킹행위자 및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 취지상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법이 한층 엄중해짐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스토킹 성립 여부를 좀 더 명확히 검토하여야 하므로 수사관들이 느끼는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여겼다.

> 개정은 실감하죠. 이제 수사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담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체감을 못 하지만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체감이 되잖아요. 이제 법 취지 자체도 좀 더 엄중하게 다스리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제 전자발찌라든지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도움을 드릴 부분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좀 더 부담이 많이 커졌다. 한마디로 스토킹 관련 법률이 이젠 결코 가벼운 그런 법률이 아니다. 정말로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라고 봐서.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겪어봐야겠지만 그냥 지금 느끼는 거는 스토킹이라는 게 조금은 더 무거워졌다(#21).

> 사실 처벌불원 (관련 규정)이 없어진 건 이제 우리 수사관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간소화 절차가 없어졌다라는 것뿐이지, 사실 법 취지상으로도 그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좀 국민분들께도 알릴 필요가 있고. 심지어 전자발찌도 법률로는 그렇게 제정돼서. 실제 실효성의 여부를 따지기 전에, 그래도 법 개정된 것 자체가 경각심을 계속

> 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안내를 해줄 수 있고. 가해 행위자도 이제 전자발찌도 찰 수 있고 구치소에도 갈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면 아마 훨씬 더 경각심이 들지 않을까. 긴급응급조치도 이제 과태료 사안을 넘어서 처벌이 가능하니까. 그건 확실히 법이 개정이 잘 된 것 같아요(#19).

> 수사관들이 좀 더 엄격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없어진 만큼 그만큼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법리적으로 더 명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11).

신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절차 안내 후 현장종결 처리하던 사건들도 일단 접수되는 경향이 증가하였으며, 신고자가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면 스토킹 성립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접수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 점은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로 인한 부작용이자 여청수사관들이 한층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으로 꼽혔다.

> 이제 반의사불벌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스토킹범죄가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토킹 행위가 맞아?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선은 그냥 스토킹으로 접수하는 경우도 많고요(#10).

> 결국에는 저희도 민원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원인이 좋은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제 반의사불벌이 있었을 때에는 그냥 당사자께 안내하고, 취지가 그러하니 피해자도 좀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겠죠. 저희 역시도 일단 이거 접수하셔도 상관없다, 언제든 취소할 테니까, 우리도 경각심을 주고 싶다. 근데 이제 그게 통용되지가 않고 저희도 이렇게 되면 '접수하세요. 처벌하겠습니다'라고 돼버리는 거죠(#22).

> 반의사불벌죄가 폐지가 되다 보니, 예전에는 현장 출동해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 접수를 안 했는데 이제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모든 사건을 다 접수해 버릴까 봐. 그러면 사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지금 벌써 많이 들어오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긴급응급조치나 이런 거는 안 해도 저희들이 판단을 할 테니 스토킹이 좀 애매하면은 의율을 안 해주셔도 된다. 피해자 조사를 받고 나서 명확하게 스토킹이 돼야지, 의율을 해도 우리가 한다. 애매하게 피해자가 '접근 금지해 주세요'라고 그 말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걸 그냥 스토킹으로 억지로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18).

(2) 유치 및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법원의 심문절차 도입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제9조 제1항 제3호의2) 또는 유치(제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제9조 제3항). 동 개정에는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와 같은 중한 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서면검토만은 부족하고 스토킹행위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 심문절차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반영되었다.[26] 동 개정규정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여청수사관들은 전자감독과 같은 중한 처분이 유죄 선고 전인 스토킹행위자에게 결정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전자감독에 따른 스토킹행위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나 사전 심문절차 도입에 따른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피해자 보호나 책임 소재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전자감독 신청을 주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스토킹이 과연 다른 법률과 비추어서 이런 조치들이 형평성이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전자장치 추적, 전자발찌, 백만 명 중 한 명을 위해서 이런 규정을 넣었지만 사실 그렇게 치면 다른 범죄는. 물론 스토킹만 (해당)될 가능성보다는 스토킹 플러스 강도나 성폭행, 뭐 이런 게 되긴 되겠지만 정말 저는 쇼킹했어요. 전자발찌,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좋기는 하는데 헌법적인 마인드를 가졌을 때는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18).

> 약간 그게 의문인 게 우리 경찰이 이게(잠정조치에 전자감독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단지 그 사람의 인권만 생각해서 우리가 그거를 과연 신청을 안 할 수 있을까. 이게 조금 과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찰이 그거를 안 할 수 있을까.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또 나한테 다 돌아올 텐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10).

또한, 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청수사관들은 전자감독 또는 유치 결정 전 법원의 사전 심문절차에는 스토킹행위자가 전자감독이나 유치 결정이 있을 것에 대한 마음의 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장점과 결정에 앞서 스토킹행위자가 도주하여 잠정조치

---

26) 제404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3년 3월 22일), 49쪽.

집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고 전자감독 또는 결정을 앞두고 이에 반발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러 찾아갈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모두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에 따르면 잠정조치 결정 전 법원의 사전 심문절차는 가해자를 고려한 것이지,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청수사관들의 관점은 유치 및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법원의 사전 심문절차를 두는 것이 '신속한 피해자 보호 취지에는 다소 역행하는 측면이 있고 심문을 위한 피의자를 소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위해 우려가 있다'[27]는 개정 논의 당시 법무부의 입장과 유사한 것이다.

> 사전 면담의 장점은 집행 시에 조금 용이하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4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구치소 갈 수도 있다'라고 미리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집행할 때 별로 저항하거나 그런 게 없고. 이 사람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를 들어 회사나 이런 데, 어느 때부터 '출근 못 할 수도 있다'라고 미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치면 진짜, 갑자기 출근하는데 잡아오고 그러면 마찰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반면에 사전 면담을 하면은 잠수 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집행하는데 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찾으러 다녀야 돼요. 사전 면담을 해 버리면 그 사람(가해자)한테 구치소로 갈 수도 있다라고 약간 경고를 함과 동시에 (가해자가)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이면 '야, 너 때문에 내가 구치소 가게 됐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그 위험성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전 면담은 좀 반반이에요. 면담을 해서 자극시킬 수도 있고 면담을 해서 준비 기간을 줘서 좀 덜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가해자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근데 피해자 보호 측면이라면 하면 안 되죠(#19).

3) 스토킹 사건처리 절차

가) 지역경찰관과의 연계

종래 여청수사관들은 지역경찰관이 112 신고 현장 처리결과를 토대로 사건 발생보고를 하면 이를 인계받아 수사를 개시하였으나, 스토킹의 경우에는 지역경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여청수사관이 지역경찰관과 함께 신고 현장에 출동한다. 경찰실무에서는 여청수사관들이 스토킹 등 신고 현장에 임장하여 응급조치 등 스토킹 관련 조치에 대해 지역경찰관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가리켜 '현장 코칭'이라고 일컫고

---

27) 제404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3년 3월 22일), 49쪽.

있다. 이와 같은 현장 코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은 스토킹 관련 조치명에 여전히 혼동이 있는 등 스토킹범죄 사건처리에 대한 지역경찰관의 이해가 단기간에 높아지기 어렵고, 신고 현장 상황을 토대로 한 위험성 판단 및 신속한 수사가 강조되고 있는 경향에 기인한다.

> 저희는 (구분)되는데 맨날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헷갈릴 수 있죠. 저도 스토킹이 좀 말이 다르잖아요. 아동학대랑 가정폭력은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이렇잖아요. 그런데 스토킹에 딱 왔는데 이게 말이, 조금 단어가 바뀌니까 헷갈려요. 내내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응급조치, 이것만 머릿속에 있다가 딱 여기 처음 와가지고. 스토킹을 공부하고 특강까지 했는데도 실제로 막 쓰려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18)

> (현장에서) 요청하면 거의 나가요. 되게 심각한 것은 물론 나가는데, 이제 너무 애매할 때도 있어요. 사건발생을 띄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응급조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임시조치(스토킹범죄의 경우 긴급응급조치이나 임시조치로 통칭)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일 때, 지구대 직원들이 자기들의 판단을 스스로 믿지를 못해요. 내가 하는 게 과연 맞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저희한테 같이 현장을 뛰는 것을 요청하고, 그럼 저희는 이제 무조건 나가죠. 112 신고 같은 경우에는 거기 신고 출동자하고 같이 논의해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사후승인을 받는 거고. 저희가 나가는 사건은 좀 심각하거나 그냥 털기는 어려운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가면 거의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를 하거든요(#18).

나) 검사와의 연계

(1) 유치 및 구속영장 신청에 있어서의 판단

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청수사관들은 범죄수사 및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관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서는 검사와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 그래도 검사까지는 경찰이랑 좀 생각을 공유하면서 그래 '이놈은 잡아넣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구속영장으로 검사하고 불일치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틀린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받아들여 주시니까. 법원은 헌법적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인신 구속에 대해서 많이 (다름). 저희는 수사기관이니까 아무래도 같은 목적으로 다가가는 거고, 판사는 이제 인권이나 더 크게 바라보니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 않을까(#19).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나 책임 소재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면피 내지 보여주기식 영장 신청에 대한 자성과 함께 검찰에서도 재피해에 대한 경찰단계에서의 우려에 대해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시각도 있었다.

> 여청의 포커스는 그거예요. 언론이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비난받을 수 없을 만큼 해놔라. 여청이 면피용이 많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수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형편없는 수사보고서가 되거든요. 검사들도 그래요. 소추요건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불원한 걸 왜 (구속)영장을 쳤냐고 하면서. 경찰 너무 무식한 거 아니냐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열 받아서 진짜 이걸 경찰에 수사하는 입장에서 우리 수사 능력을 이렇게 깎아먹는 행동을 해야 되나, 과연. 언론이 무섭다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주기식에 대한(#18).

검찰 내에서도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에 따른 유치 청구는 상대적으로 낯선 업무이다 보니, 이로 인해 평일 주간 시간대 스토킹 담당 검사가 아닌 당직 검사가 잠정조치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 기각되기도 하고, 야간이나 주말을 피해 재신청하면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등 잠정조치 신청 기각에 있어서의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 잠정조치 신청을 하는데 보통 평일에는 이제 하시던 검사님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 선까지는 잠정조치를 신청한다 안 한다, 이걸 많이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제 당직 검사님들이 주말에 할 때에는 이걸 처음 보니까 기각을 되게 많이 시키세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평일에 다시 신청하면 청구가 돼요. 근데 이제 주말에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주말에 (잠정조치 신청을) 일부러 피할 때가 있어요(#20).

(2) 보완수사 요구

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청수사관들의 언급에 따르면 수사관뿐만 아니라 검사들도 스토킹범죄 사건을 판단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이 각기 다르며, 이 방식은 같은 지검 내지 지청 안에서도 차이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개별 검사의 사건 판단 및 서류 작성 방식에 맞추지 않으면 잠정조치 신청이 반려되고 필요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적시에 취해질 수 없기 때문에 잠정조치 신청 시 스토킹범죄 외의 범죄사실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라거나 적용법조 기재방식을 판결문과 달리하라는 등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이 납득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

> 저번에 한 검사가 얘기하는 게, 잠정조치는 스토킹에만 적용하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난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폭행으로 때려서 주거침입하고 스토킹까지 이어졌어요. 근데 그걸 반려를 한 이유가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에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사실에서 폭행이나 이런 걸 빼라, 이렇게 보완(수사 요구)이 내려온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왜 관계성 범죄에서 한 사람의 피해자한테 계속 똑같은 행위의 태양만 틀릴 뿐이지, 죄명만 틀릴 뿐이지, 그 사람한테 다 이해를 가한 행위인데 그게 왜. 잠정조치를 판단할 때 당연히 폭행도 있고 뭐도 있네라고 판단하지, 스토킹만 넣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납득은 안 되는데 반려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그냥 알았다고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18).

> 죄명 의율할 때 잠정조치 위반하면은 잠정조치 불이행 조항이 있어요. (스토킹처벌법) 20조 1항에 잠정조치 불이행죄라고 있는데, 그게 정식 죄명은 아닌데 우리가 통상 범죄사실을 쓸 때 불이행으로 해서 항목을 따로 빼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걸 스토킹행위에도 넣고, 상상적 경합범으로 이렇게 넣어요. 주거침입 넣듯이. 그랬더니 이거(잠정조치 불이행)는 정식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스토킹행위로만 해라. 그러니까 스토킹으로만 적용을 하고 잠정조치 불이행, 이걸 항목을 따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냥 이 검사가 있을 때는 그렇게 우선 보내라고(#19).

다) 스토킹 사건처리가 어려운 상황

(1) '이별시켜 드립니다'

여청수사관들은 연인들 간의 다툼이나 이별 상황에 경찰관들이 깊숙이 개입하게 되면서 스토킹처벌법의 당초 목적과 취지가 많이 변질되었다고 보았다. 연인 간에 헤어지자는 일방적 통보에 대해서 이유를 듣기 위해 연락을 취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스토킹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만에 하나 위험성이 급격하게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스토킹범죄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실무상 우려를 이야기한 경우가 많았다.

> 가장 우려된 거는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목적과 취지가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요. 솔직히 제가 그냥

> 하는 말이 연인들 이별까지도 이제 경찰관이 개입해서 해줘야 되냐, 이런 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마저도 이제 와서 울면서 호소해 버리면 법이라는 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감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스토킹처벌법을 만든 취지와 목적과 다르게 연인들의 다툼에 개입을 하게 되고 그 연인들을 이별을 시켜주는 경찰관이 돼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홍보를 통해서 스토킹이라는 게 어떤 거고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좀 잘 알고 있으면(#10).

>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스토킹 행위가 맞나라고 의문점이 드는 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여자가 마지막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제 나한테 답장 그만해라고 보내고 끝내버려요. 근데 남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도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장문의 카톡을 몇 번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게 스토킹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그게 정당한 의사에 반해서라고 볼 수 있느냐. 근데 현장에서는, 저희는 어쨌든 간에 위험성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18).

이러한 가운데, 한 여청수사관은 내심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스토킹범죄로 송치하였던 연인들 간의 다툼이나 이별 사건에 대해 검사 단계에서 불기소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판결문에서도 이러한 유형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언급하였다.

> 그런 것들이 재판에서 요즘에는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검사님 선에서도 많이 잘라요. 저희는, 이러면 진짜 경찰 수사 신뢰도 떨어지는데, 약간 송치로 많이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 그것도 옳은 건 아닌데, 검사님들이 많이 불기소하더라고요. 실제 판결문도 헤어지자고 하는 단계에서 '우리 왜 다시 만날 수 없을까. 너에게 직접 헤어지자는 이유를 듣고 싶어.' 문자 메시지 막 보내고 집에 찾아가고 답 없으니까 했던 것들이 그냥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벌금형, 이런 것들 봤는데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기는 해요(#19).

(2) 피해자의 승낙

여청수사관들이 스토킹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또 하나의 지점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불이행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사후승인 또는 결정에 의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찾아감으로써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때 피해자 보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여청수사관들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된 만큼 피해자 또한 신중하게 사건을 신고·접수하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의 결정을 존중하고 협조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아울러,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피해자의 승낙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불이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한층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 저는 이제 수사관의 입장으로서는, 결국에는 저희는 범죄수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결국에는 피해자도 어떻게 보면 사건 관계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피해자 권고 사항이 있을 때 이걸 정말로 이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도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주면 도움이 진짜 어렵다. 잠정조치도 사실 피해자 승낙에 의해서 이게(실효) 된다, 이것도 사실 좀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거(잠정조치)는 심지어 법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을 통하는 건 유일한 게 영장이에요. 한마디로 영장에 준하는 거를 법원에서 명령을 했는데 이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피해자도 정말로 이만큼 엄중하고 무거운 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사건 접수 자체도 그래서 신중하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저희도 그만큼 적극적으로 또 돕고. 그래야지만 일단 법체계 근간이 무너지지 않아야지, 이 밸런스(balance)가 유지될 수 있어요. 우리가 조치는 다 했으나 결국에는 피해자가 거기 찾아가면. 이때 만약에 잠정조치가 되어 있어도 결국에는 쓸모가 없어요, 잠정조치도(#21).

>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거는 또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예전에 피해자랑 가해자랑 이렇게 통신수사 기록을 통해가지고 둘이 (연락을) 주고받은 그런 게 확인이 되면 이거를 이제 미부과 사유나 아니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처리를 안 했었는데, 이제 그런 기준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은 워낙 스토킹이라는 것도 전 연인이나 밀접한 관계에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도적으로 봤을 때 서로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관계, 감정에 의해서 연락을 하는 경우 주고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긴급응급조치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걸 위반으로 저희가 처리를 해야만 하는, 뭐라 해야 되지, 법에 그런 미비점이 있다 해야 되나요?(#20)

(3) 단순 층간소음

여청수사관들 또한 단순 층간소음을 스토킹처벌법으로 의율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다. 특히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어 접근금지가 취해지는 경우 이동만으로 수시로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발생하는데, 이를 별건의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발생으로 검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상 고민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내려지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상황은 곧 여청수사관들에게 업무상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었다.

> 우리는 지금 층간소음이니 뭐니, 휘뚜루마뚜루 그냥 싹 다 그 정당한 사유 내에. 우리가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야, 헤어지자' '너 좋아해' 계속 술 먹고 또 전화하고 막 이런 것들까지 다 스토킹으로. 그럼 그것이 과연 애정관계에서 벌어지는 정당한 사유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런 것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18).

> 단순 층간소음은 솔직히 이거는 애초에 형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건축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관리자와 어떻게 보면 민사적인 문제일 뿐이지. 여기서 우리가 개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거는 스토킹이 문제가 아니라 협박, 경범죄처벌법, 모든 형사적인 법률을 통틀었을 때도 우리가 적용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층간소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가장 문제인 건데, 사실 입법상 문제는 없어요. 저희도 취지는 아는데 다만 그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오로지 저희만 이제 느끼는 고충인데. 사실 스토킹 이외에도 다른 적용 법률이 많지만서도 우선적으로 스토킹이라는 죄명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 있는 경찰관분들께서도 대부분은 다른 걸 다 간과하시고 스토킹으로 사건을 취급하실 거예요. 다만 이제 스토킹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일단 쉽게 말하면 저희가 잠정조치와 같은, 가정폭력에 준하는 그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신설을 한 것이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귀찮게 한다라고 해서 처벌하는 법률은 아니다(#22).

(4) 보복범죄와의 중첩

스토킹처벌법으로 적용법조를 의율함에 있어 고민되는 또 하나의 지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와의 중첩성이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협박 등을 하는 과정이 스토킹범죄와 유사한

가운데,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스토킹범죄로 의율된 사안 중에는 보복범죄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도 섞여 있다.

> 스토킹처럼 이렇게 계속 진화하는 과정이 아니고 스토킹으로 신고가 돼서 열폭해가지고 돌발 상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가 좀 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팀원들이 사건 해서 올리면 이런 것들은 스토킹이 아닌 또 다른 보복범죄로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었거든요(#18).

(5) 피해자 보호조치에의 부담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후 콜백 및 모니터링은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업무로 설정되어 있으나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의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담당 여청수사관의 몫이다. 여청수사관들은 모니터링, 그리고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로 대표되는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로 인해 수사 자체에 집중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 성폭력·학교폭력 등 여청수사관이 다루는 다른 유형의 범죄사건에 비해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높은 재범 위험성 및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으로 인하여 피해자 보호조치에 수반되는 '뒷서류' 작업과 그에 따른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된다.

>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학생들 사건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체감이 좀 더 적었고. 성폭력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막아내야 되지만 서로 관계가 없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체감적으로. 근데 스토킹하고 교제폭력은 사실은 저희가 접수하는 사건 대부분이 피해자 보호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업무부담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피해자 보호 때문에 자꾸 (사건이) 저희한테 와요. 불안하니까. 높으신 분들도 이런 사안은 피해자 보호조치 잘하는 여청이 해야 되지 않느냐. 누구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도 높은 사람들의 의견은 여청이 해라(#19).

> 수사관이 느끼는 게 퇴근을 해도 마음은 편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항상 사건 생각밖에 안 나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내 사건인데 (피해자가) 보복을 당했다, 제 책임이죠. 이러고 하다가 CCTV 누락됐다, 또 제 책임이고. 그렇다고 송치를 보내자니 검찰 보완수사가 또 있네, 막 이러고. 그러면서 피해자 안전조치를 해야 되니까, 또 전화를 해야 되니까, 내일 또 전화를 해야겠다. 전화도 하면서도 신상정보 관리 대상자 (점검) 또 있잖아요. 이제는 또 직접 출장을 가래요. 또 과장님이 이렇게 여러 차례 보고를 하라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잠정(조치)도 신청하지, 출동도 나가지, 또 CCTV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현장 가서 한번 봐야 되고. 영장

> 발부 받아서 영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전화가 오면 또 받아야 되고, 이러는 부수적인 게 있다 보니까(#22).

여청수사관들이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 수반되는 서류를 빠짐없이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배경에는 수사절차의 특성상 분산 및 비전자화된 업무처리 시스템 문제도 있다.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서면으로 된 기록을 편철하는 것과 별개로 잠정조치 기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전산시스템에 직접 입력을 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수사서류 외에 '부수적인' 서류를 오프라인 형태로 계속하여 챙겨야 하는 상황은 형사 등 다른 수사부서에 비해 여청수사 업무에 자부심을 갖기 어려운 요인이 되고 있다.

> 이제 잠정조치를 하려면 저희가 원칙상 사무실에 있는 (잠정조치) 통보서에도 편철을 해야 되고, 저희 수사 기록에도 편철을 해야 되고, 그걸 또 APO 시스템으로 또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사관은 이제 다 그렇겠지만서도, 저희의 고유 업무만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런 오프라인 서류에 대해서도 사실 진짜로 못 챙기는 이유가. 저희도 막 생각나요. 생각나면 그때는 이제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 받고, 또 민원 정리하고, 또 조사하고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시스템상 기능이 중요하다는 거. 시스템 기능이 잘 작용이 되면 수사관도 그나마 좀 심리적 부담에서 해소가 되고 간과되는 것 없이 연계가 되는데. 저도 이제 형사에서 있다가 여기(여청수사) 왔지만 여기는 사실 수사관이 있기에는 최악인 거죠. 형사과도 그렇고 수사과도 그렇고 거기는 정말로 딱 맡은 수사만 잘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여청수사)는 이제 부수적으로 뭐 하다 보니까. 아마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패닉(panic)이 올 거예요(#22).

> 형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절도든 폭행이든 피해진술만 받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잠정조치, 뭐 조치 그러니까 그 뒷서류가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본 사건 서류보다 뒷서류가 더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귀찮아 해서. 가끔 가다 빠지는 서류도 보면 그런 누락(#21).

3) 스토킹 전담 조사관 제도에 대한 입장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2항). 이 규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스토킹범죄만을 전담하는 수사관이 배정되

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실제로는 1급서 경찰서 기준 4교대로 근무하는 여청수사팀이 근무일에 접수되는 여성청소년 분야 범죄사건을 번갈아 맡고 있다. 여기에는 스토킹범죄뿐만 아니라 성폭력, 학교폭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양한 사건이 포함된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청수사관들은 전담 조사제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해당 범죄만을 담당하는 수사관을 별도 지정하고 있지는 않고 실종전담팀 또한 명칭과는 달리 실종사건만을 전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에 한해 전담 조사제를 실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소 회의적이었다. 스토킹범죄만을 전담하게 되면 전문화는 가능하겠지만, 예컨대 치안 수요가 크지 않고 근무인원도 적은 3급서 경찰서는 범죄유형별로 전담 수사관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입법자들이 경찰단계에서의 수사 실무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전담 조사제와 같은 이상적인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 전담팀이 있으면 아무래도 케이스가 많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전문화는 될 것 같아요. 피해자 보호에도 물론 많은 점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죠. 도움은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결국에는 그만큼 인력하고 조직 체계를 갖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지방으로 간다 쳤을 때 3급서 같은 데 가면 여수팀(여청수사팀)에 전체 다 해서 8~9명 있는데 거기서 스토킹 전담 나누고, 일반 수사 나누고, 학대 나누고. 치안 수요가 적은데 이렇게 해서 그거(스토킹전담수사관)를 그렇게 존재시키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19).

> 예전에 저희 성폭력 같은 거 수사할 때 전담 경찰관 당번 지정해가지고. 각각의 사건에 퍼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강력에서도 들어오고, 형사에서도 들어오고, 수사에서도 경합이 돼가지고 들어온다 하면 조사 받을 때 당번을 불렀어요. 그럼 조사과정에 이렇게 앉아서 참여하는 그런 건 있었지, 절대로 그것만 하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약간 법에서 현장의 실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상정을 못하고 그것만 조사하는 전문가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실종 전담팀 이렇게 해놨는데 실종만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18).

스토킹 전담 조사관 제도에 대한 여청수사관들의 회의적인 입장은 현재 스토킹과 경합된 범죄 유형에 따라 사건 담당부서(배당)이 결정되고 있는데 스토킹사건만을 전담하는 수사관이 있게 되면 이렇게 전체 수사부서로 분산되고 있던 사건이 스토킹

전담 수사관에게 집중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면도 있다. 여청수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스토킹처벌법 외에 여러 적용법조에 걸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는 비단 여청수사만이 아닌 모든 수사부서에서 해 봐야 하는 것이다.

> (스토킹 전담 조사관제) 그렇게 하면은 좋긴 한데 인력 부분도 이런 것도 있고. 스토킹이라는 거는 모든 범죄에 다 따라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절도 플러스 스토킹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형사에서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스토킹만 들어오면 여청에서 하지, 그 앞에 선행범죄 플러스 스토킹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해요. 사기 플러스 스토킹은 경제팀에서 하고, 절도 플러스 스토킹이면 형사에서 하고. 이렇게 모든 수사 파트에서 다 해 봐야 해요. 업무방해 플러스 스토킹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업무방해가 교제폭력, 데이트폭력 유형에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거 갖고 싸우죠. 업무방해 플러스 스토킹하면 '업무방해는 형사 거 아니냐. 너희들이 해라'. 업무방해지만 '이건 전 연인 가게에 찾아온 건데 이거는 교제폭력의 유형 아니냐', 서로 주장을 하는 거죠.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지역경찰에서 스토킹이 띄우기 쉽다고 스토킹으로 해버리면 어차피 여청으로 다(#20).

피해자 보호가 중요시 되고 모니터링이 필수적인 사건이 여청수사에 집중 배당되고 있는 상황은 상대적으로 모니터링이나 피해자 보호 관련 서류 작성 경험이 많지 않은 형사 등 다른 부서와 갈등을 빚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형사나 수사에도 스토킹이 간혹 들어오니 여기도 전담 있어야 된다라고 엊그제 우리 스토킹 담당이 싸웠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스토킹이 확대되니 너네도 스토킹 전담 하나 있어가지고 너네 걸 모니터링 하든지, 너네 모니터링 할 걸 나한테 보내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분란이 있었다는 얘기를(#18).

3. 조사결과 요약 및 종합

제1장에서는 2023년 7월 11일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경찰단계에서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관련 현황 및 쟁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총 7회의 초점집단 면접조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지역경찰관 6명, 스토킹전담경찰관 9명, 여청수사관 8명, 총 23명이었으며, 크게

스토킹 유형 인식, 스토킹 신고 현장 대응, 스토킹 사례관리, 형사절차상 스토킹 사건처리의 네 가지 영역으로 조사내용을 설정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참여 경찰관들이 수행하는 역할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경찰관에게는 스토킹 신고 현장 대응에 대해, 스토킹전담경찰관에게는 스토킹 사례관리에 대해, 여청수사관에게는 형사절차상 스토킹 사건처리에 대해 집중하여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맡고 있는 역할에 따라 경찰관들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상 문제점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정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의 영향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먼저, 지역경찰관들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및 개정으로 경찰관이 신고 현장에서 취할 수 있게 된 조치가 있게 된 부분을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경찰관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체감하고 있던 가운데,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사건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들어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경찰관들의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여청수사관들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이처럼 지역경찰관들의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점차 익숙해지고 있으나 신고 처리에 바쁜 현장에서 스토킹처벌법과 유사한 가정폭력처벌법과 혼동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는 것을 나타난다.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역시 지역경찰관들에게 활용하기 익숙하거나 긴급응급조치 판단에 결정적으로 고려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지역경찰관들은 사법경찰관만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실제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한 경찰관의 성명과 긴급응급조치 통보서상 경찰관의 성명이 불일치하기도 하는 상황을 언급하였다. 지역경찰관들의 언급과 같이, 대부분의 지역경찰관들이 사법경찰리에 해당하며 신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은 대부분 사법경찰리임을 고려할 때 사법경찰관만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경찰실무와 배치되는 면이 있다. 사법경찰관에 한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경찰관들에게 긴급응급조치는 마치 한층 중한 판단 책임이 따르는 조치로 오인될 수도 있다.

한편, 스토킹전담경찰관이 느끼는 주된 업무 스트레스는 주로 스토킹 피해자를

만나 지역경찰관과 여청수사관, 경찰과 가정폭력 상담소·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등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매개적 위치와 관련되어 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은 지역경찰관들이 가정폭력과 스토킹 관련 규정을 혼동하고,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와 같은 양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나 스토킹전담경찰관 개개인의 역할 및 노력만으로는 개선을 요구하기 쉽지 않은 면이 확인되었다. 또한, 스토킹전담경찰관에게는 수사 등 강제적인 권한이 없다 보니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또한 피해자의 동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스토킹전담경찰관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정한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된다. 이처럼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는 여전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할 수 없는 반면,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의 처벌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가해자 교정 상담, 민간 신변경호 연계 등의 업무가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업무로 새롭게 추가된 부분도 고충으로 토로 되었다.

여청수사관들에게는 스토킹처벌법상 유치는 구속이 결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상황에 '보험'과도 같이 구속과 함께 '세트'로 신청되는 관행이 발견된다. 그러나 실제 경찰 실무에서는 구속영장 신청뿐만 아니라 유치 신청 또한 기각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경험한다. 유치나 구속영장 신청에 비해 긴급응급조치의 경우에는 검찰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사후승인인 단계를 거치게 되나 변경 또는 기각되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다. 이러한 맥락에서 긴급응급조치 결정에 대한 사후승인은 절차적 효율성 및 신속한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경찰이 직접 법원에 사후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여청수사관들은 스토킹처벌법 개정 중 가장 체감되는 내용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를 꼽았다. 동 규정 삭제는 스토킹행위자 및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 취지상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법이 한층 엄중해짐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스토킹 성립 여부를 좀 더 명확히 검토하여야 하므로 수사관들이 느끼는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여겼다. 이러한 가운데, 여청수사관들은 스토킹범죄로 송치하였던 연인들 간의 다툼이나 이별 사건에 대해 검사 단계에서 불기소되는 경우가 많아졌

으며 판결문에서도 이러한 유형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후 콜백 및 모니터링은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업무로 설정되어 있으나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의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담당 여청수사관의 몫이다. 여청수사관들은 모니터링, 그리고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로 대표되는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로 인해 수사 자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토로하였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전담 조사관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이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스토킹범죄만을 전담하는 수사관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실제로는 1급서 경찰서 기준 4교대로 근무하는 여청수사팀이 근무일에 접수되는 여성청소년 분야 범죄사건을 번갈아 맡고 있다. 전담 조사제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해당 범죄만을 담당하는 수사관을 별도 지정하고 있지는 않고 실종 전담팀 또한 명칭과는 달리 실종사건만을 전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여청수사관들은 스토킹범죄에 한해 전담 조사제를 실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소 회의적이었다. 스토킹범죄만을 전담하게 되면 전문화는 가능하겠지만, 예컨대 치안 수요가 크지 않고 근무인원도 적은 3급서 경찰서는 범죄유형별로 전담 수사관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제2절 | 인식조사

1. 조사 개요

가. 조사 배경 및 목적

성범죄와 같이 주로 여성이 피해자인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에 있어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이 성역할 고정관념 등 통념에 기반하여 형사사법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정도를 달리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스토킹 또한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스토킹범죄의 만연과 점증하는 재범위험성, 이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스토

킹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이나 피해자 보호 정도는 미온적이라고 평가되며, 이는 미국과 같이 우리보다 앞서 스토킹을 범죄화한 국가에서도 공통되게 발견되는 현상이다(Brewster, 2001; Logan & Walker, 2009; Lynch & Logan, 2015). 체포율, 기소율, 유죄선고율로 대표되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처리 결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는 주된 원인으로는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중 스토킹 사건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경찰관들의 인식과 태도에 따라 스토킹 사건이 형사사법절차에 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다르게 처리된다는 점이 꼽힌다.

한편, 스토킹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소수의 실증연구들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전에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학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김은영, 2016; 김은영·윤민우, 2016; 박예은·곽대훈, 2022; 이건호·김은경·황지태, 2002; 이혜선·이수정·김범준, 2006; 조무용·김정인, 2016). 대학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나, 스토킹 사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스토킹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일정한 책임 및 권한이 있는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의 인식과 동일한지는 확인을 요한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관들이 스토킹 통념을 어느 정도 내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가 스토킹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탐색된 바 없다.

나. 조사 대상 및 방법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스토킹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관여하고 있는 지역경찰관, 스토킹전담경찰관, 여청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설계하였다. 세부적으로, 스토킹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를 측정한 후 시나리오 방식으로 스토킹 사건을 제시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평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 스토킹 사건이 범죄로서 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되는지, 피해자 보호가 두텁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외 선행연구 중에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나리오 내지 비네트(vignett)을 활용한 조사설계 사례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시나리오를 활용한 국외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경찰관 등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보다는 일반인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추정컨대 이는 일정 규모의 조사 인원수를 확보하기 용이하고 형사사법기관의 조사 협조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의성, 형사사법기관의 스토킹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 판단보다는 국가 또는 문화에 따른 스토킹 인식 차이에 초점을 둔 연구 목적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일례로, Phillips와 동료들(2004)은 연구자 소속 사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130명을, Sinclair(2011) 또한 연구자 소속 주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58명을 대상으로 시나리오에 기반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으며, Dunlap과 동료들(2012)은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모의 배심원 2개 팀 - 177명(남 87명, 여 90명) 및 129명(남 51명, 여 78명) - 을, Scott과 동료들(2019)은 3개국(호주, 영국, 미국) 시민 1,260명(남 630명, 여 630명)을, Sheridan과 동료들(2019)은 민족적 배경이 상이한 18-30세 싱가포르 여성 226명(중국계 89명, 인도계 69명, 말레이계 68명)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국외 선행연구 경향에서 볼 때, 유럽 4개국 경찰관 및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516명(벨기에 185명, 영국 118명, 네덜란드 113명, 이탈리아 100명; 이 중 경찰관은 316명(61.2%)로, 벨기에 125명, 영국 79명, 네덜란드 62명, 이탈리아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Kamphuis와 동료들(2005)의 연구, 그리고 일반인과 피해자 보호 비전문 경찰관, 피해자 보호 전문 경찰관의 스토킹 인식을 비교한 Scott과 동료들(2013)의 연구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방식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드문 예다. 본 연구는 스토킹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이라는 조사 대상, 시나리오를 활용한 조사 방법에서 국내외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경찰관, 스토킹전담경찰관, 여청수사관 대상 조사는 응답 비밀을 보장하는 동시에 원활한 조사 참여 및 진행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조사는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찰실무에의 변화 및 영향 정도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을 정도의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고 이를 조사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부터 3개월가량 경과한 시점인 2023년 10월 초부터 2주간 실시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지역경찰관, 스토킹전담경찰관, 여청

수사관이 각각 스토킹범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상이함을 감안하여 스토킹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집단에 따라 스토킹범죄에 대한 조치 범주를 다르게 설정하였는데, 집단별로 문항을 달리 제시하고 문항 이동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조사보다는 온라인 조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경찰청 업무망에 조사 참여 링크를 포함한 게시글을 작성하고 경찰청 내 스토킹 담당 부서를 통해 전국에서 고르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스토킹 관련 사건 발생빈도가 높은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 스토킹 업무 담당자를 통해 조사의 목적 및 참여 방법에 대해 추가로 안내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에게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사례품(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였다.

다. 조사 내용

1) 스토킹범죄에의 조치 결정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판단

경찰관들의 스토킹범죄에의 조치 결정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시나리오 형태로 제시된 스토킹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스토킹 행위 유형 외에 개정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경험 및 평가, 스토킹 통념 수용(stalking myth acceptance) 정도를 고려하였다.

가) 스토킹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스토킹 행위 유형

설문조사의 시나리오는 실제 발생한 스토킹 사건의 판결문상 범죄사실을 참고하여 스토킹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교차하여 구성하였다. 피해자-가해자 관계로는 모르는 관계, 지인(일방적 구애), 지인(이웃), 지인(채권-채무관계), 교제관계(전·현 연인 또는 배우자),[28] 교제관계(타인과의 교제 의심)의 여섯 가지로, 스토

28)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가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스토킹범죄 발생으로 이어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현 연인'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전 연인'으로 언급하게 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결별의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 연인'과 '현 연인'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구분할 실익 또한 크지 않다. 한편, 현재 혼인관계에 준하는 사실혼을 제외하면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한 가운데, 경찰은 사실혼의 범위를 확장하여 동거관계의 연인 간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처벌법 등 법률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실무를 개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해자 간 관계에서의 교제관계는 전·현 연인 또는 배우자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킹 행위 유형은 신체적 폭력 수반 및 미수반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때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전·현 연인 또는 배우자였던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29] 피해자가 혼인 외 관계를 맺고 있거나 복수의 연인과 교제 중인 상황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스토킹 사건 발생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귀인 오류(attrition error)로 인해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이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별도의 관계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혼인하였거나 교제한 적 없는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구애하며 강압적으로 교제를 요구한 경우 또한 스토킹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교제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범죄와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별도의 관계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나아가,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교제관계로 한정하지 않은 스토킹처벌법의 특성상 이웃 간 층간소음, 채권-채무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스토킹으로 의율되고 있음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교차하여 제시되는 시나리오는 총 12가지가 된다(experimental 6×2 independent measures design). [표 3-2-1]~[표 3-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라 제시되는 스토킹 행위 설명은 같게 하되, 피해자-가해자 관계에 대한 설명만 달리함으로써 피해자-가해자 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 그리고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피해자-가해자 관계 유형이 스토킹범죄에의 조치 결정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29)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전·현 연인 또는 배우자였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은 분석자료를 달리하여 살펴보았을 때에도 일관되게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판결문 분석에서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전·현 연인 또는 배우자였던 비율은 57.4%(한민경, 2021a)였으며, 경찰 112 신고자료상 스토킹 사건에서도 전·현 연인 또는 배우자 관계에 해당하는 피해자-가해자 비율은 45.4%로 나타났다(한민경, 2021b).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판결문 분석에서도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전·현 연인 또는 배우자였던 비율은 62.7%로 파악되었다(한민경, 2022).

[표 3-2-1] 설문조사 시나리오 예시(1): 교제관계(전·현 연인 또는 배우자)×신체적 폭력 수반

A(가해자)는 B(피해자)와 3개월가량 교제하던 중 A가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한 B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헤어진 B의 의사에 반하여 A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며 B의 집과 직장을 수차례 찾아갔다. B가 A를 만나주지 않자 A는 B의 직장 앞에서 B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발로 B의 종아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재차 발로 넘어져 있는 B의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표 3-2-2] 설문조사 시나리오 예시(2): 교제관계(타인과의 교제 의심)×신체적 폭력 수반

A(가해자)는 자신과 동거 및 교제하고 있던 B(피해자)가 다른 이성을 만난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한 것을 계기로 헤어졌다. 헤어진 B의 의사에 반하여 A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며 B의 집과 직장을 수차례 찾아갔다. B가 A를 만나주지 않자 A는 B의 직장 앞에서 B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발로 B의 종아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재차 발로 넘어져 있는 B의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표 3-2-3] 설문조사 시나리오 예시(2): 교제관계(전·현 연인 또는 배우자)×신체적 폭력 미수반

A(가해자)는 B(피해자)와 3개월가량 교제하던 중 A가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한 B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헤어진 B의 의사에 반하여 A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며 3일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100여 회를 발송하고 전화 50여 회를 시도하였다.

[표 3-2-4] 설문조사 시나리오 예시(4): 교제관계(타인과의 교제 의심)×신체적 폭력 미수반

A(가해자)는 자신과 동거 및 교제하고 있던 B(피해자)가 다른 이성을 만난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한 것을 계기로 헤어졌다. 헤어진 B의 의사에 반하여 A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며 3일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100여 회를 발송하고 전화 50여 회를 시도하였다.

나) 스토킹범죄 조치 내용

스토킹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교차하여 구성한 시나리오별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때 지역경찰관, 스토킹전담경찰관, 여청수사관이 각각 스토킹범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상이하고 반드시 스토킹처벌법 규정에 매이지 않고 다양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시나리오는 동일하게 제시하되, 택할 수 있는 조치의 범주를 달리하였다.

이에 따라 [표 3-2-5]와 같이 지역경찰관의 경우에는 1) 응급조치 1호(처벌 서면경

고), 2) 응급조치 4호(스토킹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3) 긴급응급조치 1호(주거 등 접근 금지), 4) 긴급응급조치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5) 현행범인 체포, 6) 임의동행, 7) 기타의 7가지 중, 스토킹전담경찰관의 경우에는 1) 112 시스템 등록, 2) 맞춤형 순찰, 3) 스마트워치 지급, 4) 홈캠·CCTV 설치, 5) 임시숙소 이동, 6) 민간 신변경호 실시, 7) 가해자 상담 연계, 8) 기타의 8가지 중, 여청수사관의 경우에는 1)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 2) 잠정조치 2호(주거 등 접근 금지), 3) 잠정조치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잠정조치 3의2호(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 잠정조치 4호(유치), 6) 구속, 7) 기타의 7가지 중에서 시나리오에 제시된 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복수응답하도록 하고, 기타 란에는 해당 시나리오의 상황에 고려할 수 있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지역경찰관에게 제시되는 조치 범주는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를 중심으로, 스토킹전담경찰관에게 제시되는 조치 범주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여청수사관에게 제시되는 조치 범주는 잠정조치 및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

[표 3-2-5] 경찰관 집단별 스토킹범죄 조치 내용

구분	지역경찰관	스토킹전담경찰관	여청수사관
조치 범주	1) 응급조치 1호(처벌 서면 경고) 2) 응급조치 4호(스토킹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3) 긴급응급조치 1호(주거 등 접근 금지) 4) 긴급응급조치 2호(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5) 현행범인 체포 6) 임의동행 7) 기타	1) 112 시스템 등록 2) 맞춤형 순찰 3) 스마트워치 지급 4) 홈캠·CCTV 설치 5) 임시숙소 이동 6) 민간 신변경호 실시 7) 가해자 상담 연계 8) 기타	1)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 2) 잠정조치 2호(주거 등 접근 금지) 3) 잠정조치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잠정조치 3의2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 잠정조치 4호(유치) 6) 구속 7) 기타

2) 개정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경험 및 평가

본 연구가 수행되는 기간 중인 2023년 6월 21일에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3년 7월 11일 시행되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스토킹처벌법이 개정·시행된 만큼 스토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가운데 개정사항을 어느 정도 체감하는지, 개정사항이 스토킹 보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개정 스토킹처벌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거나 법률상의 근거는 없지만 소위 '시책'의 형태로 이미 경찰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항들이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는지는 스토킹범죄에의 조치 결정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개정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1) 반의사불벌죄(구법 제18조 제3항) 삭제, 2) 스토킹행위 유형 추가(제2호 제1호 바목 및 사목), 3) 응급조치 시 처벌 서면경고(제3조 제1호), 4)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취소·변경·미신청시 통지·고지(제7조 제5항, 제8조 제3항, 제11조 제4항, 5)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연장·변경·취소신청(제11조 제2항), 6) 잠정조치 기간연장(제9조 제7항), 7)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제재 강화(제20조 제3항), 8)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금지(제17조의3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호)의 8가지를 들 수 있다. 이들 개정사항을 어느 정도 체감하는지(1: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 4: 매우 체감한다), 스토킹 보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매우 도움이 된다)를 각각 4점 척도를 질문하는 한편, 스토킹처벌법 개정·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조사가 수행되는 것을 고려하여 응답 범주로 '잘 모르겠다'를 두었다.

아울러, 개정 스토킹처벌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된 바 있거나 스토킹처벌법과는 무관하게 소위 '시책'의 형태로 이미 경찰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항들로는 1)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추가,[30] 2)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 상담위탁 추가,[31] 3)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도입,[32] 4) 접근 금지 반경을 100미터 이내에서 300미터 이내로 확

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121317, 제안일자 2023. 4. 12).

3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123320, 제안일자 2023. 7 18).

3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최근 제안일자순] 소병훈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120476, 제안일자 2023. 3. 7; 박영순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2119503, 제안일자 2023. 1. 17; 정춘숙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118644, 제안일자 2022. 12. 2; 권인숙의원 등 15인, 의안번호 2118139, 제안일자 2022. 11. 7); 김선교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2118038, 제안일자 2022. 11. 1; 김민석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117975, 제안일자 2022. 10. 28; 태영호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113986, 제안일자 2021. 12. 20; 남인순의원 등 11인, 의안번

대,[33] 5) 검사 청구 없이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을 법원에 직접 신청,[34] 6)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시 가중처벌,[35] 7) 응급조치 내용에 현행범인의 체포 명시,[36] 8) 긴급응급조치 결정 주체에 사법경찰리 추가[37]의 8가지를 도출하고,[38] 이들 사항이 추후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반영된다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를 각각 4점 척도를 질문하였다. 해당 내용에 대해 이전에 충분히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응답이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여 '잘 모르겠다'와 같은 응답 범주를 추가하였다.

3) 스토킹 통념 수용(stalking myth acceptance)

Burt(1980)가 강간범죄, 강간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 혹은 잘못된 신념을 측정하기 위한 강간 통념 수용 척도(Rape Myths Acceptance Scale)를 개발한 이래 젠더 기반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그 위중함을 부정하고 피해 사실을 축소함으로써 "거부당한 피해자"(rejected victim; Strobl, 2004)로 구성되는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젠더 기반 폭력으로 분류될 수 있는 범죄유형별로 특화된 통념 수용 척도가 다수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스토킹에 대해서도 스토킹 통념 수용(stalking myth acceptance)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활발하게 제안되고 있다.

호 2110747, 제안일자 2021. 6. 10). 한편, 스토킹처벌법에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 이들 8개 법률안 중 7개 법률안은 현재 대안반영폐기 된 상태다.

3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120179, 제안일자 2023. 2. 22).

34) 윤희근 경찰청장은 2022년 9월 19일 정례 간담회에서 현재의 3단계(경찰 신청, 검찰 청구, 법원 결정)로 이뤄진 긴급응급조치 구조를 경찰, 법원의 2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노컷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검찰과 스토킹 대응 협의체 신설…긴밀히 논의", 2022. 9. 19.자).

3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최근 제안일자순] 권인숙의원 등 15인, 의안번호 2118139, 제안일자 2022. 11. 7; 김민석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117975, 제안일자 2022. 10. 28; 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114454, 제안일자 2022. 1. 18).

36)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의 체포를 명시하고 있다(제5조 제1의2호).

37) 스토킹처벌법상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데 반해(제3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주체로는 사법경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제4조).

38) 이때 향후 스토킹처벌법 개정에의 반영사항을 도출함에 있어서는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거나 경찰청 등 유관 기관이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등 공식적으로 구체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먼저 McKeon과 동료들(2002, 미출간)은 [표 3-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4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스토킹 관련 태도 척도(Stalking-Related Attitudes Questionnaire, 이하 SRAQ 척도)를 제안하였다. 호주 빅토리아주 일반인 244명 및 경찰관 280명의 SRAQ 척도 응답결과를 요인분석(factor analysis) 한 결과, 34개 문항은 "스토킹은 심각하지 않음"(요인1, 19개 문항), "스토킹은 로맨틱함"(요인2, 7개 문항), "피해자들은 비난받아야 함"(요인3, 5개 문항)의 세 영역으로 묶였으며,[39] 일반인보다 경찰관이 스토킹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McKeon et al., 2015).

[표 3-2-6] 스토킹 통념 수용 문항(1): McKeon et al.(2002, 2015)

세부내용	요인부하량		
	요인1 (스토킹은 심각하지 않음)	요인2 (스토킹은 로맨틱함)	요인3 (피해자들은 비난받아야 함)
1. 로맨스의 일부로 남성이 어느 정도는 여성에게 구애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0.70	
2. 여성이 한 번이라도 거절하였다면 남성은 여성을 내버려둬야 한다.		0.42	
3. 남성과 여성이 교제관계에 있었다면 남성은 만난 적이 없는 사람보다 여성에게 요구할 권리가 더 많다.		0.33	
4. 여성은 너무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데이트를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0.33	0.36
5. 아내를 되찾으려는 것은 스토킹이 아니다.	0.46		
6. 데이트를 많이 하는 여성은 스토킹 당할 가능성이 높다.			0.83
7. 스토커를 거절하는 것은 그를 자극할 뿐이다.			0.53
8. 여성이 거절했더라도 어느 정도의 반복적인 전화와 미행은 괜찮다.	0.51	0.32	
9. 스토킹이라는 개념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다.	0.81		
10. 여성들은 끈질기게 구애하는 것을 애정표현이라고 생각한다.	0.36	0.44	
11. 당신이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도 당신을 안다면 그것은 스토킹이 아니다.	0.72		
12. 실제로 사랑에 빠졌다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을 범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0.43		

39) 해당 요인별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s)이 0.4 이상으로 나타난 문항만 요인에 포함하고 0.3 미만의 요인부하량은 표에 제시하지 않되, 2개 이상의 요인에 대해 요인부하량이 0.4 이상인 5개 문항(8번, 10번, 25번, 30번, 31번)은 요인부하량이 더 큰 요인에 포함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이 0.4 미만인 3개 문항(4번, 22번, 29번)은 요인점수 계산에서 제외하였다(MeKeon et al., 2015: 8).

세부내용	요인부하량		
	요인1 (스토킹은 심각하지 않음)	요인2 (스토킹은 로맨틱함)	요인3 (피해자들은 비난받아야 함)
13. 여성이 그냥 남성을 무시하면 남성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0.50		
14. 스토킹은 폭력의 일종이다.	0.61		
15. "처음에 성공하지 못했어도 다시 해봐"와 같은 생각이 스토킹을 용인한다.	−0.51		
16. 스토커는 성가신 존재이지만 범죄자는 아니다.	0.76		
17. 누군가와 정말 사랑에 빠졌다면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0.49		
18. 누군가 스토킹이라고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은 로맨틱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0.49	
19. 여성들이 말한 한 가지가 종종 다른 것을 뜻하기도 한다.		0.53	
20. 스토킹은 극단적인 형태의 구애일 뿐이다.	0.73		
21. 실제 폭력이 없다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0.95	
22. 어떤 여성은 실제 스토킹 당하기를 원하고, 이를 칭찬으로 여긴다.		0.30	0.34
23. 스토킹의 피해자는 종종 전 남자 친구가 보복하고자 하는 여성이다.		0.34	
24. 반복적으로 누군가를 따라다니고, 전화를 걸고, 선물을 남기는 것은 실제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	0.77		
25. 특정 유형의 여성은 스토킹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		0.31	0.53
26. 스토킹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	0.72		
27. 여성이 명확히 '아니오'를 말할 수 없다면 '스토킹'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			0.43
28. 여성이 여지를 준다면 남성은 계속 구애할 권리가 있다.		0.45	
29. 스토킹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민감한 경향이 있다.	0.35		0.36
30. 비록 성가시더라도 대부분의 여성은 스토킹으로 인해 조금은 기분이 좋아진다.	0.43	0.35	
31. 누군가가 계속해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선물을 준다면 스토킹은 훨씬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된다.	0.52	0.36	
32. 낯선 사람에 의한 스토킹만이 오직 진정한 스토킹이다.	0.75		
33. 누구나 스토킹을 당할 수 있다.	0.71		
34. 스토커는 여지가 있을 때에만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0.46		

비고: McKeon과 동료들(2002: 7-8)의 분석결과를 Stalking-Related Attitude Questionnaire (SRAQ) 문항 번호순에 따라 재배열함

McKeon과 동료들(2002, 2015)이 개발한 SRAQ 척도를 활용하여 Kamphuis와 동료들(2005)은 벨기에·영국·네덜란드·이탈리아의 4개국 경찰관 및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40]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amphuis와 동료들(2005)은 [표 3-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34개 항목 중 19개 항목이 '스토킹은 성가신 일(nuisance)'(6개 문항), '피해자 비난'(7개 문항), '스토킹은 애정표현(flattery)'(6개 문항)의 세 영역으로 묶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영역별 평균점수를 살펴보았을 때 네덜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국에서는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보다 경찰관이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가 높았으며, 이는 시나리오 형태로 제시된 스토킹 사건에 대한 개입 필요성 판단에 있어서도[41]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 스토킹 통념 수용 문항(2): Kamphuis et al.(2005)

구분	세부내용
I. 스토킹은 성가신 일 (nuisance) (6문항)	9. 스토킹이라는 개념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다. 16. 스토커는 성가신 존재이지만 범죄자는 아니다. 20. 스토킹은 극단적인 형태의 구애일 뿐이다. 21. 실제 폭력이 없다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26. 스토킹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 32. 낯선 사람에 의한 스토킹만이 오직 진정한 스토킹이다.
II. 피해자 비난 (7문항)	6. 데이트를 많이 하는 여성은 스토킹 당할 가능성이 높다. 13. 여성이 그냥 남성을 무시하면 남성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23. 스토킹의 피해자는 종종 전 남자 친구가 보복하고자 하는 여성이다. 27. 여성이 명확히 '아니오'를 말할 수 없다면 '스토킹'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 28. 여성이 여지를 준다면 남성은 계속 구애할 권리가 있다. 29. 스토킹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민감한 경향이 있다. 34. 스토커는 여지가 있을 때에만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III. 스토킹은 애정표현 (flattery) (6문항)	10. 여성들은 끈질기게 구애하는 것을 애정표현이라고 생각한다. 19. 여성들이 말한 한 가지가 종종 다른 것을 뜻하기도 한다. 22. 어떤 여성은 실제 스토킹 당하기를 원하고, 이를 칭찬으로 여긴다. 24. 반복적으로 누군가를 따라다니고, 전화를 걸고, 선물을 남기는 것은 실제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 30. 비록 성가시더라도 대부분의 여성은 스토킹으로 인해 조금은 기분이 좋아진다. 31. 누군가가 계속해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선물을 준다면 스토킹은 훨씬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된다.

비고: 각 문항 번호는 McKeon과 동료들(2002, 2015)의 Stalking-Related Attitude Questionnaire (SRAQ) 문항 번호에 따름

40) 구체적인 응답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 316명(벨기에 125명, 영국 79명, 네덜란드 62명, 이탈리아 50명),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175명(벨기에 46명, 영국 37명, 네덜란드 44명, 이탈리아 48명)

41) 이때 스토킹 사건에 대한 개입 필요성 판단 정도는 '이 사건을 (스토킹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Kamphuis et al. 2005: 220).

본 연구는 McKeon과 동료들(2002, 2015)이 개발한 SRAQ 척도를 바탕으로 Kamphuis와 동료들(2005)이 제안한 19개 문항을 활용하여 조사참여 경찰관들의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4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 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조사 결과

가. 조사참여 경찰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은 총 564명으로, 지역경찰관은 346명, 스토킹전담경찰관은 73명, 여청수사관은 145명이었다. [표 3-2-8]은 조사참여 경찰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스토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집단에 따라 성별, 연령대, 현 부서 근무기간, 재직기간에 있어서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42]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지역경찰관 중 남성은 82.08%(284명), 여성은 17.92%(62명)으로, 전체 경찰조직의 성별 구조와 유사하게 나타난 데 반해, 스토킹전담경찰관 중 남성은 50.68%(37명), 여성은 49.32%(36명)으로, 여성경찰관이 다수 스토킹전담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표 3-2-8] 조사참여 경찰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지역경찰관 (n=346, 100.0%)	스토킹 전담경찰관 (n=73, 100.0%)	여청수사관 (n=145, 100.0%)	계 (n=564, 100.0%)	χ^2
성별	남	n	284	37	113	434	33.61*** (df=2)
		%	82.08	50.68	77.93	76.95	
	여	n	62	36	32	130	
		%	17.92	49.32	22.07	23.05	
연령대	20대	n	92	10	14	116	41.13*** (df=6)
		%	26.59	13.7	9.66	20.57	

42) 응답자가 특정 내지 식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조사참여를 주저하지 않도록 근무지역에 대해서는 조사참여에 따른 사례 수령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참여 경찰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근무지역은 조사에서 파악되지 않는다.

구분			지역경찰관 (n=346, 100.0%)	스토킹 전담경찰관 (n=73, 100.0%)	여청수사관 (n=145, 100.0%)	계 (n=564, 100.0%)	χ^2
	30대	n	106	33	80	219	
		%	30.64	45.21	55.17	38.83	
	40대	n	70	20	33	123	
		%	20.23	27.4	22.76	21.81	
	50대 이상	n	78	10	18	106	
		%	22.54	13.7	12.41	18.79	
현 부서 근무기간	1년 미만	n	90	18	26	134	41.51*** (df=6)
		%	26.01	24.66	17.93	23.76	
	1년 이상~ 3년 미만	n	94	32	66	192	
		%	27.17	43.84	45.52	34.04	
	3년 이상~ 5년 미만	n	24	11	22	57	
		%	6.94	15.07	15.17	10.11	
	5년 이상	n	138	12	31	181	
		%	39.88	16.44	21.38	32.09	
재직기간	1년 미만	n	50	-	-	50	66.35*** (df=10)
		%	14.45			8.87	
	1년 이상~ 3년 미만	n	46	6	8	60	
		%	13.29	8.22	5.52	10.64	
	3년 이상~ 5년 미만	n	42	7	16	65	
		%	12.14	9.59	11.03	11.52	
	5년 이상~ 10년 미만	n	60	24	57	141	
		%	17.34	32.88	39.31	25	
	10년 이상~ 20년 미만	n	66	19	40	125	
		%	19.08	26.03	27.59	22.16	
	20년 이상	n	82	17	24	123	
		%	23.7	23.29	16.55	21.81	

*** p<0.001

이어 연령대를 살펴보면, 지역경찰관은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조사에 참여한 반면, 스토킹전담경찰관 및 여청수사관의 경우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45.21%(33명) 및 55.17%(80명)로 가장 높다. 현 부서 근무기간에 있어서도 스토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집단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스토킹전담경찰관 및 여청수사관의 경우 현 부서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비율이 각각

69.49%(50명) 및 63.45%(92명)로 나타나, 3년 이상 장기간 현 부서에 근무한 비율이 지역경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기할 것은 재직기간으로, 스토킹전담경찰관 및 여청수사관 중 10명 중 6~7명은 현 부서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데 반해, 10명 중 7~8명꼴로 5년 이상 재직하였으며, 1년 미만 재직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재직기간과 스토킹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과 부서 근무기간이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조사에 참여한 스토킹전담경찰관 및 여청수사관이 스토킹 관련 업무를 맡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지만 경찰관으로서의 경험은 짧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 이와는 달리, 지역경찰관의 재직기간은 전 급간에서 전반적으로 고른 비율을 보인다.

나. 개정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경험 및 평가

1)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 체감

[표 3-2-9]는 2023년 7월 11일 개정·시행된 스토킹처벌법 내용을 평소 스토킹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체감하는지를 질문한 결과다.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제재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개정사항에 대한 체감 정도는 맡고 있는 업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반의사불벌죄 삭제'는 8가지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 중 스토킹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가장 높은 정도로 체감하는 내용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의 절반가량(47.87%, 270명)이 '반의사불벌죄 삭제'를 매우 체감한다고 답변하였다. '반의사불벌죄 삭제'를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여청수사관은 한 명도 없었으며, 스토킹전담경찰관 및 여청수사관 중 '반의사불벌죄 삭제' 개정사항을 모르겠다는 경우는 없었다. 특히, 여청수사관의 경우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반의사불벌죄 삭제'를 체감하고 있다고 답변, '반의사불벌죄 삭제'가 스토킹범죄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여청수사관 중에는 '반의사불벌죄 삭제',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 연장·변경·취소 신청', '잠정조치 기간 연장'의 3개 개정사항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의사불벌죄 삭제'와는 달리 '스토킹행위 유형 (제2호 제1호 바목 및 사목) 추가'

는 스토킹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체감하지 못하는 개정사항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 10명 중 3명(29.97%, 169명)꼴로 '스토킹행위 유형 (제2호 제1호 바목 및 사목) 추가' 개정사항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표 3-2-9]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 체감

	구분		지역경찰관 (n=346, 100.0%)	스토킹 전담경찰관 (n=73, 100.0%)	여청수사관 (n=145, 100.0%)	계 (n=564, 100.0%)	χ^2 (df=8)
1) 반의사불벌죄 삭제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	n	4	-	2	6	30.51***
		%	1.16		1.38	1.06	
	별로 체감하지 못한다	n	64	2	13	79	
		%	18.5	2.74	8.97	14.01	
	약간 체감한다	n	112	36	49	197	
		%	32.37	49.32	33.79	34.93	
	매우 체감한다	n	154	35	81	270	
		%	44.51	47.95	55.86	47.87	
	잘 모르겠다	n	12	-	-	12	
		%	3.47			2.13	
2) 스토킹행위 유형(제2호 제1호 바목 및 사목) 추가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	n	10	2	8	20	15.85*
		%	2.89	2.74	5.52	3.55	
	별로 체감하지 못한다	n	82	19	48	149	
		%	23.7	26.03	33.1	26.42	
	약간 체감한다	n	146	38	63	247	
		%	42.2	52.05	43.45	43.79	
	매우 체감한다	n	96	13	22	131	
		%	27.75	17.81	15.17	23.23	
	잘 모르겠다	n	12	1	4	17	
		%	3.47	1.37	2.76	3.01	
3) 응급조치 시 처벌 서면경고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	n	14	4	9	27	24.44**
		%	4.05	5.48	6.21	4.79	
	별로 체감하지 못한다	n	54	18	46	118	
		%	15.61	24.66	31.72	20.92	
	약간 체감한다	n	166	30	66	262	
		%	47.98	41.10	45.52	46.45	
	매우 체감한다	n	106	20	22	148	
		%	30.64	27.40	15.17	26.24	
	잘 모르겠다	n	6	1	2	9	
		%	1.73	1.37	1.38	1.6	

	구분		지역경찰관 (n=346, 100.0%)	스토킹 전담경찰관 (n=73, 100.0%)	여청수사관 (n=145, 100.0%)	계 (n=564, 100.0%)	χ^2 (df=8)
4)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취소·변경·미신청 시 통지·고지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	n	22	2	2	26	19.19*
		%	6.36	2.74	1.38	4.61	
	별로 체감하지 못한다	n	68	19	49	136	
		%	19.65	26.03	33.79	24.11	
	약간 체감한다	n	156	27	56	239	
		%	45.09	36.99	38.62	42.38	
	매우 체감한다	n	94	25	36	155	
		%	27.17	34.25	24.83	27.48	
	잘 모르겠다	n	6	–	2	8	
		%	1.73		1.38	1.42	
5)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 연장·변경·취소 신청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	n	28	3	4	35	32.08***
		%	8.09	4.11	2.76	6.21	
	별로 체감하지 못한다	n	104	11	34	149	
		%	30.06	15.07	23.45	26.42	
	약간 체감한다	n	108	33	71	212	
		%	31.21	45.21	48.97	37.59	
	매우 체감한다	n	88	25	36	149	
		%	25.43	34.25	24.83	26.42	
	잘 모르겠다	n	18	1	–	19	
		%	5.20	1.37		3.37	
6) 잠정조치 기간 연장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	n	22	2	6	30	33.12***
		%	6.36	2.74	4.14	5.32	
	별로 체감하지 못한다	n	90	8	21	119	
		%	26.01	10.96	14.48	21.1	
	약간 체감한다	n	104	29	68	201	
		%	30.06	39.73	46.90	35.64	
	매우 체감한다	n	112	33	50	195	
		%	32.37	45.21	34.48	34.57	
	잘 모르겠다	n	18	1	–	19	
		%	5.20	1.37		3.37	
7)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제재 강화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	n	16	1	4	21	7.42
		%	4.62	1.37	2.76	3.72	
	별로 체감하지 못한다	n	66	9	25	100	
		%	19.08	12.33	17.24	17.73	
	약간 체감한다	n	112	26	56	194	
		%	32.37	35.62	38.62	34.4	
	매우 체감한다	n	134	32	56	222	
		%	38.73	43.84	38.62	39.36	
	잘 모르겠다	n	18	5	4	27	
		%	5.20	6.85	2.76	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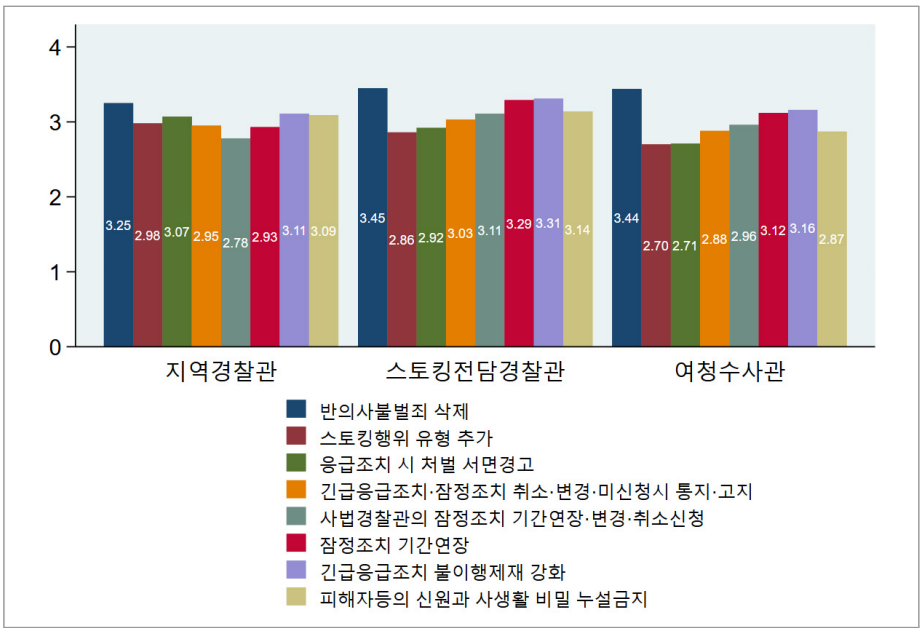
	구분		지역경찰관 (n=346, 100.0%)	스토킹 전담경찰관 (n=73, 100.0%)	여청수사관 (n=145, 100.0%)	계 (n=564, 100.0%)	χ^2 (df=8)
8)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	n	10	1	12	23	33.14***
		%	2.89	1.37	8.28	4.08	
	별로 체감하지 못한다	n	88	14	30	132	
		%	25.43	19.18	20.69	23.4	
	약간 체감한다	n	94	31	65	190	
		%	27.17	42.47	44.83	33.69	
	매우 체감한다	n	136	26	36	198	
		%	39.31	35.62	24.83	35.11	
	잘 모르겠다	n	18	1	2	21	
		%	5.20	1.37	1.38	3.72	

*** p<0.001, ** p<0.01, * p<0.05

'응급조치 시 처벌 서면경고'에 있어서는 이를 체감한다고 응답한 지역경찰관의 비율(78.61%, 272명)이 스토킹전담경찰관 및 여청수사관(60.69%, 78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지역경찰관이 '응급조치 시 처벌 서면경고'를 실행하는 주체인 점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응급조치 시 처벌 서면경고' 외에도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개정사항을 매우 체감한다는 비율이 스토킹전담경찰관(35.62%, 26명) 및 여청수사관(24.83%, 36명)에 비해 지역경찰관에서 좀 더 높았다(39.31%, 136명).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취소·변경·미신청 시 통지·고지'나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 연장·변경·취소 신청', '잠정조치 기간 연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제재 강화' 등 피해자에게 통지·고지·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사항에 대한 체감 정도는 스토킹전담경찰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3-2-1]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 체감: 경찰관 집단별 평균



비고: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제외.

[그림 3-2-1]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별 체감 정도의 평균을 스토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집단별로 살펴본 것이다. 스토킹 관련 업무 구분에 관계없이 다른 개정사항에 비해 반의사불벌죄 삭제에 대한 평균 체감 정도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스토킹전담경찰관은 지역경찰관 및 여청수사관에 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 전반을 상대적으로 높이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경찰관보다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는 여청수사관은 잠정조치와 관련된 항목, 즉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 연장·변경·취소 신청', '잠정조치 기간 연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제재 강화'를 제외하면 지역경찰관보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에 대한 평균적인 체감 정도가 낮았다.

2)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의 피해자 보호 효과 평가

[표 3-2-10]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다. 8개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 모두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찰관의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제재 강화'는 피해자 보호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이었다(83.69%, 472명). 전반적으로 지역경찰관 및 스토킹전담경찰관의 10명 중 7~8명꼴로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데 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는 여청수사관의 비율은 그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에 대한 경찰 내 평가가 단일하지 않으며, 담당 업무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응급조치 시 처벌 서면경고'와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제재 강화'에 있어서는 스토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집단 간에 피해자 보호 효과에 대한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여청수사관들은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 연장·변경·취소 신청', '잠정조치 기간 연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제재 강화' 3개 개정사항 외에는 모두 피해자 보호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

'반의사불벌죄 삭제'는 스토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집단 간에 피해자 보호 효과에 있어서의 평가 차이가 가장 엇갈리는 개정사항이었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찰관의 76.30%(264명) 및 스토킹전담경찰관의 80.82%(59명)이 '반의사불벌죄 삭제'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반면, 여청수사관의 53.79%(78명)만이 '반의사불벌죄 삭제'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표 3-2-10]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의 피해자 보호 효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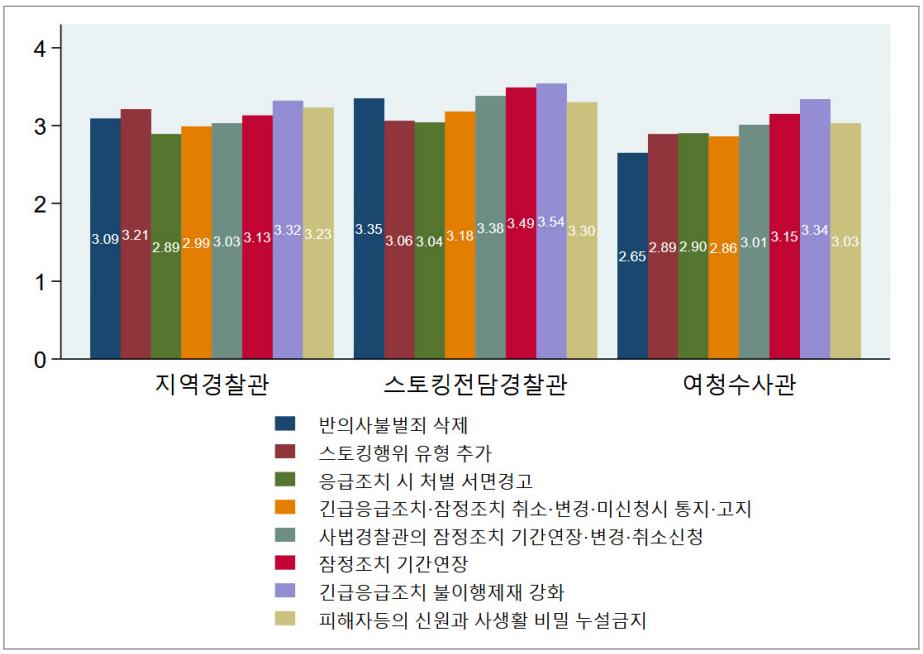
	구분		지역경찰관 (n=346, 100.0%)	스토킹 전담경찰관 (n=73, 100.0%)	여청수사관 (n=145, 100.0%)	계 (n=564, 100.0%)	χ^2
1) 반의사불벌죄 삭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n	10	–	18	28	56.43***
		%	2.89		12.41	4.96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n	66	10	49	125	
		%	19.08	13.7	33.79	22.16	
	약간 도움이 된다	n	148	25	44	217	
		%	42.77	34.25	30.34	38.48	
	매우 도움이 된다	n	116	34	34	184	
		%	33.53	46.58	23.45	32.62	
	잘 모르겠다	n	6	4	–	10	
		%	1.73	5.48		1.77	

	구분		지역경찰관 (n=346, 100.0%)	스토킹 전담경찰관 (n=73, 100.0%)	여청수사관 (n=145, 100.0%)	계 (n=564, 100.0%)	χ^2
2) 스토킹행위 유형 (제2호 제1호 바목 및 사목) 추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n	4	2	2	8	28.91***
		%	1.16	2.74	1.38	1.42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n	54	12	40	106	
		%	15.61	16.44	27.59	18.79	
	약간 도움이 된다	n	148	36	75	259	
		%	42.77	49.32	51.72	45.92	
	매우 도움이 된다	n	134	20	28	182	
		%	38.73	27.4	19.31	32.27	
	잘 모르겠다	n	6	3	–	9	
		%	1.73	4.11		1.6	
3) 응급조치 시 처벌 서면경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n	14	1	5	20	9.11
		%	4.05	1.37	3.45	3.55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n	96	15	47	158	
		%	27.75	20.55	32.41	28.01	
	약간 도움이 된다	n	142	36	51	229	
		%	41.04	49.32	35.17	40.6	
	매우 도움이 된다	n	88	20	42	150	
		%	25.43	27.4	28.97	26.6	
	잘 모르겠다	n	6	1	–	7	
		%	1.73	1.37		1.24	
4)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취소·변경·미신청 시 통지·고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n	10	1	4	15	18.43*
		%	2.89	1.37	2.76	2.66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n	72	15	46	133	
		%	20.81	20.55	31.72	23.58	
	약간 도움이 된다	n	168	25	61	254	
		%	48.55	34.25	42.07	45.04	
	매우 도움이 된다	n	90	30	34	154	
		%	26.01	41.10	23.45	27.3	
	잘 모르겠다	n	6	2	–	8	
		%	1.73	2.74		1.42	
5)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 연장·변경·취소 신청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n	4	1	2	7	35.66***
		%	1.16	1.37	1.38	1.24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n	66	5	36	107	
		%	19.08	6.85	24.83	18.97	
	약간 도움이 된다	n	192	31	66	289	
		%	55.49	42.47	45.52	51.24	
	매우 도움이 된다	n	84	34	41	159	
		%	24.28	46.58	28.28	28.19	
	잘 모르겠다	n	–	2	–	2	
		%		2.74		0.35	

	구분		지역경찰관 (n=346, 100.0%)	스토킹 전담경찰관 (n=73, 100.0%)	여청수사관 (n=145, 100.0%)	계 (n=564, 100.0%)	χ^2
6) 잠정조치 기간 연장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n	10	1	–	11	22.75**
		%	2.89	1.37		1.95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n	60	2	33	95	
		%	17.34	2.74	22.76	16.84	
	약간 도움이 된다	n	148	29	55	232	
		%	42.77	39.73	37.93	41.13	
	매우 도움이 된다	n	124	39	55	218	
		%	35.84	53.42	37.93	38.65	
	잘 모르겠다	n	4	2	2	8	
		%	1.16	2.74	1.38	1.42	
7)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제재 강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n	10	–	2	12	13.05
		%	2.89		1.38	2.1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n	48	4	15	67	
		%	13.87	5.48	10.34	11.88	
	약간 도움이 된다	n	102	25	58	185	
		%	29.48	34.25	40	32.80	
	매우 도움이 된다	n	176	43	68	287	
		%	50.87	58.9	46.9	50.89	
	잘 모르겠다	n	10	1	2	13	
		%	2.89	1.37	1.38	2.3	
8)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n	10	–	2	12	22.40**
		%	2.89		1.38	2.1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n	42	9	38	89	
		%	12.14	12.33	26.21	15.78	
	약간 도움이 된다	n	148	32	59	239	
		%	42.77	43.84	40.69	42.38	
	매우 도움이 된다	n	142	30	46	218	
		%	41.04	41.1	31.72	38.65	
	잘 모르겠다	n	4	2	–	6	
		%	1.16	2.74		1.06	

*** p<0.001, ** p<0.01, * p<0.05

[그림 3-2-2]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의 피해자 보호 효과 평가: 경찰관 집단별 평균



비고: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제외.

[그림 3-2-2]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별 피해자 보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스토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집단별로 살펴본 것이다. 앞서 [표 3-2-10]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토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피해자 보호 효과에 있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이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제재 강화'라는 점은 [그림 3-2-2]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3개 집단 중 스토킹전담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이 갖는 피해자 보호 효과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반해, 여청수사관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른 피해자 보호 효과를 가장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드러나며, '반의사불벌죄 삭제'에 대한 피해자 보호 효과 평가는 다른 경찰관 집단이나 다른 개정사항과 사뭇 차이를 보인다. 반면, 스토킹전담경찰관은 전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 삭제'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청수사관의 평가와 대조를 이룬다.

3) 스토킹처벌법 개정 논의사항의 피해자 보호 효과 전망

[표 3-2-11]은 금번 스토킹처벌법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 향후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반영된다면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다. 경찰관 집단 구분에 관계 없이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이 가장 높은 정도로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사항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다(83.69%, 472명). 그다음으로는 '검사 청구 없이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을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81.03%, 457명). 이 두 사항에 대해서는 스토킹전담경찰관 대다수(각각 91.78%, 67명; 93.15%, 68명)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응급조치 결정 주체에 사법경찰리를 추가'하는 것은 스토킹전담경찰관이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가장 높게 평가하는 항목이었다(95.89%, 70명).

[표 3-2-11] 스토킹처벌법 개정 논의사항의 피해자 보호 효과 전망

	구분		지역경찰관 (n=346, 100.0%)	스토킹 전담경찰관 (n=73, 100.0%)	여청수사관 (n=145, 100.0%)	계 (n=564, 100.0%)	χ^2
1)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추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n	22	2	9	33	26.96**
		%	6.36	2.74	6.21	5.85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n	54	9	45	108	
		%	15.61	12.33	31.03	19.15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n	150	36	65	251	
		%	43.35	49.32	44.83	44.50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n	108	24	24	156	
		%	31.21	32.88	16.55	27.66	
	잘 모르겠다	n	12	2	2	16	
		%	3.47	2.74	1.38	2.84	
2)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 상담위탁 추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n	18	4	11	33	13.53
		%	5.2	5.48	7.59	5.85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n	78	9	38	125	
		%	22.54	12.33	26.21	22.16	

	구분		지역경찰관 (n=346, 100.0%)	스토킹 전담경찰관 (n=73, 100.0%)	여청수사관 (n=145, 100.0%)	계 (n=564, 100.0%)	χ^2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n	132	26	52	210	
		%	38.15	35.62	35.86	37.23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n	112	34	44	190	
		%	32.37	46.58	30.34	33.69	
	잘 모르겠다	n	6	–	–	6	
		%	1.73			1.06	
3)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n	6	–	4	10	14.39
		%	1.73		2.76	1.77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n	46	3	10	59	
		%	13.29	4.11	6.9	10.46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n	112	21	55	188	
		%	32.37	28.77	37.93	33.33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n	166	46	72	284	
		%	47.98	63.01	49.66	50.35	
	잘 모르겠다	n	16	3	4	23	
		%	4.62	4.11	2.76	4.08	
4) 접근 금지 반경을 100미터 이내에서 300미터 이내로 확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n	16	–	21	37	45.94***
		%	4.62		14.48	6.56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n	84	13	50	147	
		%	24.28	17.81	34.48	26.06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n	100	28	44	172	
		%	28.90	38.36	30.34	30.5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n	136	27	26	189	
		%	39.31	36.99	17.93	33.51	
	잘 모르겠다	n	10	5	4	19	
		%	2.89	6.85	2.76	3.37	
5) 검사 청구 없이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을 법원에 직접 신청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n	4	–	6	10	32.06***
		%	1.16		4.14	1.77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n	40	3	30	73	
		%	11.56	4.11	20.69	12.94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n	106	23	56	185	
		%	30.64	31.51	38.62	32.80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n	180	45	47	272	
		%	52.02	61.64	32.41	48.23	
	잘 모르겠다	n	16	2	6	24	
		%	4.62	2.74	4.14	4.26	

	구분		지역경찰관 (n=346, 100.0%)	스토킹 전담경찰관 (n=73, 100.0%)	여청수사관 (n=145, 100.0%)	계 (n=564, 100.0%)	χ^2
6)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시 가중처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n	10	1	9	20	55.59***
		%	2.89	1.37	6.21	3.55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n	36	9	44	89	
		%	10.40	12.33	30.34	15.78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n	118	27	40	185	
		%	34.10	36.99	27.59	32.8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n	178	30	44	252	
		%	51.45	41.10	30.34	44.68	
	잘 모르겠다	n	4	6	8	18	
		%	1.16	8.22	5.52	3.19	
7) 응급조치 내용에 현행범인의 체포 명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n	–	1	2	3	42.66***
		%		1.37	1.38	0.53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n	36	7	37	80	
		%	10.4	9.59	25.52	14.18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n	116	27	48	191	
		%	33.53	36.99	33.10	33.87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n	184	29	50	263	
		%	53.18	39.73	34.48	46.63	
	잘 모르겠다	n	10	9	8	27	
		%	2.89	12.33	5.52	4.79	
8) 긴급응급조치 결정 주체에 사법경찰리 추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n	10	–	–	10	50.71***
		%	2.89			1.77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n	36	1	23	60	
		%	10.4	1.37	15.86	10.64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n	78	26	57	161	
		%	22.54	35.62	39.31	28.55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n	222	44	59	325	
		%	64.16	60.27	40.69	57.62	
	잘 모르겠다	n	–	2	6	8	
		%		2.74	4.14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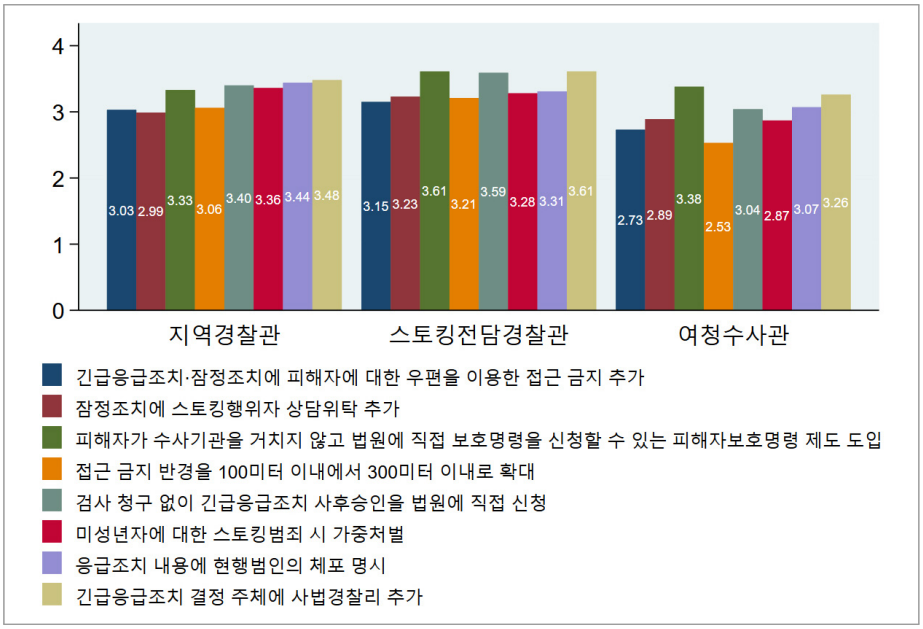
*** p<0.001, ** p<0.01, * p<0.05

경찰관 집단 간에 향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엇갈리는 경향을 보였다. 대체적으로, 지역경찰관 및 스토킹전담경찰관은 언급된 사항들이 다음 스토킹처벌법 개정 시 반영이

되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여청수사관은 그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보호 효과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한편,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 상담위탁 추가' 및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이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스토킹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일례로, '접근 금지 반경을 100미터 이내에서 300미터 이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지역경찰관의 68.21%(236명) 및 스토킹전담경찰관의 75.34%(55명)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데 반해, 여청수사관의 48.28%(70명)만이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시 가중처벌'과 관련하여서도 지역경찰관의 85.55%(296명) 및 스토킹전담경찰관의 78.08%(57명)이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여청수사관 중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 비율은 57.93%(84명)로 지역경찰관 및 스토킹전담경찰관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림 3-2-3] 스토킹처벌법 개정 논의사항의 피해자 보호 효과 전망: 경찰관 집단별 평균



비고: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제외.

[그림 3-2-3]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피해자 보호 효과에 대한 전망을 스토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집단별로 살펴본 것이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별 피해자 보호 효과 평가에 대한 [그림 3-2-2]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찰관 및 스토킹전담경찰관에 비해 여청수사관이 스토킹처벌법 개정 논의사항이 피해자 보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관련하여 검토되고 있는 사항 중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역경찰관이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긴급응급조치 결정 주체에 사법경찰리를 추가하는 것이었으며(평균 3.48점), 스토킹전담경찰관은 이에 더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 또한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평균 3.61점).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은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관련하여 검토되고 있는 사항 중에 여청수사관이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장 높게 평가한 것이기도 하다(평균 3.38점). 한편, 여청수사관은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관련하여 검토되고 있는 사항 중에서도 접근 금지 반경을 100미터 이내에서 300미터 이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정도가 다소 낮았다(평균 2.53점).

다. 스토킹 통념 수용(stalking myth acceptance)

1) 요인분석 결과

[표 3-2-12]는 McKeon과 동료들(2002, 2015)이 개발한 SRAQ 척도를 바탕으로 Kamphuis와 동료들(2005)이 제안한 스토킹 통념 수용을 측정하는 19개 문항에 대한 조사참여 경찰관들의 응답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요인분석 결과, Kamphuis와 동료들(2005)의 분석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19개 문항은 '스토킹은 성가신 일(nuisance)',(6개 문항) '피해자 비난'(7개 문항), '스토킹은 애정표현(flattery)'(6개 문항)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요인으로 분류된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0.6 이상으로 높았다. 영역별로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를 확인한 결과 또한 각각 0.916, 0.878, 0.924로 높게 나타났다.

[표 3-2-12] 스토킹 통념 수용 문항 요인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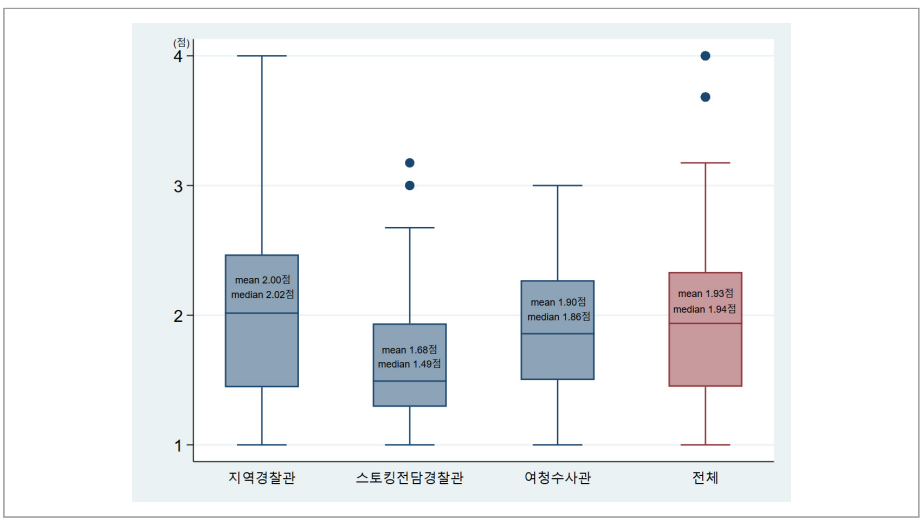
세부내용	요인부하량			내적 신뢰도 (Cronbach's alpha)
	요인1 스토킹은 성가신 일 (nuisance) (6문항)	요인2 피해자 비난 (7문항)	요인3 스토킹은 애정표현 (flattery) (6문항)	
스토킹이라는 개념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다.	0.809			0.916
스토커는 성가신 존재이지만 범죄자는 아니다.	0.893			
스토킹은 극단적인 형태의 구애일 뿐이다.	0.682			
실제 폭력이 없다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0.829			
스토킹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	0.846			
낯선 사람에 의한 스토킹만이 오직 진정한 스토킹이다.	0.789			
데이트를 많이 하는 여성은 스토킹 당할 가능성이 높다.		0.706		0.878
여성이 그냥 남성을 무시하면 남성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0.682		
스토킹의 피해자는 종종 전 남자 친구가 보복하고자 하는 여성이다.		0.621		
여성이 명확히 '아니오'를 말할 수 없다면 '스토킹'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		0.682		
여성이 여지를 준다면 남성은 계속 구애할 권리가 있다.		0.719		
스토킹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민감한 경향이 있다.		0.793		
스토커는 여지가 있을 때에만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0.770		
여성들은 끈질기게 구애하는 것을 애정표현이라고 생각한다.			0.822	0.924
여성들이 말한 한 가지가 종종 다른 것을 뜻하기도 한다.			0.624	
어떤 여성은 실제 스토킹 당하기를 원하고, 이를 칭찬으로 여긴다.			0.860	
반복적으로 누군가를 따라다니고, 전화를 걸고, 선물을 남기는 것은 실제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			0.862	
비록 성가시더라도 대부분의 여성은 스토킹으로 인해 조금은 기분이 좋아진다.			0.918	
누군가가 계속해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선물을 준다면 스토킹은 훨씬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된다.			0.848	

2)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표 3-2-13]은 McKeon과 동료들(2002, 2015)이 개발한 SRAQ 척도를 축약하여 Kamphuis와 동료들(2005)이 제안한 19개 문항에 대해 4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 매우 동의한다)로 측정한 조사참여 경찰관들의 응답을 4점 만점으로 환산, 합산한 후 평균을 계산한 값을 정리한 것이다. 값이 클수록 해당 스토킹 통념을 깊게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개 스토킹 통념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은 1.93점, 중앙값 1.94점으로,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의 스토킹 통념 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측정되었다. 3개 경찰관 집단 중 스토킹전담경찰관이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가 가장 낮았으며(평균 1.68점, 중앙값 1.49점), 그다음으로는 여청수사관(평균 1.90점, 중앙값 1.86점), 지역경찰관(평균 2.00점, 2.02점) 순이었다. 아울러, 경찰관 집단 구분에 무관하게 '피해자 비난'(요인2)에 해당하는 문항의 평균값이 '스토킹은 성가신 일'(요인1)이나 '스토킹은 애정표현'(요인3)에 해당하는 문항의 평균값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경찰관 집단 구분에 따른 '스토킹은 성가신 일'(요인1) 해당 문항 간 응답 차이는 '피해자 비난'(요인2)이나 '스토킹은 애정표현'(요인3) 해당 문항 간 응답 차이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2-4]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전체 문항 평균: 경찰관 집단별



전체 문항 중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문항은 '여성이 명확히 '아니오'를 말할 수 없다면 '스토킹'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로(평균 2.43점),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표현에 기초하여 스토킹 사건에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관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다음으로 평균값이 높은 문항은 '데이트를 많이 하는 여성은 스토킹 당할 가능성이 높다'(평균 2.39점), '여성이 여지를 준다면 남성은 계속 구애할 권리가 있다'(평균 2.35점), '스토킹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민감한 경향이 있다'(평균 2.21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문항은 모두 스토킹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거나 스토킹 피해자를 민감하다고 여기는 '피해자 비난'(요인2)과 관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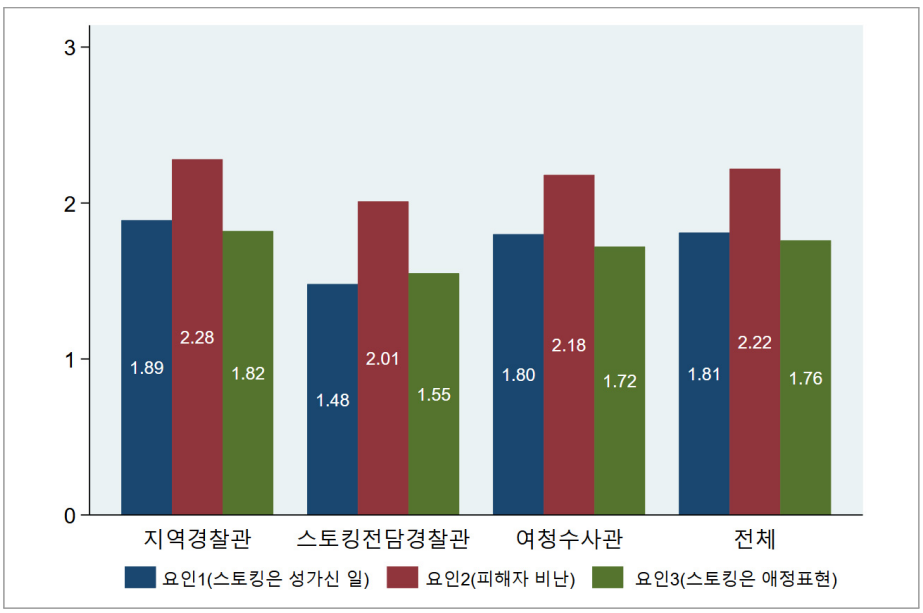
[표 3-2-13]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경찰관 집단별 평균

세부내용	지역경찰관 (n=346)	스토킹 전담경찰관 (n=73)	여청수사관 (n=145)	계 (n=564)	χ^2
스토킹이라는 개념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다.	1.91	1.52	1.90	1.86	31.12***
스토커는 성가신 존재이지만 범죄자는 아니다.	1.79	1.48	1.76	1.74	
스토킹은 극단적인 형태의 구애일 뿐이다.	2.05	1.45	1.76	1.90	
실제 폭력이 없다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1.80	1.51	1.75	1.75	
스토킹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	1.90	1.45	1.80	1.82	
낯선 사람에 의한 스토킹만이 오직 진정한 스토킹이다.	1.88	1.49	1.81	1.82	
데이트를 많이 하는 여성은 스토킹 당할 가능성이 높다.	2.47	2.15	2.31	2.39	20.85**
여성이 그냥 남성을 무시하면 남성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1.90	1.55	1.84	1.84	
스토킹의 피해자는 종종 전 남자 친구가 보복하고자 하는 여성이다.	2.24	1.99	2.19	2.20	
여성이 명확히 '아니오'를 말할 수 없다면 '스토킹'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	2.55	2.26	2.25	2.43	
여성이 여지를 준다면 남성은 계속 구애할 권리가 있다.	2.42	1.99	2.37	2.35	
스토킹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민감한 경향이 있다.	2.22	1.97	2.32	2.21	
스토커는 여지가 있을 때에만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2.06	1.64	1.86	1.96	

세부내용	지역경찰관 (n=346)	스토킹 전담경찰관 (n=73)	여청수사관 (n=145)	계 (n=564)	χ^2
여성들은 끈질기게 구애하는 것을 애정표현이라고 생각한다.	1.82	1.56	1.77	1.77	13.30*
여성들이 말한 한 가지가 종종 다른 것을 뜻하기도 한다.	2.24	1.99	2.19	2.20	
어떤 여성은 실제 스토킹 당하기를 원하고, 이를 칭찬으로 여긴다.	1.77	1.45	1.61	1.69	
반복적으로 누군가를 따라다니고, 전화를 걸고, 선물을 남기는 것은 실제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	1.64	1.42	1.56	1.59	
비록 성가시더라도 대부분의 여성은 스토킹으로 인해 조금은 기분이 좋아진다.	1.66	1.36	1.54	1.59	
누군가가 계속해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선물을 준다면 스토킹은 훨씬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된다.	1.80	1.51	1.66	1.72	

*** p<0.001, ** p<0.01, * p<0.05

[그림 3-2-5]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경찰관 집단별 및 요인별 평균



[그림 3-2-5]는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를 경찰관 집단별 및 요인별 평균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3-2-13]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를 구성하는 3개 요인에 걸쳐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가 가장 낮고, 지역경찰관의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으며, 3개 요인 중 피해자 비난(요인2) 관련 요인의 평균값이 공히 높다는 점이 시각적으로 확인된다.

향후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와 스토킹범죄에의 조치 결정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판단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해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에 대한 문항별 응답결과를 합산, 평균을 계산한 후 사분위 값을 확인하여 해당 평균값이 25% 미만은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낮음', 25% 이상~75% 미만은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보통', 75% 이상은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높음'의 3개 급간으로 구분하였다. [표 3-2-14]는 경찰관 집단별로 스토킹 통념 수용 급간을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경찰관 집단 중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낮음'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스토킹전담경찰관(39.73%, 29명)이었으며,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높음'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지역경찰관(30.64%, 106명)으로 나타났다.

[표 3-2-14]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경찰관 집단별 등급

스토킹 통념 수용 등급	지역경찰관 (n=346, 100.0%)	스토킹 전담경찰관 (n=73, 100.0%)	여청수사관 (n=145, 100.0%)	계 (n=564, 100.0%)	χ^2
낮음	92	29	20	141	37.69***
	26.59	39.73	13.79	25	
보통	148	33	99	280	
	42.77	45.21	68.28	49.65	
높음	106	11	26	143	
	30.64	15.07	17.93	25.35	

비고: 평균값을 기준으로 25% 미만은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낮음', 25% 이상~75% 미만은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보통', 75% 이상은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높음'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함
*** p<0.001, ** p<0.01, * p<0.05

라. 스토킹범죄에의 조치 결정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판단

1) 지역경찰관

[표 3-2-15]는 스토킹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교차하여 구성한 시나리오 12개 각각에 대하여 지역경찰관이 1) 응급조치 1호(처벌 서면경고), 2) 응급조치 4호(스토킹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3) 긴급응급조치 1호(주거 등 접근 금지), 4) 긴급응급조치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5) 현행범인 체포, 6) 임의동행 중 어느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한 결과다.[43]

스토킹 피해자-가해자 간 관계에 관계없이 신체적 폭력이 수반된 경우에 비해 수반되지 않은 경우, 응급조치 1호(처벌 서면경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며, 응급조치 1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을수록 응급조치 4호 등 다른 조치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이는 응급조치 1호 조치가 지역경찰관의 스토킹 사건 발생 현장에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경우에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거나 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취해지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지역경찰관들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인다.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는 경우에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현행범인 체포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가운데, 특기할 점으로는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는 경우에 비해 임의동행 비율이 낮아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었다면 현행범인 체포를 우선 고려하고, 가해자의 동의를 구하여 수사관서까지 동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다.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교제관계인 경우 다른 피해자-가해자 간 관계에 비해 신체적 폭력 수반여부에 무관하게 응급조치 4호 조치(스토킹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인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아울러, 피해자와 가해자가 교제관계인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가해자 간 관계에 비해 긴급응급조치 1호(주거 등 접근 금지) 및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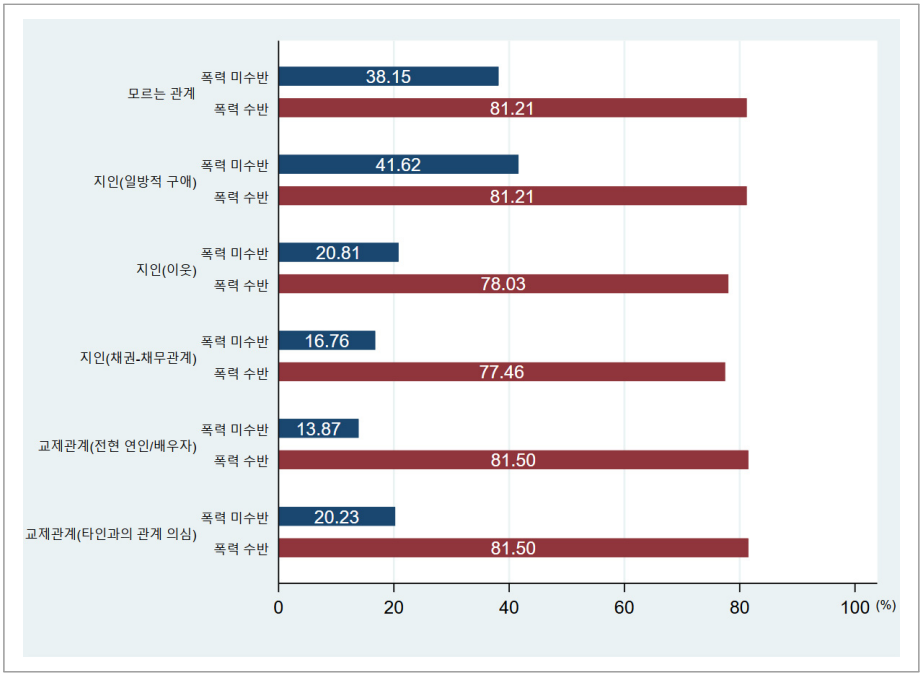
---

43) 조사문항 응답 범주에는 7) 기타를 두었으나, 이에 응답한 경우가 많지 않고 범주화하기에는 그 수가 적어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표 3-2-15] 스토킹범죄에의 조치 결정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판단(1): 지역경찰관

		모르는 관계		지인(일방적 구애)		지인(이웃)	
		신체폭력 미수반	신체폭력 수반	신체폭력 미수반	신체폭력 수반	신체폭력 미수반	신체폭력 수반
응급조치 1호 (처벌 서면경고)	n	250	164	250	164	216	152
	%	72.25	47.40	72.25	47.40	62.43	43.93
응급조치 4호 (스토킹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n	94	159	98	146	108	126
	%	27.17	45.95	28.32	42.20	31.21	36.42
긴급응급조치 1호 (주거 등 접근 금지)	n	136	242	178	263	166	236
	%	39.31	69.94	51.45	76.01	47.98	68.21
긴급응급조치 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n	82	184	112	212	242	196
	%	23.70	53.18	32.37	61.27	69.94	56.65
현행범인 체포	n	132	281	144	281	72	270
	%	38.15	81.21	41.62	81.21	20.81	78.03
임의동행	n	62	46	74	52	110	70
	%	17.92	13.29	21.39	15.03	31.79	20.23
		지인 (채권-채무관계)		교제관계 (전·현 연인/배우자)		교제관계 (타인과의 교제 의심)	
		신체폭력 미수반	신체폭력 수반	신체폭력 미수반	신체폭력 수반	신체폭력 미수반	신체폭력 수반
응급조치 1호 (처벌 서면경고)	n	240	158	250	152	252	152
	%	69.36	45.66	72.25	43.93	72.83	43.93
응급조치 4호 (스토킹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n	82	118	174	158	152	122
	%	23.70	34.10	50.29	45.66	43.93	35.26
긴급응급조치 1호 (주거 등 접근 금지)	n	194	226	202	276	222	240
	%	56.07	65.32	58.38	79.77	64.16	69.36
긴급응급조치 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n	236	177	270	252	242	220
	%	68.21	51.16	78.03	72.83	69.94	63.58
현행범인 체포	n	58	268	48	282	70	282
	%	16.76	77.46	13.87	81.50	20.23	81.50
임의동행	n	94	73	121	52	100	38
	%	27.17	21.10	34.97	15.03	28.90	10.98

[그림 3-2-6]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현행범인 체포 필요성 판단



지역경찰관들의 스토킹범죄에의 조치 결정에서 발견되는 특징 중 또 하나는 [그림 3-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해자가 교제관계이고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다른 피해자-가해자 간 관계에 비해 현행범인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교제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에서 신체적인 폭력의 징후가 지역경찰관에게 확인되지 않는 한 현행범인 체포를 통한 가해자-피해자 분리는 주요하게 검토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제2항 제1호 가목),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제2항 제1호 나목),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제2항 제1호 다목),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제2항 제1호 라목) 등과 같이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들을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음을 상기할 때,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 현행범인 체포가 주요하게 검토되며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라 현행범인 체포 검토 비율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은 스토킹범죄에의 조치가 이미 중한 신체적 위해로 나아갔을 때에야 피해자-가해자 분리 및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표 3-2-16]은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에 따라 지역경찰관을 세 집단으로 구분한 후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현행범인 체포 필요성 판단 결과를 살펴본 것이다.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이웃 및 타인과의 교제를 의심하는 스토킹 피해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나리오에서는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와 현행범인 체포 필요성 판단 간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현행범인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채권-채무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는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현행범인 체포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는 전·현 연인이나 배우자 등 교제관계나 일방적 구애에서의 스토킹 피해를 상정하였을 때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가 높은 지역경찰관들에게서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관계 없이 공히 현행범인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율이 크게 낮아졌던 결과와는 대조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가 높은 지역경찰관일수록 현행범인 체포와 같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로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표 3-2-16]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현행범인 체포 필요성 판단: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별

구분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계 (n=346)	χ^2 (df=2)
				낮음 (n=92, 100%)	보통 (n=148, 100%)	높음 (n=106, 100%)		
모르는 관계	신체적 폭력 미수반	체포 불필요	n	56	82	76	214	7.00*
			%	60.87	55.41	71.7	61.85	
		체포 필요	n	36	66	30	132	
			%	39.13	44.59	28.3	38.15	
	신체적 폭력 수반	체포 불필요	n	10	18	37	65	26.09***
			%	10.87	12.16	34.91	18.79	

구분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계 (n=346)	χ^2 (df=2)
			낮음 (n=92, 100%)	보통 (n=148, 100%)	높음 (n=106, 100%)		
		체포 필요 n	82	130	69	281	
		체포 필요 %	89.13	87.84	65.09	81.21	
지인 (일방적 구애)	신체적 폭력 미수반	체포 불필요 n	44	70	88	202	38.18***
		체포 불필요 %	47.83	47.3	83.02	58.38	
		체포 필요 n	48	78	18	144	
		체포 필요 %	52.17	52.7	16.98	41.62	
	신체적 폭력 수반	체포 불필요 n	4	25	36	65	28.92***
		체포 불필요 %	4.35	16.89	33.96	18.79	
		체포 필요 n	88	123	70	281	
		체포 필요 %	95.65	83.11	66.04	81.21	
지인 (이웃)	신체적 폭력 미수반	체포 불필요 n	74	118	82	274	0.33
		체포 불필요 %	80.43	79.73	77.36	79.19	
		체포 필요 n	18	30	24	72	
		체포 필요 %	19.57	20.27	22.64	20.81	
	신체적 폭력 수반	체포 불필요 n	10	30	36	76	15.76***
		체포 불필요 %	10.87	20.27	33.96	21.97	
		체포 필요 n	82	118	70	270	
		체포 필요 %	89.13	79.73	66.04	78.03	
지인 (채권-채무 관계)	신체적 폭력 미수반	체포 불필요 n	80	132	76	288	14.79**
		체포 불필요 %	86.96	89.19	71.7	83.24	
		체포 필요 n	12	16	30	58	
		체포 필요 %	13.04	10.81	28.3	16.76	
	신체적 폭력 수반	체포 불필요 n	16	25	37	78	13.38**
		체포 불필요 %	17.39	16.89	34.91	22.54	
		체포 필요 n	76	123	69	268	
		체포 필요 %	82.61	83.11	65.09	77.46	
교제관계 (전·현 연인/ 배우자)	신체적 폭력 미수반	체포 불필요 n	68	142	88	298	24.29***
		체포 불필요 %	73.91	95.95	83.02	86.13	
		체포 필요 n	24	6	18	48	
		체포 필요 %	26.09	4.05	16.98	13.87	
	신체적 폭력 수반	체포 불필요 n	4	24	36	64	29.54***
		체포 불필요 %	4.35	16.22	33.96	18.5	
		체포 필요 n	88	124	70	282	
		체포 필요 %	95.65	83.78	66.04	81.5	

구분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계 (n=346)	χ^2 (df=2)
				낮음 (n=92, 100%)	보통 (n=148, 100%)	높음 (n=106, 100%)		
교제관계 (타인과의 교제 의심)	신체적 폭력 미수반	체포 불필요	n	68	120	88	276	2.81
			%	73.91	81.08	83.02	79.77	
		체포 필요	n	24	28	18	70	
			%	26.09	18.92	16.98	20.23	
	신체적 폭력 수반	체포 불필요	n	4	24	36	64	29.54***
			%	4.35	16.22	33.96	18.5	
		체포 필요	n	88	124	70	282	
			%	95.65	83.78	66.04	81.5	

*** p<0.001, ** p<0.01, * p<0.05

2) 스토킹전담경찰관

[표 3-2-17]은 스토킹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교차하여 구성한 시나리오 12개 각각에 대하여 스토킹전담경찰관이 1) 112 시스템 등록, 2) 맞춤형 순찰, 3) 스마트워치 지급, 4) 홈캠·CCTV 설치, 5) 임시숙소 이동, 6) 민간 신변경호 실시, 7) 가해자 상담 연계 중 어느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한 결과다.[44]

스토킹전담경찰관은 피해자-가해자 관계나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112 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과 같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기본적인 사항을 두루 검토하는 경향을 보이며, 홈캠·CCTV 설치, 임시숙소 이동, 민간 신변경호 실시와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의 비율은 112 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여기에는 홈캠·CCTV 설치, 임시숙소 이동, 민간 신변경호 실시와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는 상대적으로 재피해 위험성이 높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적용해 온 경찰실무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즉, 홈캠·CCTV 설치, 임시숙소 이동, 민간 신변경호 실시 관련 비율이 높게 나타날수록 스토킹전담경찰관이 해당 시나리오상 피해자의 재피해 위험성을 높게 측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가해자 상담 연계를 검토한 비율은 피해자-가해자 관계에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44) 조사문항 응답 범주에는 8) 기타를 두었으나, 이에 응답한 경우가 많지 않고 범주화 하기에는 그 수가 적어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스토킹전담경찰관은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는 교제폭력에 있어서는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교제폭력에 비해 임시숙소 이동이나 민간 신변경호 실시를 적극 고려하며, 타인과의 교제를 의심하는 가해자의 경우에는 임시숙소 이동이나 민간 신변경호 실시를 한층 높게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타인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하나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지는 않은 경우 임시숙소 이동을 검토한 비율은 30.14%(22명), 민간 신변경호 실시를 검토한 비율은 23.29%(17명)였는데, 신체적 폭력이 수반된 시나리오의 상황에서 숙소 이동을 검토한 비율은 56.16%(41명), 민간 신변경호 실시를 검토한 비율은 49.32%(36명)로 크게 상승하였다.

[표 3-2-17] 스토킹범죄에의 조치 결정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판단(2): 스토킹전담경찰관

		모르는 관계		지인(일방적 구애)		지인(이웃)	
		신체폭력 미수반	신체폭력 수반	신체폭력 미수반	신체폭력 수반	신체폭력 미수반	신체폭력 수반
112 시스템 등록	n	63	63	65	64	54	63
	%	86.30	86.30	89.04	87.67	73.97	86.3
맞춤형 순찰	n	53	59	61	57	36	52
	%	72.60	80.82	83.56	78.08	49.32	71.23
스마트워치 지급	n	60	65	64	63	43	62
	%	82.19	89.04	87.67	86.3	58.9	84.93
홈캠·CCTV 설치	n	30	30	25	34	44	51
	%	41.10	41.10	34.25	46.58	60.27	69.86
임시숙소 이동	n	10	15	10	21	16	28
	%	13.70	20.55	13.70	28.77	21.92	38.36
민간 신변경호 실시	n	26	32	26	29	12	17
	%	35.62	43.84	35.62	39.73	16.44	23.29
가해자 상담 연계	n	32	34	32	37	45	34
	%	43.84	46.58	43.84	50.68	61.64	46.58
		지인 (채권-채무관계)		교제관계 (전·현 연인/배우자)		교제관계 (타인과의 교제 의심)	
		신체폭력 미수반	신체폭력 수반	신체폭력 미수반	신체폭력 수반	신체폭력 미수반	신체폭력 수반
112 시스템 등록	n	64	65	60	67	63	65
	%	87.67	89.04	82.19	91.78	86.30	89.04
맞춤형 순찰	n	54	55	48	66	50	56
	%	73.97	75.34	65.75	90.41	68.49	76.71

		모르는 관계		지인(일방적 구애)		지인(이웃)	
		신체폭력 미수반	신체폭력 수반	신체폭력 미수반	신체폭력 수반	신체폭력 미수반	신체폭력 수반
스마트워치 지급	n	55	55	57	67	52	63
	%	75.34	75.34	78.08	91.78	71.23	86.30
홈캠·CCTV 설치	n	31	28	33	47	36	41
	%	42.47	38.36	45.21	64.38	49.32	56.16
임시숙소 이동	n	14	18	19	37	22	41
	%	19.18	24.66	26.03	50.68	30.14	56.16
민간 신변경호 실시	n	17	20	13	32	17	36
	%	23.29	27.40	17.81	43.84	23.29	49.32
가해자 상담 연계	n	36	27	43	38	37	38
	%	49.32	36.99	58.90	52.05	50.68	52.05

이에 따라 시나리오를 통해 살펴본 피해자-가해자 관계 가운데 가해자가 피해자와 타인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교제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에 대해서는 [그림 3-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토킹전담경찰관들이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수반된 경우에도 임시숙소 이동을 가장 높은 비율로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8]은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별로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임시숙소 이동 필요성 판단을 살펴본 것이다.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12개의 시나리오 상황 중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이 없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스토킹전담경찰관이 자신이 가진 스토킹에 대한 통념에 좌우되지 않고 임시숙소 이동와 같은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스토킹전담경찰관이 반드시 해당 시나리오에서 임시숙소 이동을 피해자 보호에 실효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하지 않았을 가능성, 임시숙소 이동은 현행범인 체포나 유치와 같이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가해자에게 취하는 조치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권하는 조치라는 차이점이 분석에 영향을 미친 점도 배제할 수 없겠으나, 내면의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내지 스토킹범죄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는 별개로 피해자 보호 및 대응방안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스토킹 통념을 일깨우는 것 외에

담당 경찰관들의 업무상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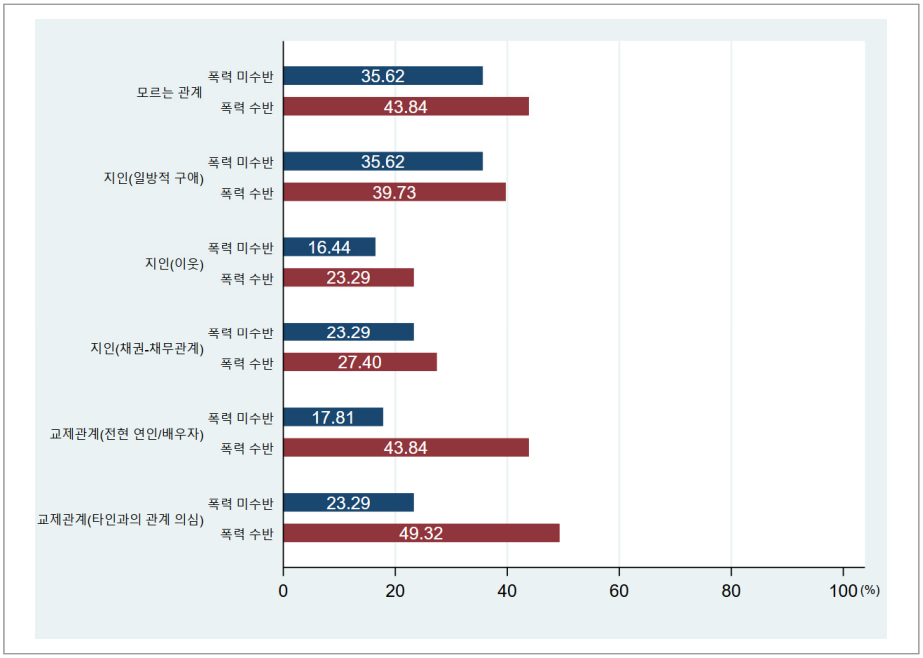
[표 3-2-18]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임시숙소 이동 필요성 판단: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별

구분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계 (n=73)	χ^2 (df=2)
				낮음 (n=29, 100%)	보통 (n=33, 100%)	높음 (n=11, 100%)		
모르는 관계	신체적 폭력 미수반	임시숙소 이동 불필요	n	26	27	10	63	1.03
			%	89.66	81.82	90.91	86.3	
		임시숙소 이동 필요	n	3	6	1	10	
			%	10.34	18.18	9.09	13.7	
	신체적 폭력 수반	임시숙소 이동 불필요	n	22	26	10	58	1.12
			%	75.86	78.79	90.91	79.45	
		임시숙소 이동 필요	n	7	7	1	15	
			%	24.14	21.21	9.09	20.55	
지인 (일방적 구애)	신체적 폭력 미수반	임시숙소 이동 불필요	n	23	29	11	63	3.01
			%	79.31	87.88	100	86.3	
		임시숙소 이동 필요	n	6	4	0	10	
			%	20.69	12.12	0	13.7	
	신체적 폭력 수반	임시숙소 이동 불필요	n	18	26	8	52	2.12
			%	62.07	78.79	72.73	71.23	
		임시숙소 이동 필요	n	11	7	3	21	
			%	37.93	21.21	27.27	28.77	
지인 (이웃)	신체적 폭력 미수반	임시숙소 이동 불필요	n	24	25	8	57	0.66
			%	82.76	75.76	72.73	78.08	
		임시숙소 이동 필요	n	5	8	3	16	
			%	17.24	24.24	27.27	21.92	
	신체적 폭력 수반	임시숙소 이동 불필요	n	19	20	6	45	0.43
			%	65.52	60.61	54.55	61.64	
		임시숙소 이동 필요	n	10	13	5	28	
			%	34.48	39.39	45.45	38.36	
지인 (채권-채무 관계)	신체적 폭력 미수반	임시숙소 이동 불필요	n	22	27	10	59	1.20
			%	75.86	81.82	90.91	80.82	
		임시숙소 이동 필요	n	7	6	1	14	
			%	24.14	18.18	9.09	19.18	

구분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계 (n=73)	χ^2 (df=2)
				낮음 (n=29, 100%)	보통 (n=33, 100%)	높음 (n=11, 100%)		
	신체적 폭력 수반	임시숙소 이동 불필요	n	24	24	7	55	1.79
			%	82.76	72.73	63.64	75.34	
		임시숙소 이동 필요	n	5	9	4	18	
			%	17.24	27.27	36.36	24.66	
교제관계 (전·현 연인/ 배우자)	신체적 폭력 미수반	임시숙소 이동 불필요	n	21	25	8	54	0.10
			%	72.41	75.76	72.73	73.97	
		임시숙소 이동 필요	n	8	8	3	19	
			%	27.59	24.24	27.27	26.03	
	신체적 폭력 수반	임시숙소 이동 불필요	n	13	19	4	36	1.87
			%	44.83	57.58	36.36	49.32	
		임시숙소 이동 필요	n	16	14	7	37	
			%	55.17	42.42	63.64	50.68	
교제관계 (타인과의 교제 의심)	신체적 폭력 미수반	임시숙소 이동 불필요	n	19	23	9	51	1.01
			%	65.52	69.7	81.82	69.86	
		임시숙소 이동 필요	n	10	10	2	22	
			%	34.48	30.3	18.18	30.14	
	신체적 폭력 수반	임시숙소 이동 불필요	n	13	13	6	32	0.79
			%	44.83	39.39	54.55	43.84	
		임시숙소 이동 필요	n	16	20	5	41	
			%	55.17	60.61	45.45	56.16	

한편,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정책적으로 도입된 민간 신변경호는 교제관계보다는 모르는 관계나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지인관계에 우선 검토 및 고려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그림 3-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가해자와 면식이 없는 가운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민간 신변경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율이 43.84%(32명)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는 전·현 연인 또는 배우자 간 교제폭력에 대해 민간 신변경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율과 같은 수준이다.

[그림 3-2-7]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민간 신변경호 필요성 판단



[표 3-2-19]는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별로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민간 신변경호 필요성 판단을 살펴본 것이다.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12개의 시나리오 상황 중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는 가운데 모르는 관계로부터 발생한 스토킹, 신체적 폭력을 수반한 교제관계 및 타인과의 교제를 의심하는 가해자에 의한 스토킹의 세 가지로 나타났다. 이들 세 개 시나리오 상황 모두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민간경호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응답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앞의 임시숙소 이동 필요성 판단에 대한 분석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로, 민간 신변경호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좀 더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거나 민간 신변경호가 최근 실시된 관계로 임시숙소 이동 필요성 판단에 비해 스토킹 통념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민간 신변경호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교육 및 훈련이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3-2-19]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민간 신변경호 필요성 판단: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별

구분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계 (n=73)	χ^2 (df=2)
				낮음 (n=29, 100%)	보통 (n=33, 100%)	높음 (n=11, 100%)		
모르는 관계	신체적 폭력 미수반	민간경호 불필요	n	16	22	9	47	2.61
			%	55.17	66.67	81.82	64.38	
		민간경호 필요	n	13	11	2	26	
			%	44.83	33.33	18.18	35.62	
	신체적 폭력 수반	민간경호 불필요	n	16	15	10	41	6.94*
			%	55.17	45.45	90.91	56.16	
		민간경호 필요	n	13	18	1	32	
			%	44.83	54.55	9.09	43.84	
지인 (일방적 구애)	신체적 폭력 미수반	민간경호 불필요	n	17	21	9	47	1.89
			%	58.62	63.64	81.82	64.38	
		민간경호 필요	n	12	12	2	26	
			%	41.38	36.36	18.18	35.62	
	신체적 폭력 수반	민간경호 불필요	n	16	19	9	44	2.55
			%	55.17	57.58	81.82	60.27	
		민간경호 필요	n	13	14	2	29	
			%	44.83	42.42	18.18	39.73	
지인 (이웃)	신체적 폭력 미수반	민간경호 불필요	n	25	28	8	61	1.13
			%	86.21	84.85	72.73	83.56	
		민간경호 필요	n	4	5	3	12	
			%	13.79	15.15	27.27	16.44	
	신체적 폭력 수반	민간경호 불필요	n	21	24	11	56	3.93
			%	72.41	72.73	100	76.71	
		민간경호 필요	n	8	9	-	17	
			%	27.59	27.27		23.29	
지인 (채권-채무 관계)	신체적 폭력 미수반	민간경호 불필요	n	20	27	9	56	1.62
			%	68.97	81.82	81.82	76.71	
		민간경호 필요	n	9	6	2	17	
			%	31.03	18.18	18.18	23.29	
	신체적 폭력 수반	민간경호 불필요	n	20	24	9	53	0.66
			%	68.97	72.73	81.82	72.6	
		민간경호 필요	n	9	9	2	20	
			%	31.03	27.27	18.18	27.4	

구분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계 (n=73)	χ^2 (df=2)
				낮음 (n=29, 100%)	보통 (n=33, 100%)	높음 (n=11, 100%)		
교제관계 (전·현 연인/ 배우자)	신체적 폭력 미수반	민간경호 불필요	n	21	28	11	60	4.44
			%	72.41	84.85	100	82.19	
		민간경호 필요	n	8	5	–	13	
			%	27.59	15.15		17.81	
	신체적 폭력 수반	민간경호 불필요	n	12	19	10	41	8.00*
			%	41.38	57.58	90.91	56.16	
		민간경호 필요	n	17	14	1	32	
			%	58.62	42.42	9.09	43.84	
교제관계 (타인과의 교제 의심)	신체적 폭력 미수반	민간경호 불필요	n	19	28	9	56	3.42
			%	65.52	84.85	81.82	76.71	
		민간경호 필요	n	10	5	2	17	
			%	34.48	15.15	18.18	23.29	
	신체적 폭력 수반	민간경호 불필요	n	10	18	9	37	7.51*
			%	34.48	54.55	81.82	50.68	
		민간경호 필요	n	19	15	2	36	
			%	65.52	45.45	18.18	49.32	

* p<0.05

3) 여청수사관

[표 3-2-20]은 스토킹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교차하여 구성한 시나리오 12개 각각에 대하여 1)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 2) 잠정조치 2호(주거 등 접근 금지), 3) 잠정조치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잠정조치 3의2호(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 잠정조치 4호(유치), 6) 구속 중 어느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한 결과다.[45]

45) 조사문항 응답 범주에는 7) 기타를 두었으나, 이에 응답한 경우가 많지 않고 범주화하기에는 그 수가 적어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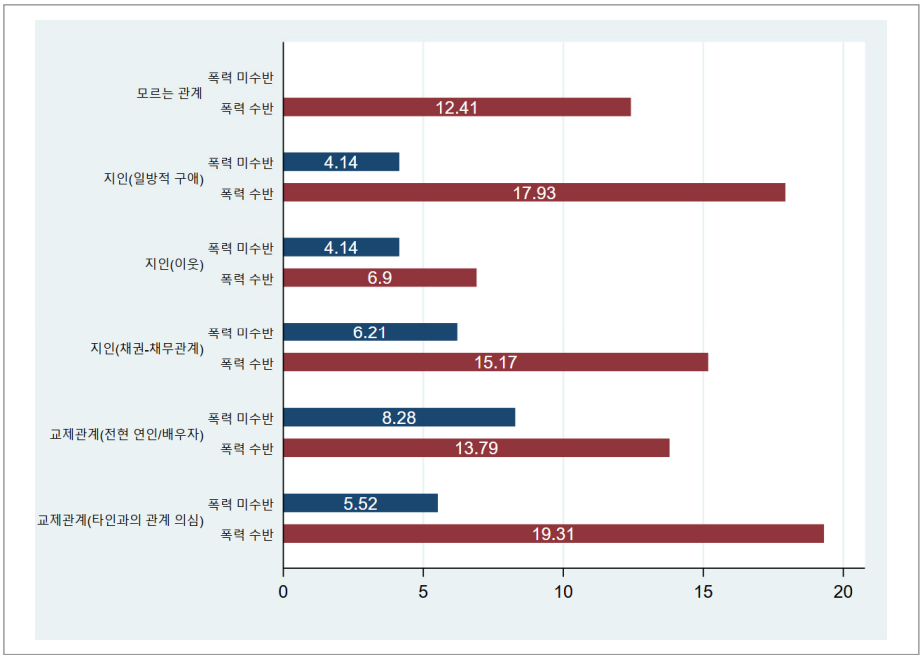
[표 3-2-20] 스토킹범죄에의 조치 결정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판단(3): 여청수사관

		모르는 관계		지인(일방적 구애)		지인(이웃)	
		신체폭력 미수반	신체폭력 수반	신체폭력 미수반	신체폭력 수반	신체폭력 미수반	신체폭력 수반
잠정조치 1호 (서면 경고)	n	120	125	127	125	127	125
	%	82.76	86.21	87.59	86.21	87.59	86.21
잠정조치 2호 (주거 등 접근 금지)	n	122	125	137	133	115	125
	%	84.14	86.21	94.48	91.72	79.31	86.21
잠정조치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n	71	98	95	105	131	98
	%	48.97	67.59	65.52	72.41	90.34	67.59
잠정조치 3의2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n	–	18	6	26	6	10
	%		12.41	4.14	17.93	4.14	6.9
잠정조치 4호 (유치)	n	2	6	75	18	5	36
	%	1.38	4.14	51.72	12.41	3.45	24.83
구속	n	–	34	–	32	2	32
	%		23.45		22.07	1.38	22.07
		지인 (채권-채무관계)		교제관계 (전·현 연인/배우자)		교제관계 (타인과의 교제 의심)	
		신체폭력 미수반	신체폭력 수반	신체폭력 미수반	신체폭력 수반	신체폭력 미수반	신체폭력 수반
잠정조치 1호 (서면 경고)	n	130	123	133	127	135	121
	%	89.66	84.83	91.72	87.59	93.1	83.45
잠정조치 2호 (주거 등 접근 금지)	n	113	119	133	133	133	127
	%	77.93	82.07	91.72	91.72	91.72	87.59
잠정조치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n	118	105	137	131	135	127
	%	81.38	72.41	94.48	90.34	93.1	87.59
잠정조치 3의2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n	9	22	12	20	8	28
	%	6.21	15.17	8.28	13.79	5.52	19.31
잠정조치 4호 (유치)	n	80	36	5	84	12	75
	%	55.17	24.83	3.45	57.93	8.28	51.72
구속	n	–	26	–	33	–	27
	%		17.93		22.76		18.62

여청수사관은 시나리오로 제시된 스토킹범죄 상황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중 서면 경고나 주거 등 접근 금지에 비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나 유치를 적게 검토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2023년 11월 현재 시행되

지 않은 가운데,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채권-채무관계나 전·현 연인 배우자 관계를 제외하면 피해자 보호조치로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비율이 유치보다 높지 않다. 이는 2024년 1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본격 시행된 이후에도 여청수사관들에게 피해자 보호조치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인식 및 검토되는 데 어느 정도의 실무 경험이 축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2-8]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 판단



특히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 판단 여부를 나타낸 [그림 3-2-8]에서는 주로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로 인해 신청 여부가 결정되나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함으로써 피해자를 재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여청수사관들은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이웃 관계에서의 스토킹범죄 외에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 구속을 검토한다는 답변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응답 경향을 통해 여청수사관들은 신체적·물리적이고 가시적

으로 확인될 수 있는 폭력 행사를 중심으로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수단으로서의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그림 3-2-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청수사관이 시나리오로 제시된 스토킹범죄 유형 중 전자장치 부착을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은 신체적 폭력 수반과 타인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교제관계가 교차하는 경우였다(19.31%, 28명).

[표 3-2-21]은 여청수사관의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별로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 판단을 살펴본 것이다.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이웃 간 관계의 스토킹범죄 시나리오 상황에 대해서만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와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 판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확인된다.

[표 3-2-21]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 판단: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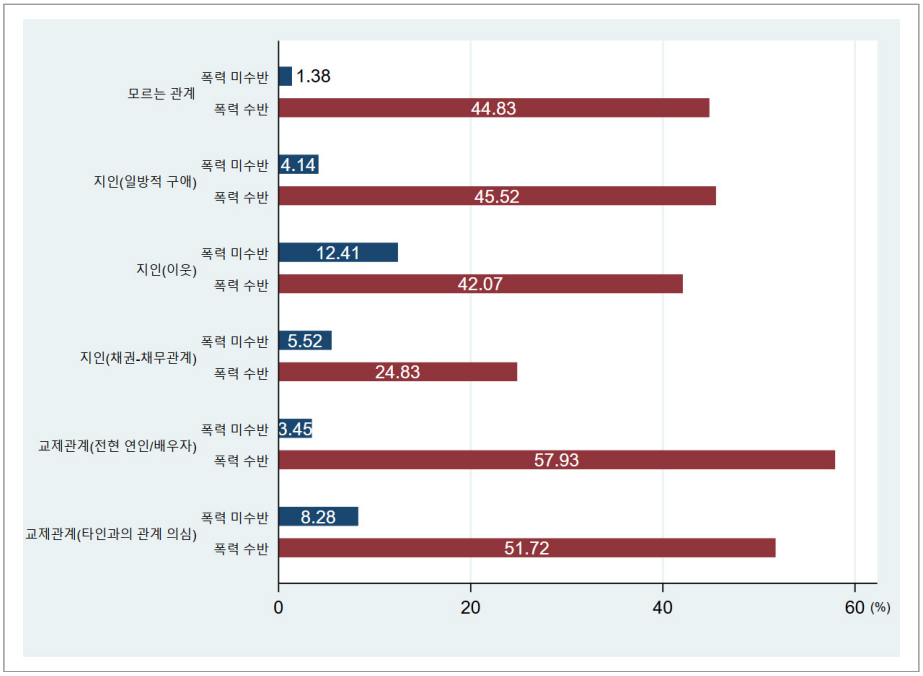
구분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계 (n=145)	χ^2 (df=2)
				낮음 (n=20, 100%)	보통 (n=97, 100%)	높음 (n=26, 100%)		
모르는 관계	신체적 폭력 수반	전자장치 부착 불필요	n	18	85	24	127	0.91
			%	90	85.86	92.31	87.59	
		전자장치 부착 필요	n	2	14	2	18	
			%	10	14.14	7.69	12.41	
지인 (일방적 구애)	신체적 폭력 미수반	전자장치 부착 불필요	n	18	95	26	139	2.86
			%	90	95.96	100	95.86	
		전자장치 부착 필요	n	2	4	-	6	
			%	10	4.04		4.14	
	신체적 폭력 수반	전자장치 부착 불필요	n	16	81	22	119	0.18
			%	80	81.82	84.62	82.07	
		전자장치 부착 필요	n	4	18	4	26	
			%	20	18.18	15.38	17.93	
지인 (이웃)	신체적 폭력 미수반	전자장치 부착 불필요	n	20	97	22	139	10.27**
			%	100	97.98	84.62	95.86	
		전자장치 부착 필요	n	-	2	4	6	
			%		2.02	15.38	4.14	

구분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계 (n=145)	χ^2 (df=2)
				낮음 (n=20, 100%)	보통 (n=97, 100%)	높음 (n=26, 100%)		
	신체적 폭력 수반	전자장치 부착 불필요	n	20	91	24	135	1.72
			%	100	91.92	92.31	93.1	
		전자장치 부착 필요	n	–	8	2	10	
			%		8.08	7.69	6.9	
지인 (채권-채무 관계)	신체적 폭력 미수반	전자장치 부착 불필요	n	20	94	22	136	5.31
			%	100	94.95	84.62	93.79	
		전자장치 부착 필요	n	–	5	4	9	
			%		5.05	15.38	6.21	
	신체적 폭력 수반	전자장치 부착 불필요	n	16	87	20	123	2.34
			%	80	87.88	76.92	84.83	
		전자장치 부착 필요	n	4	12	6	22	
			%	20	12.12	23.08	15.17	
교제관계 (전·현 연인/ 배우자)	신체적 폭력 미수반	전자장치 부착 불필요	n	18	93	22	133	2.45
			%	90	93.94	84.62	91.72	
		전자장치 부착 필요	n	2	6	4	12	
			%	10	6.06	15.38	8.28	
	신체적 폭력 수반	전자장치 부착 불필요	n	18	85	22	125	0.31
			%	90	85.86	84.62	86.21	
		전자장치 부착 필요	n	2	14	4	20	
			%	10	14.14	15.38	13.79	
교제관계 (타인과의 교제 의심)	신체적 폭력 미수반	전자장치 부착 불필요	n	18	95	24	137	1.42
			%	90	95.96	92.31	94.48	
		전자장치 부착 필요	n	2	4	2	8	
			%	10	4.04	7.69	5.52	
	신체적 폭력 수반	전자장치 부착 불필요	n	14	81	22	117	1.80
			%	70	81.82	84.62	80.69	
		전자장치 부착 필요	n	6	18	4	28	
			%	30	18.18	15.38	19.31	

비고: 조사에 참여한 여청수사관 중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스토킹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한 사례가 없어 표에서 해당 시나리오 상황을 삭제함

** $p<0.01$

[그림 3-2-9]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유치 필요성 판단



[표 3-2-21]의 분석결과에서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가 높다고 해서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지는 않으며, 역으로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가 낮다고 해서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제시된 12개 스토킹범죄 시나리오 중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 판단과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연관성이 확인된 시나리오는 1개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해 여청수사관들은 내면의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보다는 시각적으로 확인되는 신체적 폭력 수반 정도 내지 구체화된 위험성 정도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을 판단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청수사관들은 신체적 폭력이 확인되는 스토킹범죄에 있어 전자장치 부착보다는 유치나 구속과 같은 좀 더 중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자장치 부착을 유치나 구속이 결정되지 않거나 석방될 것에 대비하여 위험성을 완충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인식하지는 않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어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유치 필요성 판단 여부

를 살펴본 [그림 3-2-9]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에 대한 [그림 3-2-8]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로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을 판단하는 여청수사관들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보다 유치 필요성에 대한 여청수사관들의 판단은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한층 좌우되는 면이 크다.

[표 3-2-22]는 여청수사관의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별로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유치 필요성 판단을 살펴본 것이다.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모르는 관계 및 일방적 구애 관계,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이웃관계, 교제관계의 5개 시나리오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시나리오 상황에서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와 유치 필요성 판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여청수사관들은 신체적 폭력이 확인되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유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편이지만, 가해자가 타인과의 피해자 간 관계를 의심하고 있는 스토킹범죄(51.72%, 75명)에 대해서는 전·현 연인 또는 배우자 간 발생한 스토킹범죄(57.93%, 84명)에 비해 유치 필요성을 다소 낮게 평가하였다.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 판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폭력이 수반된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여청수사관의 절반가량은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여청수사관 개개인의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에 따라 유치 필요성 판단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한다. 예컨대, 채권-채무 관계와 같이 교제관계가 아닌 피해자-가해자 관계에 있어서는 유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여청수사관이라 하더라도 신체적인 폭력이 수반된 교제관계에 대해서는 유치 필요성을 달리 평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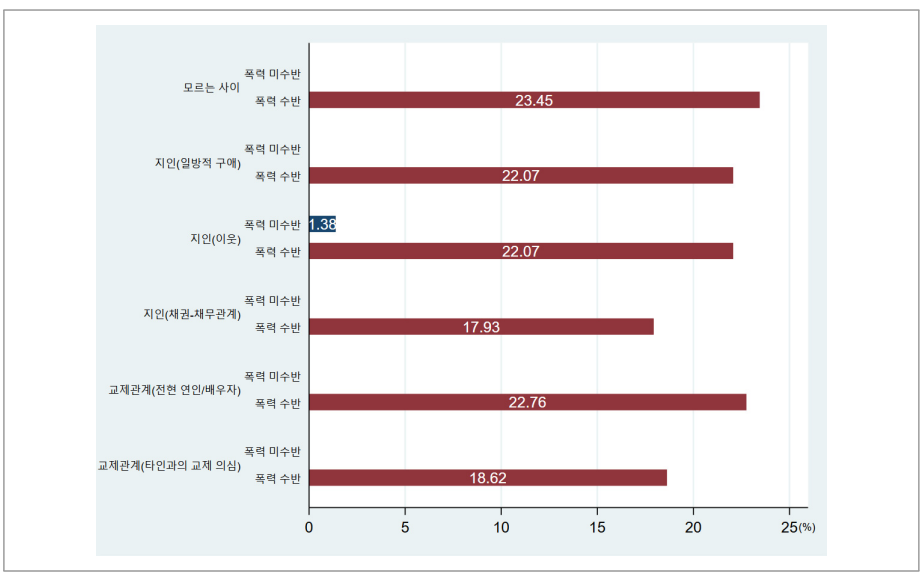
[표 3-2-22]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유치 필요성 판단: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별

구분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계 (n=145)	χ^2 (df=2)
				낮음 (n=20, 100%)	보통 (n=99, 100%)	높음 (n=26, 100%)		
모르는 관계	신체적 폭력 미수반	유치 불필요	n	20	97	26	143	0.94
			%	100	97.98	100	98.62	
		유치 필요	n	-	2	-	2	
			%		2.02		1.38	
	신체적 폭력 수반	유치 불필요	n	6	54	20	80	10.11**
			%	30	54.55	76.92	55.17	
		유치 필요	n	14	45	6	65	
			%	70	45.45	23.08	44.83	
지인 (일방적 구애)	신체적 폭력 미수반	유치 불필요	n	20	95	24	139	1.69
			%	100	95.96	92.31	95.86	
		유치 필요	n	-	4	2	6	
			%		4.04	7.69	4.14	
	신체적 폭력 수반	유치 불필요	n	7	52	20	79	8.49*
			%	35	52.53	76.92	54.48	
		유치 필요	n	13	47	6	66	
			%	65	47.47	23.08	45.52	
지인 (이웃)	신체적 폭력 미수반	유치 불필요	n	16	89	22	127	1.76
			%	80	89.9	84.62	87.59	
		유치 필요	n	4	10	4	18	
			%	20	10.1	15.38	12.41	
	신체적 폭력 수반	유치 불필요	n	12	50	22	84	9.87*
			%	60	50.51	84.62	57.93	
		유치 필요	n	8	49	4	61	
			%	40	49.49	15.38	42.07	
지인 (채권-채무 관계)	신체적 폭력 미수반	유치 불필요	n	20	95	22	137	6.44*
			%	100	95.96	84.62	94.48	
		유치 필요	n	-	4	4	8	
			%		4.04	15.38	5.52	
	신체적 폭력 수반	유치 불필요	n	12	73	24	109	6.67*
			%	60	73.74	92.31	75.17	
		유치 필요	n	8	26	2	36	
			%	40	26.26	7.69	24.83	

구분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계 (n=145)	χ^2 (df=2)
				낮음 (n=20, 100%)	보통 (n=99, 100%)	높음 (n=26, 100%)		
교제관계 (전·현 연인/ 배우자)	신체적 폭력 미수반	유치 불필요	n	18	96	26	140	3.56
			%	90	96.97	100	96.55	
		유치 필요	n	2	3	–	5	
			%	10	3.03		3.45	
	신체적 폭력 수반	유치 불필요	n	9	36	16	61	5.44
			%	45	36.36	61.54	42.07	
		유치 필요	n	11	63	10	84	
			%	55	63.64	38.46	57.93	
교제관계 (타인과의 교제 의심)	신체적 폭력 미수반	유치 불필요	n	18	97	18	133	22.51***
			%	90	97.98	69.23	91.72	
		유치 필요	n	2	2	8	12	
			%	10	2.02	30.77	8.28	
	신체적 폭력 수반	유치 불필요	n	8	40	22	70	16.76***
			%	40	40.4	84.62	48.28	
		유치 필요	n	12	59	4	75	
			%	60	59.6	15.38	51.72	

*** p<0.001, ** p<0.01, * p<0.05

[그림 3-2-10]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구속 필요성 판단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구속 필요성 판단 여부를 살펴본 [그림 3-2-10]을 보면, 구속 필요성 판단은 해당 스토킹범죄에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었는지 여부에 전적으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시나리오에 제시된 스토킹범죄 상황에 대하여 유치보다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웃 간에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찾아볼 수 없었다. 여기에는 여청수사관들이 구속에 대해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는 보호조치로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고, 피의자의 인권이 강조됨에 따라 신체적 폭력 발생과 같은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 또는 법원 단계에서 기각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 구속영장 신청에 신중을 기하게 된 경찰의 수사실무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3-2-23]은 여청수사관의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별로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구속 필요성 판단을 살펴본 것이다.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시나리오 상황 중에는 이웃 간 관계를 제외하고 구속이 필요하다고 본 응답을 발견할 수 없는 가운데,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이웃 관계 및 전현 연인 또는 배우자 등 교제관계에 대한 스토킹범죄 시나리오 상황에서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와 구속 필요성 판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연관성이 확인된다.

[표 3-2-23]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구속 필요성 판단: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별

구분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계 (n=145)	χ^2 (df=2)
				낮음 (n=20, 100%)	보통 (n=99, 100%)	높음 (n=26, 100%)		
모르는 관계	신체적 폭력 수반	구속 불필요	n	16	71	24	111	5.02
			%	80	71.72	92.31	76.55	
		구속 필요	n	4	28	2	34	
			%	20	28.28	7.69	23.45	
지인 (일방적 구애)	신체적 폭력 수반	구속 불필요	n	18	73	22	113	3.38
			%	90	73.74	84.62	77.93	
		구속 필요	n	2	26	4	32	
			%	10	26.26	15.38	22.07	

구분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계 (n=145)	χ^2 (df=2)
				낮음 (n=20, 100%)	보통 (n=99, 100%)	높음 (n=26, 100%)		
지인 (이웃)	신체적 폭력 미수반	구속 불필요	n	18	99	26	143	12.67**
			%	90	100	100	98.62	
		구속 필요	n	2	-	-	2	
			%	10			1.38	
	신체적 폭력 수반	구속 불필요	n	16	73	24	113	4.19
			%	80	73.74	92.31	77.93	
		구속 필요	n	4	26	2	32	
			%	20	26.26	7.69	22.07	
지인 (채권-채무 관계)	신체적 폭력 수반	구속 불필요	n	18	79	22	119	1.32
			%	90	79.8	84.62	82.07	
		구속 필요	n	2	20	4	26	
			%	10	20.2	15.38	17.93	
교제관계 (전·현 연인/ 배우자)	신체적 폭력 수반	구속 불필요	n	16	71	25	112	7.10*
			%	80	71.72	96.15	77.24	
		구속 필요	n	4	28	1	33	
			%	20	28.28	3.85	22.76	
교제관계 (타인과의 교제 의심)	신체적 폭력 수반	구속 불필요	n	18	78	22	118	1.59
			%	90	78.79	84.62	81.38	
		구속 필요	n	2	21	4	27	
			%	10	21.21	15.38	18.62	

** p<0.01, * p<0.05

3. 조사결과 요약 및 종합

제2장에서는 스토킹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관여하고 있는 경찰관 총 564명(지역경찰관 346명, 스토킹전담경찰관 73명, 여청수사관 145명; 남 434명, 여 1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주요 개정사항 경험 및 피해자 보호에의 도움 정도 인식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경찰단계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에 따라 달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스토킹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교차하여 총 12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experimental 6×2 independent measures design). 이때, 피해자-가해자 관계로는

모르는 관계, 지인(일방적 구애), 지인(이웃), 지인(채권-채무관계), 교제관계(전·현 연인 또는 배우자), 교제관계(타인과의 교제 의심)의 여섯 가지로, 스토킹 행위 유형은 신체적 폭력 수반 및 미수반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는 McKeon과 동료들(2002, 2015)이 개발한 SRAQ 척도를 바탕으로 Kamphuis와 동료들(2005)이 제안한 19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서는 4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 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를 측정한 결과,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를 구성하는 3개 요인(요인1: '스토킹은 성가신 일', 요인2: '피해자 비난', 요인3: '스토킹은 애정표현')에 걸쳐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가 가장 낮고, 지역경찰관의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으며, 3개 요인 중 피해자 비난(요인2) 관련 요인의 평균값이 공히 높았다.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와 스토킹범죄에의 조치 결정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판단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해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에 대한 문항별 응답결과를 합산, 평균을 계산한 후 사분위값을 기준으로 3개 급간(낮음/보통/높음)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으로 1) 반의사불벌죄(구법 제18조 제3항) 삭제, 2) 스토킹행위 유형 추가(제2호 제1호 바목 및 사목), 3) 응급조치 시 처벌 서면경고(제3조 제1호), 4)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취소·변경·미신청시 통지·고지(제7조 제5항, 제8조 제3항, 제11조 제4항, 5)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연장·변경·취소신청(제11조 제2항), 6) 잠정조치 기간연장(제9조 제7항), 7)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제재 강화(제20조 제3항), 8)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금지(제17조의3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호)의 8가지를 제시하고 이들 개정사항을 어느 정도 체감하는지(1: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 4: 매우 체감한다), 스토킹 보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매우 도움이 된다)를 각각 4점 척도를 질문한 결과, '반의사불벌죄 삭제'는 8가지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 중 스토킹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가장 높은 정도로 체감하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의 절반가량(47.87%, 270명)이 '반의사불벌죄 삭제'를 매우 체감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여청수사관 중에는 '반의사불벌죄 삭제',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 연장·변경·취소 신청', '잠정조치 기간 연장'의 3개 개정사항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경우

가 없었고, 스토킹전담경찰관은 지역경찰관 및 여청수사관에 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 사항 전반을 상대적으로 높이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의사불벌죄 삭제'와는 달리 '스토킹행위 유형 (제2호 제1호 바목 및 사목) 추가'는 스토킹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체감하지 못하는 개정사항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 10명 중 3명(29.97%, 169명)꼴로 '스토킹행위 유형 (제2호 제1호 바목 및 사목) 추가' 개정사항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제재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개정사항에 대한 체감 정도는 맡고 있는 업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 중 절반 이상이 8개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 모두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제재 강화'는 피해자 보호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이었다(83.69%, 472명). '반의사불벌죄 삭제'는 스토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집단 간에 피해자 보호 효과에 있어서의 평가 차이가 가장 엇갈리는 개정사항이었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찰관의 76.30%(264명) 및 스토킹전담경찰관의 80.82%(59명)이 '반의사불벌죄 삭제'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반면, 여청수사관의 53.79%(78명)만이 '반의사불벌죄 삭제'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3개 집단 중 여청수사관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른 피해자 보호 효과를 가장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금번 스토킹처벌법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1)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추가, 2)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 상담위탁 추가, 3)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 4) 접근 금지 반경을 100미터 이내에서 300미터 이내로 확대, 5) 검사 청구 없이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을 법원에 직접 신청, 6)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시 가중처벌, 7) 응급조치 내용에 현행범인의 체포 명시, 8) 긴급응급조치 결정 주체에 사법경찰리 추가의 8가지를 제시하고 이들 사항이 추후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반영된다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를 각각 4점 척도를 질문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제시된 8가지 스토킹처벌법 개정 논의사항 중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이 피해자 보호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83.69%, 472명). 지역경찰관 및 스토킹전담경찰관은 언급된 사항들이 다음 스토킹처벌법 개정 시 반영이 되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여청수사관은 그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보호 효과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에 따라 지역경찰관, 스토킹전담경찰관, 여청수사관을 각각 세 집단(낮음/보통/높음)으로 구분한 후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라 1) 현행범인 체포(지역경찰관), (스토킹전담경찰관) 2) 임시숙소 이동, 3) 민간 신변경호, (이하 여청수사관) 4) 전자장치 부착, 5) 유치, 6) 구속 필요성 판단 결과를 살펴보았다. 피해자-가해자 간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 12개 중 8개에서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와 현행범인 체포 필요성 판단 간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현행범인 체포와 같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로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되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의 경우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임시숙소 이동 필요성 판단을 위한 12개의 시나리오 상황 중에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이 없었다. 이는 스토킹전담경찰관이 자신이 가진 스토킹에 대한 통념에 좌우되지 않고 임시숙소 이동과 같은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한편,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민간경호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응답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앞의 임시숙소 이동 필요성 판단에 대한 분석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민간 신변경호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좀 더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거나 민간 신변경호가 최근 실시된 관계로 임시숙소 이동 필요성 판단에 비해 스토킹 통념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민간 신변경호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교육 및 훈련이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청수사관들은 신체적·물리적이고 가시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폭력 행사를 중심으로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수단으로서의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전자장치 부착보다 유치, 유치보다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여청수사관들의 판단은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좌우되는 정도가 한층 커졌다.

[표 3-2-24]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 판단: MANOVA 및 ANOVA 분석결과

변수	MANOVA	ANOVA					
		지역경찰관	스토킹전담경찰관		여청수사관		
		체포	임시숙소	민간경호	전자장치	유치	구속
	F	F	F	F	F	F	F
스토킹 통념 수용	13.99***	16.36***	0.85	42.31***	1.76	6.56*	10.53**
피해자-가해자 관계	4.38***	3.89*	17.28***	5.56*	6.87**	1.39	0.52
신체적 폭력 수반	103.98***	519.30***	66.74***	15.75**	53.05***	97.85***	167.70***
스토킹 통념 수용×피해자-가해자 관계	1.45	1.67	2.08	2.37	3.41*	0.20	1.55
스토킹 통념 수용×신체적 폭력 수반	8.90***	5.19*	1.68	9.40**	2.17	1.34*	11.91**
피해자-가해자 관계×신체적 폭력 수반	2.60*	3.00	2.77	3.37*	4.35*	2.39	0.25

비고: F 값은 Wilks' Lambda 추정에 따름
*** p<0.001, ** p<0.01, * p<0.05

[표 3-2-24]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MANOVA(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및 ANOVA(un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분석을 통해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가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피해자-가해자 관계,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 모두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는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및 피해자-가해자 간 관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는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달리 말하면, 신체적 폭력과 같이 물리적으로 가해진 위력이 없거나 육안으로 확인될 수 없는 형태로 스토킹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체포, 임시숙소, 민간경호, 전자장치, 유치, 구속과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음을 뜻한다. 실제 우리사회 내 스토킹범죄의 많은 부분은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피해자 보호조치 설정 및 결정에 스토킹범죄 발생 상황을 고려한 변화가 요청된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부터 3개월가량 경과한 시점에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처벌법 주요 개정사항은 스토킹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관여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상당한 정도로 체감할 수 있었으며, 경찰단계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는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금번 스토킹처벌법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8개 사항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의 경찰관들이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다. 스토킹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이들 경찰관들의 의견은 추후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의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는 전반적으로 그리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에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의 경우 개인의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에 좌우되지 않고 피해자 보호 및 대응방안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스토킹 통념을 일깨우는 것을 넘어 담당 경찰관들의 업무상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제 4 장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 강화 방안

스토킹처벌법의 쟁점과 개선과제

이 승 현

제4장

스토킹처벌법의 쟁점과 개선과제

제1절 | 「스토킹처벌법」의 입법배경과 주요내용

1. 「스토킹처벌법」의 입법배경

'스토킹'이 오래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1999년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된 이후 수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스토킹이라는 행위를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법제정이 미루어져 왔다. 2012년 3월 21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법률 제11401호)되면서, 스토킹 행위유형에 해당하는 '지속적 괴롭힘'이 경범죄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되었다. 「구)경범죄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제3조 제1항 제41호). 그러나 스토킹 행위유형은 '지속적 괴롭힘'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경범죄로 인한 10만 원이라는 범칙금 수준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폭행, 협박 외에도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 초기에 세심하고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로 했다.

제15대 국회에서부터 스토킹 행위 규제를 위한 법제화노력이 계속되었고, 20대 국회에서도 7건의 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21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스토킹의 개념이 모호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와의 구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제정 과정에 난관을 겪었다. 2021년 3월 노원구 세 모녀 살해사건[46]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행위가 살인이나 방화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스토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더해져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그해 10월부터 시행되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유형을 열거하고, 가해자 처벌과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였으며,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여가 다 되었음에도 스토킹 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후 다수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 개정 정부안 등을 비롯하여 총 32개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2023년 6월 20일 「스토킹처벌법」 대안으로 발의되어, 7월 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으며, 2023년 7월 11일부터 개정 「스토킹처벌법」(법률 제19518호)이 본격 시행되었다. 그러나 개정 「스토킹처벌법」 역시 스토킹의 범위의 모호함과 사건처리절차에서의 흠결,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미흡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는 개정법에서 영역별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주요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외국의 입법례와 국내 논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제정 「스토킹처벌법」의 주요내용

스토킹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었다. 이에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초기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 심각한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47]

46) 연합뉴스, "김태현, 범행 1주일 전부터 준비...가족 살해도 계획", 2021년 4월 9일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318191, 2023.8.31. 최종검색)

하고자, 2021년 4월 20일 제정된 「구)「스토킹처벌법」(18008호)」은 크게 4가지 영역을 나누어 다루고 있다.

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개념 정의

제정 「스토킹처벌법」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스토킹의 개념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로 구분지어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정의하였다(제2조 제1호).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여 스토킹 범죄의 범주를 설정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가진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7) 제정 스토킹처벌법 제정이유에서 발췌(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EC%8A%A4%ED%86%A0%ED%82%B9%EC%B2%98%EB%B2%8C%EB%B2%95#undefined, 2023.8.31. 최종검색)

나. 스토킹범죄에 대한 절차 특례규정 마련

제정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절차적 특례규정을 두어 현장 개입이 보다 더 원활해지도록 하였다.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행위를 신고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를 저지하고, 향후 스토킹 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절차들을 안내하도록 하였다(제3조).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으로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 등도 가능해졌다(제4조). 검사가 재발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하였다(제8조~제9조).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⑤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규정

제정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위한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차별적 수사와 접근을 위해 스토킹 전담검사제와 스토킹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 지정으로 전문적인 수사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제17조). 그러나 스토킹 범죄피해자를 위한 조항은 제17조 전담조사제 한 조항에 불과하였다.

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제2항의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스토킹범죄 처벌 규정 마련

제정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

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제18조).

「스토킹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과태료에 머무르고 있으나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 두었다(제20조).

>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9조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개정 「스토킹처벌법」의 주요내용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으나 스토킹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협소하고, 긴급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여러 가지 조치가 법에 규정되었음에도 피해자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반의사불벌죄가 있음으로 인해 피해자의 합의유도과정에서 2차 피해 가능성도 남아있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2021년 4월 28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48]이 마련되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될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숙식과 상담, 심신안정,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마련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49]이 발생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 부실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법무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내용을 비롯하여 「스토킹처벌법」 개선에 관한 쟁점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39호)을 2023년 2월 15일에 제출하였다. 법무부 개정안

48)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더욱 강화된다.", 2021년 4월 28일자(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753, 2023.9.10. 최종검색).
49) 문화일보, "신당역 화장실서 옛동료 '스토킹 살인'…1심 선고 하루 앞두고 범행", 2022년 9월 15일자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91501031030316002, 2023.8.30. 최종검색).

외에도 남인순 의원의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0747호)을 비롯하여 31개의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다양한 논의 끝에 2023년 6월 20일 법제 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023년 7월 11일 시행된 개정 「스토킹처벌법」(법률 제19518호)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하여 스토킹범죄의 재발과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제고하였다.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크게 4가지 범주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 온라인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기존의 스토킹 행위유형에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을 추가하였다. 제정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온라인 스토킹행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도달하는 행위가 유일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새로운 스토킹 유형으로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추가하였다(제2조 제1호 다목, 바목, 사목).

[표 4-1-1] 스토킹행위 구성요건의 변화

제정 「스토킹처벌법」	개정 「스토킹처벌법」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제정「스토킹처벌법」	개정「스토킹처벌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신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나. 사건처리절차의 개선

사건처리절차상 개선사항이 다수 포함되었다.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로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경고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제3조 제1호),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보호대상을 피해자 외에 그의 동거인, 가족(상대방 등)에게도 확대하였고(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 연장·변경·취소 신청권을 인정하였다(제11조 제2항). 잠정조치의 유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도입하였다(제9조 제1항 제3호의2).

[표 4-1-2] 스토킹행위 사건처리절차의 변화

제정「스토킹처벌법」	개정「스토킹처벌법」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경고 2-3. (현행과 동일)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①~④ 동일 〈신설〉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①~④ 동일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 및 긴급응급조치대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 취소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긴급응급조치대상자: 취소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⑥ 긴급응급조치(제4항에 따라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나.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 같은 장소를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 주거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정 「스토킹처벌법」	개정 「스토킹처벌법」
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②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②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1. 검사,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 취소,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스토킹행위자: 취소, 연장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3. 제9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사실

다. 피해자 보호 확대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그동안 문제점 지적이 많았던 피해자보호 관련조항을 대폭 도입하였다.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취소·변경시 피해자 등에게 통지·고지하도록 하고(제11조 제4항),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거나 청구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였다(제8조 제3항, 제4항). 또한 피해자 또는 신고인이 증인으로 신문 또는 조사할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17조의2),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

도록 하는 규정(제17조의3), 피해자에게 변호인 선임 특례를 적용하는 규정(제17조의4)도 새롭게 마련하였다.

[표 4-1-3]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절차의 변화

제정「스토킹처벌법」	개정「스토킹처벌법」
〈신설〉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
〈신설〉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 2. 긴급응급조치의 신청, 청구, 승인, 집행 또는 취소·변경에 관한 업무 3. 잠정조치의 신청, 청구, 결정, 집행 또는 취소·기간연장·변경에 관한 업무 4.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 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정「스토킹처벌법」	개정「스토킹처벌법」
	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⑤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라.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개정법률에 따라 스토킹범죄자의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다. 스토킹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제18조 제3항),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이 인지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절차가 변경되었다.

기존에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낮았다. 실제로 스토킹범죄의 긴급임시조치 위반율은 13.2%이고, 잠정조치 위반율은 13.0%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율 4.1%와 비교하여 보호조치 위반율이 높은 편에 속하였다.[50] 이에 그동안 과태료 적용으로 인해 이행의 실효성이 약했던 부분을 강제하기 위해 잠정조치 불이행,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불응에 대하여 기존에 과태료를 적용하던 것이 형벌로 변경하여 제재를 보다 강화하였다(제20조 제3항 및 제4항).

50) 권인숙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법원 스토킹 잠정조치 실효성 강화 필요", 2022년 10월 4일자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iskwon317&logNo=222891615034&categoryNo=14&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2023.9.30., 최종검색)

[표 4-1-4] 스토킹범죄 처벌규정의 변화

제정「스토킹처벌법」	개정「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스토킹처벌법」의 주요쟁점

제정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현장개입 근거를 만들었다.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온라인스토킹 행위를 규제하고 피해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다수 도입했으며,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다만,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제1조가 목적한 대로 스토킹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쟁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가. 불명확한 스토킹 행위유형

스토킹 행위의 불명확함과 다양한 스토킹 유형을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행위유형도 5가지 유형에서 개정법을 통해 온라인 스토킹 유형까지 7가지로 확대하긴 하였으나, 스토킹행위의 특성상 실제로 포섭되지 않는 행위 유형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열거되지 않으나 스토킹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유형에 관해서는 이하 쟁점 부분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나. 신속한 사건처리에 미흡한 절차규정

스토킹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으나 즉각적으로 사법경찰관이 개입하거나 조치를 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가 관계에 의해 발생한 경우 더 심각한 스토킹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사법기관의 개입은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3부 경찰관의 피해자 보호현황 조사결과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교제관계이고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다른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에 비해 현행범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비율이 낮았다([그림 3-2-6] 참조).

최근 개정법에서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로 경찰수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응급조치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음에도,[51] 실질적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 피해자 보호규정의 보완 필요성

제정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전담조사제 규정 하나만 존재하였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법률에서 강조되고 있는 변호사 선임 특례,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진술권,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고, 스토킹 피해자만을 위한 특별한 보호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인 특례 규정이 도입되면서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중대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초기단계의 범죄이고, 지속적 괴롭힘과 불안감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해야 하나, 현재 도입된 피해자보호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라. 스토킹범죄자 처벌의 흠결

스토킹 범죄의 사건처리절차에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장치로 기존에 과태료로 처리되던 것들이 개정법을 통해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반갑다.

그러나 처벌규정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범죄자 처벌에 있어 흠결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결과적 가중행위에 대한 포섭이나,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

51) 조제성 외(2022), 「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 및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p.66.

제2절 |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의 쟁점

1.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정의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행위'란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② 정당한 이유 없이, ③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하나의 행위를 하여, ④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반면에 '스토킹범죄'는 "①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② 정당한 이유 없이, ③ 스토킹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④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외에, 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 제1항 제2호).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별하는 것은 비록 범죄가 아니어도 그 이전 단계에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방식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에만 스토킹 범죄가 되고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잠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스토킹 행위는 있지만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없는 경우 스토킹범죄자가 아닌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52]

52) 김정혜 외(2021),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31.

2. 스토킹 행위 유형의 기술방식 문제

가. 현행법에서의 스토킹 행위 유형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는 스토킹 행위 유형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7가지 형태로 열거하고 있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에 물건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에 놓여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나. 현행 스토킹 행위유형의 문제점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접근이나, 물건 등 도달, 훼손 행위 등에 대하여 스토킹 행위로 분류하고 있으나, 열거된 행위만을 제한적으로 규율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접근'이나 '도달'하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접근' 이외의 방법으로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행위(예를 들어 만남이나 교제 등을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피해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짐작할 만한 사항 등을 알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등)를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의도적 험담, 모욕행위, 협박 등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을 포섭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스토킹 행위 유형 기술방식이 열거식 형태여서, 기술된 유형 외에 새로운 스토킹 유형이 등장할 경우 이를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다. 외국의 스토킹 행위유형 입법형태

스토킹 행위의 규율방식을 우리와 같은 열거 형태로 취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고,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스토킹 행위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1) 일본의 스토킹 행위유형

1999년 발생한 오케가와(桶川) 스토커 살인사건을 계기로 2000년 의원입법으로 「스토커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이하 '스토커규제법'이라 함.)」이 제정되었다.[53] 이후, 2013년과 2016년에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1년에 교제 상대의 동의 없이 GPS기기나 스마트폰 앱 등을 사용하여 상대의 위치를 파악하는 행위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54]

「스토커규제법」 제2조에서는 '스토킹'을 "특정인에 대한 연애감정 기타 호의적인 감정 또는 그것이 충족되지 못한 것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특정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친족, 그밖에 해당 특정인과 사회생활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 다음 중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55]

1. 따라 다니거나, 숨어서 기다리거나, 진로를 가로막거나, 주거, 직장, 학교 기타 현재 소재하는 장소 또는 통상적으로 소재하는 장소(주거 등) 부근에서 감시하거나, 주거 등에 침입하거나 또는 주거 등 부근을 함부로 배회하는 행위
2.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3. 면회, 교제 기타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
4. 현저하게 거칠거나 난폭한 언동을 하는 행위
5.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전화를 걸거나 문서를 송부하거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6. 오물, 동물의 사체 기타 현저하게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보내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7.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53) 2013년 즈시(逗子) 스토커 살인사건 이후 의원입법으로 1차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16년 발생한 고가네이(小金井) 스토커 살인미수 사건을 계기로 2016년 12월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54) 毎日新聞, "改正ストーカー規制法成立·承諾得ないGPSでの位置確認など禁止", 2021年 5月18日 (https://mainichi.jp/articles/20210518/k00/00m/040/199000c)

55) 일본법령 사이트 검색(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2AC0100000081)

8.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사항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문서, 도화,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타인의 지각 하에 인식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 용도에 제공되는 것을 말함)에 관한 기록매체 그밖에 물건을 송신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전자적 기록 기타 기록을 송신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일본의 「스토커규제법」은 우리보다 행위유형이 더 상세히 열거된 것이 특징이다. 가령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나, "면회, 교제 기타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사항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외에도, "오물 또는 동물의 사체 등 불안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보내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로 우리의 행위유형보다는 더욱 구체화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2) 독일의 스토킹 행위유형

독일 「형법」 제238조에서 스토킹범죄(Nachstellung)를 규정하고 있는데, 스토킹은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반복적으로 스토킹하여 그 사람의 생활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56]

§238 Nachstellung (1)[57]
1. 해당인의 물리적 주변을 떠도는 행위
2. 통신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사용하거나 제3자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3. 다음을 위해 개인의 데이터를 오용하는 행위
  1) 상대방을 대신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주문하는 행위
  2) 제3자가 본인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행위
4. 본인,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의 생명, 신체, 건강 또는 자유에 대하여 상해의 위협을 받게 하는 행위
5. 본인, 친척, 또는 가까운 지인을 희생시켜 § 202a, § 202b 또는 § 202c죄를 저지른 경우
6. 개인, 그 가족구성원 또는 가까운 지인의 이미지를 배포하거나 대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7. 개인을 모욕하거나 여론에서 모욕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제11조 제3항)를 유포하거나 대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중에게 배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8. 1~7에 해당하는 유사한 행동을 하는 행위

56)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sowie des Bundesamts für Justiz (https://www.gesetze-im-internet.de/stgb/__238.html, 2023.6.20. 최종검색).

독일 형법에서는 스토킹 사안별 열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열거로 인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238조 제1항 제8호에서 포괄적 구성요건(eine mit den Nummern 1 bis 7 vergleichbare Handlung vornimmt)도 함께 두고 있다. 우리의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이 도달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반면에, 독일형법에서는 '제3자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3) 미국의 스토킹 규정

미국은 1990년 캘리포니아에서 스토킹방지법을 처음 제정한 이후 다른 주에서 제정되기에 이르렀다.[58] 주마다 스토킹을 규정하는 방식이 상이하다. 주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스토킹을 대상으로, 연방 차원에서 「연방스토킹방지법」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 생활 안전에 위협을 느끼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일련의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동법 제2261A조 제1호에 따라 살해, 상해, 괴롭힘 등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 본인·직계가족·배우자·반려동물 등의 사망이나 중상에 대한 공포를 주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 본인·직계가족·배우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된다.[59] 「모델 스토킹방지법(Model Anti-stalking Code)」에서는

---

57) (1)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einer anderen Person in einer Weise unbefugt nachstellt, die geeignet ist, deren Lebensgestaltung nicht unerheblich zu beeinträchtigen, indem er wiederholt
1. die räumliche Nähe dieser Person aufsucht,
2. unter Verwendung von Telekommunikationsmitteln oder sonstigen Mitteln der Kommunikation oder über Dritte Kontakt zu dieser Person herzustellen versucht,
3. unter missbräuchlicher Verwendung von personenbezogenen Daten dieser Person
a) Bestellungen von Waren oder Dienstleistungen für sie aufgibt oder
b) Dritte veranlasst, Kontakt mit ihr aufzunehmen,
4. diese Person mit der Verletzung von Leben, körperlicher Unversehrtheit, Gesundheit oder Freiheit ihrer selbst, eines ihrer Angehörigen oder einer anderen ihr nahestehenden Person bedroht,
5. zulasten dieser Person, eines ihrer Angehörigen oder einer anderen ihr nahestehenden Person eine Tat nach § 202a, § 202b oder § 202c begeht,
6. eine Abbildung dieser Person, eines ihrer Angehörigen oder einer anderen ihr nahestehenden Person verbreitet oder der Öffentlichkeit zugänglich macht,
7. einen Inhalt (§ 11 Absatz 3), der geeignet ist, diese Person verächtlich zu machen oder in der öffentlichen Meinung herabzuwürdigen, unter Vortäuschung der Urheberschaft der Person verbreitet oder der Öffentlichkeit zugänglich macht oder
8. eine mit den Nummern 1 bis 7 vergleichbare Handlung vornimmt.

58) 여성신문, "스토킹 해외에서 어떻게 막을까", 2015년 7월 18일자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097, 2023.6.20. 최종검색).

포괄적 스토킹행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60]

4) 영국의 스토킹 규정

영국은 1997년 제정된 「괴롭힘방지법」에서 '스토킹(Stalking)'을 처음으로 다루었다. 동법에서는 스토킹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 '괴롭힘'으로 보고, 괴롭힘으로 공포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괴롭힘방지법」이 스토킹 범죄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일었고, 법개정 요구가 있었다.[61] 2012년 제정된 「자유보호법(Protection of Freedoms Act 2012)」에서는 「괴롭힘방지법」을 개정하여 제2A와 제4A조를 신설하였다. 괴롭힘이나 스토킹에 이르는 일련의 행동을 추구하는 행위와 폭력, 심각한 불안의 공포 또는 정신적 괴로움을 포함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았다.

이후에도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계속적인 문제 제기로, 2019년에 스토킹을 별도로 규율하기 위한 「스토킹방지법(Stalking Protection Act 2019)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제2A조에서는 스토킹은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에 해당하고,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라는 것을 알거나 알 것으로 추정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았고, 그 구체적인 행위유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62]

1. 특정인을 따라다니는 행위
2. 어떠한 수단으로든 특정인과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3. 특정인과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행위 또는 그 출처가 특정인이라고 주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문서나 기타 자료를 공표하는 행위
4. 특정인의 인터넷, 이메일 또는 다른 형태의 전자통신 사용을 감시하는 행위
5. 특정 장소(공공장소나 사유지)를 배회하는 행위
6. 특정인이 점유하는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7. 특정인을 쳐다보거나 훔쳐보는 행위

---

59)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 각국의 스토킹범죄 규정", 2022년 1월 19일자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9820&AST_SEQ=3891, 2023.6.20. 최종검색)

60) 이성기(2018), "스토킹행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법학논문집 제42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p.281.

61) 국회도서관 (2020), 영국의 스토킹범죄 관련 정책.

62) 조서연 (2019), "영국 「Stalking Protection Act 2019」제정",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18호, 국회입법조사처, p.3 ;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 각국의 스토킹범죄 규정, 2022년 1월 19일자(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9820&AST_SEQ=3891, 2023.6.20. 최종검색)

라. 행위유형 열거방식에 대한 국내논의

스토킹 행위유형의 열거형태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형태로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인 행위가 아닌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행위를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의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김정혜 외(2021) 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① 가해자가 자신의 SNS에 피해자와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상태메시지 등을 올리는 행위, ② 온라인이나 모바일 공간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글, 사진, 영상, 그림, 음성, 그 밖의 콘텐츠를 올리거나 링크 등을 전달하는 경우, ③ 피해자의 컴퓨터,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허락 없이 열어보고 기기에 저장된 정보 또는 기기에 연결된 계정에 기록된 정보를 훔쳐보거나 피해자인 척하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④ 피해자나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겠다는 의사를 제3자에게 알리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⑤ 피해자의 반려동물이나 장애인 보조견을 데려가는 행위 등"[63]은 현행법의 5가지 스토킹 행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스토킹처벌법」(법률 제19518호)에서는 몇 가지 유형을 추가하였다. 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스토킹 행위를 규율하는 3가지 형태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제2조 제1호 추가규정
다.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바. 상대방 등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63) 김정혜 (2021), "스토킹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방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제32차 젠더와 입법포럼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26.

하지만 스토킹행위라고 논의되는 많은 유형을 담기에는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보완 방식으로서 열거 유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안과 독일과 같은 포괄적 구성요건을 두자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1) 스토킹 행위유형을 추가하는 논의

스토킹행위의 유형을 열거하자는 형태의 입법안으로는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7908호)이 대표적이다. 장혜영 의원안에서는 스토킹 행위유형을 현재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2개의 행위유형 외에도 11개의 유형으로 확대하여 스토킹행위를 열거하였다.[64]

1. 면회나 교제 등 의무 없는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피해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짐작하게 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감시당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3. 피해자의 명예를 해하는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의사전달, 문자·영상을 전송하는 행위
5. 디지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신체 촬영, 유포 등의 행위
6. 피해자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편집, 합성, 가공하는 행위
7. 피해자와 관련된 사실, 사진, 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
8.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특정 물건, 그림, 사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특정한 장소에 두는 행위
9.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10.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거나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행위

개정 「스토킹처벌법」에 온라인 스토킹행위 규제사항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외의 유형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의무 없는 일을 할 것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물건을 두거나 서비스를 신청하는 행위,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 제3자의 행위도 규율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소병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17508호)에서는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6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장혜영 의원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O2G0P9D3G0A1W3E2E6S3P7C8Y1X6, 2023.9.20. 최종검색).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등의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65] 한 걸음 나아가, 권인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8139호)에서는 "상대방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상해를 가하거나 생명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66]

2) 보충적 규정 신설논의

독일 형법 제238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스토킹범죄의 모든 유형을 열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포괄적 구성요건으로서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비교할 수 있는 그 밖의 행위"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 역시도 포괄적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적 정형성을 벗어나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67] 스토킹행위는 구성요건으로 규율된 행위 외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포괄적 구성요건을 통해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1호부터 7호까지 열거된 행위 외에도 이에 준하는 스토킹 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이 상징형법으로만 기능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토킹처벌법」에 독일의 "기타 제1호 내지 7호와 비교할 수 있는 행위"하는 포괄적(보충적) 구성요건을 둘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68] 보충적 구성요건 신설방안에 대한 논의는 제4절 이하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6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소병철 의원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Z2U0H9X2Y2W1F7E0O5I1Q7G7E6J2, 2023.9.20. 최종검색)

6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권인숙 의원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C2W1N1L0G3W1V8B0Y8D2Z2R3O4D0, 2023.9.20. 최종검색).

67) 이원상(2022),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23권 제4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p.218.

68) 고명수 (2022),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 구성요건 연구 – 독일형법 제238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제 vol. 696, 법제처, p.39.

3. 온라인스토킹 규율의 한계

가. 현행 온라인스토킹의 규제 방식

제정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온라인스토킹행위를 제2조 다호 정보통신망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서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보고(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74조 제1항 제3호).

경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을 사이버범죄의 일종인 '사이버스토킹'으로 분류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일부를 규율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69] 예를 들어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이미지를 도용하여 사칭하는 행위 등 도달에 이르지 않는 행위는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새롭게 개정된 2023년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온라인스토킹 행위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도달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영상 등이 나타나는 행위,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제2조 제1호 다목, 바목, 사목).

나. 현행 온라인스토킹 규정의 문제점

온라인스토킹은 오프라인 스토킹과 달리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형이다. 또한 온라인스토킹의 경우 익명성과 비대면성 환경에서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더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요한다고 한다.[70] 온라인스토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을

69) 김정혜, 박보람, 정다은 (2021),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4.

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한 스토킹 피해는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의 여파가 영구히 남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스토킹보다 그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 또한 온라인스토킹은 오프라인과 달리 가해자와의 분리라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가해자가 이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2차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 경각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 스토킹 규제는 오프라인 스토킹과 마찬가지로 '도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일부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지켜보기만 하거나, 이미지를 도용하여 계정을 만들어 내는 행위 등 다양한 행위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온라인스토킹의 매개가 되는 스마트폰, 인터넷 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우리가 규율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만들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고는 있지만, 이 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가지는 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되므로 스토킹행위자가 이 법에 의해 규율 받기는 쉽지 않다.

다. 외국의 입법례

독일은 2021년 형법 제238조 개정을 통해 기존에 제1항 제2호의 전기통신수단의 접촉에서 사이버스토킹을 규율하던 것을 더 구체화하여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데이터 염탐, 데이터 가로채기 행위 등 다른 사람을 디지털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를 추가하였다(제238조 제2항 제4호).[71] 이 규정에 따라 스토킹 앱(stalking apps)이나 스토킹웨어(stalkingwar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데이터를 스토킹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규율할 수 있다.[72]

---

70) 이성식 외(2020), "사이버스토킹의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32권 제2호, p.102.

71) § 238 Nachstellung (2) 4. bei einer Tathandlung nach Absatz 1 Nummer 5 ein Computerprogramm einsetzt, dessen Zweck das digitale Ausspähen anderer Personen ist

72) 한동효/허영희,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문제 진단과 입법 정책적 관점의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1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p.233.

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안 의견은 21대 국회에서도 많은 대안법안이 제시되었다.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7508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바목의 행위"가 추가된 바 있다.[73]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8139호)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상대방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상대방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도 추가하였다.[74]

반면에 현행법상 온라인 스토킹행위를 '도달'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이탄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8822호)과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8923호)에서는 가해자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수신 거부하여 전화를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판례의 경향을 지적하며, "물건 등의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 경우에는 물건 등이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추가하였다.[75]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20402호)에서도 "상대방이 물건 등의 송신을 알 수 있게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76]

4. 보충적 구성요건의 필요성

가. 현행 구성요건 기술 형태

우리나라에서 스토킹 행위 유형은 제2조 제1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부터 바까지 열거하는 형태로 입법기술이 이루어져 있다. 스토킹이라는 것이 다른 범죄의 전조

---

7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소병철 의원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Z2U0H9X2Y2W1F7E0O5I1Q7G7E6J2, 2023.9.20. 최종검색)

7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권인숙 의원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C2W1N1L0G3W1V8B0Y8D2Z2R3O4D0, 2023.9.20. 최종검색).

7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탄희 의원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A2Y1V2Z0Y2Q1B0Y1V0H1N3Z7D0T1, 2023.9.20. 최종검색);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김미애 의원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S2R1W2Q0B1R1Q6B1T6Q0Q6U6A8J1, 2023.9.20. 최종검색).

7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고민정 의원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Y3Y0W1T3G0F1Z2Y0X2W2E3B4A8K1, 2023.9.20. 최종검색).

현상처럼 나타나고 있어, 스토킹이라는 것을 감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다양한 행위 유형을 일일이 열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20여 년간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의 하나로 이 구성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 현행 구성요건 규정의 문제점

스토킹이라는 것이 다양한 접근방식에 발생할 수 있고, 법률에서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스토킹 유형을 모두 법률에 규정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법률의 개정이라는 것이 많은 논의 끝에 이루어지므로, 급변하는 스토킹 유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다. 외국의 입법형태

독일은 형법에서 온·오프라인 스토킹 유형을 모두 열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238조 제1항 제8호에서 보충적 구성요건도 함께 두고 있다. 따라서 1~7호와 유사한 행위(eine mit den Nummern 1 bis 7 vergleichbare Handlung vornimmt)에 대하여도 스토킹행위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 보충적 구성요건 신설의 필요성 검토

우리나라 입법개정과정에서도 보충적 구성요건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20402호)에서는 스토킹행위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정의규정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보아 규정하기 어려운 스토킹행위를 포함할 수 있도록 “위와 준하거나 유사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유형을 추가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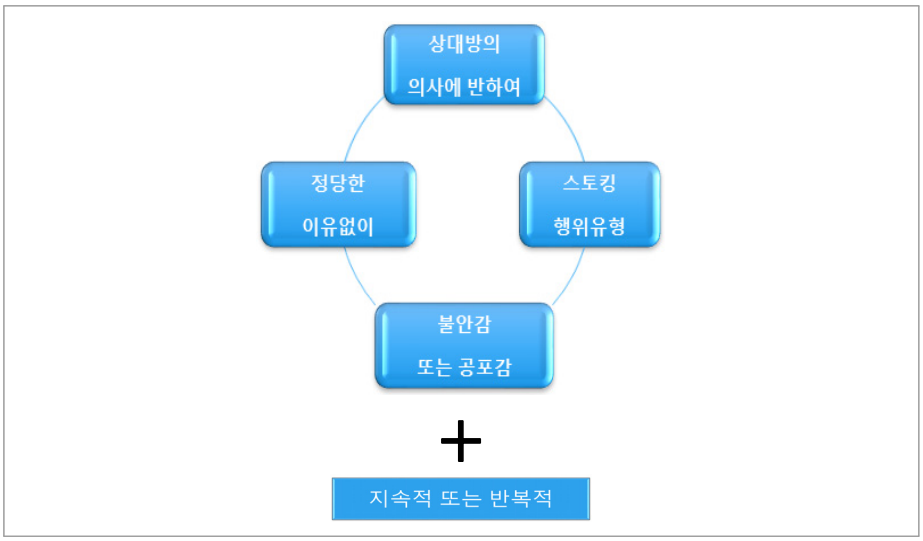
7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고민정 의원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Y3Y0W1T3G0F1Z2Y0X2W2E3B4A8K1, 2023.9.20. 최종검색).

5. 스토킹행위·범죄 판단의 어려움

가. 현행 규정의 형태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다. 즉,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호), 스토킹범죄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 하나의 스토킹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②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③ 7가지 행위유형에 속하는지, ④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외에도, 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났는지를 모두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림 4-2-1]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구조



그런데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피해의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스토킹 행위유형 구분 자체가 모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개념 하나하나를 판단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구성요건을 다 포함하는 스토

킹범죄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각각을 재검토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어 이하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판단의 문제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반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행위를 하여야 스토킹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한 불편함 또는 불안감을 느꼈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스토킹 피해자의 대부분이 관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에 반하여'를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 제2부 피해자의 취약성 요인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인해 불안정한 정서와 부정적 감정이 높아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가해자에게 동선이 노출된 환경에서 지내는 상황이고, 가해자의 연락에 종종 답하는 비일관적 행동을 보이고 있어([표2-2-21] 참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정춘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8644호)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를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다.[78] 또한 '동의 없이'로 할 경우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행위가 스토킹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가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로 변경하자는 의견도 있다.[79] 또한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인줄 모르거나 사랑의 진행단계라고 인식하는 스토킹행위자가 상대방의 신고 등으로 사법경찰관리의 경고 등의 응급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인식할 수 있게 되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를 삭제하고 스토킹범죄를 "사법경찰관리 등 단속권한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1회 이상 응급조치 등을 받고"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로 규율하자는 참신한 의견도 있다.[80]

---

7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정춘숙 의원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G2D1P1E0Q9V1G6K4R3A5U5O9A8V1, 2023.9.20. 최종검색).

79) 원혜욱, 앞의 논문, p.64.

80) 이현정(20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4호, 한국경찰학회, p.275.

다. '불안감 또는 공포감' 판단의 문제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요하는 것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야만 스토킹행위가 성립한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고의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한다는 고의를 가진 행위로 인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을 것이라 착각한 상태의 경우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일본과 독일은 스토킹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위험범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결과범으로 해석할 경우 스토킹행위와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과의 인과관계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 보호에 충실할 수가 없다. 독일은 2007년 「형법」에서 스토킹 구성요건을 신설할 때 "생활형성을 중요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침해범의 형태로 규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판단이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중점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주거 또는 직장의 변경과 같은 외적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는 독일 비판이 있었다.[81] 연방대법원에서도 생활 형성에 대한 침해 개념을 좁게 해석할 경우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82] 이에 따라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결과범을 잠재적 위험범(적성범)의 형태로 개정하였다.

엄격한 해석으로 인해 규율의 어려움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판례를 보면 "불안감과 공포감의 판단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느끼는지와 상관없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스토킹범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재판부는 "집 앞을 기다리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는 가벼운 수준의 접근이라도 반복적으로 시도한 것만으로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스토킹범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83]

---

81) 이승준(2017), "독일의 스토킹처벌규정의 개정과 그 시사점", 형사정책 제2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p.121.
82) BGH NStZ 2010, 277(279).
83) 대법원 2023.9.27. 선고, 2023도6411 판결.

> 대법원 2023.9.27. 선고, 2023도6411 판결
>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
> 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스토킹범죄의 규율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토킹행위 개념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으키는 것'에서 '일으키기에 충분한'으로 구성요건을 변경하자는 의견도 있다.[84]

라. '지속성 또는 반복성' 판단의 문제

스토킹범죄는 스토킹 행위 유형에 속하는 것 외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를 지속성과 반복성을 통해 스토킹범죄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법률상 스토킹 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를 한 경우 반복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스토킹범죄인지를 판단하는 '지속성'과 '반복성'의 개념이 경찰의 사건처리 현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현장전문가들의 89.0%가 "스토킹범죄의 기준인 '지속성 또는 반복성'의 개념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85] 실제로 스토킹 현장에서는 동일한 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를 시간차를 두고 1회씩 한 상황에서 반복성을 인정할지가 문제가 되고, 2회 이상 반복되지 않은 경우 스토킹이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

84) 고명수(2022),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 구성요건 연구: 독일 형법 제238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제 제696호, 법제처, p.34.
85) 조제성(2022), 앞의 보고서, p.166.

이와 관련하여 독일은 2021년 「형법」 제238조 제1항을 개정하여 지속성(beharrlich) 부분을 삭제하고, 반복하여(wiederholt) 부분만을 남겨두었다. 다만 지속성의 부분은 제2항 가중사유로 가져와 최소 6개월 이상 피해자를 스토킹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스토킹 판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스토킹 행위가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나, 약 1분간, 약 5분간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하거나, '약 13분 20초'의 짧은 시간 동안 진로를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하여, '매주 일요일'과 같이 행위와 행위 사이에 비교적 오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반복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6] 반복성은 지속성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여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반복성만을 구성요건에 두자는 의견도 있다.[87]

제3절 | 스토킹범죄 사건처리절차의 쟁점

1. 스토킹범죄 사건처리절차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신고받은 즉시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고(제3조),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제4조).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제9조).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6) 강소영(2022), "판결문 분석을 통한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진단: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판례를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경찰법학회, p.70.
87) 김잔디(2019), "스토킹 실행행위 구조에 관하여",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p.93.

[표 4-3-1]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의 유형

구분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요건	진행 중 스토킹행위	지속적 또는 반복 우려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재발될 우려
보호조치	• 행위 제지, 향후 스토킹 중단 통보, 지속·반복 시 처벌 서면경고 • 행위자와 피해자등 분리, 범죄수사 • 피해자에게 보호조치 절차 안내 • 상담소등 시설로 인도	• 주거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스토킹중단 서면경고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청구권자	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 (사후승인 요)	검사, 사법경찰관의 신청
기간	-	1개월 초과금지	3개월(두차례 연장 가능)/ 1개월 초과금지

2. 보호조치 승인절차에 따른 이행 지연문제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승인절차가 경찰-검사-판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신청과 함께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소 2~5일이 소요되고 있어 '긴급'한 사안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 스토킹정책계 통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법원 승인까지 긴급응급조치는 평균 1.9일, 잠정조치는 2.3일이 소요되고, 길게는 5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88]

잠정조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89]에 따르면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데까지 평균 2.5일이 소요되었다. 이는 가정폭력행위에 대한 임시조치가 1.6일, 아동학대에 대한 임시조치가 평균 1.8일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잠정조치 결정이 나는 데까지 5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149건에 이르고 있다.

88) 국수호, 〈스토킹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토론문, 2023년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p.75 각주 2번.

89) 안전신문, "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 최대 15일 걸려..잠정조치 4호 승인율은 49.1%", 2022년 10월 5일자(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78, 2023.9.20 최종검색).

[표 4-3-2]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결정 소요기간

단위: 건수

구분	평균 소요일	총계	당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상
스토킹 잠정조치	2.5일	1,035	88	303	278	128	89	69	80
가정폭력 임시조치	1.6일	1,679	318	693	354	139	93	44	38
아동학대 임시조치	1.8일	1,164	179	413	321	92	91	35	33

출처: 안전신문, "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 최대 15일 걸려..잠정조치 4호 승인율은 49.1%", 2022년 10월 5일자[90]

3. 응급조치의 실효성 문제

응급조치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경찰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이다. 초기에 스토킹행위를 인지한 경우 바로 경고적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로 초기 대응에 유용한 조치이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응급조치에 대한 처벌경고가 서면경고로 변경되어 강제력을 더했다.

그러나 응급조치는 "진행 중인 행위"에만 적용가능하다. 이로 인해 현장에 경찰이 투입되어 현재 진행 중인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실무상 스토킹 행위가 진행 중인 것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로 선행연구의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에서도 응급조치의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이 15명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하였다.[91] 앞의 제3부 분석결과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교제관계인 경우 다른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비해 신체적 폭력수반 여부와 무관하게 응급조치 4호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2-15] 참조).

응급조치가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경찰이 응급조치의 발동요건인 '진행 중인 행위'의 판단에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현재 스토킹행위인지를 판별하여야만 진행 중인지도 파악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4가지 스토킹 행위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경찰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는 위험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법적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신고를 근거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실제로 느꼈

90) 안전신문, "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 최대 15일 걸려..잠정조치 4호 승인율은 49.1%", 2022년 10월 5일자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78, 2023.9.20 최종검색).
91) 조세성 외(2022), 앞의 보고서, p.129.

는지를 모두 판단하는 데 무리가 있다.[92] 응급조치가 현행 법률상 "진행 중인 행위"로만 되어 있어 스토킹신고 접수 당시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응급을 요하는 초기에 가능하도록 "진행 중인"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다.[93]

4. 긴급응급조치의 실효성 문제

가. 긴급응급조치의 운영 현황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되는 긴급응급조치 현황을 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112 신고 건수의 1/1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로서 긴급응급조치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긴급응급조치의 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표 4-3-3] 스토킹범죄 긴급응급조치 현황

단위: 건수

구분	2021.10.~12.	2022	2023.1.~7.
112 신고건수	14,509	29,565	18,973
긴급응급조치 집행	942	3,403	2,254

출처: 용혜인 의원실, [보도자료] "신당역 스토킹 1년…용혜인 스토킹범죄 폭증하는데 구속율은 떨어져", 2023년 9월 14일자[94]

나. 긴급응급조치의 문제점

긴급응급조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할 우려"라는 위험성 측면에서 스토킹 가해자에게 즉각적으로 취해져야 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장경찰관들은 보호조치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31.9%에 이르고 있었다.[95] 이렇게 응답한 이유는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에 불과한 구법 형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

92) 오상지(2022), "스토킹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관한 연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경찰학회, p.12.
93) 조제성 외(2022), 앞의 보고서, p.202.
94) 용혜인 의원실, [보도자료] "신당역 스토킹 1년…용혜인 스토킹범죄 폭증하는데 구속율은 떨어져", 2023년 9월 14일자(https://www.basicincomeparty.kr/news/briefing?mod=document&pageid=1&keyword=%EC%8A%A4%ED%86%A0%ED%82%B9&uid=3488, 2023.9.20. 최종검색).
95) 조제성, 앞의 보고서, p.167.

다. 그러나 최근 긴급응급조치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이행을 강제하는 문제는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이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으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 이외 동거인이나 가족은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을 "상대방등"으로 확대하여 가족과 동거인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선된 측면이 있다.

다. 외국의 입법례

일본의 「스토커규제법」에서는 우리와 같이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구분하지 않고, 경고(警告)와 금지명령(禁止命令)으로 심플하게 운영하고 있다. 경시총감, 도도부현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은 따라다니거나 위치정보를 승낙 없이 취득하여 따라다니는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경고를 요구하는 취지를 신청한 경우 해당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할 수 있다(제4조). 경고를 받은 자가 이에 불응하고 계속 문제행동을 하는 경우 공안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금지명령에는 앞으로 해당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에 대한 명령뿐만 아니라 앞으로 반복하여 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도 함께 명령한다(제5조).[96]

第四条(警告)

(1) 경시총감, 도도부현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본부장 등'이라 함)은 따라다니기 또는 위치정보를 승낙받지 않고 취득하는 등과 관련된 경고를 요구하는 취지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신청과 관련된 전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고, 해당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반복하여 해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경고할 수 있다.

(2) (1)항의 경찰본부장 등이 전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를 한 경우에는 다른 경찰본부장 등은 해당 경고를 받는 자에 대하여 해당 경고와 관련된 전조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고할 수 없다.

(3) 경찰본부장 등은 경고를 한 때에는 신속히 해당 경고의 내용 및 일시를 제1항의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경찰본부장 등은 경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속히 그 취지 및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96) 일본법령 검색 사이트(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2AC0100000081, 2023.9.20. 최종검색).

(5) 전 각 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1항의 신청 수리 및 경고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第五条(禁止命令等)

(1)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행위를 한 자가 다시 반복하여 해당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다시 반복해서 해당행위를 해서는 안될 것
2. 다시 반복적으로 해당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공안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을 위한 절차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금지명령의 효력은 금지명령 등을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으로 한다.

(9) 공안위원회는 금지명령을 한 경우 전항의 기간 경과 후 해당 금지명령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금지명령과 관련된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해당 금지명령의 유효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연장과 관련된 기간의 경과 후 이를 다시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第十九条(罰則)

(1) 금지명령 등(제5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는 제외)을 위반한 스토킹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따라다니거나 위치정보를 승낙없이 취득함으로써 스토킹행위를 한 자도 전항과 같다.

第二十条(罰則)

전조에 규정된 것 외에, 금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년 개정에 따라 경고 없이도 금지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긴급한 때에는 사전청문절차 없이 긴급금지명령이 가능해졌다. 금지명령을 하는 주체인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경찰 본부장 등에게 위임도 가능하여 사실상 경찰이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021년 개정으로 금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의 유효기간 연장 처분에 대해 경찰이 직접 서류송달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재불명인 경우 행위자에게 명령을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해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공시송달을 대신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되었다.[97]

97) 문희태, "스토킹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적 논의와 과제: 일본 스토커규제법의 제정 경위와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제20권 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p.393-395.

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긴급응급조치의 접근금지 반경이 육안으로 파악 가능한 가시거리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접근차단을 위해 접근금지 거리를 100미터에서 300미터로 확대하자는 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20179호)도 있다.[98] 그러나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온라인 오프라인 형태를 불문하기 때문에 주거 등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만으로는 유효하지 않다.

우리의 경우 긴급성을 요하는 보호조치에 있어서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많다. 긴급응급조치 청구에 있어서 검사를 경유하는 절차를 거침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를 신속하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고전치주의를 폐지하고, 사전청문절차 없이 바로 실시 가능한 긴급금지명령제도를 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99]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5524호)에서도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기한을 '지체 없이'에서 '48시간 이내'로 한정하고,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검사 경유 절차를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100]

5. 잠정조치의 실효성 문제

가. 잠정조치 활용 현황

잠정조치 신청건수(제1호 제외)는 2021년 1,059건이었던 것이 2022년 7,441건으로 7배 증가하였고, 2023년 상반기 통계를 감안할 때 올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잠정조치 신청건수는 이같이 증가하고 있으나, 잠정조치 중 피해자보호에 긴급하다고

9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노용호의원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I3H0P2O0M7L1M0I0H4F2E5M9M3L7, 2023.9.20. 최종검색).
99) 장응혁, "일본 스토킹 대응과 그 시사점", 경찰법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경찰법학회, p.213.
10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한병도의원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P2F0E1V2G5J1H7E1A4H1H2P5L9P0, 2023.9.20. 최종검색).

판단되어 분리되는 4호(구치소 또는 유치장 유치)의 승인률은 매우 낮다.

[표 4-3-4]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신청 및 승인 현황

단위: 건수

구분	2021.10.~12.		2022		2023.1.~7.	
	신청	승인	신청	승인	신청	승인
전체	1,059	869	7,441	6,417	5,557	4,772
4호	136	51	1,005	476	659	367

출처: 용혜인 의원실, [보도자료] "신당역 스토킹 1년...용혜인 스토킹범죄 폭증하는데 구속율은 떨어져", 2023년 9월 14일자[101]

스토킹전담 경찰관의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잠정조치 규정이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한 비율 61.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정조치의 유형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지적[102]은 잠정조치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가 되기도 한다.

나. 잠정조치 운영상의 문제점

잠정조치 중 현장에서는 제4호의 잠정조치의 실시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에서 신청한 잠정조치를 법원에서 인용한 현황을 살펴보면, 잠정조치의 평균 인용률은 84%에 이르고 있다. 잠정조치 중 제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에 대한 인용률은 49.1%로 평균 인용률을 한참 밑돌고 있다. 대부분 유치장 유치 등이 필요한 경우는 피해자와의 분리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용률이 절반을 밑돌고 있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

101) 용혜인 의원실, [보도자료] "신당역 스토킹 1년...용혜인 스토킹범죄 폭증하는데 구속율은 떨어져", 2023년 9월 14일자(https://www.basicincomeparty.kr/news/briefing?mod=document&pageid=1&keyword=%EC%8A%A4%ED%86%A0%ED%82%B9&uid=3488, 2023.9.20. 최종검색).

102) 조제성 외(2022), 앞의 보고서, p.167-168.

[표 4-3-5]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현황(2021.1~2022.6)

단위: 건수, %

구분	잠정조치							
	계	2호	3호	4호	2.3호	3.4호	2.4호	2.3.4호
경찰 신청	4,355	262	91	169	3,434	9	7	383
법원 신청	3,676	215	86	83	3,130	3	5	154
인용률	84.4	82.1	94.5	49.1	91.1	33.3	71.4	40.2

출처: 권인숙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법원 스토킹 잠정조치 실효성 강화 필요", 2022년 10월 4일자.[103]

법원에서 잠정조치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줄여 신속하게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추가되긴 하였으나 스토킹 유형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형태의 제재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 위탁",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도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

다. 잠정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논의

1) 잠정조치 변경에 따른 통지대상에 경찰 추가

잠정조치가 취소, 기간의 연장,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검사, 피해자, 스토킹 행위자 등에게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하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었다(제11조 제항, 제5항).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잠정조치를 위반한 자를 수사 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경찰인 바, 경찰이 잠정조치 변경사항을 모른다는 것은 피해자 보호나 신속한 사건처리에 저해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잠정조치 변경에 따른 통지 대상에 경찰도 포함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2) 잠정조치의 다양화

현행법상 잠정조치의 유형으로 피해자등의 주거에 대한 접근금지는 가능하나, 스토킹 행위자의 성행개선에 필요한 상담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잠정조치 유형에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상담 위탁을 추가하여 재범방지에 실효성을 기하는

103) 권인숙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법원 스토킹 잠정조치 실효성 강화 필요", 2022년 10월 4일자(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iskwon317&logNo=222891615034&categoryNo=14&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2023.9.30., 최종검색)

것이 필요하다. 최근 발의된 송재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23320호)에서도 같은 취지로 제9조 잠정조치의 유형에 "스토킹 행동에 대한 상담위탁"을 추가하는 안이 제시된바 있다.[104]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7508호)에서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의 하나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 확인 외에, "스토킹 행위자의 활동장소 이동·변경 등 격리 권고"에 관한 사항도 추가하였다.[105]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외에도 우편을 이용한 접근도 예상 가능한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전기통신 또는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로 규정하자는 유정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21317호), 최영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21200호)도 있었다.[106]

제4절 | 스토킹범죄 피해자보호의 쟁점

1. 현행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규정

제정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범죄 피해자 관련 규정은 제17조 전담조사제 규정 한 조문에 불과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피해자 보호장치에 관한 규정들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제7조), 출판물 게재로부터의 피해자보호(제8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른 범죄와 차별화하여 스토킹 피해자만을 위한 특별한 보호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 「스토킹처벌법」 개정 정부안 등을 비롯하여 총 32개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10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송재호 의원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D3J0F7E0C5B1J0K3J4I3G7O1N6O1, 2023.9.20 최종검색).
10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소병철 의원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Z2U0H9X2Y2W1F7E0O5I1Q7G7E6J2, 2023.9.20. 최종검색).
10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유정주 의원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M3L0T4S0R6Q1Q8Z2X1W2U6R0P4O6, 2023.9.20. 최종검색);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최영희 의원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U3V0U4S0O7N0L9M3L8T4S2R0P7Q1, 2023.9.20. 최종검색).

이 2023년 6월 20일 「스토킹처벌법」 대안으로 발의되어, 7월 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다.[107] 개정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대폭 유입되면서, 그동안 피해자보호의 공백을 상당부분 해소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취소·변경시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고(제7조 제5항, 제11조 제4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의 잠정조치를 신청 또는 청구하지 않을 때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하였다(제8조 제3항, 제4항).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 또는 신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의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7조의2).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되었다(제17조의3).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이 마련되어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와 법률적 조력이 원활해졌다(제17조의4).

[표 4-4-1] 개별 특례법에서 피해자보호 규정 비교

제정스토킹법	개정스토킹법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전담 조사제(17조)		피해자전담 조사제(26조)		
			피해자보호명령 (55조 이하)	피해아동보호명령(46조 이하)
	잠정조치 미신청시 피해자통지 (8조 3항,4항)			
		공소시효 특례(21조)		
	신고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17조의2)	특강법특례 준용 (제22조)		증인신변안전조치(17조의2)
		피해자, 신고인 보호조치(23조)		신고자보호조치 (10조의3)
	사생활비밀누설금지(17조의3)	사생활비밀누설금지(24조)		

107) 뉴스원, "추경호,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법 공포", 2023년 7월 3일자(https://www.news1.kr/articles/5095742, 2023.7.5. 최종검색).

제정스토킹법	개정스토킹법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변호인선임특례 (17조의4)	변호인선임특례 (27조)		변호사선임특례 (16조)
		수사재판절차 배려(29조)		
		영상물촬영보존 (30조)		
		심리 비공개 (31조)	심리 비공개 (32조)	
			피해자진술권 (33조)	
반의사불벌죄 (18조 3항)	반의사불벌죄 삭제(18조3항)			

개정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보호 관련규정이 다양하게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로 여전히 한정되어 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도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반의사불벌죄 삭제 이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보호장치 마련 등에 있어서 한계점을 여전히 지니고 있으므로 그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최근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 부분도 함께 다루어야 하나, 2차년도 연구에서 동법을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였는바, 여기에서는 「스토킹처벌법」 하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제한된 피해자 개념

가. 현행법상 피해자 정의규정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 피해자'란 "스토킹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호). 또한 '피해자 등'이라는 개념은 "피해자 및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으로 정의되고 있다(제2조 제4호). 제2조 제1호에 있는 '상대방 등'이라는 개념에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포함된다.

나. 피해자 정의 규정의 문제점

현행법상 스토킹피해자는 '직접' 피해자에 한정되고,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등'의 개념에 상대방, 그의 동거인, 가족이 포함된다(제2조 제1호). 상대방이란 스토킹 행위의 대상이 되긴 하나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108] 피해자가 스토킹범죄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의미라면, 상대방은 스토킹범죄에 이르지 않은 스토킹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다.[109] 상대방 이외의 동거인과 가족은 상대방이 아닌 스토킹 행위의 대상이 된다는 모호한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행위의 피해자와 상대방의 개념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또한 응급조치에 대해서는 '피해자등'으로, 긴급응급조치에서의 '상대방등'으로, 잠정조치에서는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표현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피해자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스토킹 피해자를 직접 피해자에 대한 행위로 한정할 경우 제3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상대방에는 가족과 동거인 외에도 직장동료 등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도 스토킹의 피해가 전달될 수 있다. 현행과 같이 '상대방 등'의 개념에 상대방과 가족, 동거인으로 제한되게 될 경우 직장동료 등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의 신체 및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4월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110]에서와 같이 스토킹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스토킹으로 인해 주변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고,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111]과 같이 전처가 직접적인 피해자이긴 하나 살해협박으로 인해 스토킹 피해는 그 가족에게도 예외는 아님을 알 수 있다.

---

108) 원혜욱(2021),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실효적인 보호방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피해자학회, p.62.

109) 원혜욱(2021), 앞의 논문, p.62.

110) 연합뉴스,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유족, 국가배상청구소송", 2021년 10월 26일자(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697.html, 2023년 9월 10일 최종검색).

111) 뉴스인사이드, "강서구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딸의 처절한 증언 보니? 보복이 두렵다", 2018년 12월 21일자(http://www.news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515223, 2023.9.10. 최종검색).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를 직접 피해자로 한정할 경우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자는 스토킹 피해자가 되지 않을뿐더러 스토킹의 상대방에도 포함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토킹 피해 보호에 충실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외국의 입법례

미국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에서는 여성폭력 상대방에 '배우자,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 또는 데이트 파트너(a spouse, intimate partner, or dating partner)'로 규정하고 있고,[112] 「미국 연방법전」 제18편 제1부 제110A장 제2261A조 스토킹 규정에서는 스토킹 피해자의 개념에 "본인, 직계가족, 배우자 또는 친밀한 파트너, 대상자의 애완동물, 서비스 동물, 정서지원동물 또는 말(the pet, service animal, emotional support animal, or horse of that person)"까지 포함하고 있다.[113] 독일 형법 제238조에서도 피해자의 개념 안에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또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개념이 우리와 같이 직접적인 피해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의 「가정폭력, 범죄 및 피해자법(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에서는 금지명령 위반을 범죄행위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접근금지명령 위반행위를 범죄로 민사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에서 처리되는데, 최대 5년의 법정형으로 처리된다.[114] 그런데, 이러한 접근금지명령은 동성커플이나 함께 살지 않지만 상당기간 동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게도 가능한 조치이다(제5

112) 18 U.S.Code. §2261(Interstate domestic violence).

113) **18 U.S.Code. §2261A(Stalking)**
(1) travels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or is present within the special maritime and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or enters or leaves Indian country, with the intent to kill, injure, harass, intimidate, or place under surveillance with intent to kill, injure, harass, or intimidate another person, and in the course of, or as a result of, such travel or presence engages in conduct that—
(A) places that person in reasonable fear of the death of, or serious bodily injury to—
(i) that person;
(ii) an immediate family member (as defined in section 115) of that person;
(iii) a spouse or intimate partner of that person; or
(iv) the pet, service animal, emotional support animal, or horse of that person; or

114)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4/28/contents, 2023.9.20. 최종검색).

조). 영국은 경찰이 피해자 주변인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를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토킹 피해의 특성 또는 피해자 보호조치에서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개념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다수 있다.

먼저 그동안 제출된 다수의 「스토킹처벌법」 개정 법률안에서 제시된 바를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개념의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혜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7908호)에서는 피해자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여 "제1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방 및 그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중 그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개념을 변경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115] 정춘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8644호)에서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외에 "그밖에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자는 안도 있다.[116] 권인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8319호)에서는 "그밖에 직장동료 등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대표적인 유형으로 직장동료를 추가하자는 안을 제시하였다.[117]

피해자의 개념을 직·간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확대하는 경우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118] 피해자의 범위를 반드시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가 없고 입법목적이나 피해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19] 스토킹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수차례 연락이나 접근을

11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장혜영 의원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O2G0P9D3G0A1W3E2E6S3P7C8Y1X6, 2023.9.20. 최종검색).
11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정춘숙 의원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G2D1P1E0Q9V1G6K4R3A5U5O9A8V1, 2023.9.20. 최종검색).
11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권인숙 의원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C2W1N1L0G3W1V8B0Y8D2Z2R3O4D0, 2023.9.20. 최종검색).
118)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제102호)」에 대한 검토보고, p.7.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B6L0F6K0L3Y1L7B4M5Y5N5Z9W0B7, 2023.9.20. 최종검색).
119) 장응혁(2017), "스토킹범죄의 정의에 관한 연구: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p.197.

하여 그가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꼈다면 그는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니라 스토킹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스토킹 대상자의 실질관계에 따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120]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판례는 아니지만 이미 이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심의 과정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같은 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그 지인인 직장동료에게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연락을 취한 경우에도 불법정보의 유통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121]를 보더라도 스토킹 피해의 상대방을 '피해자'로만 한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 어려움

가. 현행 피해자 보호요청의 한계

피해자 보호조치로서 앞서 언급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존재하긴 하나, 조치의 기간이 길지 않아 판결이 날 때까지 피해자를 지속해서 지켜주지 못한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이 기존 2개월/6개월에서 두 차례 연장으로 변경되어 3개월/9개월까지로 늘어나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현행법 하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형태이므로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스스로 문제 상황 발생 때 적극적인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미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①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②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친권자인

120) 김정혜, 박보람, 정다은 (2021),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48.
121) 울산지방법원 2016.7.5. 선고, 2016고단1314 판결.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⑤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 등을 할 수 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나. 외국의 입법례

미국은 여성폭력방지법(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에 따라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또는 보호명령을 실시할 수 있고, 스토킹 피해자의 긴급이주권(emergency transfer) 행사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권(terminal of residential lease)도 행사할 수 있으며, 비밀준수 의무 부과까지 다양하게 보호명령이 실시되고 있다.[122]

일본은 「스토커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경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토킹 초기단계에 발생하는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가로막기, 반복해서 전화하기 등 행위가 있는 경우 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경찰본부장이 행위자에게 행위 금지를 경고할 수 있고(제4조), 이를 반복할 경우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제5조).[123]

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청 장치 필요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안전과 보호장치를 직접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미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제55조) 규정을 비롯하여 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2, 제55조의3)과 임시보호명령(제55조의4)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

122) 이승준(20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34권 제2호, p.48.

123)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2AC0100000081, 2023.9.20. 최종검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최근 폐기된 법무부 개정안에서는 "지방법원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한 바 있다.[124]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20476호)[125]과 박영순 의원 대표발

12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정부 발의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A2A3T0L2Q1F5D1N7H4V9M5Q9J2Y2R2, 2023.9.20. 최종검색).

의안(의안번호 제2119503호),[126]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8644호),[127]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8139호),[128]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8038호)[129]에서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설을 제안한바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에 있어서도 스토킹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스토킹 피해경험 연구결과[130]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지속 기간은 대부분 1년 이하이지만, 3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스토킹의 비율도 9.8%로 적지 않았다. 장기간 지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피해자보호명령의 연장가능기간을 가정폭력처벌법과 동일하게 최소한 3년 이하로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실시할 수 있는 유형에 있어서도 미국은 여성폭력보호조치의 종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스토킹방지법에서 피해자지원시설의 업무에서 "임시 거소의 제공 및 숙식 제공"이 있긴 하지만(제9조), 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형태로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신변안전조치의 미흡

가. 스토킹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현황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경찰의 신변보호조치 신고접수 및 처리건수는 2020년 14,773건에서 2022년 24,810건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신변보호건수가 급증하여 2021년 서울 경찰청이 접수 및 처리한

12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소병훈 의원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J1F0V6G1Z0A1R3W5R3Q0Q4A8K6L9, 2023.9.20. 최종검색)
12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박영순 의원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M3S0I1P0W2G1E1C3X2S0O2P8Z8X1, 2023.9.20. 최종검색).
12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정춘숙 의원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G2D1P1E0Q9V1G6K4R3A5U5O9A8V1, 2023.9.20. 최종검색).
12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권인숙 의원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C2W1N1L0G3W1V8B0Y8D2Z2R3O4D0, 2023.9.20. 최종검색).
129)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김선교 의원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S2B1Z0I2N8V1O6U1Q0O2F5P3U5L3, 2023.9.20. 최종검색).
130) 이수정 외(2021), 스토킹 방지 입법 정책 연구, 경기대학교, p.67

신변보호조치 건수는 5,391건이었으나, 2022년 1월~8월까지 건수는 4,443건에 이르고 있었다.[131]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발생한 살인(미수 포함)사건이 2022년 10건이었고, 2023년 8월까지도 3건에 이르렀으며, 신변보호 기간 중 피해자가 재신고하는 접수건수도 2019년 1,338건에서 2022년 7,85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132]을 보더라도 경찰의 피해자 신변안전조치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적극적인 신변보호를 하지 못하는 데는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부족한 것도 있으나 스토킹범죄의 특성에 맞게 신변보호가 되지 않는 부분도 문제라 할 수 있다.

나. 피해자 신변안전조치의 문제점

제정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신변안전조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신변안전조치를 받으려면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일 것",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였다. 그러나 개정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2(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신설로 인해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변안전이 보다 확보되었다.

하지만 경찰 실무상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보호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063호) 제28조에 따라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 규칙에 따라 규율하고 있는 신변보호의 대상은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다.

---

131) 한국일보, "경찰1명이 100건...신변보호 요청 급증에도 전담인력은 태부족", 2022년 9월 26일자(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511260000117?did=NA, 2023.9.10. 최종검색)

132) 용혜인 의원실, [보도자료]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변보호 중 살해된 피해자 8명...용혜인 피해자 전담인력 및 예산 확충해야", 2023년 10월 12일자(https://www.basicincomeparty.kr/news/briefing?mod=document&pageid=1&keyword=%EC%8A%A4%ED%86%A0%ED%82%B9&uid=3682, 2023.11.1. 최종검색).

제28조(신변보호의 대상)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조치유형)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외출·귀가 시 동행, 수사기관 출석 시 동행 및 신변경호
3. 임시숙소 제공
4. 주거지 순찰강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비상연락망 구축
6. 그 밖에 신변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으로 "피해자 등" 즉 피해자뿐만 아니라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게도 신변보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경찰의 보호과정에서는 지침규정의 한계로 인해 피해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경찰이 하는 신변보호조치는 '피해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스토킹범죄처럼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하여 살해한 사례 등과 같은 피해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동선 정보만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신변보호요청을 하는 경우 경찰이 즉각 출동을 하더라도 가해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즉각적인 신변보호를 하는 것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유형에서 온라인스토킹의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다. 외국의 대응정책

외국의 경우 피해자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클레어법(Clare law)」에 의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2009년 클레어 우드라는 여성이 남자친구의 폭력에 의해 살해된 것을 계기로 교제하고 있는 상대방의 폭력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가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경찰이 가정폭력이나 학대로부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폭력범죄나 학대범죄를 저지른 자의 정보를 경찰이 개인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다.[133] 가정폭력 전과제도는 질문할 권리(Right to Ask)와 알권리(Right to Know)를 담고 있는데, '질문할 권리'는 개인이 경찰에게 현재 또는 새로운 파트너의 과거 폭력 전과를 알아볼 수 있는 권리이고, '알권리'는 어떤 기관이 소속 직원이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강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에 정보를 요청하고 필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134] 가정폭력과 관련된 제도이나 영국의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개념에 연인관계에 해당하는 파트너를 포함하고 있고, 가정폭력의 범죄유형에도 스토킹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할만한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임의체포제도를 뉴욕 주를 포함 23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1984년 도입된 임의체포제도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원하느냐 처벌을 원하느냐를 묻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하는 강력한 제도이다.

라. 신변안전조치의 보완방안

「스토킹처벌법」에서 신변안전조치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실제 경찰의 업무규칙에서는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실효성 있는 신변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가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접근하여 살해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경찰의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서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신변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피해자'에 한정하기 보다는 '피해자와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로 그 개념을 확대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 신변안전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활용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온라인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는 실효성이 없는 조치가 될

133) Home Office(2023), 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DVDS) Statutory Guidance, pp.3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162788/Domestic_Violence_Disclosure_Scheme.pdf, 2023.10.20. 최종검색).

134) 윤정숙 외(2017), 가정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520-522.

수밖에 없는바 온라인 스토킹범을 상대로 한 신변안전조치 마련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피해자의 정보보호 미흡

가. 현행 피해자 정보보호 관련 규정

스토킹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관계인 경우가 다수이고, 피해자가 같은 직장이나 공간 등을 공유함으로 인해 개인정보들이 가해자에게 노출된 경우도 많다. 피해자가 이직, 휴학, SNS 계정 삭제, 아이디 변경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삭제하려 노력하지만, 온·오프라인에서 어디까지 가해자가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개인정보를 모두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135] 피해자의 정보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를 요한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이외 수사·재판절차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나. 피해자 정보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피해자의 정보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주로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이하 '범죄신고자법'이라 함)」에 따른 보호가 상정될 수 있다. 피해자 정보보호를 충실히 담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 「성폭력처벌법」이 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제23조에 피해자,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범죄신고자법」 제7조부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

135) 원혜욱(2021), 앞의 논문, p.70.

[표 4-4-2] 개별법에서 피해자 정보관련 규정 비교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로 「범죄신고자법」 제13조와 제13조의2를 준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필요한 신변안전조치로서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제8조(인적사항의 공개금지),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를 피해자 등 신고자가 요청할 수 있도록 제17조의2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조서등에 범죄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假名)으로, 간인(間印) 및 날인(捺印)은 무인(拇印)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本名)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범죄신고자등은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신원관리카드는 검사가 관리한다.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① 법원은 다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2.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요한 경우
3. 제14조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지급에 관한 심의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③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검사에게 범죄신고자등과의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면담 신청을 받은 검사는 즉시 그 사실을 범죄신고자등에게 통지하고, 범죄신고자등이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검사실 등 적당한 장소에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대리인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라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신청한 변호인과 제3항에 따라 면담 신청을 한 자는 검사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이의신청은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허가하거나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대리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절 | 스토킹범죄 처벌규정의 쟁점

1. 스토킹 범죄의 처벌 규정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18조). 스토킹범죄의 보호법익을 사생활의 보호 내지 사생활의 자유 침해라고 본다면, 자유에 관한 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자유에 관한 죄의 기본범죄인 협박죄의 법정형과 동일한 3년 이하 징역으로 설정한 것으로 이해된다.[136]

스토킹범죄 처벌규정을 보면 과거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던 경우에서 벗어나 사건처리단계에서 조치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스토킹범죄에 대해 처벌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처벌규정은 스토킹범죄를 규율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매년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범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스토킹 범죄로 검거되는 건수는 1/3에 그치고 있고, 이 가운데 구속되는 경우는 2022년 기준 300여 명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스토킹범죄자가 처벌받는 사례는 찾아보기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표 4-5-1] 스토킹범죄 112 신고 현황

단위: 건수

구분	2018.6~12.	2019	2020	2021	2022
112 신고건수	2,767	5,468	4,515	14,509	29,565

출처: 경인일보, "스토킹재범 우려 때도 전자발찌 부착..보호관찰 인력 부족해 관리부실 지적", 2023년 10월 22일자[137]

[표 4-5-2] 스토킹범죄 검거 및 구속 현황

단위: 건수, %

구분	2021.10.~12.	2022	2023.1.~7.
검거 건수	880	9,895	6,309
구속	58	331	210
불구속	760	9,668	6,271
구속율	7.0	3.3	3.2

출처: 용혜인 의원실, [보도자료] "신당역 스토킹 1년...용혜인 스토킹범죄 폭증하는데 구속율은 떨어져", 2023년 9월 14일자[138]

스토킹범죄가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잘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유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순 스토킹

136) 이현정(20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4호, 한국경찰법학회, p.270.

137) 경인일보, "스토킹재범 우려 때도 전자발찌 부착..보호관찰 인력 부족해 관리부실 지적", 2023년 10월 22일자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1021010003763, 2023.11.1. 최종검색).

138) 용혜인 의원실, [보도자료] "신당역 스토킹 1년...용혜인 스토킹범죄 폭증하는데 구속율은 떨어져", 2023년 9월 14일자(https://www.basicincomeparty.kr/news/briefing?mod=document&pageid=1&keyword=%EC%8A%A4%ED%86%A0%ED%82%B9&uid=3488, 2023.9.20. 최종검색).

행위와 흉기를 휴대하는 행위 단 2가지 유형에 의한 처벌에 불과하고, 최근에 개정법에 따라 의무 이행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담고 있을 뿐이다. 스토킹범죄 처벌규정이 타 법률이나 외국의 법제와 비교할 때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유형을 담고 있지 않은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가중 처벌 규정의 부재

가.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규정의 문제점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스토킹 행위가 이후 살인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 외에도 주거침입, 협박, 폭행, 재물손괴, 상해, 디지털성범죄 등 다른 범죄와 경합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139] 스토킹범죄가 연인관계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중대범죄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스토킹 행위가 장기간 지속해서 발생하거나,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 성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스토킹하거나 장애인을 스토킹하는 경우 형법상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스토킹처벌법」에서 가중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스토킹처벌법」 판례분석 결과를 보면 선고형은 집행유예와 벌금형과 같은 사회내 처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4.9%(전체 161건 중 24건)에 불과하였다. 이들 대부분이 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주거침입, 감금 등 다른 범죄와 경합되어 있는 경우이고, 「스토킹처벌법」 단독으로 위반된 사안은 1.2%(2건)에 불과하였다.[140] 이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1심 판결 분석연구에서도 실형 선고 비율이 11.5%에 불과하고, 벌금형 선고가 32.5%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결과가 비슷하다.[141]

---

139) 한나라(2023), "스토킹 양형 현황과 영향기준 수립방향", 양형연구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심포지엄 〈스토킹범죄와 양형〉 자료집, p.41.

140) 한민경(2022), "반의사불벌죄와 공소기각: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결과", 한국경찰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경찰학회, p.333.

141) 정현미, "스토킹범죄의 처벌례 분석과 효율적 대응방안 연구: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처벌법」 위반 1심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27권 제4호,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p.211.

[표 4-5-3] 「스토킹처벌법」 위반 1심판결 처벌 현황

단위: 건수, %

1심판결	건수	비율
공소기각 판결	139	21.0
벌금형	207	32.5
징역형+집행유예	204	32.1
징역형	71	11.2
선고유예	3	0.5
무죄	12	1.9

출처: 정현미, "스토킹범죄의 처벌례 분석과 효율적 대응방안 연구: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처벌법」 위반 1심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27권 제4호,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p.211.

나. 외국의 입법례

1) 독일의 가중처벌 규정

독일 형법 제238조 제2항에서는 스토킹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스토킹 행위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결과적가중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238조 제2항에서는 건강 손상을 야기하거나(제1호), 사망 또는 중대한 건강 손상이라는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제2호) 3개월 이상 5년 이하 자유형으로 가중처벌되고,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제3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자유형으로 가중처벌된다. 독일실무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의 경우 이후 심각한 형태의 스토킹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고, 다른 범죄와 스토킹이 경합할 경우 스토킹범죄를 경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므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결과에 대한 불법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142]

형법 제238조 제2항에서 특히 중한 경우(besonders schwerer Fall)로는 다음과 같다.[143] 이들 행위에 대하여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 자유형에 처한다.

---

142) Kriminologische Zentralstelle (2016), Stellungnahme zu dem Referentenentwurf eines Gesetzes zur Verbesserung des Schutzes gegen Nachstellungen, S.6.

143) **§ 238 Nachstellung (2)**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1 Nummer 1 bis 7 wird die Nachstellung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Ein besonders schwerer Fall liegt in der Regel vor, wenn der Täter
1. durch die Tat eine Gesundheitsschädigung des Opfers, eines Angehörigen des Opfers oder einer anderen dem Opfer nahestehenden Person verursacht,
2. das Opfer, einen Angehörigen des Opfers oder eine andere dem Opfer nahestehende Person durch die Tat in die Gefahr des Todes oder einer schweren Gesundheitsschädigung

1. **범죄로 인해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또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입힌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또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의 위험에 빠뜨린 경우**
3.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여러 차례 스토킹한 경우
4. 다른 사람을 디지털 **감시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5. 제1항 제5호의 범죄를 통해 취득한 영상물을 사용하는 경우
6. 제1항 제5호의 범죄를 통해 취득한 내용물을 제1항 7호의 범죄행위를 하면서 사용하는 경우
7. **행위자가 21세 이상이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2021년 독일 형법 개정으로 "16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형법 제238조 제3항에서는 범죄의 결과로 행위자가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또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을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144]

2) 오스트리아의 가중처벌 규정

오스트리아는 2006년 처음 형법 제107조a를 신설한 이후 2007년, 2015년, 2019년 3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06년 제정 당시에는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경찰의 개입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요하게 추적 또는 따라다니는 행위(Beharrliche Verfolgung)"를 처벌하고자 형법 제107조a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해당규정의 개념 자체가 명료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처벌규정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145]

---

bringt,

3. dem Opfer durch eine Vielzahl von Tathandlungen über einen Zeitraum von mindestens sechs Monaten nachstellt,
4. bei einer Tathandlung nach Absatz 1 Nummer 5 ein Computerprogramm einsetzt, dessen Zweck das digitale Ausspähen anderer Personen ist,
5. eine durch eine Tathandlung nach Absatz 1 Nummer 5 erlangte Abbildung bei einer Tathandlung nach Absatz 1 Nummer 6 verwendet,
6. einen durch eine Tathandlung nach Absatz 1 Nummer 5 erlangten Inhalt (§ 11 Absatz 3) bei einer Tathandlung nach Absatz 1 Nummer 7 verwendet oder
7. über einundzwanzig Jahre ist und das Opfer unter sechzehn Jahre ist.

144) **§ 238 Nachstellung (3)** Verursacht der Täter durch die Tat den Tod des Opfers, eines Angehörigen des Opfers oder einer anderen dem Opfer nahestehenden Person,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 107a StGB (Beharrliche Verfolgung)[146]
(1) 다른 사람을 위법하고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720일 이하 벌금에 처한다.
(2) 다른 사람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자란 그 사람의 생활영위를 받아들일 수 없게 침해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 그 사람의 주변에 공간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2.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그밖의 연락수단을 이용하여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그 사람과 접촉하는 행위
3.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는 행위
4.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가 그 사람과 접촉하게 만드는 행위
5.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초인격적 생활영역에 관한 사실 또는 사진을 공개하는 행위
(3) 제1항의 **범행이 1년을 넘었거나** 그 범행으로 인해 **제23항의 피해자가 자살 또는 자살 시도를 하게 된 경우** 3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오스트리아 형법에서 오스트리아 형법 제107조a 제3항에서도 스토킹범죄로 피해자 등이 자살하거나 자살 시도를 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또한 범행이 1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스토킹행위는 장기가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기본구성요건만 적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자유형에 그치고 있어 다시 범행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므로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145) 신상현(2022),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근 개정된 독일 및 오스트리아 형법 규정에 대한 검토에 대하여", 저스티스 통권 188호, p.185-186.

146) Jusline(https://www.jusline.at/gesetz/stgb/paragraf/107a, 2023.9.10. 최종검색).
§ 107a StGB Beharrliche Verfolgung
(1) Wer eine Person widerrechtlich beharrlich verfolgt (Abs. 2), ist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is zu 720 Tagessätzen zu bestrafen.
(2) Beharrlich verfolgt eine Person, wer in einer Weise, die geeignet ist, sie in ihrer Lebensführung unzumutbar zu beeinträchtigen, eine längere Zeit hindurch fortgesetzt
1. ihre räumliche Nähe aufsucht,
2. im Wege einer Telekommunikation oder unter Verwendung eines sonstigen Kommunikationsmittels oder über Dritte Kontakt zu ihr herstellt,
3. unter Verwendung ihrer personenbezogenen Daten Waren oder Dienstleistungen für sie bestellt,
4. unter Verwendung ihrer personenbezogenen Daten Dritte veranlasst, mit ihr Kontakt aufzunehmen oder
5. Tatsachen oder Bildaufnahmen des höchstpersönlichen Lebensbereiches dieser Person ohne deren Zustimmung veröffentlicht.
(3) Übersteigt der Tatzeitraum nach Abs. 1 ein Jahr oder hat die Tat den Selbstmord oder einen Selbstmordversuch der im Sinn des Abs. 2 verfolgten Person zur Folge, so ist der Täter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zu bestrafen.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147]

3) 미국의 가중처벌 규정

미국은 가정폭력 처벌과 스토킹 처벌을 같은 위치에 놓고 평가하고 있다. 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차별화되어 있는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어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전」 제18편 제1부 제110A장 제2262B조에서는 스토킹 처벌을 함에 있어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최대징역형을 제22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징역형보다 5년 더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제2261조(b)(5)항의 적용을 받는 자, 위반행위 발생시점에 행위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피해자가 그 위반행위가 발생할 당시에 행위자보다 15세 이상 17세 이하이거나 3세 이하인 경우는 5년 더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2261(Interstate domestic violence) (b) (Penalties)[148]
본조 또는 제2261조A를 위반한 자는 다음에 따라 처벌된다.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종신형
(2) 피해자에게 영국적인 손상이나 생명의 위협을 주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20년 이하
(3)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가해자가 범행 중 위험한 흉기를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
(4) (범죄가 미국의 해상 또는 영토에서 이루어졌는지 연방교도소에서 이루어졌는지와 무관하게) 제109A장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대로
(5) 기타 다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형
(6) 미국법전 제18편 제2266조에 명시된 민형사상 제재, 금지명령, 비접촉명령 기타 명령을 위반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261A(Stalking) (2)[149]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협박하려는 의도로 사람 등을 가지고, 우편,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상거래 전자통신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해우를 한 경우 제2261조(b)에 규정된 대로 처벌한다.

§ 2261B(Enhanced penalty for stalkers of children)[150]
(a) 일반-(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261조에 따른 범죄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해당 범죄의 최대징역형은 제2261조에 규정된 징역형의 최대형보다 5년 더 적용된다.
(b) 제한- 제2261조A를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a)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제2261조(b)(5)항에 따른 적응을 받는 자
(2) (A)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18세 미만자 또는
(B) 피해자가 범행 당시 행위자보다 15세 이상 17세 이하이거나 3세 이하인 경우

147) 신상현(2022), 앞의 논문, p.189

다. 가중처벌에 대한 국내 논의

현행법에서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행위가 중대범죄로 연결된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 살해한 경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를 폭행·상해·체포·감금하거나 피해자에게 협박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하자는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7496호)도 상정된 바 있다.[151]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8139호)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사람"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유형 외에는 스토킹범죄의 가중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

148) 18 U.S.Code. §2261(Interstate domestic violence).

149) **18 U.S.Code. §2261A(Stalking).**
(2) with the intent to kill, injure, harass, intimidate, or place under surveillance with intent to kill, injure, harass, or intimidate another person, uses the mail, any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system of interstate commerce, or any other facility of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to engage in a course of conduct that—
(A) places that person in reasonable fear of the death of or serious bodily injury to a person, a pet, a service animal, an emotional support animal, or a horse described in clause (i), (ii), (iii), or (iv) of paragraph (1)(A); or
(B) causes, attempts to cause, or would be reasonably expected to cause substantial emotional distress to a person described in clause (i), (ii), or (iii) of paragraph (1)(A),
shall be punished as provided in section 2261(b) or section 2261B, as the case may be.

150) **18 U.S.Code. § 2261B(Enhanced penalty for stalkers of children)**
(a) In General.—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b), if the victim of an offense under section 2261A is under the age of 18 years, the maximum imprisonment for the offense is 5 years greater than the maximum term of imprisonment otherwise provided for that offense in section 2261.
(b) Limitation.—Subsection (a) shall not apply to a person who violates section 2261A if—
(1) the person is subject to a sentence under section 2261(b)(5); and
(2)
(A) the person is under the age of 18 at the time the offense occurred; or
(B) the victim of the offense is not less than 15 nor more than 17 years of age and not more than 3 years younger than the person who committed the offense at the time the offense occurred.

15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소병철 의원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G2Q0C9C2T2K1X7M2C4J5L5J6P2F0, 2023.9.20. 최종검색).

독일 등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토킹 행위가 이후 중한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스토킹 범죄를 기본으로 해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장기간 지속하는 행위,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토킹을 한 경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3. 반의사불벌죄 삭제에 따른 보완 필요성

가. 반의사불벌죄의 의미

소추조건은 형사재판을 개시하거나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친고죄에서의 고소 또는 고발,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을 원치 않은 의사표시 등이 대표적이다. 친고죄의 고소·고발은 존재가 필요한 적극적 조건이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는 부존재가 필요한 소극적 조건이라고 한다.[152] 친고죄란 범죄사실의 공개 및 국가의 개입이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겨두기 위해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국가형벌권의 발동조건으로 만들어 둔 범죄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당사자 간의 갈등을 일차적으로 사적 해결에 맡겨두고 있는 범죄를 말한다.[153][154]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폭행죄, 협박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 과실치상죄(제266조)가 대표적이다. 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범죄사실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제기조차 할 수 없는 반면에,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제기는 할 수 있으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경우 국가형벌권 개입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55]

---

152) 오영근(2018), 형법총론[제4판], 박영사, p.67.
153) 김성돈(2020), 형법총론[제6판], SKKUP, p.133-134.
154)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구분 기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윤동호(2013),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입법기준 연구", 법학논총 제37권 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p.195 이하 참조.
155) 김성돈(2020), 형법총론[제6판], SKKUP, p.129.

「스토킹처벌법」 제정 당시 친고죄로 할지 여부 등이 논의되다가,[156] 결국 반의사불벌죄로 결정되었다.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로 한 것은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남녀 관계에서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157]라고도 평가되고 있다. 소송조건으로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한 것은 “반의사불벌죄는 상대적으로 덜 경미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데도 친고죄로 하는 경우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감이나 후환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하여 법이 그 기능을 다하기 어려울 것에 대비하기 위함”[158]이라고 보기도 한다. 판례에서도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가 소추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것이나,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의 결함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당사자 사이의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존중하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구분한다.”고 보고 있다.[159]

「스토킹처벌법」을 최초 발의한 15대 국회에서부터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할지 친고죄로 할지에 대한 끝없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제정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반의사불벌죄의 존치에 대한 비판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처리되는 것은 스토킹범죄가 가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첫째, 스토킹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이 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더욱더 합의를 종용할 수 있고, 관계에 기반하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는 이러한 합의요

---

156) 「스토킹처벌법」 제정당시 반의사불벌죄로 할지 친고죄로 할지에 관한 자세한 논의내용은 한민경(2022), “반의사불벌죄와 공소기각: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결과”, 한국경찰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경찰학회, p.320~324.

157) 이현정(20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4호, 한국경찰법학회, p.270.

158) 이승준(2023),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발제 토론문, 2023년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 자료집, p.70.

159) 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 1689 판결.

구를 피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합의를 위해 가해자의 위협 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가능하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처벌법」 위반 판결문 16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소 기각된 사건은 58건(38%)로 나타났고,[160] 이는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범죄가 2022년 2만여 건에 가까운 것을 보면 1%에 불과한 사건이 법원으로 오고 있고, 이에 대한 공소 기각율은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1%의 사건마저도 거의 처벌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소 기각된 사건의 20.7%에 긴급응급조치가, 43,1%에 잠정조치가 취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공소기각 사실로 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하기 접촉하여 합의를 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161]고 평가되기도 한다.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해 스토킹 가해자의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게 되므로, 가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보복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둘째, 스토킹범죄 신고에 따른 경찰의 수사와 보호·지원 절차들이 중단되게 된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권 없음에 해당하여 수사 중이던 사건은 불송치되고, 송치되었던 사건은 불기소되거나 공소취소가 되어버린다.[162]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신청이 있는 단계에서 경찰이 스토킹범죄의 재발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해 모니터링하고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로 인해 안전조치를 계속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므로 피해자보호에 충실할 수가 없게 된다.

셋째, 실제로 법원의 판단은 처벌불원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사과와 피해회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동기·수단·결과,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평가한 사례도 있다.[163] 따라서 법원 역시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

160) 한민경(2022), "반의사불벌죄와 공소기각: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결과", 한국경찰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경찰학회, p.333.

161) 한민경(2022), "반의사불벌죄와 공소기각: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결과", 한국경찰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경찰학회, p.333.

162) 한민경(2022), "반의사불벌죄와 공소기각: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결과", 한국경찰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경찰학회, p.332.

16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3.23. 선고, 2021고단947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2.2.11. 선고, 2021고단464, 2021고단 471(병합)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5.31. 선고, 2022고단830 판결(한민경(2022), "반의사불벌죄와 공소기각: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결과", 한국경찰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경찰학회, p.334에서 판례분석결과 확인).

따른 처벌불원의사가 피해회복에 충분치 않거나 진정한 의미의 합의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피해자의 의사를 묻는 방법은 반드시 공소제기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아도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의사가 반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따른 문제

반의사불벌죄가 존재하는 한 아는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협박이나 합의 요구 등을 통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수사실무상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는 경우 사건이 접수되더라도 사건처리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도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를 악용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사례도 발견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경찰관이 보호 및 지원업무에서 어려운 스토킹 행위자의 유형으로 전 연인의 스토킹(35.2%)과 전 배우자의 스토킹(20.9%)으로 분석되고 있어서,[164] 관계기반에 의한 스토킹 처리에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다. 관계에 기반하고 있는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보다는 더 이상의 접근을 막는 등 상황을 개선하는 데 더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스토킹 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장경찰관이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이유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24.2%), 가해자에 대한 연민(14.8%), 가해자와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8.2%)는 응답도 적지 않았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165]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스토킹 행위가 중단되더라도 다른 대상을 찾아 스토킹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수사를 지속할 필요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2023년 개정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독일도 스토킹범죄가 경미한 범죄로 취급됨에 따라 경찰에 의해 고소기간 통지가

164) 조제성 외(2022), 「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 및 경찰의 피해자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p.170.

165) 조제성 외(2022), 「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 및 경찰의 피해자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p.174-175.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가 스토킹 고소를 하지 못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등 문제를 이유로 2021년 형법 개정과정에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였다.[166]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의 규정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이 절차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상 피해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스토킹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층간소음, 불법채권 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스토킹으로 처리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라.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인한 대안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절차진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스토킹 사건처리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소송절차에서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1) 형사공탁 활용방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형사공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형사공탁이 합의와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으나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자신의 반성과 피해전보에 대한 의미로 공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67] 다만 공탁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해자의 일방적 공탁이 남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권(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166) Deutscher Bundestag(2021), Bericht des Ausschusses für Recht und Verbraucherschutz (6. Ausschuss), Drucksache 19/31111, S.6.(https://dserver.bundestag.de/btd/19/311/1931111.pdf, 2023.9.20. 최종검색).

167) 이승준(20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784)을 기초로", 형사정책연구 제34권 제2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p.42.

2) 형사소송규칙상 의견서 제출을 적극 활용

현행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등에게 의견진술을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도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과정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인해 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제134조의10(피해자등의 의견진술)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법 제294조의2제1항에 정한 피해자등(이하 이 조 및 제134조의11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법 제294조의2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과 그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등에게 질문할 수 있고, 설명을 촉구할 수 있다.

④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3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해자등이 의견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⑥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등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1. 피해자등이나 피해자 변호사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사실의 인정에 관한 것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피해자등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1항의 경우 법 제163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84조의3을 준용한다.

제134조의11(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①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134조의10제1항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서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서면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다양한 분쟁이 스토킹으로 분류되지 않기 위한 방안

스토킹의 정의규정은 특정한 목적이나 당사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층간소음이나 채권관계 등 우리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스토킹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 적용에 있어서 관계를 고려한 예외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제6절 | 「스토킹처벌법」의 개선과제

1. 스토킹범죄 구성요건 규정의 정비방안

가. 보충적 구성요건 규정 신설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으로 온라인 스토킹에 관한 규제방식이 다양해졌다. 기존에 온라인 스토킹행위는 '도달'에 이르러야만 처벌이 가능하였으나,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도달이 아니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온라인스토킹 유형이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음에 따라, 개정법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 등을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와 '상대방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규제할 수 있게 되어 한걸음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시각각으로

발전하는 온·오프라인 스토킹 방식을 법에서 모두 바로 적용하여 규율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사이버상의 행위는 우리가 다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법으로 규율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제2조 스토킹 행위유형이 열거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재의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열거식 방식은 특정행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형태이긴 하나, 열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유형이 스토킹행위로 규율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해 3만여 건에 가까운 스토킹 신고가 있지만, 이중 스토킹범죄로 규율되는 사례는 몇백 건에 불과한 것은 이러한 행위유형 규율방식에 따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스토킹 행위유형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서는 스토킹행위유형 규정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에 다 열거하지 못하는 행위유형을 포섭할 수 있도록 보충적 구성요건 신설이 필요하다. 이미 독일은 까다로운 구성요건 조건으로 인해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 형법 개정을 통해 "이에 준하는 행위" 유형을 추가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와 연동된 피해자보호조치를 신속하게 하는데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스토킹 행위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구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범죄유형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과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스토킹처벌법」에서 모두 규율하지 못하는 행위유형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보충적 구성요건이 신설되어야 한다.

[표 4-6-1] 보충적 구성요건 신설(안)

현행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제2조 (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사. (현행과 동일)	제2조 (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사. (현행과 동일) : o. 가~사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나. 스토킹 유형의 보완 방안

다양화되는 스토킹유형을 「스토킹처벌법」에서 모두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고, 규율 가능한 영역은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다.

기존 스토킹 행위유형 분석연구들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스토킹 유형으로는 몇 가지로 대표될 수 있다. 첫째, 물건을 상대방에게 직접 도달하는 행위는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서비스를 신청하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을 하는 유형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 명의의 보험을 들거나 예금상품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행위도 있다. 둘째,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변인(직장동료, 친구 등)을 대상으로 감시 또는 추적하거나 감시 또는 추적당하게 느끼도록 하는 행위도 있다. 셋째, 피해자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변경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도 발견되고 있다. 넷째, 피해자의 반려동물이나 장애인 보조견 등에 대하여 하는 동물학대행위도 스토킹행위라고 할 수 있다.

독일 형법에서도 스토킹의 행위 유형으로 “해당인의 물리적 주변을 떠도는 행위, 상대방을 대신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주문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제238조 제1항). 일본이 경우에도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면회, 교제 기타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 등 우리의 규정보다 많은 유형을 열거하여 규율하고 있다. 미국 「연방스토킹방지법」 제2261A조 제1호에 따라 살해, 상해, 괴롭힘 등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 본인·직계가족·배우자·반려동물 등의 사망이나 중상에 대한 공포를 주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 본인·직계가족·배우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된다.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8139호)에서도 “상대방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도 스토킹의 유형에 포함하는 안도 있었다. 그러므로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유형에 대하여는 「스토킹처벌법」에 포함하는 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롭게 도입될 스토킹 유형으로 “상대방등을 대신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행위”,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감시 또는 추적하거나 감시 또는 추적을 당하게 느끼도록 하는 행위”, “상대방등의 반려동물이나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하는 동물학대 행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감시 또는 추적하거나 감시 또는 추적을 당하게 느끼도록 하는 행위"의 경우 상대방등의 개념을 피해자, 가족, 동거인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할 경우 가의 유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등의 개념을 '상대방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제외하도록 한다.

[표 4-6-2] 새로운 스토킹유형 신설(안)

현행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제2조 (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다. (현행)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제2조 (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다. (현행과 동일)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등에 대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사. (현행)	마~사. (현행과 동일)
〈신설〉	**아. 상대방등의 반려동물이나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하는 동물학대 행위**

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개정방안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은 스토킹으로 금지하는 행위들이 연인관계의 진행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기에 이에 대한 구별을 위한 것이다.[168] 그러나 '반하여'의 의미는 상대방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의성을 요구하고 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중요한데,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관계에 기반한 사례가 많으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규정을 삭제하자는 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2118644호)도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규정을 삭제할 경우 상대의 의사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되어

168) 이현정(2021), 앞의 논문, p.273.

스토킹인지 여부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4-6-3] 상대방의 의사관련 규정 개정(안)

현행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제2조 (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라. '상대방등'의 개념 확대방안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등'이라는 표현을 써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동거인이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스토킹 대상을 '상대방'과 '상대방등'이라는 개념에만 한정할 경우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한 행위만을 스토킹 행위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보호조치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 한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등'의 개념을 확대하여 "상대방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방등의 개념을 확대하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이후 응급조치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되어 피해자와 그의 지인까지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표 4-6-4] 상대방등의 개념 확대 개정(안)

현행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제2조 (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 등'이라고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제2조 (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상대방 등'이라고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마. '지속성' 개념의 삭제방안

스토킹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 스토킹 행위의 특성상 지속성과 반복성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최근 판례의 경향을 보면 지속성의 요소를 크게 판단하지 않고, 반복성에 더 초점을 두고 스토킹 행위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도 지속성이 있으면 반복성을 갖지만 반대로 반복성은 지속성을 항상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하여 반복성을 보다 큰 개념으로 보고,[169] 2021년 형법 제238조 제1항을 개정하면서 지속성 부분을 삭제하고 반복하여(wiederholt) 부분만 남겨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스토킹 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도구로 지속성보다는 반복성이라는 하나의 요소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다만, 스토킹범죄에서 지속성의 부분에 대한 판단을 무시할 수 없다. 지속성의 판단 부분은 가중처벌 규정에 내용을 담도록 하고, 양형기준에서 그 무게를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6-5] 스토킹범죄 개념의 개정(안)

현행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제2조 (정의)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정의) 2. "스토킹범죄"란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스토킹 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

가. 응급조치에서 '진행 중인 행위'의 삭제방안 검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당시에는 스토킹행위가 진행 중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 중인 행위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일응 타당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진행 중인 행위 부분을 삭제하게 될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할 요건 자체가 상실되게

169) 고명수(2022),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 구성요건 연구: 독일형법 제238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제 제696호, 법제처, p.25.

된다. 이런 경우 무엇을 근거로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진행 중인 행위'를 무조건 삭제하기 보다는 경찰이 실제로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위해 조치를 위할 수 있는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가령 범죄수사를 한다고 했지만 범죄수사를 위해 경찰이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인지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나. 긴급응급조치의 실효적 대응방안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을 현재의 "상대방등"에서 "상대방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조치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제1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대방등"의 개념을 "상대방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변경할 경우 긴급응급조치 조문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취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 질 우려"라는 개념 역시 "반복적으로"로 변경되어야 한다.

제2호에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만을 기술하고 있으나, 실제 스토킹행위의 적지 않은 사례가 우편송부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전기통신뿐만 아니라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접근금지의 유형은 100미터 이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을 예정해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유형의 다수가 온라인 스토킹행위이다. 따라서 온라인스토킹 행위에 대한 접근금지는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와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표 4-6-6] 긴급응급조치 규정의 개정(안)

현행「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현행)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상대방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상대방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② (현행)

다. 잠정조치 유형의 실효성 확보방안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 실시되는 조치로 경찰-검찰-법원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최근 법개정을 통해 잠정조치에 관한 당사자 통지제도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변경절차와 잠정조치의 유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이 필요하다.

1) 잠정조치 변경절차의 개선방안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종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 검사, 피해자, 스토킹 행위자 등에게 통지 또는 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었다. 그러나 잠정조치의 신청자인 경찰은 통지대상에서 제외되어, 이후 경찰이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행위자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잠정조치의 변경시 즉각적인 처리와 대응을 위해서 통지대상에 경찰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표 4-6-7] 잠정조치의 변경절차 개정(안)

현행「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③ (현행규정)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1. 검사,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 취소,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스토킹행위자: 취소, 연장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③ (현행규정)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경찰,** 검사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1. **경찰,** 검사,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 취소,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스토킹행위자: 취소, 연장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2) 잠정조치 유형의 다양화방안

스토킹범죄의 재발을 위해 현행「스토킹처벌법」에서는 서면경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행위자에게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스토킹행위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행위자에게 하는 조치도 다양한 형태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스토킹의 많은 유형을 상정하고 잠정조치 유형에 담을 수는 없으나, 현행법은 행위자가 직접 접근하는 것에 대응하여 조치를 둔 것에 불과하므로 온라인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 접근금지를 어떻게 할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라는 강력한 잠정조치가 들어오긴 하였으나 이 역시 오프라인 접근을 막는 장치일 뿐 온라인 접근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우편을 통한 접근금지도 긴급응급조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스토킹범죄자 특성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스토킹 행위자의 경우 만성적 음주 남용 경험률이 52.7%에 달하고, 과거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경우도 4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2-2) 참조). 이러한 대상들에게 구치소 또는 유치장 유치의 방법만으로는 제재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중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 또는 기타 요양소 위탁",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을 잠정조치의 한 유형으로 담는 것이 필요하다.

[표 4-6-8] 잠정조치의 유형 개정(안)

현행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4.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병원 또는 기타 요양소 위탁
	7.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3.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가. 피해자 개념의 확대 방안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3호 피해자의 개념에 따르면 피해자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에 한정되고, 피해자등의 개념에서도 "피해자 등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으로 제한되고 있기에 피해자의 개념이 매우 축소되어 해석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제3자를 이용하여 피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은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상대방에도 가족, 동거인 외에 직장동료, 친구 등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스토킹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하여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보호조치를 하는 단계에서도 직접 피해자로 한정할 경우 피해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워진다.

외국의 입법례 경향을 보면 우리와 같이 직접적인 피해자로 한정한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다. 미국의 「연방법전」 제2261A조에서는 피해자의 개념에 "본인, 직계가족,

배우자, 또는 친밀한 파트너, 대상자의 애완동물, 서비스동물, 정서지원동물 또는 말"까지 포함하고 있고, 독일 형법 제238조에서도 피해자의 개념을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또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스토킹 피해의 특성과 피해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스토킹처벌법」의 피해자 개념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미 여러 차례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개념 확대 안이 제시된 만큼 피해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 이에 「스토킹처벌법」에서의 피해자 개념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확대하여 "피해의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직장동료 등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6-9] 피해자 개념규정 개정(안)

현행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제2조 (정의)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정의)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의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도입방안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가 있으나, 조치의 기간이 길지 않아서 판결이 날 때까지 지속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이하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라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긴급이주권 등 다양한 보호방안 등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직접 요청하여 보호를 받는 제도라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의 실질화를 기할 수 있다. 이미 정부의 개정안에서도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내용이 담겨 있었고 권인숙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이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과 관련한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유형도 담겨야 할 것이지만, 보호기간도 스토킹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최근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보호명령 기간을 1년, 최장 3년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스토킹피해자 보호의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면 1년 이내의 스토킹 피해와 보다 장기의 피해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행 가정폭력처벌법과 동일하게 피해자보호명령기간을 설정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 다만 피해자보호명령의 연장단위를 「가정폭력처벌법」은 2개월 단위로 하고 있으나, 「스토킹처벌법」은 최근 개정에서 잠정조치 연장기간을 3개월 단위로 변경한바 이와 동일하게 연장기간을 3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이 게시되기 전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예측되는바, 이 기간동안 판사가 할 수 있는 임시보호명령에 관한 규정도 함께 신설하도록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담길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6-10]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도입(안)

현행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신설〉	제OO조(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스토킹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제OO조(피해자보호명령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상대방 등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상대방 등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금지 4. 상대방등에 대한 우편을 통한 접근금지 5.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병원 또는 기타 요양소 위탁 제OO조(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디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이나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OO조(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피해자보호명령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을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다. 경찰의 피해자 신변안전조치의 실질화

최근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해 신변안전조치 규정(제17조의2)이 신설되면서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실무상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신변보호는 '피해자'만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처럼 피해자와 그와 밀접한 관계인 자가 스토킹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응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비롯하여 경찰실무 관련 규정에서 피해자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신변안전조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라.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온라인스토킹을 비롯하여 스토킹 피해의 방식이 온·오프라인을 가리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2차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제23조에 범죄신고자법 제7조부터 제13조를 준용하는 방식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보호를 충실히 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과 같이 준용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도 좋지만,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피해자 보호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준용방식보다는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인적사항의 공개 금지,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등의 규정을 직접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6-11] 피해자 정보보호 관련규정 개정(안)

현행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신설〉	제OO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신고와 관련하여 조사하거나 그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 신고자 등이나 그와 밀접하게 관계있는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스토킹 신고자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범죄신고자법 제7조에 따른다. **제OO조 (인적사항의 공개 금지)** 누구든지 이 법과 「범죄신고자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스토킹 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스토킹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OO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① 법원은 다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검사는 스토킹신고자등이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스토킹 신고자등이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검사나 사법경찰로간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2. 변호인의 피고인 변호에 필요한 경우 3.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지급에 관한 심의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4. 스토킹범죄 처벌규정 개정방안

가. 가중 처벌규정 마련방안

현행 「스토킹처벌법」에는 단순히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제18조 제1항) 외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나의 유형만 담겨 있다.

스토킹범죄의 태양에서 나타나는 오랜 기간 지속되거나 미성년자 등에게 스토킹이 이루어지는 경우, 스토킹행위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앞서 개정대안에서 스토킹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속성을 제외하기로 하였기에 지속성 판단 부분을 가중처벌규정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에서는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 또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의 위험에 빠뜨린 경우, 6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 스토킹을 한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행위자가 21세 이상이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등을 가중처벌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도 범행이 1년 이상을 지속되었거나 피해자가 자살 또는 자살시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스토킹행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유형에 대하여 가중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 검토하였을 때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가중처벌 요건으로 미성년자, 심각한 피해 유발, 범죄의 지속 부분이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표 4-6-12] 스토킹범죄 처벌 규정 개정(안)

현행「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흉기 또는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2. 스토킹행위를 1년 이상 지속한 사람** **3.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사람** **4. 스토킹행위로 인해 피해자등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사람**

나.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인한 대안 모색 방안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해졌다. 제3부 경찰단계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현장 경찰들은「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 중 반의사불벌죄 삭제를 가장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47.8%)하여 반의사불벌죄 삭제가 스토킹범죄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3-2-9] 참조).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피해자는 합의를 종용받지 않게 되어 2차 피해를 입지 않게 되었으나, 원치 않는 절차 진행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할 여지도 남아있다. 반의사불벌

죄가 폐지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가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반영될 수 있는 창구는 필요하다. 이에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견진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에서 제안된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방안과 피해자 신변안전조치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처벌불원의사는 합의시도를 위해 많이 활용되었으므로 이를 대체할 합의시도 방법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형사공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공탁법 개정으로 신설된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자와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 합의시도를 할 수 있는 장치이다. 그러나 공탁제도의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공탁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권(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제 5 장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 강화 방안

연구요약 및 정책 제언

윤정숙 · 이승현 · 한민경

제5장

연구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 연구결과 요약

1. 스토킹 범죄의 특성

가. 스토킹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수사재판기록조사를 통해 파악한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스토킹 가해자의 대다수는 남자였으며, 40~50대의 중장년층이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45.63세로 나타난다. 이들의 결혼 상태를 보면 평균 나이가 45.63세로 중장년층이 다수임에도 미혼이 절반을 차지하고, 약 42%가 별거, 이혼, 혹은 사별로 사건(혹은 수사 및 재판) 당시 결혼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65.2%)가 혼자서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 66.1%이지만, 직업은 무직과 일용직을 합친 비율이 76.8%이다. 대다수는 전과를 가지고 있고 평균 전과 횟수는 11.28회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높은 범죄경력이나 잦은 수형생활 등으로 정상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전체 표본의 52.7%가 만성적 음주 남용을 보고하였으며, 41.1%는 과거 정신질환 이력을 보고하는 등, 약물과 정신질환의 문제도 심각하다.

나. 스토킹 범죄사건의 특성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스토킹처벌법 상에 나타난 다섯 가지 행위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유형은 '지켜봄' 행위와 '메세지 도달' 행위이며 다음은 '접근 행위'이다. 법률상 정의에 나열되지 않았지만 주거침입이나,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악의적 거짓말을 퍼뜨리는 행위 등 다양한 행위들이 포착되었다. 스토킹의 지속기간은 평균 8.63개월로 나타나며, 1년 넘게 지속한 스토킹은 15.2%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중 67%가 스토킹 사건에서 폭력범죄가 동반되었는데, 신체적 폭행이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었고, 그 외에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카메라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 등의 성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다양하였다. 전체 사건 중 30건(26.8%)을 제외한 82건(73.2%)이 한 가지 이상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부과 받았으며,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 응급조치 순이었다. 보호조치를 부과 받은 경우 위반하지 않은 가해자는 22.3%에 불과했으며 잠정조치 위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량은 전체 가해자의 67.9%가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의 형량을 선고받았으며, 2건을 제외한 모두 사건에 대해 징역형과 더불어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40시간 혹은 80시간)이 부과되었다.

다.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대다수의 사건이 피해자가 1명이었고 여성이었다. 피해자의 연령대로는 40대와 50대의 중장년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43.33세로 가해자 평균 연령(45.63세)과 비슷하였다.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사건의 61.6%가 '과거의 배우자 또는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며, 17%는 '잘 아는 사람(친구, 직장내 지인)', 11.6%는 '일면식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잘 아는 사이'는 어느 정도의 친밀관계가 형성된 관계로 주로 가게/노래방/술집/식당 등의 운영자와 손님,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주를 이루었다. '일면식 있는 사이'로는 영업장의 주인과 손님 관계가 많으며 친밀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이다. 유명인(예: 정치인, 연예인)을 상대로 한 스토킹은 2.7%(3건)를 차지하고 있다.

라. 스토킹의 세부 유형별 특성

Mullen의 스토킹 유형 분류법을 활용하여 스토커를 4개의 세부유형으로 분석해 본 결과, 전체 표본 중 67.9%가 '거절당한 자'에 해당되었으며, 다음이 '무능한 구애자(17%)', '친밀관계 추구자(8%)', '분개한 자(7.1%)'로 나타났다. 가해자 유형별로 연령을 보면 '거절당한 자'유형이 가장 낮은 평균 연령(43.18세)을 보이며, '무능한 구애자' 유형이 가장 높은 평균 연령(51.68세)을 보인다. 전과이력은 평균적으로 '친밀관계 추구형'이 가장 전과횟수가 많으며(16.09회) '무능한 구애자'형은 가장 낮은 수치(7.79회)를 보인다. '거절당한 자'의 교제 시 폭력 여부를 확인한 결과, 확인불가를 제외하고 72.4%가 교제 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남용 이력은 '거절당한 자'나 '친밀관계 추구형', '분개한 자'에 비해, '무능한 구애자'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신병력 이력은 '무능한 구애자'와 '분개한 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각각 68.4%, 62.5%), '거절당한 자'와 '친밀관계 추구자'는 다소 낮게 나타난다(각각 32.9%, 33.3%). 스토킹 사건의 지속기간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친밀관계 추구자'가 가장 긴 평균 지속기간(19.23개월)을 보이며, 이는 '거절당한 자'(7.13개월)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병적 집착을 주요 특성으로 하는 '친밀관계 추구자'가 스토킹 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나는 것은 집착과 스토킹 기간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각 유형별로 폭력의 동반 여부를 보면 '거절당한 자' 유형은 80.3%가 스토킹 범행 시 폭력을 사용,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친밀관계 추구자'는 약 절반가량이, '무능한 구애자' 유형은 약 1/3가량이, '분개한 자' 유형은 1/4가량이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거절당한 자' 유형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비율이 실제로도 가장 높음이 확인되었다.

마.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 평가

수사재판기록 상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토대로 SAM을 사용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본 결과, 전체 사건의 69.6%가 스토킹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64.3%는 스토킹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하여, 사례관리 면에서 지속적 위험관리가 필요한 사건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이 사건들이 현장의 실무자에 의해

평정되었을 경우 스토킹의 지속성과 심각성의 높은 평정결과를 고려할 때 상당수가 집중적 위험관리 사건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 가해자 요인으로는 '분노', '반사회적 생활방식' '뉘우치지 않음' 등이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평정되었으며, 피해자 요인으로는 '불안정한 정서', '안전하지 않은 생활환경', '연인관계 문제' '가해자에 대한 일관성없는 행동'이 취약성 요인으로 높게 평정되었다. 가해자 측면에서는 평소 폭력 행위를 자주하거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하고 법이나 권위에 반항하는 반사회적 인지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스토킹 사건 전후로 분노감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과, 스토킹 행위에 대한 결과 혹은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성향이 사건을 범죄에 이르게 하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해자 측면에서는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인해 불안정한 정서와 부정적 감정이 높아 대처 능력이 떨어지며, 가해자에게 동선이 노출된 생활환경에 살고 있고 과거에도 폭력적인 배우자나 연인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가해자의 연락에 종종 답을 하거나 먼저 연락을 취하는 등 비일관적 행동을 보이는 것이 사건을 범죄에 이르게 하는 주요 취약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위험성 평가 점수의 합산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절당한 자'의 피해자 취약요인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전체 총점은 '거절당한 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거절당한 자'유형의 위험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즉 가장 위험한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피해자 취약성 요인, 즉 피해자의 비일관적 태도나 행동, 혹은 생활환경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 혹은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친밀관계에 있어 스토킹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크고 피해자의 대처 능력이 떨어져 있는 점 등이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AM의 스토킹 가해자 특성 중, 스토킹 사건 특성과 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집착'과 '뉘우치지 않음', '약물문제', '고용 및 경제문제'로 나타났으며 '집착'은 '스토킹의 지속'과 가장 강한 관련이 있고, '뉘우치지 않음'과 '약물문제'는 '감시 위반'과 관련이 있으며, '고용 및 경제 문제' 역시 '스토킹의 지속'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AM의 피해자 특성 중 스토킹 사건 특성과 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가해자에 대한 일관성 없는 행동', '가해자에 대한 일관성 없는 태도', 그리고 '안전하

지 않은 생활환경'이었다. '가해자에 대한 일관성 없는 행동과 태도'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함'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안전하지 않은 생활환경'은 '피해자 협박'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스토킹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스토킹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표본의 PAI 검사 평균 점수나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사례수의 비율 등으로 해석해 보면, 임상적 문제에서 가장 큰 수준의 문제를 보이는 영역은 우울감, 망상, 경계선적 특징, 반사회적 특징, 알코올 문제, 공격성, 자살관념, 스트레스, 비지지 영역으로 요약된다. 즉, 스토킹 범죄자는 우울의 증상과 현상, 특히 정서적 우울이 일반 성인 평균에 비해 다소 상승해 있고, 망상장애나 망상적 성격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대상자들이 상당수 있으며, 경계선적, 반사회적 특징의 성격장애 문제가 일반 성인 표본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문제시되는 음주 습벽과 알코올의 의존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살에 대한 관념이나 스트레스 경험정도가 높으면서 타인에 대해 적대감과 분노 등 공격적 태도 혹은 행동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 특히, 치료고려척도 중 스트레스 경험정도가 타 척도에 비해서 높고 일반 성인 표본집단의 평균수치보다 많이 상승한 것으로 미루어, 일상생활에서 현재 또는 최근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가용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은 일반 성인 집단에 비해 낮은 편으로 해석되어 이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방식 개선에 대한 심리치료나 교육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전체 임상척도에서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 대체로 65T점수 이상의 임상적 개입이 시급한 대상자는 4명 중 1명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심리적 개입의 필요성을 조명하는 결과이다.

스토킹 범죄자를 세부 유형으로 나눠 해석해보면, '거절당한 자' 유형(이하 거절형)은 지배성과 온정성이 성인 표본집단의 평균에 근접한, 대체로 타인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정도의 대상자들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거절형이 아닌 스토킹 범죄자들(이하 '비거절형')은 대인관계에서 통제와 독립성을 유지하는 정도가 일반성인 보다 낮은 유형의 사람들로 정신병적 상황에 따라 집착, 망상, 후퇴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적 문제를 보면, 신경증이나 정신증의 경우는 거절형보다는 비거절형 스토킹

범죄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비거절형 집단의 경우 슬픔이나 무쾌감 등을 자주 느끼며, 일상적 활동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고, 신체기능과 활동의 정도, 성적 관심이 저하되어 이성에 대한 적극적 구애는 쉽지 않은 소심한 유형의 사람들이 상당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다고 느끼고 대인관계에서 모욕과 멸시를 당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불행을 타인의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대인적 상황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사회적 고립 유형의 사람들도 상당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거절형은 경계선적 특징이나 알코올문제, 약물문제, 공격성 등에서 더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즉, 거절형이 B군 성격장애적 특징을 좀 더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과 대인관계에서의 공격성이나 분노표현, 적대감을 언어적, 신체적으로 표현하려는 성향이 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스토킹 범죄에서 폭력적 사고 혹은 표현은 범죄피해의 심각도와 깊은 연관이 있고, 폭력 범죄의 동반은 스토킹 행위로 인한 가장 부정적, 치명적 결과인 만큼, B군 성격장애적 특징에 대한 치료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 밖에 치료고려부분에서 자실관념이나 스트레스정도, 가용한 지지 환경에 대한 인지 등은 비거절형 스토킹 범죄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보였다.

사. 스토킹 범죄자의 인생사 발달 및 교육에 대한 니즈

심층면담 결과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스토킹 가해자의 특성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니즈를 종합 분석해보면 먼저, 스토킹 범죄자의 어린 시절 및 가정 환경은 아동기 양육자와의 불안정한 애착 형성, 가정폭력에의 노출로 가정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오히려 역기능적 상태에서 자란 경우가 많았다. 가정 내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 대상자들은 청소년기의 가출과 비행으로 이어졌고, 또래집단과의 일탈적 생활 속에서 성인기에 원치 않는 임신이나 이른 결혼, 조직폭력의 경험, 유흥업이나 불법업의 종사 등 부적응적 생활방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스토킹 범죄자의 사회정서적(socio-affective) 기능을 보면, 충동적 성격과 분노조절의 어려움, 육체적 싸움과 폭력적 성향이 주요 문제로 보고된다. 또한 무능형 가해자들을 중심으로 내향적 성향이나 타인에 대한 의심, 정신과적 문제 등이 주요 문제로 지목되었다. 청소년기 건전한 이성관을 확립하지 못한 결과로 여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외도를

일삼거나 상대의 거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강압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스토킹 범죄의 진행과정에서 자주 등장한 주제는 갈등 상황의 반복적 등장과 이에 대한 폭력적 대처, 그리고 알코올이 매개되는 것이었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자들 스스로 본인이 지각하는 가장 큰 문제로 알코올과 분노조절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교육 프로그램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할 부분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이별요청에 대한 배신감, 과거 관계를 다시 곱씹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부당함, 원망감, 혹은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의심 등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감정을 더욱 배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형의 경우, 보복의 감정과 함께 미련의 감정이 범죄 진행 과정에서 많이 등장하였으며, 무능형의 경우 외로움과 성적 욕구, 그리고 상대방도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라는 비현실적(망상적) 사고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정시설내 심리치료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보아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에서 그들의 인생사나, 사건의 계기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스토킹법 위반으로 받는 처벌을 강조하기보다, 범죄의 계기를 고찰하고 개인별로 스토킹 행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유흥업소 여성과의 경험 등으로 왜곡된 이들의 여성관에 대한 개선 역시 필요하다. 가급적 교육은 수형 생활 초기에 시작하고 수형 생활 마무리 시점에 부스터 세션(booster session: 유지보수교육)을 제공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2. 경찰단계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개선방안

가. 지역경찰관의 피해자 지원 현황 및 문제점

2023년 7월 11일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경찰단계에서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관련 현황 및 쟁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초점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관들은 맡고 있는 역할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상 문제점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정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의 영향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먼저, 지역경찰관들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및 개정으로 경찰관이 신고 현장에서

취할 수 있게 된 조치가 있게 된 부분을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경찰관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체감하고 있던 가운데,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사건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들어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지역경찰관들의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여청수사관들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지역경찰관들의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점차 익숙해지고 있으나 신고 처리에 바쁜 현장에서 스토킹처벌법과 유사한 가정폭력처벌법과 혼동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역시 지역경찰관들에게 활용하기 익숙하거나 긴급응급조치 판단에 결정적으로 고려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지역경찰관들은 사법경찰관만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실제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한 경찰관의 성명과 긴급응급조치 통보서상 경찰관의 성명이 불일치하기도 하는 상황을 언급하였다. 지역경찰관의 언급과 같이, 대부분의 지역경찰관들이 사법경찰리에 해당하며 신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은 대부분 사법경찰리임을 고려할 때 사법경찰관만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경찰실무와 배치되는 면이 있다. 사법경찰관에 한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경찰관들에게 긴급응급조치는 마치 한층 중한 판단 책임이 따르는 조치로 오인될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나. 스토킹 전담경찰관의 피해자 지원 현황 및 문제점

한편, 스토킹전담경찰관이 느끼는 주된 업무 스트레스는 스토킹 피해자를 만나 지역경찰관과 여청수사관, 경찰과 가정폭력 상담소·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등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매개적 위치와 관련되어 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은 지역경찰관들이 가정폭력과 스토킹 관련 규정을 혼동하고,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와 같은 양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나 스토킹전담경찰관 개개인의 역할 및 노력만으로는 개선을 요구하기 쉽지 않은 면이 확인되었다. 또한, 스토킹전담경찰관에게는 수사 등 강제적인 권한이 없다 보니 스토

킹전담경찰관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또한 피해자의 동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스토킹전담경찰관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정한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된다. 이처럼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는 여전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할 수 없는 반면,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의 처벌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가해자 교정 상담이나 민간 신변경호 연계 등의 업무가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업무로 새롭게 추가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다. 여청수사관들의 피해자 지원 현황 및 문제점

여청수사관들에게는 스토킹처벌법상 유치는 구속이 결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상황에 '보험'과도 같이 구속과 함께 '세트'로 신청되는 관행이 발견된다. 그러나 실제 경찰 실무에서는 구속영장 신청뿐만 아니라 유치 신청 또한 기각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경험한다. 유치나 구속영장 신청에 비해 긴급응급조치의 경우에는 검찰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사후승인 단계를 거치게 되나 변경 또는 기각되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다. 이러한 맥락에서 긴급응급조치 결정에 대한 사후승인은 절차적 효율성 및 신속한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경찰이 직접 법원에 사후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여청수사관들은 스토킹처벌법 개정 중 가장 체감되는 내용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를 꼽았다. 동 규정 삭제는 스토킹행위자 및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 취지상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법이 한층 엄중해짐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스토킹 성립 여부를 좀 더 명확히 검토하여야 하므로 수사관들이 느끼는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여겼다. 이러한 가운데, 여청수사관들은 스토킹범죄로 송치하였던 연인들 간의 다툼이나 이별 사건에 대해 검사 단계에서 불기소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판결문에서도 이러한 유형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후 콜백 및 모니터링은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업무로 설정되어 있으나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의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담당 여청수사관의 몫이다. 여청수사관들은 모니터링, 그리고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

치로 대표되는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로 인해 수사 자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토로하였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전담 조사관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이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스토킹범죄만을 전담하는 수사관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실제로는 1급서 경찰서 기준 4교대로 근무하는 여청수사팀이 근무일에 접수되는 여성청소년 분야 범죄사건을 번갈아 맡고 있다. 전담 조사제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해당 범죄만을 담당하는 수사관을 별도 지정하고 있지는 않고 실종 전담팀 또한 명칭과는 달리 실종사건만을 전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여청수사관들은 스토킹범죄에 한해 전담 조사제를 실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소 회의적이었다. 스토킹범죄만을 전담하게 되면 전문화는 가능하겠지만, 예컨대 치안 수요가 크지 않고 근무인원도 적은 3급서 경찰서는 범죄유형별로 전담 수사관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라. 스토킹처벌법 개정내용에 대한 경찰관 인식

한편, 경찰관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 내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개정 내용 8가지를 제시하고 이들 개정사항을 어느 정도 체감하는지와 스토킹 보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각각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반의사불벌죄 삭제'는 8가지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 중 스토킹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가장 높은 정도로 체감하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의 절반가량(47.87%, 270명)이 '반의사불벌죄 삭제'를 매우 체감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여청수사관 중에는 '반의사불벌죄 삭제',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 연장·변경·취소 신청', '잠정조치 기간 연장'의 3개 개정사항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경우가 없었고, 스토킹전담경찰관은 지역경찰관 및 여청수사관에 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 전반을 상대적으로 높이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 중 절반 이상이 8개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 모두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제재 강화'는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이었다(83.69%, 472명). '반의사불벌죄 삭제'는 스토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집단 간에 피해자 보호 효과에 있어서의 평가 차이가 가장 엇갈리는 개정사항이었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찰관의 76.30%(264

명) 및 스토킹전담경찰관의 80.82%(59명)가 '반의사불벌죄 삭제'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반면, 여청수사관의 53.79%(78명)만이 '반의사불벌죄 삭제'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3개 집단 중 여청수사관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른 피해자 보호 효과를 가장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금번 스토킹처벌법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1)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추가, 2)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 상담위탁 추가, 3)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 4) 접근 금지 반경을 100미터 이내에서 300미터 이내로 확대, 5) 검사 청구 없이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을 법원에 직접 신청, 6)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시 가중처벌, 7) 응급조치 내용에 현행범인의 체포 명시, 8) 긴급응급조치 결정 주체에 사법경찰리 추가의 8가지를 제시하고 이들 사항이 추후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반영된다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제시된 8가지 스토킹처벌법 개정 논의사항 중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이 피해자 보호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83.69%, 472명). 지역경찰관 및 스토킹전담경찰관은 언급된 사항들이 다음 스토킹처벌법 개정 시 반영이 되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여청수사관은 그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보호 효과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이들 경찰관들의 의견은 추후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스토킹 통념이나 스토킹 사건의 특성에 대한 인식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피해자-가해자 관계,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 모두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는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 및 피해자-가해자 간 관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는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 폭력과 같이 물리적으로 가해진 위력이 육안으로 확인될 수 없는 형태로 스토킹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체포, 임시숙소, 민간경호, 전자장치, 유치, 구속과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우리사회 내 스토킹범죄의 많은 부분은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피해자 보호조치 설정 및 결정에 스토킹범죄 발생 상황을 고려한 변화가 요청된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의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는 전반적으로 그리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가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스토킹전담경찰관의 경우 개인의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에 좌우되지 않고 피해자 보호 및 대응방안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스토킹 통념을 일깨우는 것을 넘어 담당 경찰관들의 업무상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3. 스토킹 처벌법의 현황과 과제

가. 스토킹처벌법의 입법배경과 주요내용

1999년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스토킹행위 정의와 관련한 계속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범죄 처벌법」에서 처음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개념으로 스토킹의 정의가 처음 만들어졌다. 10만원이라는 범칙금 수준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스토킹행위 규제를 위한 법제화 노력이 지속되었고, 그 결과 2021년 4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제정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별하여 정의하고, 스토킹행위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여 열거하였다. 스토킹행위 개념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까지 더해지면 스토킹범죄가 된다. 동법에서는 스토킹사건 처리에 관한 절차특례규정(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을 마련하였고, 피해자 전담조사제 규정과 스토킹범죄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스토킹처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스토킹행위의 해석기준이 모호하고, 피해자보호가 충실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하여 2023년 7월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마련되었다.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온라인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방법으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피해자등에 대한 잠정조치 변경·취소통지권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제17조의2),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제17조의3), 피해자변호사 선임특례(제17조의4) 규정을 신설하였다. 스토킹범죄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벌 규정으로 변경하고,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폐지하였다.

최근 법개정으로 인해 피해자보호 관련 규정과 온라인스토킹 행위규제 관련 규정이 보강되긴 하였지만, 개정법 하에서도 스토킹행위를 판단하는데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고, 경찰의 신속한 사건 개입과 처리에 문제가 발견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보인다. 스토킹범죄 특성에 맞는 범죄자 처벌규정의 재정비도 필요하다.

나.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의 쟁점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로 그 개념을 구분하고, 스토킹행위유형으로 7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①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②정당한 이유 없이, ③ 7가지 행위 유형에 속하며, ④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며, ⑤ 지속성 또는 반복성도 있어야 한다. 스토킹범죄 처벌에 있어 이렇게 많은 요건을 요함으로 인해, 스토킹 신고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나 실제 처벌되는 사례는 극히 적다.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쟁점으로 먼저, 스토킹 행위유형 기술방식에 있어 문제가 있다. 스토킹 행위유형의 기술방식이 열거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 다양한 스토킹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와 함께 나날이 진화하는 스토킹 행위유형을 법에서

다 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행위유형에 관한 사항이 5가지에서 7가지로 늘어나긴 했지만, 제3부에서의 현장경찰관 피해보호 현황조사 응답에서처럼 개정내용 중 가장 체감하지 못하는 사항이 스토킹행위유형 변경 부분이다(표 [3-2-10] 참조). 또한 독일과 같은 보충적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인해 7가지 행위유형에 속하지 않는 스토킹의 경우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쟁점으로 스토킹행위와 범죄의 판단기준이 엄격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는 '반한다'라는 고의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해자가 불명확하거나 피해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스토킹범죄에서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이기에 실제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유발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요구하고 있어 스토킹처럼 일정기간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 스토킹 사건처리절차의 쟁점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이 발생하면 응급조치(제3조), 긴급응급조치(제4조), 잠정조치(제9조)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조치들이 피해자보호에 직접 나아가는데 있어 경찰-검찰-법원단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침으로 인해 보호절차 이행에 있어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응급조치의 경우 경찰이 '진행 중인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앞에서 언급한 스토킹 행위 구성요건요소 모두를 판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긴급응급조치는 주로 오프라인에서의 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온라인 스토킹 대응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시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경고-보호명령으로 간소화하여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참고할만하다.

잠정조치는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제지를 위해 실효적인 조치로 이해하고 있고, 최근 법개정을 통해 일부 개선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잠정조치의 승인율이 낮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잠정조치의 유형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제3부 현장경찰관의 피해자보호 효과 전망의견에서도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위탁'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92%를 차지한 바(표 [3-2-11] 참조),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잠정조치 유형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라. 스토킹피해자 보호의 쟁점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과거에 비해 피해자보호 관련 규정이 다수 도입되긴 하였으나, 타법률과 비교해보았을 때 보호관련 규정의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개념을 설정함에 따라 '직접' 피해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직접 피해자로 제한함으로 인해, 제3자를 통한 스토킹 피해, 피해자의 가족 외에도 직장 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스토킹 피해는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미국과 독일 규정을 보면 동거인과 가족 외에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피해자의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보호요청 권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제3부 경찰관의 피해자 보호 현황조사 결과에서도 개정사항 가운데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피해자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3.69%로 가장 높았다(표 3-2-10 참조).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이미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적극적인 피해자의 보호 요구에 따른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규정이 도입되었으나, 경찰 실무에서 신변안전조치 대상을 '피해자'로 한정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관계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직장이나 주거공간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정보보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제2부 스토킹범죄자 특성연구에서도 스토킹범죄자와 피해자가 '과거 부부 또는 연인 관계'인 경우가 6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범죄신고자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사·재판절차에서 인적사항 기재 생

략(제7조), 인적사항 공개금지(제8조), 신원카드관리의 열람(제9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 스토킹범죄 처벌규정의 쟁점

스토킹범죄의 처벌은 단순 스토킹 행위와 흉기휴대행위로 나누어 규율되고 있다. 이외의 죄는 조치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대부분이다.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모두 스토킹 범죄에서 가중처벌되는 행위유형이 다양화되어 있다.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행위, 장기간 지속 행위 등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제3부 경찰관 피해자 보호현황 조사결과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시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77.48%로 높게 나타났다(표 [3-2-11] 참조).

최근 법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해졌고, 피해자는 합의를 강요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는 만큼 수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의 비접촉이 강조되는 만큼 형사공탁 제도를 통한 합의시도 기회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2절 | 정책 제언 및 결론

1. 스토킹 특성을 고려한 가해자 위험 관리

가. 위험관리의 원칙: RNR 원칙 활용

범죄자의 위험성을 관리하는 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수용되는 원칙으로는 위험성, 욕구, 반응성 원칙(Risk, Needs, Responsivity, Andrews & Bonta, 1994)이 있다.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Risk)을 분류하여 고위험군에 가장 많은 자원을 할당하고, 사례 관리의 내용은 범죄유발요인(Needs)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 가령 변화에 대한 의지나 지능, 정신적 병리 등을 고려하여 사례에 개입하는 것이 재범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원칙이다. 스토킹 범죄 역시 RNR원칙을 적용하여 사례를 관리하는 것이 재범을 낮추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나, 다른 폭력범죄 사건과 달리 일반 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만을 가지고 고위험군을 선별하기에는 스토킹 사건이 관계 기반의 범죄인만큼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심리적 특징, 상황적 특징, 피해자의 취약성 등이 사건의 진전, 혹은 범죄의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더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수사나 재판단계 혹은 피해자 지원단계에서 스토킹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동적인(dynamic)요인들이 위험 요인으로 간주되어 평가되어야하며, 수사나 재판 중 스토킹 사건이 재발할 위험성이나 사건의 임박성 등을 예측하기 위해서도 동적 요인들을 보다 면밀히 고려해야할 것이다. 이와 같은 동적 요인들은 위의 RNR원칙에서 대개 범죄유발요인으로 불리며, 스토킹 가해자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관계 기반의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취약 요인은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로 인해 사건을 더욱 고조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스토킹 사건에서 폭력의 발생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폭력 발생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2부 선행연구의 메타분석에서 검토된 스토킹 폭력 위험요인은 위협, 이전 친밀 관계, 정신증(부적관계), 성격장애, 약물남용 전력, 범죄경력, 그리고 폭력전력 등 7가지 요인으로 주로 정리된다. 이들 요인 중, 정적 요인인 피해자와의 관계(친밀한 관계), 범죄경력, 위협여부, 폭력 전력은 사건 기록 검토만으로도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 요인들이지만 변화가 불가능한 요인이다. 범죄유발요인은 통상 변화 가능한 동적 요인을 지칭하기에 이후 논의할 부분에서는 스토킹 재발의 위험요인이자 폭력의 위험요인인 심리적 요인, 즉 동적요인에 대해 주로 다루도록 하겠다.

나. 스토킹의 4대 범죄유발요인 확립과 활용

1) 반사회적 생활방식과 인지적 왜곡

본 연구의 수사재판기록조사와 위험성 평가, 심리검사 및 심층면담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스토킹 가해자의 범죄유발요인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인지적 왜곡이다. 스토킹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범죄를 지지하는 생각과 태도, 즉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 접근이나 연락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라도 본인은 그럴만한 정당한 이유나 권리가 있다는 사고방식은 상당 부분 그들의 반사회적 생활양식에서 기인한다.

수사재판기록상의 정보를 통한 위험성 평가나, 심리검사, 심층면담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교정시설내 스토킹 가해자들의 반사회적 생활방식이 뚜렷이 확인된다. 반사회성은 심리검사에서 일반성인 집단의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훨씬 상향하는 수준으로 측정될 정도로 위험요인이었으며, 심층면담에서 보인 그들의 인생사, 즉 불법행위의 잦은 가담과 마약이나 유흥업소, 조직폭력의 생활 등을 통해 청소년기부터 형성된 반사회적 사고가 동료집단과의 사고 동조 등으로 강화되어 반사회적 생활양식으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반사회적 성향은 이들의 전과 경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전체 대상자의 대다수가 전과를 가지고 있고 평균 전과 횟수가 11회 정도로 상당히 높다. 또한 이들 중 비록 형사조치가 아니기는 하지만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반한 비율이 77% 정도에 이를 정도로 사법기관의 신변보호 조치에 대한 준수 정도가 낮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법규범에 대한 존중, 법의식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추론되는 가운데, 최근 도입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인지,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나 연락 등이 폭력이자 형사적 괴롭힘 행위라는 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 중 일부는 스토킹 범죄 자체가 신체적 폭력이 아닌데 범죄로 취급되는데 불만을 표하거나, 자신의 범죄를 축소하면서 피해자의 잘못(가령 외도, 금전문제 등)을 부각시키는 등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음을 고려할 때, 스토킹 사건 당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범죄를 지지하는 태도나 신념 등은 범죄의 비억제(disinhibition)에 이르게 하는 기제로 작용했을 확률이 높다.

2) 사회정서적(socio-affective) 기능의 손상

사회정서적 기능은 친밀감 형성, 의사소통 기술, 공감능력 등 대인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술과 이의 바탕이 되는 정서적 능력, 즉 정서인식이나 정서조절 능력을 의미한다. 스토킹 가해자의 사회정서적 기능의 문제는 세부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PAI를 통한 심리검사와 심층면담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거절형은 대인관계, 특히 이성과의 관계가 가능할 정도의 지배성과 온정성을 가진 사람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친밀감 추구형이나 무능형의 경우, 대인관계에서 통제와 독립성을 유지하는 정도가 일반성인 평균 수준에 못 미치고 정신병적 상황에 따라 집착, 망상, 후퇴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거절형이 아닌 스토커들의 경우 대체로 정서적 우울감, 즉 슬픔이나 무쾌감을 자주 느끼며 일상 활동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고, 신체 기능과 활동의 정도나 낮은 편이며, 성적 관심이 저하되어 있는 편이다. 또한 이들은 대인관계에서 모욕과 멸시를 당했다고 느끼는 피해망상의 성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PAI 검사에서 대인관계에서 가용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일반 성인 집단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으로, 이들은 대인적 상황에서 다소 불편감 혹은 불신감을 느끼는 사회적 고립 유형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거절형의 경우 B군 성격장애적 특성, 즉 경계선적 특징이나 반사회적 문제, 약물문제, 공격성 등에서 더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수사재판기록에서 거절형(거절당한 자)의 경우 80.3%가 스토킹 범행시 폭력을 사용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친밀관계 추구자 유형은 약 절반가량이, 무능한 구애자 유형은 1/3 가량이, 분개한 자 유형은 1/4 유형이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사용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 조절(정서 조절)의 문제와도 직결될 것이다. 이들은 대인관계에서의 공격성이나 분노 표현, 적대감을 언어적, 신체적으로 표출하려는 성향이 강할 것이다. 또한 일부 경계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스토킹 피해자의 이별 요청 후 급작스럽게 관계에 대한 배신감이나 적대감이 극적으로 상승하여 정서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 스토킹 행위에서 폭력의 사용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극단적 사고, 즉 '최후의 수단이라는 생각' 혹은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 등은 이러한 적대감의 최대치에서 정서 조절이 전혀 기능하지 못함을 알리는 위험 요인이다.

한편, 사회정서적 기능 부분에서 특히,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나 강압적 행동도

문제적 요소로 드러났다. 심층면담의 결과에서 보이듯이, 스토킹 가해자들은 사회화 과정에서 친모의 부재에 따른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하였고, 친부의 외도, 이른 가출과 난잡한 이성 관계, 유흥업소의 종사 등으로 인해 올바른 여성관을 확립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여 성적 욕구나 외로움의 해소에만 집착하게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범죄유발요인으로 함께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3) 자기관리 기술 결핍

자기관리 기술의 결핍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연결된다. 우선 이들의 PAI 검사 결과를 통해 스트레스 지각에 대한 정도를 살펴보면, 가족관계나 직업에 관한 문제, 경제적 문제, 중요한 생활상의 변화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이 성인 표본의 평균에 비해 상승해 있으며, T점수 65점 이상의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사람이 표본의 30% 정도로 나타난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는 세부유형 중 비거절형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난다.

한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에 부적응적 방식으로 분류되는 마약이나 알코올의 남용 혹은 의존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수사재판기록상에서 전체 표본의 52.7% 정도인 절반 정도가 만성적 음주 남용을 보고하고 있고 PAI 심리검사에서도 알코올 문제는 일반 성인 평균에 비해 상승해 있다. 또한 T점수 65점 이상의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도 표본의 26% 정도로 나타난다. 선행연구에서도 약물남용 전력이 성격장애와 공병으로 존재할 때 스토킹 재범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심층면담의 주요 결과에서도 이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스토킹 사건의 범죄 진행 과정을 보면, 갈등상황에서 폭력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러한 대처에는 알코올이 매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심층면담에서 수형생활 중에는 금주가 가능하지만 출소 후 금주를 자신하는 수형자는 거의 없었으며, 일부는 알코올 의존에 대한 방지교육을 희망하기도 하였다. 수형자 자신들도 본인이 지각하는 가장 큰 문제로 알코올과 이로 인한 즉흥적, 폭력적, 충동적 사고방식과 대처를 제시하는 만큼,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 관리 기술의 결핍 문제가 약물, 특히 알코올에의 과다 의존과 연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정신병리적 문제

정신병리적 문제는 선행연구 검토, 수사재판기록 분석, PAI 검사, 심층면담의 결과 모두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스토킹 가해자들의 특성이다. 스토킹 가해자들은 과거에 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물질남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혹은 아동청소년기 품행장애)등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재판기록 조사에서는 약 41% 정도의 대상자가 과거 정신질환 이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PAI 심리검사를 통해 이들의 정신병리의 구체적 양상을 정리해 보면, 임상적 문제에서 가장 큰 수준의 문제를 보이는 영역은 우울감, 망상, 경계선적 특징, 반사회적 특징, 알코올문제, 자살관념 정도이다. 신경증 척도군에서는 불안감 중 신체적 증상에 대한 불안이, 우울감 중 특히 정서적 우울이, 정신병 척도군에서는 망상 중 특히 피해망상과 원한감, 그리고 조현병 척도의 사회적 위축척도가 비거절형 집단에서 상당히 높게 나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우울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자살관념 역시 비거절형 집단이 높게 나온다. 반면, 성격장애척도군과 물질관련척도군은 대체로 거절형이 비거절형보다 문제적 수준이 높게 나온다. 다행스러운 것은 PAI 심리검사에서 '치료거부' 척도가 일반성인 표본의 평균과 비교하여 낮게 나왔다는 점으로 이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변화에 대한 동기가 낮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신병리적 문제 중 구체적으로 일부 스토킹 가해자에게 있을 것으로 추론되는 애정망상(망상장애의 하위 유형)은 PAI 심리검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영역이다. 그러나, 수사재판기록에서 유명인을 대상으로 스토킹 사건의 세부 내용과 증거 기록 등을 보면 전혀 친밀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아내'라고 표현하거나 '애인'이라고 지칭하면서 지속적 연락을 취한 가해자들이 있었다. 이들의 문자 내용 등은 매우 '성적'이고 현실에 전혀 기반을 두지 않은 '망상적 내용'이었으며,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였을 때 피해자의 직장에 나타나거나 지인들에까지 연락을 취하는 부적응적 행동을 보였다. 심층면담에서도 일부 무능한 구애자 유형의 애정망상적 행동이 발화되었는데,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스토킹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어적 기제가 보인다.

스토킹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병리 자체를 범죄의 유발요인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애정망상의 경우는 그 자체가 스토킹 행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예외이다. 그러나, 스토킹 가해자의 정신병리적 문제는 스토킹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서조절을 힘들게 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가령, 우울증이나 경계선 성격장애의 증상으로 보이는 자살사고 혹은 스토킹 행위나 폭력 행사만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극단적 생각, 반사회적 성격장애에서 보이는 폭력과 살인에 대한 사고 혹은 행동 계획, 고위험의 정신증적 사고 등은 스토킹 가해의 명백한 위험요인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만큼 위험 관리시 정신병리적 증상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 스토킹 가해자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방식

1) 위험평가 도구의 사용

스토킹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고 사회 내에 있는 수사나 재판단계 혹은 보호관찰 단계에서는 가해자의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험관리는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조치, 가령 접근금지나 전자장치의 부착 및 감시를 통해서 주요 동선을 추적하거나 통제하므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수반되어야하는 것은 스토킹 가해자의 범죄유발요인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이에 기반한 위험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선술한 바와 같이, 스토킹 범죄자의 범죄유발요인은 크게 4가지 정도로 확인되며, 4대 영역을 중심으로 스토킹 범죄의 진전과정을 포괄한 위험관리 도구 등이 개발되면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도구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SAM이 예시로 사용될 수 있으나, 개발자로부터 직접 교육을 수강해야하고 관련 자격증이 필요한 점 등 한국 현실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으므로, 한국 사정과 각 사법 단계의 실무에 적합한 위험관리 도구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예: 경찰청, 전문가용 스토킹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중). 위험관리를 위한 위험평가 도구의 사용은 현장의 실무가(경찰 혹은 보호관찰관)가 사용하는 도구 혹은 전문가(사례관리자, 심리평가 혹은 심리치료 전문가)가 사용하는 도구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별도의 용역을 통해 개발되고 그 타당도를 검증해야 할 것이며, 실무가를 위한 지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위험 평가도구에서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요인들이 다뤄져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MacKenzie et al., 2009)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감시(monitor), 감독(supervise)하고 관리(manage)하는 전문가에게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는 위험평가 도구

가 실무자나 사례 관리자에게 위험 관리를 위한 유효한 지침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스토킹 세부 유형 분류

먼저 위험 평가도구가 현장 실무에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스토킹의 세부 유형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 유형 분류의 목적은 스토킹 행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하위 그룹 간에 나타나는 행동 패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하위 그룹 간의 행동 패턴의 차이점이 확인되면, 행동의 예상 진행여부, 고조여부, 지속여부, 폭력행동 여부 등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McEwan et al., 2011; Racine & Billick, 2014; White et al., 2022). 이러한 정보는 경찰, 보호관찰관 등 실무가들이 스토킹 현장의 긴급 상황에 개입할 때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실증조사 결과 모두를 종합해 볼 때, 스토킹의 세부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Mullen 등의 세부유형 분류 준용): 1)거절당한 자(거절형), 2)친밀관계 추구자, 3)무능한 구애자, 4)분개한 자. 만일, 형사사법기관의 실무자들이 4개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적어도 1)거절형(거절당한 자)과 2)비거절형(친밀관계 추구자, 무능한 구애자, 분개한 자)으로 구분해서 위험을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4개의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거절당한 자' 유형은 연인관계나 결혼관계 등에서 이별을 요청받은 데에 대한 배신감, 보복감, 미련 등으로 스토킹을 시작하게 된다. '친밀관계 추구자' 유형은 통상 지인을 상대로 스토킹을 하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주된 동기로 애정망상이나 병적 집착의 성향을 보인다. 반드시 이성적 감정으로 스토킹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며, 모정이나 친밀감을 느끼는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성향을 보인다. '무능한 구애자 '유형은 주로 데이트 기회를 얻기 위해 스토킹을 하며, 사회적 기술이 미숙하고 피해자의 감정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분개한 자' 유형은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스토킹을 시작하며, 자신의 분노 표출이 정당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편, '거절당한 자' 유형(거절형)은 선행연구 결과나 실증 조사 모두에서 비거절형과 구별되는 특성을 보인다고 선술한 바 있다. 스토킹 행위 유형에서 거절형은 메시지

도달이나 접근과 같은 연락이나 접촉 행위를 더 많이 하는 반면, 비거절형은 지켜보는 행위나 물건 도달 행위와 같은 비접촉 행위를 더 많이 한다고 분석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거절형은 심각한 정신병적 측면은 보이지 않으면서 폭력적이며 공격정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스토킹 시 '폭력'의 위험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다는 측면에서 이와 관련된 위험 요인(예: 가해자의 분노, 피해자에게 폭력 위협, 약물 남용 등)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비거절형 중 친밀관계 추구자는 애정망상이나 병적 집착 성향으로 인해 스토킹 지속기간이 길어 '재발 위험'이 높다는 측면을 예의주시해야 하며, 무능한 구애자의 경우 사회적 고립과 미숙 등으로 피해자의 감정에 관심이 없고 망상적 사고를 지속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폭력보다는 무형의 방식으로 '위협'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거절형이나 비거절형 중 친밀관계 추구자는 낯선 관계가 아닌 연인관계나 지인을 상대로 스토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 중 폭력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경찰이나 보호관찰관은 낯선 사람 상대의 스토킹보다 지인 상대의 스토킹에 더 개입할 필요가 있다. 분개형은 표본 수가 적어서 뚜렷한 프로파일을 형성하기 힘드나, 선행연구를 보면 주변인까지 광범위하게 스토킹을 하는 등 '침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수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는 차년도 스토킹 연구(보호관찰 대상자)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되어야할 부분이라 사료된다.

나) 위험등급 산출 및 위험요인 평가

스토킹의 세부 유형을 확인한 후, 스토킹 위험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각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와 총점의 산출, 위험등급 제시 순으로 평가 작업을 진행한다. 위험요인은 경찰, 보호관찰관 등 실무가가 평가하는 방식과 사례 관리자나 임상가 등 전문가가 평가하는 방식이 있겠다. 실무가 평가에서는 수사나 재판기록, 혹은 면담기록을 중심으로 각 위험요인의 존재 혹은 부존재, 존재 가능성 등이 수치로 평가될 수 있다. 이때 스토킹 가해자의 특성과 피해자의 특성, 그리고 사건의 특성, 이 세 가지의 영역은 필수적으로 평정되도록 하며, 영역별로 총점을 산출하도록 한다. 제3부 위험성 평가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거절형의 스토킹 행위에서는 피해자의 비일관적 대응이 주요한 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위험 등급의 산출은 위험성 점수의 총점을 활용하거나 실무가나 전문가가 주관적으로 등급을 할당하는 방식이 있겠다. 위험 평가에 숙련되지 않은 평정자의 경우 계량적 지표, 즉 총점을 활용하여 등급을 산출할 수 있도록 지침하는 한편, 숙련된 평정자는 사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므로 이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 또한 위험관리에서 위험 등급은 사건의 경중 정도를 판단하는 용도로만 활용하고, 각 위험요인이 정기적 평가에서 어떠한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와 그에 맞는 위험관리 계획을 세우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평정자는 각 위험요인의 존부를 평가한 후 이에 맞는 위험관리 계획을 세워 형사사법기관의 실무가와 피해자 지원기관의 사례관리자, 심리치료사 등과 공유한 가운데 다기관이 협력하여 사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한다. 해외의 전문가 판단 위험성 평가도구들을 보면 위험 관리 계획에는 가해자 감시 및 감독, 가해자 치료, 피해자 안전계획 수립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한편, 가해자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체계적인 평가 및 상담을 받도록 연계해야할 것이다.

다) 정기적 위험 평가 진행

스토킹 사건은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있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행동이 매우 가변적일 수가 있어 정기적 위험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정기적 평가는 위험 등급이 높은 고위험 사건의 경우 최소 1~2달에 한 번, 혹은 위험도가 가장 높을 경우 그보다 자주 평가를 진행하여 스토킹 사건의 재발 위험성이나 폭력의 임박성, 혹은 사건의 지속성 면을 시의적절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히, 폭력의 임박성 측면에서는 스토킹 유형 중 거절형(거절당한 자)을, 사건의 지속성에서는 친밀관계 추구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험요인의 항목을 통해서 점점 사건이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긴장의 수준이 고조되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라) 폭력 위험요인 집중 점검

위험 요인의 평가에서는 사건의 폭력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스토킹 사건에서 폭력의 동반은 피해자에게 매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선행연구결과나, 수사재판기록의 분석, 심리검사, 심층면담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스토킹 사건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을 가늠해볼 수 있는 요인으로는 가해자 측면에서는 분노 수준이 높아 피해자에게 지속적 위협을 하고 있는 경우, 평소 약물남용이 있으면서 면담 시 그 남용 혹은 의존 정도가 유지 혹은 상승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반사회적, 혹은 경계선적 성격 장애의 주요 증상들이 현저하게 지속되고 있는 경우이다. 피해자의 측면에서는 피해자의 생활환경이 안전하지 않아 동선이 노출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일관성 없는 태도 혹은 행동으로 대처하고 있는 경우일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신변보호조치와 같은 감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감시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스토킹 가해자에 특화된 심리적 개입

가) 범죄 억지를 위한 심리적 개입

스토킹 가해자의 범죄유발요인에서 논의된 심리적 문제들은 가급적 빠르게 개입될수록 좋을 것이다. 특히,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범죄 의지를 억지시켜줄 수 있는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 심리적 개입은 자발성에 기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스토킹 가해자의 특성 상 선술한 인지적 왜곡 등으로 인해, 본인의 문제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오히려 범죄를 지지하거나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성에만 맡겨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는 잠정조치의 '상담위탁' 신설 등을 통해 심리적 개입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해자의 형집행 단계(보호관찰, 교정 등)에서는 통상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는데, 이 단계의 심리적 개입은 재범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사례 개념화 및 상담·심리치료

스토킹 범죄자의 심리적 개입이 경찰, 보호관찰, 교정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선술한 스토킹 범죄의 4대 영역을 기본으로 심리적 문제를 사례개념화하고 이를 평가하여 심리치료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스토킹 범죄자의 4대 범죄유발요인에 대한 심리적 개입 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정서적 기능의 향상에서는 스토킹 가해자의 생애를 구술하게 하여 가정환경을 이해하고 특히 애착의 유형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스토킹 가해자는 친모의 부재 등으로 불안정 애착(특히 불안정-불안형)을 경험한 경우가 많고, 성인기에도 이를 상쇄해줄 만한 애착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아동기 및 성인기 애착유형을 점검하고 불안정 애착이 스토킹 행위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변화가능성을 치료의 목표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선술한 바와 같이 스토킹 가해자는 대인관계에서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고, 특히 분노를 지나치게 억제하다가 한꺼번에 폭발하거나 평소 대인관계를 파괴할 만큼 분노 표출이 잦은 만큼, 감정의 이해 및 감정 조절능력을 고취시켜주는 심리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스토킹 유형 중 비거절형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사회성이 결여되어 친밀감 형성에 서툰데다가 사회적 지지망도 매우 빈약한 만큼,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사소통기술이나 공감능력의 향상, 혹은 스토킹 가해자의 대표적 부적응적 사고 혹은 정서라고 할 수 있는 집착의 감정, 망상적 사고, 타인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 등을 적응적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술 함양도 필요할 것이다. 스토킹 가해자의 여성관에 왜곡된 측면이 많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성차별적 태도를 갖는 것의 문제점, 혹은 구애 등에서 강압적 방식을 쓰는 것의 이유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게 하여 왜곡된 여성관을 개선시키고 대안적 기술을 함양케 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인지적 왜곡 수정 영역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진전과정을 구술하게 하여 범죄의 과정 속에서 사용된 범죄 지지적 태도, 방어기제(예: 정당화, 축소 등), 집착과 미련(거절형의 경우) 같은 부적응적 감정과 태도 등을 점검하도록 한다. 특히 이들의 반사회적 사고와 생활방식은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거쳐 오랫동안 확립된 것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이 왜 범죄를 반복하는지에 대해 반사회적 사고(행동)의 개념, 이에 대비되는 친사회적 사고, 그리고 범죄적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들이 범죄를 반복하는 이유와, 범죄를 통한 이득과 손해, 혹은 거꾸로 범죄없는 삶을 살 경우의 이득과 손해에 대해 논의하여 인지적 왜곡을 개선하도록 한다.

셋째, 자기관리 기술의 함양 영역에서는 스트레스 유발요인을 확인하게 하고, 평소의 대처방식을 점검하게 하며, 이때 폭력의 과다 사용, 알코올에의 남용 등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방식을 확인하게 한다. 특히, 관계에서의 거절이나 파트너의 이별요청 등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 시에 보다 문제해결적인 대처를 지향하기 위해 과거의 부적절한 대처방식을 반복하지 않는 훈련을 하며 자기관리 기술을 함양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약물남용의 문제가 심각할 경우 별도의 중독예방교육으로 연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정신병리 영역에서는 정신병리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집단 형태의 상담도 무방하겠지만, 대상자가 개인적 상담을 원하거나, 혹은 개인 상담에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경우 개인 상담을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스토킹 가해자의 대표적 정신병리로 지적된 문제들을 확인하고 스토킹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정신과적 치료로 연계하여 손상된 심리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표 5-2-1] 스토킹 범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 모듈 예시

모듈		목표	내용
사회정서적 기능 향상	애착 점검	생애의 이해 및 애착 유형 점검	-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생애의 이해 - 애착 유형 점검(안정적 vs. 불안정적 유형) - 성인기의 애착과 변화 가능성
	감정 이해	감정의 이해 및 표현 능력 함양	- 정서인식 능력 배양 - 정서 표현 방법 - 분노의 표출과 억제 - 분노의 조절
	대인관계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	- 친밀감 결핍의 문제, 외로움 -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인식 - 부적응적 감정과 사고: 집착, 망상, 의심, 불신 - 공감능력 향상 - 의사소통능력 향상
	여성관	여성에 대한 성인지 왜곡 수정	- 여성의 성적 대상화 - 성차별적 태도 - 강압적 행동의 불법성
인지적 왜곡 수정	사건이해	사건유발요인 이해 및 대처	- 스토킹 범죄의 다양한 양상 이해 - 스토킹 범죄의 진전과정 - 집착과 미련 - 폭력 사용이 의미하는 것 - 범죄의 계기 고찰

모듈		목표	내용
	인지적 왜곡	반사회적 사고 및 생활방식 개선	- 반사회적 생활과 친사회적 생활 - 범죄 없는 삶(이득과 손해) - 법의식, 규범의식 강화 - 인지적 왜곡의 개선
자기관리기술 함양	자기관리	스트레스 확인	- 스트레스 유발요인 - 경제적 문제, 가족문제, 관계 문제 - 평소 대처 방식
		스트레스 상황의 적절한 대처	- 폭력의 빈번한 사용으로 인한 결과 - 알코올의 남용으로 인한 결과 -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능력 함양 - 파트너의 거절과 이별요청에 대한 대처
정신병리 개선	정신병리	정신적 문제에 대한 이해 (개인상담 병행)	- 우울과 불안 - 자살사고 - 경계선적 특징 - 망상(애정망상, 피해망상 등) - 편집증적 사고 - 반사회적 사고

2. 경찰단계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개선방안

가. 법·제도 변화 수반 필요

1) 긴급응급조치의 판단 주체 개정 및 사후승인 절차 간소화

스토킹처벌법상 응급조치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가 모두 할 수 있는 조치인 데 반해,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만이 할 수 있다. 이는 긴급응급조치를 한 이후 검사에의 사후승인 신청을 형사소송절차에 준해서 규정했기 때문인데, 경찰공무원 중 77.4%가 사법경찰리에 해당하며 신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은 대부분 사법경찰리임을 고려할 때 사법경찰관만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경찰실무와 배치되는 면이 있다. 이는 또한 종래 가정폭력·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대응과는 차별화하여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들의 요청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함으로써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가 살인, 강간 등 후속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입법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긴급임시조치와 구분되는 명칭으로 긴급응급조치를 규정한 것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지역경찰관들은 사법경찰관만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실제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한 경찰관의 성명과 긴급응급조치 통보서상 경찰관의 성명이 불일치하기도 하는 상황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에 한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경찰관들에게 긴급응급조치는 마치 한층 중한 판단 책임이 따르는 조치로 인식되고 있었다. 실제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 스토킹 신고현장의 상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경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책임감 있게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긴급응급조치의 판단 주체를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리로 확대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식조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의 86.17%(486명)도 긴급응급조치 결정 주체에 사법경찰리를 추가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도 한층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유치나 구속영장 신청에 비해 긴급응급조치의 경우에는 검찰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사후승인 단계를 거치게 되나 변경 또는 기각되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청수사관들은 긴급응급조치 결정에 대한 사후승인은 절차적 효율성 및 신속한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경찰이 직접 법원에 사후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식조사에 참여한 경찰관 중 81.03%(457명)은 검사 청구 없이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을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된다면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 중한 처분을 포함하고 있는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종래의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지역경찰관이 결정하는 긴급응급조치에 있어서는 경찰이 법원에 사후승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기관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고려해 봄 직하다.

2) 잠정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요건으로서의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던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범죄가 되었다. 지역경찰관들은 형사처벌로 제재가 상향된 만큼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의 성립요건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여겼다. 예컨대, 이웃 간 층간소음에 취해진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동만으로 수시로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여청수사관들이 스토킹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또 하나의 지점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불이행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사후승인 또는 결정에 의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찾아감으로써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때 피해자 보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여청수사관들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된 만큼 피해자 또한 신중하게 사건을 신고·접수하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의 결정을 존중하고 협조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아울러,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피해자의 승낙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불이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한층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접근금지 위반이 성립하는 조건을 별도로 부가하지 않음으로 인해 접근금지 위반이 불가피하거나 참작할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잠정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의율하여야 하는 상황은 경찰단계에서 잠정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으로 입건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고 역설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스토킹행위의 성립에서와 마찬가지로 접근금지 위반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의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형사처벌되는 잠정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의 상황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금번 스토킹처벌법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 중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이 가장 높은 정도로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사항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83.69%, 472명), 이는 경찰관 집단 구분에 따른 차이 없이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와 분리하여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요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필요성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전이나 이후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당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잠정조치의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지만, 스토킹피해자들을 스토킹범죄 발생 직후 만나는 경찰관들의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추후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필요성은 재차 거론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최장 9개월까지 실시할 수 있는 잠정조치 기간이 모두 도과된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사례를 확인하거나,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시행 중인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스토킹처벌법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 법·제도 변화 수반 불요

1) 경찰조직 내

가) 사례 중심의 스토킹 관련 경찰관 교육 프로그램 구성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여가 경과되었지만, 최근 개정이 이루어진 탓에 스토킹범죄에 대응하는 경찰 실무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전히 일부 사례에서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볼 때 아쉬운 지점이 발견된다.

먼저, 스토킹처벌법 의율 및 횟수 산정 방식이 일관되지 못하다. 일례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는 주거·건조물 등의 침입 내지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에 경찰실무에서는 주거침입을 수반하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주거침입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의 경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건에 대해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역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스토킹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한 차례의 주거침입 시도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여긴다. 지역경찰관들은 이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와 같은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할 수는 없으며, 현행범인 체포나 임의동행 등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기도 어렵다고 평가한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시행 초기에는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채권-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괴롭힘 등이 모두 스토킹범죄로 의율되었지만,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피해자-가해자 관계에 따라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 및 피해자 보호조치 결정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채권-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다.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상당 부분이 전·현 연인 또는 배우자 간의 교제폭력인 가운데, 이와 이질적인 성격의 층간소음이나 채권·채무 독촉이 스토킹범죄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경찰실무는 현장경찰관들에게 여전히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찰 내부적으로는 이와 같이 스토킹처벌법 적용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체감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래 지역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관련 교육은 스토킹전담경찰관을 통해 스토킹처벌법 관련 주요 내용을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 단위에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향후에는 경찰청 단위에서 지역경찰관이 자주 접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쟁점 및 적절한 대응방식을 다루는 교육 자료를 주기적으로 생성, 제공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일관된 교육 수준을 담보하는 동시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스토킹범죄 양상과 현장경찰관들의 고민을 반영한 교육 자료를 통해 경찰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스토킹 통념에 영향을 받지 않고 피해자 보호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관 집단 중 스토킹 관련 교육이 가장 빈번하게 진행되었으며 내부 교육뿐만 아니라 외부 위탁교육까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졌던 스토킹전담경찰관의 경우,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에 따른 임시숙소 이동 필요성 판단을 위한 12개의 시나리오 상황 중에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이 없었으며,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스토킹 통념 수용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지속적으로 스토킹 관련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질 때 스토킹 통념에 영향을 받지 않고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스토킹 통념 수용 정도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활용 점검

지역경찰관들이 가정폭력범죄 및 가정폭력처벌법와 견주어 스토킹범죄 및 스토킹처벌법을 이해하는 데에는 신고 출동 현장에서 각각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와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절차적 유사성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모든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출동한 지역경찰관은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평가해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토킹의 경우에도 현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는 아직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지역경찰관들에게 활용하기 익숙하거나 긴급응급조치 판단에 결정적으로 고려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고 보인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지역경찰관들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판단조사표를 작성하였으나 점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긴급응급조치 실시를 재고하거나 긴급응급조치 실시 여부를 우선 결정해 두고 판단조사표 작성 결과를 통해 그 실시의 타당성을 담보하는 등의 보조적인 도구로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를 활용하고 있었다.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에 근거하여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경찰 내부적인 정책적 판단일 것이나, 일단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활용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지역경찰관들이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를 적절하게 작성하고 있는지, 스토킹처벌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개선 및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범죄에 있어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실무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정착되기까지 수년간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작성을 둘러싸고 반복적으로 점검이 진행되었다는 점이 주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경찰조직 외

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확충

가정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각 범죄에 특화된 상담소 및 쉼터가 별도

존재하고 피해자들도 해당 보호·지원시설에 연계할 수 있는 데 반해, 스토킹범죄에 특화된 별도의 상담소 및 쉼터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 시행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즉, 스토킹방지법은 가정폭력방지법이나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업무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스토킹방지법 제8조 제2항 및 스토킹방지법 시행령 제6조).

이는 스토킹전담경찰관들에게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자원이 부족하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또한, 스토킹전담경찰관들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에 스토킹 피해자를 연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쌍방 폭행이 있다거나 하면 연계가 거부되는 사례를 경험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스토킹전담경찰관들은 자체적으로 관할 지역 내 위치한 심리상담소를 찾아 MOU를 맺거나 최대한 피해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 가능한 유관기관의 폭을 넓혀 연계를 의뢰하고 있었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은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반려동물 동반 입소가 불가능하며 공동생활을 전제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상황은 스토킹전담경찰관으로 하여금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입소를 권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였다.

스토킹범죄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가장 먼저 임하는 형사사법기관이 경찰임은 분명하지만, 스토킹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가 경찰만의 역할은 아니며, 경찰 외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지지할 때 비로소 스토킹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내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문제를 경찰관 개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게 되며, 곧 한계에 부딪히게 한다. 경찰단계에서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 및 자원이 우선 확충될 필요가 있음은 거듭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3. 스토킹처벌법의 개선방안

가. 스토킹범죄 구성요건 규정의 정비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로 구분하여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② 정당한 이유 없이, ③ 7가지 행위유형에 속하는 행위로, ④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며, 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5가지 조건의 내용을 살펴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부분은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상대의 의사표시가 어떠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양당사자가 인식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스토킹 행위유형은 7가지 유형에 한하지 않는바, 본조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스토킹 유형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유형을 추가한다. "상대방 등에 대한 서비스를 신청하는 행위"와 "상대방등의 반려동물이나 장애인보조견에 대하여 하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하여도 스토킹행위에 포함하도록 한다.

셋째, 스토킹행위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만으로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스토킹방법을 모두 규율하기는 어려운바, 독일과 같이 보충적 구성요건인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규정을 신설한다.

넷째, 보호조치의 실질화를 위해 '상대방등'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까지 확대하도록 한다.

다섯째, 스토킹범죄를 판별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는 반복성 의미 안에 지속성이 포함되고, 지속성은 가중처벌요소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지속적" 부분을 삭제하고, 가중처벌 규정에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등에 대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아. 상대방등의 반려동물이나 장애인보조견에 대하여 하는 동물학대행위
자. 가~아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스토킹 사건처리절차 개선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이 필요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에 대하여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절차단계의 개선이 필요함과 동시에 조치의 적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잠정조치 등의 내용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첫째, 긴급응급조치의 요소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위구성요건에서 지적한 바대로 "지속적으로 행할 우려" 부분을 삭제하고, 상대방등의 개념에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유형으로 주거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외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새롭게 추가해야 한다.

셋째, 잠정조치의 변경 등을 통지하는 대상을 검사, 피해자, 스토킹행위자로 하고 있으나, 잠정조치의 상황을 파악하고 행위자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은 경찰인 바, 통지 대상에 경찰을 포함하도록 한다.

넷째, 스토킹범죄자의 특성상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음주경력이 있는 경우가 다수인 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병원 또는 기타 요양소 위탁”,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을 추가하도록 한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병원 또는 기타 요양소 위탁**
7. **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③ (현행과 동일)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경찰**, 검사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1. **경찰**, 검사,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 취소,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스토킹행위자: 취소, 연장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다. 피해자 보호절차 강화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개념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로 한정되어 있어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스토킹 피해를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피해자 개념이 확대되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절차도 피해자 정보보호 부분에서 보다 강화되어야 된다.

첫째, 피해자의 개념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피해의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직장동료 등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한다.

둘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한다. 스토킹처벌법의 내용에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의 관할,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 임시보호명령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은 가정폭력처벌법의 규정과 잠정조치 연장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3개월 단위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신고자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제7조), 인적사항의 공개 금지(제8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제9조)의 내용을 신설하도록 한다.

라. 가중 처벌규정 마련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단순 스토킹행위 외에 흉기 휴대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스토킹범죄는 이후 다른 범죄로 나아가기 전 전조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상습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도 하다. 이에 스토킹범죄의 가중요소를 개발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독일(6개월 이상), 오스트리아(1년 이상) 등 외국의 입법례와 국내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3항,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에서 상습범을 가중처벌 규정, 제2부 스토킹 행위자의 17%이상이 1년 이상 스토킹을 지속하였다는 분석결과([표 2-1-5] 참조) 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 요소로 '1년 이상 지속된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미국 「연방법전」에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독일 「형법」에서도 16세 미만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권인숙 의원안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찰관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미성년자 스토킹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온 점([표 3-2-11 참조] 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 요소로 '미성년에게 한 스토킹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독일 「형법」 제238조 제2항에서 특히 중한 경우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경우를 가중하고 있고, 미국 「연방법전」에서도 사망이라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달리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에서도 가중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스토킹행위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흉기 또는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2. 스토킹행위를 1년 이상 지속한 사람
3.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사람
4. 스토킹행위로 인해 피해자등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사람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소영. (2022). 판결문 분석을 통한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진단-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판례를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20(1), 55-84.

경찰청. (2022). 2021 경찰통계연보.

고명수. (2022).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 구성요건 연구 – 독일형법 제238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제 vol. 696, 법제처.

국수호. 〈스토킹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토론문. 2023년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회도서관. (2020), 영국의 스토킹범죄 관련 정책.

김구슬. (2021). 스토킹범죄의 규제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민이. (2020). 스토킹 관련 독일, 영국, 일본 입법례. 최신 외국입법정보 통권 제118호. 국회도서관.

김성돈. (2020). 형법총론[제6판]. SKKUP.

김성룡. (2007). 독일의 ‘스토킹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고찰. 형사정책연구, 18(4), 135-158.

김성희, 성현준. (2021). 스토킹 살인의 잠재계층분석: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20(4), 49-74.

김숙희 외 (2019).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바라본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의 문제점, 한국여성변호사회.

김영식, 조수정. (2022). 스토킹 (Stalking) 범죄의 행위유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경찰연구, 21(1), 27-54.

김용석. (2010).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개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3), 1- 39.

김은영. (2016). 스토킹행위에 대한 인식과 경찰개입의 필요성 판단에 관한 분석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7(3), 93-112.

김은영, 윤민우. (2016). 스토킹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분석. 사회과학연구, 23(1), 55-82.

김은영. (2016). 스토킹행위에 대한 인식과 경찰개입의 필요성 판단에 관한 분석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7(3), 93-112.

김은주 외 (2021). 온라인 스토킹의 실태 및 대응방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잔디. (2015). 스토킹 행위의 특징과 대응 방안. 치안정책연구, 29(3), 135-165.

김잔디. (2019). 스토킹죄의 실행행위 구조에 관하여. 비교형사법연구, 21(2), 83-109.

김잔디. (2022).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반복'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4(1), 45-70.

김정연. (2021). 제정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행위 유형분석 및 향후 과제-구성요건 및 처벌규정을 중심으로. 젠더리뷰, 61, 39-46.

김정혜. (2021). 스토킹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방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제32차 젠더와 입법포럼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박보람. (2021). "스토킹 입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젠더리뷰 62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박보람, 정다은. (2021).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화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윤덕경, 정수연, 이인선, 이주영. (2018).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2022). 스토킹 대응의 법적 한계와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현아. (2021).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희태 외. (2020). 스토킹 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적 논의와 과제-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의 제정경위와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20(4), 383-405.

문희태. (2021). 스토킹 행위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특히 일본 경찰의 스토킹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21(4), 147-171.

박예은, 곽대훈. (2022). 세대 차이에 따른 스토킹 인식 분석: 베이비붐 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18(3), 49-64.

박희영. (2007). 독일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월간 법제, 2007(8), 87-117.

신상현. (2022).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최근 개정된 독일 및 오스트리아 형법 규정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저스티스, (188), 175-208.

오상지. (2022). 스토킹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관한 연구-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2(3), 5-39.

오영근. (2018). 형법총론[제4판], 박영사.

원혜욱. (2021).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실효적인 보호방안. 피해자학연구, 29(3), 47-75.

윤동호. (2013).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입법기준 연구. 법학논총, 37(1), 181-208.

윤정숙 외. (2017). 가정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건호, 김은경, 황지태. (2002).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건호. (2007).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화 방지전략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18(3), 1471-1498.

이봉한. (2011). 스토킹피해자의 인식과 대응실태에 따른 경찰활동방안. 한국경찰연구, 10(3), 121-146.

이성기. (2018). 스토킹 행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법학논문집, 42(1), 279-302.

이성식, 신지민, 임수경, 임형연. (2020). 사이버스토킹의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32(2), 97-122.

이수정, 박은영, 권해수, 김영환, 김지혜, 박중규, 조은경, 오상우, 이은호, 황순택, 홍상황. (2019). 교정용 성격 평가질문지(PAI-PS) 전문가용 실시요강. 서울: 학지사.

이승준. (2017). 독일의 스토킹 처벌 규정의 개정과 그 시사점. 형사정책, 29(2), 119-146.

이승준. (20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34(2), 21-54.

이원상. (2013). 스토킹 처벌규정 도입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147-186.

이원상. (2022).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23(4), 205-236.

이창무. (2014). 일본과 한국의 스토킹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법연구, 14(2), 69-102.

이현정. (20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20(4), 265-284.

이혜선, 이수정, 김범준. (2006). 스토킹에 대한 법률과 일반인의 인식 비교. 형사정책연구, 17(4), 363-396.

장영림. (2022). 국가별 스토킹 관련 법·제도 및 피해지원 현황. 여성과 인권 통권 27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장응혁. (2017). 스토킹범죄의 정의에 관한 연구—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7(1), 179-207.

장응혁. (2022). 일본의 스토킹 대응과 그 시사점-스토커규제법과 스토커종합대책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20(2), 201-225.

전윤경. (2021). 스토킹 피해자보호 법·제도 현황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1835호, 국회입법조사처.

정현미. (2023). 스토킹범죄의 처벌례의 분석과 효율적 대응방안 연구-[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처벌법 위반 1 심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27(4), 203-237.

조무용, 김정인. (2016). 대학생들의 스토킹에 대한 태도와 두려움 지각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3(3), 341-364.

조서연. (2019), "영국 「Stalking Protection Act 2019」제정."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18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제성. (2022). 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 및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2020). 스토킹처벌법 예고안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경찰청.

한나라. (2023). 스토킹 양형 현황과 영향기준 수립방향. 양형연구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심포지엄 〈스토킹범죄와 양형〉 자료집.

한동효, 허영희. (2022).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문제 진단과 입법 정책적 관점의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 30(1), 225-256.

한민경. (2021). 법정에 선 스토킹: 판결문에 나타난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처벌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37(1), 65-92.

한민경. (2021). 스토킹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112 신고자료 분석. 형사정책, 33(1), 39-65.

한민경. (2022). 반의사불벌죄와 공소기각: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결과. 한국경찰연구, 21(3), 317-340.

한민경. (2022). 스토킹범죄 대응시스템 구축. 현실과 과제, 여성과 인권 통권 27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 국외문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text rev.). Washington, DC: Author.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Washington: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Andrews, D. A., & Bonta, J. (1994).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Cincinnati, OH: Anderson.

Andrews, D.A., Bonta, J., & Hoge, R. D. (1990). Classification for effective rehabilitation: Rediscovering psycholog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7, 19-52.

Andrews, D.A., Bonta, J., Wormith, J.S., Guzzo, L., Brews, A., Rettinger, J. et al. (2011). Sources of variability in estimates of predictive validity: A specification with Level of Service General Risk and Need.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8(5), 413-432.

Andrews, D.A., Zinger, I., Hoge, R., Bonta, J. Gendreau, P., & Cullen, F. T. (1990). Does correction treatment work? A clinically relevant and psychologically informed meta-analysis. Criminology, 28(3), 369-404.

Bartholomew, K., & Allison, C. J. (2006). An attachment perspective on abusive dynamics in intimate relationships. In M. Mikulincer & G. S. Goodman (Eds.), Dynamics of romantic love: Attachment, caregiving, and sex. Guilford Press.

Baum, K., Catalano, S., Rand, M., & Rose, K. (2009). Stalking victimization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Beatty D. (2003). Stalking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M. Brewster (Ed.), Stalking: Psychology, risk factors, interventions, and law. (pp. 21-55). Kingston, NJ: Civic Research Institute.

Belfrage, H., & Strand, S. (2008). Validation of the Stalking Assessment and Management Checklist (SAM) in law enforcement: A prospective study of 153 cases of stalking in two Swedish police coun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cience & Management, 11, 67-76.

Bendlin, M., & Sheridan, L. (2021). Risk factors for severe violence in intimate partner stalking situations: An analysis of police record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17-18), 7895-7916.

Bjorklund, K., Hakkanen-Nyholm, H., Sheridan, L., Roberts, K., & Tolvanen, A. (2010). Latent profile approach to duration of stalking. Journal of Forensic Science, 55(4), 1008-1014.

Bonta, J. & Andrews, D. A. (2017).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6th ed.). Taylor & Francis.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I: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Brewster, M. P. (2000). Stalking by former intimates: Verbal threats and other predictors of physical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15(1), 41-54.

Brewster, M. P. (2001). Legal help-seeking experiences of former intimate-stalking victims.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2(2), 91-112.

Budd, T., & Mattinson, J. (2000). Stalking: Findings from the 1998 British crime survey. London: Home Office Research, Development and Statistics Directorate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230.

Churcher, F. P., & Nesca, M. (2013). Risk factors for violence in stalking perpetration: A meta-analysis. FWU Journal of Social Sciences, 7(2), 100-112.

Coleman, F. L. (1997). Stalking behavior and the cycle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3), 420-432.

Coupland, S. H., Storey, J. E., Kropp, P. R., & Hart, S. D. (2022). Forecasting stalking recidivism using the guidelines for Stalking Assessment and Management (SAM). Assessment, 1-14

Davis, K. E., & Frieze, I. H. (2000). Research on stalking: What do we know and where do we go? Violence and Victims, 15, 473-487.

Davis, K. E., Swan, S. C., & Gambone, L. J. (2012). Why doesn't he just leave me alone? Persistent pursuit: A critical review of theories and evidence. Sex Roles, 66(5-6), 328-339.

Deitz, P. E., Matthews, D. B., Martell, D. A., Stewart, T. M., Hrouda, D. R., & Warren, J. (1991). Threatening and otherwise inappropriate letters to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36, 1445-1468.

Desmarais, S. L., & Singh, J. P. (2013). Risk assessment instruments validated and implemented in correctional settings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Council of State Governments Justice Center.

Douglas, K. S., & Ogloff, J. R. P. (2003). Multiple facets of risk for violence: The impact of judgmental specificity on structured decisions about violence risk.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nsic Mental Health, 2, 19-34.

Douglas, K. S., & Skeem, J. (2005). Violence risk assessment: Getting specific about being dynamic.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1, 347-383.

Dunlap, E. E., Hodell, E. C., Golding, J. M., & Wasarhaley, N. E. (2012). Mock jurors' perception of stalking: The impact of gender and expressed fear. Sex Roles, 66, 405-417.

Eke, A. W., Hilton, N. Z., Meloy, J. R., Mohandie, K., & Williams, J. (2011). Predictors of recidivism by stalkers: A nin-year follow-up of police contact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Foellmi, M. C., Rosenfeld, B., & Galietta, M. (2016). Assessing risk for recidivism in individuals convicted of stalking offenses: Predictive validity of the Guidelines for Stalking Assessment and Management.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3, 600-616.

Fox, K. A., Nobles, M. R., & Fisher, B. S. (2011). Method behind the madness: An examination of stalking measurement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6, 74-84.

Harmon, R. B., Rosner, R., & Owens, H. (1998). Sex and violence in a forensic population of obsessional harasser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236-249.

Hart, S., Cox, D., & Hare, R. D. (1995). Manual for the Psychopathy Checklist: Screening Version (PCL:SV). Toronto, Ontario, Canada: Multi Health Systems.

Hehemman, K., van Nobelen, D., Brandt, C., & McEwan, T. (2017). The reliability and predictive validity of the screening assessment for stalking and harassment(SASH). Journal of Threat Assessment and Management, 4(3), 164-177.

James, D. V., & Farnham, F. R. (2003). Stalking and serious violenc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31, 432-439.

James, D. V., & MacKenzie, R. D. (2018). Stalking and harassment. The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of human aggression: Current issues and perspectives, 171-182.

Jerath, K., Tompson, L., & Belur, J. (2022). Risk management in stalking victims: a multi-agency approach to victim advocac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7(11-12), NP8989-NP9015.

Johnson, E. F., & Thompson, C. M. (2016). Factors associated with stalking persistence. Psychology, Crime, & Law, 22(9), 879-902.

Kamphuis, J. H., Galeazzi, G. M., Fazio, L. D., Emmelkamp, P. M. G., Farnham, F., Groenen, A., James, D., & Vervaeke, G. (2005). Stalking-Perceptions and Attitudes Amongst Helping Professions. An EU Cross-National Comparison.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2(3), 215-225.

Kienlen, K. K., Birmingham, D. L., Solberg, K. B., O'Regan, J. T., & Meloy, J. R. (1997). A comparative study of psychotic and nonpsychotic stalking.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Law, 25, 317－334.

Kriminologische Zentralstelle (2016). Stellungnahme zu dem Referentenentwurf eines Gesetzes zur Verbesserung des Schutzes gegen Nachstellungen.

Kropp, P. R., & Cook, A. N. (2014). Intimate partner violence, stalking, and femicide. In J. R. Meloy & J. Hoffmann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threat assessment (pp. 178 -194).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Kropp, P. R., Hart, S. D., & Lyon, D. R. (2002). Risk assessment of stalkers: Some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9, 590-616.

Kropp, P. R., Hart, S. D., & Lyon, D. R. (2008). Guidelines for Stalking Assessment and Management (SAM). Protect International Risk and Safety Services Inc.

Kropp, P. R., Hart, S. D., Lyon, D. R., & Storey, J. E. (2011).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Guidelines for Stalking Assessment and Management.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9, 302–316.

Latessa, E. J., S. Listwan, & Koetzle, D. (2014). What Works (and Doesn't) in Reducing Recidivism. Cincinnati: Anderson Publishing.

Logan, T., & Walker, R. (2009a). Civil protective order outcomes: Violations and perceptions of effectivenes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4(4), 675-692.

Logan, T., & Walker, R. (2009b). Partner stalking: Psychological dominance or business as usual. Trauma, Violence, and Abuse, 10(3), 247-270.

Logan, T., & Walker, R. (2017). Stalking: A multidimensional framework for assessment and safety planning. Trauma, Violence, and Abuse, 18(2), 200-222.

Logan, T., Walker, R., Faragher, T., & Hoyt, W. (2009). The Kentucky Civil Protective Order Study: A rural and urban multiple perspective study of protective order violation consequences, responses, and costs (Grant No. 2005-WG-BX-0008).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Lynch, K. R. & Logan, T. (2015). Police Officers' Attitudes and Challenges With Charging Stalking. Violence and Victims, 30(6), 1037-1048.

MacKenzie, R. D., & James, D. V. (2011). Management and treatment of stalkers: Problems, options, and solution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9, 220-239.

MacKenzie, R. D., McEwan, T. E., Pathé, M.T., James, D.V., Ogloff, J.R.P., & Mullen, P.E. (2009). Stalking Risk Profile: Guidelines for assessing and

managing stalkers. Melbourne: StalkInc. & Centre for Forensic Behaviorural Science, Monash Univeristy.

MacKenzie, R. D., Mullen, P. E., Ogloff, J. R. P., McEwan, T. E., & James, D. V. (2008). Parental bonding and adult attachment styles in different types of stalker.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53(6), 1443-1449.

Marlsch, M. (2004). De wet belaging [The stalking law]. Nijmegen, The Netherlands: Ars Aequi Libri.

Marlsch, M. (2007). Stalking. Do criminalization and punishment help? Punishment & Society, 9(2), 201-209.

Marlsch, M., de Keijser, J. W., & Debets, S. E. C. (2011). Are stalkers recidivists? Repeated offending by convicted stalkers. Violence and Victims, 26(1), 3-15.

McEwan, T. E., Daffern, M., MacKenzie, R. D., & Ogloff, J. R. P. (2017). Risk factors for stalking violence, persistence, and recurrenc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 Psychology, 28(1), 38-56.

McEwan, T. E., Mullen, P. E., & MacKenzie, R. D. (2009). A study of the predictors of persistence in stalking situations. Law Human Behaviour, 33, 149-158

McEwan, T. E., Mullen, P. E., MacKenzie, R. D., & Ogloff, J. R. (2009). Violence in stalking situations. Psychological Medicine, 39, 1469-1478.

McEwan, T. E., & Pathé, M. T. (2013). Stalking. In G. Bruinsma & D. Weisburd (Eds.), Encyclopedia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pp. 5026-5038). New York, NY: Springer Verlag.

McEwan, T. E., Pathé, M., & Ogloff, J. R. P. (2011). Advances in stalking risk assessment.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9(2), 180-201.

McEwan, T. E., Shea, D. E., Daffern, M., MacKenzie, R. D., Ogloff, J.R.P., & Mullen, P. E. (2018). The reliability and predictive validity of the Stalking Risk Profile. Assessment, 25(2), 259-276.

McKeon, B., McEwan, T. E., & Luebbers, S. (2015). "It's not really stalking if you know the person": Measuring community attitudes that normalize, justify and minimise stalking.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22(2), 291-306.

Meloy, J. R. (1992). Violent attachments. Northvale, NJ: Jason Aronson.

Meloy, J. R. (1996). Stalking (obsessional following): A review of some preliminary studi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A review Journal, 1, 14—162Meloy, J. R. (1998). The psychology of stalking. In J. R. Meloy (ed.), The psychology of stalking: Clinical and forensic perspectives (pp. 1-23). San Diego: Academic Press.

Meloy, J. R. (1999a). Stalking: An old behavior, a new crime.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2(1), 85-99.

Meloy, J. R.(1999b) Erotomania, triangulation, and homicide.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44, 421-424.

Meloy, J. R. (2002) Stalking and violence. In J. Boon and L. Sheridan (Eds.) Stalking and psychosexual obsession: Psychological perspectives for prevention, policing, and treatment. West Sussex, UK: John Wiley & Sons, Ltd.

Meloy, J. R., & Felthous, A. (2011). Introduction to this issue: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stalking.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9, 139-140.

Meloy, J. R. & Gothard, S. (1995). Demographic and clinical comparison of obsessional followers and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2, 258-263.

Meloy, J. R., Rivers, L., Siegel, L., Gothard, S., Naimark, D., & Nicolini, R. (2000). A replication study of obsessional folꝉlowers and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45, 147-152.

Miller, L. (2012). Stalking: Patterns, motive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7, 495-506.

Mohandie, K., Meloy, J. R., McGowan, M. G., & Williams, J. (2006). The RECON typology of stalking: Reliability and validity based upon a large sample of North American stalkers.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51(1), 147-155.

Morey, L. C. (1991).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Morey, L. C. (2007).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2n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Mullen, P. E., Mackenzie, R., Ogloff, J. R. P., Pathe, M., McEwan, T., & Purcell, R. (2006). Assessing and managing the risks in the stalking situation. Th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34, 439–450.

Mullen, P. E. Pathé, M., & Purcell, R. (2009). Stalkers and their victims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Mullen, P. E., Pathé, M., & Purcell, R. (2000) Stalkers and their victi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ullen, P. E., Pathé, M., & Purcell, R. (2001). Stalking: New constructions of human behaviour.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5, 9–16.

Mullen, P. E., Pathé, M., Purcell, R., & Stuart, G. W. (1999). Study of stalk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8), 1244-1249.

Nijdam-Jones, A., Rosenfeld, B., Gerbrandij, J., Quick, E., & Galietta, M. (2018).Psychopathology of stalking offenders: Examining the clinical, demographic, and stalking characteristics of a community-based sampl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5(5), 712-731.

Owens, J. G. (2016). Why definitions matter: Stalking victimiza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1(12), 2196-2226.

Palarea, R., Zona, M. A., Lane, J. C., & Langhinrichsen-Rohling, J. (1999). The dangerous nature of intimate relationship stalking: Threats, violence and associated risk factor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17, 269-283.

Parkhill, A. J., Nixon, M., & McEwan, T. E. (2022). A critical analysis of stalking theory and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40, 562-583.

Patton, C. L., Nobles, M. R., & Fox, K. A. (2010). Look who's stalking: Obsessive pursuit and attachment theor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3), 282-290

Phillips, L., Quirk, R., Rosenfeld, B., & O'Connor, M. (2004). Is it Stalking?: Perceptions of Stalking among College Undergraduat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1(1), 73-96.

Purcell, R, Pathé, M., & Mullen, P. E. (2002). The prevalence and nature of stalking in the Australian community.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6(1), 114-120.

Purcell, R., Pathé, M., & Mullen, P. E. (2004). Editorial: When do repeated intrusions become stalking?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and Psychology, 15(4), 571-583.

Purcell, R., Pathe´, M., & Mullen, P. E. (2005). Association between stalking victimisation and psychiatric morbidity in a random community sampl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7, 416–420.

Quinsey, V. L., Harris, G. T., Rice, M. E., & Cormier, C. A. (2006). Violent offenders: Appraising and managing risk (2nd e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1367-000.

Racine, C., & Billick, S. (2014). Classification systems for stalking behavior. Journal of Forensic Science, 59(1), 250-254.

Rosenfeld, B. (2000). Assessment and treatment of obsessional harassment.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5, 529-549.

Rosenfeld, B. (2003). Recidivism in stalking and obsessional harassment. Law and Human Behavior, 27(3), 251–265.

Rosenfeld, B. (2004). Violence risk factors in stalking and obsessional harassment: A review and preliminary meta-analysi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1(1), 9-36.

Rosenfeld, B., Galietta, M., Foellmi, M., Coupland, S., Turner, Z., Stern, S., Wijetunga, C., Gerbrandij, J., & Ivanoff, A. (2019). Dialectical behaviour therapy (DBT) for the treatment of stalking offenders: A randomized controlled study. Law and Human Behavior, 43(4), 319–328.

Rosenfeld, B., & Harmon, R. (2002). Factors associated with violence in stalking and obsessional harassment cas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9(6), 671-691.

Rosenfeld, B., Ivanoff, A., Garcia-Mansilla, A., Martinez, R., Fava, J., & Green, D. (2007). Dialectical behaviour therapy for the treatment of stalking

offender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nsic Mental Health, 6(2), 95-103.

Schlesinger, L. B. (2002). Stalking, homicide, and catathymic process: A cas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6, 64-74

Schlesinger, L. B., & Miller, L. (2003). Learning to kill: serial, contract, and terrorist murderers. In R. S. Moser, & C. E. Franz (Eds.), Shocking violence II: Violent disaster, war, and terrorism affecting our youth (pp. 145-164).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Schmucker, M., & Lösel, F. (2011). Meta-analysis as a method of systematic reviews. The Sage Handbook of Criminological Research Methods, 425-443.

Schwalbe, C. S. (2008). A meta-analysis of juvenile risk assessment instruments: Predictive validity by gender.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5(11), 1367-1381.

Schwartz-Watts, D., & Morgan, D. W. (1998). Violent versus nonviolent stalk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26(2), 241-245.

Scott, A. J., Duff, S. C., Sheridan, L., & Rajakaruna, N. (2019). The influence of contextual information regarding the breakdown of relationships and perpetrator-target sex composition on perceptions of relational stalking. Psychology, Crime & Law, 25(4), 364-380.

Scott, A. J., Nixon, K., & Sheridan, L. (2013). The Influence of Prior Relationship on Perceptions of Stalking: A Comparison of Laypersons, Nonspecialist Police Officers, and Specialist Police Offic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0(12), 1434-1448.

Shea, D. E., McEwan, T. E., Strand, S. J. M., & Ogloff, J. R. P. (2018). The reliability and predictive validity of the Guidelines for Stalking Assessment and Management(SAM). Psychological Assessment, 30(11), 1409-1420.

Sheridan, L. & Davies, G. M. (2001). Violence and the prior victim-stalker relationship.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11(2), 102-116.

Sheridan, L. P., & Boon, J. (2002). Stalker typologies: Implications for law enforcement. In J. Boone, & L. Sheridan (Eds.), Stalking and psychological obsession: Psychological perspectives for prevention, policing, and treatment (pp. 63-82). Chichester, UK: Wiley.

Sheridan, L., Arianayagam, J., & Chan, H. C. (2019).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intrusive behavior and stalking within a culture. Psychology, Crime & Law, 25(4), 381-395.

Sheridan, L., Bendlin, M., & House, P. (2021). Stalkers: Specialists versus generalis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0.

Sinclair, H. C. (2010). Stalking Myth-Attributions: Examining the Role of Individual and Contextual Variables on Attributions in Unwanted Pursuit Scenarios. Sex Roles, 66, 378-391.

Sinclair, H. C. (2012). Stalking Myth-Attributions: Examining the Role of Individual and Contextual Variables on Attributions in Unwanted Pursuit Scenarios. Sex Roles, 66, 378-391.

Spitzberg, B. H., & Cupach, W. R. (2007). The state of the art of stalking: Taking stock of the emergging literatur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2, 64-86

Storey, J. E., Hart, S. D., Meloy, J. R., & Reavis, J. A. (2009). Psychopathy and stalking. Law and Human Behavior, 33, 237-246.

Strand, S., & McEwan, T. E. (2012). Violence among female stalkers. Psychological Medicine, 42(3), 545-555.

Strobl, R. (2004). Constructing the Victim: Theoretical Reflections and Empirical Examples.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11(2-3), 295-311.

Tjaden, P. (2009). Stalking policies and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A twenty year retrospective. European Journal of Criminal Policy Research, 15, 261-278.

Tjaden, P., & Thoennes, N. (1998). Stalking in America: Findings from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Vincent, G. M. (2016). Using risk assessment and risk-needs-responsivity principles in juvenile justice. Psychiatry Issue Brief, 13(2), 1-3.

Vincent, G. M., Guy, L. S., & Grisso, T. (2012). Risk Assessment in Juvenile Justice: A Guidebook for Implementation. New York, NY: Models for Change.

White, E., Longpré, N., & Stefanska, E. B. (2022). Stalking behaviors presented by ex-intimate stalkers: A victim's perspectiv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7(7-8), NP5074-NP5093.

Zona, M. A., Sharma, K. K., & Lane, J. (1993). A comparative study of erotomanic and obsessional subjects in a forensic sample. Journal of Forensic Science, 38(4), 894-903.

3. 기타 국내 자료

경인일보, "스토킹재범 우려 때도 전자발찌 부착..보호관찰 인력 부족해 관리부실 지적", 2023년 10월 22일자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1021010003763, 2023.11.1. 최종검색).

권인숙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법원 스토킹 잠정조치 실효성 강화 필요", 2022년 10월 4일자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iskwon317&logNo=222891615034&categoryNo=14&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2023.9.30., 최종검색).

노컷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검찰과 스토킹 대응 협의체 신설…긴밀히 논의", 2022. 9. 19.자 (https://m.oheadline.com/articles/wKzj4E5mjaQcgYODfL_YvQ==, 2023.9.20. 최종검색).

뉴스원, "추경호,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법 공포", 2023년 7월 3일자(https://www.news1.kr/articles/5095742, 2023.7.5. 최종검색).

뉴스인사이드, "강서구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딸의 처절한 증언 보니? 보복이 두렵다", 2018년 12월 21일자 (http://www.news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515223, 2023.9.10. 최종검색).

문화일보, "신당역 화장실서 옛동료 '스토킹 살인'…1심 선고 하루 앞두고 범행", 2022

년 9월 15일자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91501031030316002, 2023.8.30. 최종검색).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제102호)」에 대한 검토보고, p.7.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B6L0F6K0L3Y1L7B4M5Y5N5Z9W0B7, 2023.9.20. 최종검색).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 각국의 스토킹범죄 규정", 2022년 1월 19일자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9820&AST_SEQ=3891, 2023.6.20. 최종검색).

안전신문, "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 최대 15일 걸려..잠정조치 4호 승인율은 49.1%", 2022년 10월 5일자(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78, 2023.9.20. 최종검색).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더욱 강화된다.", 2021년 4월 28일자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753, 2023.9.10. 최종검색).

여성신문, "스토킹 해외에서 어떻게 막을까", 2015년 7월 18일자(https://www.women 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097, 2023.6.20. 최종검색).

연합뉴스, "김태현, 범행 1주일 전부터 준비…가족 살해도 계획", 2021년 4월 9일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318191, 2023년 8월 31일 최종검색).

연합뉴스,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유족, 국가배상청구소송", 2021년 10월 26일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697.html, 2023년 9월 10일 최종검색).

연합뉴스, 경찰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판단기준 개선… 내달 전국 시행, 2022. 9. 19.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8056000004, 2023.9.10. 최종검색).

용혜인 의원실, [보도자료] "신당역 스토킹 1년…용혜인 스토킹범죄 폭증하는데 구속율은 떨어져", 2023년 9월 14일자(https://www.basicincomeparty.kr/news/briefing?mod=document&pageid=1&keyword=%EC%8A%A4%ED%86%A0%ED%82%B9&uid=3488, 2023.9.20. 최종검색).

용혜인 의원실, [보도자료]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변보호 중 살해된 피해자 8명…용혜인 피해자전담인력 및 예산 확충해야", 2023년 10월 12일자(https://www.basic

incomeparty.kr/news/briefing?mod=document&pageid=1&keyword=%EC%8A%A4%ED%86%A0%ED%82%B9&uid=3682, 2023.11.1. 최종검색).

한국일보, "경찰1명이 100건…신변보호 요청 급증에도 전담인력은 태부족", 2022년 9월 26일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511260000117?did=NA, 2023.9.10. 최종검색).

4. 기타 국외 자료

Budesministerium der Justiz(2020), Evaluierungsbericht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zur Neufassung des § 238 Strafgesetzbuch durch das Gesetz zur Verbesserung des Schutzes gegen Nachstellungen vom 1. März 2017 zur Vorlage an den Deutschen Bundestag (https://www.bmj.de/SharedDocs/Downloads/DE/Service/Fachpublikationen/Evaluierung_238StGB.pdf?__blob=publicationFile&v=1).

Budesministerium der Justiz(https://www.gesetze-im-internet.de/stgb/__238.html).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sowie des Bundesamts für Justiz (https://www.gesetze-im-internet.de/stgb/__238.html, 2023.6.20. 최종검색).

Cambridge University Press, German Anti-Stalking Legislation and Its Recent Changes (https://www.cambridge.org/core/journals/german-law-journal/article/german-antistalking-legislation-and-its-recent-changes/E2C3E52DEBE156865F601981C4D6282A).

Der neue Straftatbestand der Nachstellung(https://www.fhr.nrw.de/infos/publikationen/fachbeitraege/aktuelle_beitraege/amtsanwaelte/OAA_Blum_Der_neue_Straftatbestand.pdf).

Deutscher Bundestag(2021), Bericht des Ausschusses für Recht und Verbraucherschutz (6. Ausschuss), Drucksache 19/31111, S.6.(https://dserver.bundestag.de/btd/19/311/1931111.pdf, 2023.9.20. 최종검색).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4/28/contents, 2023.9.20. 최종검색).

Ein Service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sowie des Bundesamts für Justiz (www.gesetze-im-internet.de).

Home office(2021), Stalking protection orders: Statutory guidance for the polic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51354/SPOs_statutory_guidance_English_with_changes__002_.pdf).

Home Office(2023), 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DVDS) Statutory Guidance, pp.3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162788/Domestic_Violence_Disclosure_Scheme.pdf, 2023.10.20. 최종검색).

Jusline(https://www.jusline.at/gesetz/stgb/paragraf/107a, 2023.9.10. 최종검색).

Stalking Protection Act 2019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9/9/crossheading/stalking-protection-orders/enacted).

Strafgesetzbuch(https://dejure.org/gesetze/StGB/238.html).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2020), Stalking protection orders(https://www.cps.gov.uk/legal-guidance/stalking-protection-orders).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2AC0100000081, 2023.9.20. 최종검색).

毎日新聞, “改正ストーカー規制法成立·承諾得ないGPSでの位置確認など禁止”, 2021年5月18日(https://mainichi.jp/articles/20210518/k00/00m/040/199000c).

일본법령 검색 사이트(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2AC0100000081, 2023.9.20. 최종검색).

Abstract

Understanding and Responding to Stalking

Jeongsook Yoon · Seunghyun Lee · Minkyung Han · Jihyun Kim

1. Characteristics of Stalking Offenders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alking Offenders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stalking offenders based on investigative and court records (N=112), the following points are summarized. Firstly, looking at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majority of individuals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stalking violations were men, with the highest prevalence in the 40-50 age group and an average age of 45.63 years. About 42% of them were not maintaining their marital status at the time of the incident, with most (65.2%) living alone.

In terms of education, 66.1% had graduated from high school or higher, but 76.8% were unemployed or had temporary jobs. A significant portion had a criminal record, with an average of 11.28 prior offenses, indicating challenges in obtaining normal employment due to a high criminal history or frequent incarceration. Among the offenders, 52.7% reported chronic alcohol abuse, and 41.1% had a history of mental illness, highlighting serious issues related to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2) Characteristics of Stalking Crime Incidents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cases resulting in imprisonment under stalking laws, the most frequently observed types of stalking behaviors were ‘watching’

and ‘message delivery’, followed by ‘approach’. The average duration of stalking was 8.63 months, with 15.2% lasting over a year. In 67% of stalking cases, violent crimes were associated, with physical assault being the most commonly reported, along with other offenses like (specific) damage to property, filming using cameras, various forms of sexual assault, threats, and confinement.

Out of the total 112 cases, 73.2%(82 cases) received one or more protective measures for the victims, including provisional measures, emergency measures, and urgent measures. Only 22.3% of cases with protective measures did not violate them, and provisional measure violations were the most frequent. Sentences for stalking crimes involved 67.9% of offenders receiving imprisonment for 1 year or more but less than 3 years, along with mandatory completion of stalking treatment programs (40 or 80 hours) in almost all cases, excluding two.

3) Characteristics of Stalking Victims

Summarizing the characteristics of stalking victims, the majority of cases involved a single female victim, with the highest proportion in their 40s and 50s. The average age of victims was 43.33 years, similar to the average age of offenders (45.63 years).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alkers and victims, 61.6% of cases targeted ‘former spouses or lovers’, 17% involved ‘acquaintances (friends, colleagues)’, and 11.6% targeted ‘casual acquaintances’.

4) Characteristics of Stalking Types

Utilizing Mullen's stalking type classification, analysis revealed that 67.9% of the total sample fell under the category of ‘rejected’. This type exhibited the highest likelihood (80.3%) of using violence during stalking incidents, emphasizing their higher risk of resorting to violence compared to other types.

Assessing the presence of violence in stalking for each type, ‘rejected’ individuals showed the highest rate (80.3%), followed by approximately half for ‘intimacy seekers’, around one-third for ‘incompetent suitors’, and about one-fourth for

‘resentful individuals’, confirming that the ‘rejected’ type had the highest tendency to use violence against the victims.

5) Evaluation of the Risk of Stalking Crimes

Using the Stalking Assessment and Management(SAM) based on information from investigative and court records, the evaluation of the risk indicated that 69.6% of all cases were assessed as persistent stalking, with 64.3% experiencing an escalation in stalking. This suggests a substantial need for continuous risk management in handling these cases. Significant risk factors among perpetrators included ‘anger’, ‘antisocial lifestyle’, and ‘lack of remorse’. Vulnerability factors among victims included ‘unstable emotions’, ‘unsafe living conditions’, ‘relationship issues’, and ‘inconsistent behavior towards the perpetrator’.

Examining the total risk assessment scores for each subtype, the vulnerability factor score for ‘rejected’ victim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for other types. This implies that the risk of ‘rejected’ type incidents is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types, highlighting it as the most dangerous category. Factors influencing this higher risk include victim vulnerability factors, such as the victim's inconsistent attitudes or behaviors, exposure to the perpetrator in their living environment, or more significant negative impacts of stalking in intimate relationships, leading to a lower ability for victims to cope.

6)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talking Offenders

Stalking offenders exhibited the most significant problems in clinical domains, including depression, delusion, borderline features, antisocial features, alcohol problems, aggression, suicidal thoughts, stress, and non-support. Except for some areas, clinical intervention with a score of 65T or higher was urgently needed for about one in four individuals,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psychological intervention.

Interpreting stalking offenders based on subtypes, the ‘rejected’ type appeared

to be individuals with dominance and warmth characteristics close to the average for the adult sample, generally capable of interacting with others. In contrast, stalking offenders who were 'non-rejected' were individuals with a lower level of control and independence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an the general population, showing tendencies for obsession, delusion, and withdrawal depending on the psychiatric situation. Regarding clinical problems, non-rejected stalking offenders might show a higher level of issues in neurosis or psychosis compared to rejected stalkers. The non-rejected group was likely to experience frequent feelings of sadness or discomfort, lack interest in daily activities, and have decreased physical function and activity, as well as reduced sexual interest. This group might include shy individuals who find it challenging to actively pursue the romantic relationship. Additionally, they tend to perceive themselves as unfairly treated, experiencing humiliation and disdain in interpersonal situations, and might attribute their misfortune to others. Furthermore, individuals with social isolation tendencies in uncomfortable social situations are likely to be significantly included in this group. In contrast, rejected stalkers might exhibit more problems related to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alcohol issues, aggression, etc., suggesting a higher likelihood of possessing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haracteristics and expressing hostility, anger, and antagonism verbally and physically.

7) Stalking Offender's Life Development

Analyzing the comprehensive life development of stalking offenders based on the main contents of in-depth interviews, first, it was often observed that the childhood and family environment of stalking criminals involved unstable attachment formation with caregivers during childhood an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Many individuals grew up in either extremely unfavorable family environments or dysfunctional states. Those who did not feel a sense of stability within their families often experienced adolescence marked by running away or escaping. In addition, during their adolescent years, many engaged in maladaptive

lifestyles, such as unwanted pregnancies, early marriages, experiences of organizational violence, and involvement in illicit activities, within deviant peer groups.

Concerning the socio-affective functions of stalking offenders, impulsivity, difficulty in anger management, physical fights, and a tendency towards violence were identified as major issues. Problems such as introverted tendencies, suspicion towards others, and psychological issues were prominent, particularly among incompetent suitor-type offenders. Due to their failure to establish healthy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distorted perceptions of women were common. Some engaged in coercive behavior to commit sexual assault or to incapacitate rejection from their targets.

Throughout the progression of stalking crimes, recurring themes included the repetition of conflict situations, violent reactions to these conflicts, and the mediation of alcohol. Emotions such as betrayal in response to the victim's request for separation, a sense of injustice, resentment, or suspicion of the victim's infidelity were identified as factors that intensified the desire for revenge against the victim. In cases of the rejection subtype, emotions of revenge and lingering feelings of attachment were frequently present, while in cases of the inept subtype, loneliness, sexual desires, and unrealistic (delusional) thoughts about the other person's affection towards them played a role.

2. Improving the Protection of Stalking Victims at the Police Stage

1) Status and Issues of Victim Support by Local Police Officers

In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stalking victims at the police stage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Stalking Punishment Act on July 11, 2023,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Police officers perceived issues in stalking victim protection differently based on their roles. Local police officers felt limitations in taking active measures at the scene when the

victim did not wish for the perpetrator's punishment, even with the enforcement and amend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However, they positively recognized the removal of the provision regarding the unpunishable crimes without the victim's consent, as it allowed for action without being dependent on the victim's consent. This positive perception differed from that of investigators.

Although local police officers are becoming more familiar with the application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here is still confusion with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 in busy situations of reporting processing. The use of the emergency measure assessment form was not well-established among local police officers for decision-making in emergency situations.

2) Status and Issues of Victim Support by Stalking Specialized Police Officers

The main work-related stress for stalking specialized police officers is related to discussions on measure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stalking victims with local police officers, investigators, and relevant institutions such as police and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s. As stalking specialized police officers lack coercive powers in investigations, their tasks related to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stalking victims are based on the victim's consent. Therefore, when the victim does not consent, their ability to take measures is limited. Additional tasks, such as counseling for perpetrators or coordination with private protective agencies, have been identified as new challenges.

3) Status and Issues of Victim Support by Investigators

Investigators often experience cases where applications for provisional measures are rejected under the Stalking Punishment Act. Unlike applications for custody or arrest warrants, post-approval by the court is not common for emergency measures. In this context, some suggest that direct police application for post-approval could be more efficient for procedural efficiency and prompt victim protection.

Investigators perceive the deletion of the provision regarding the unpunishable crimes without the victim's consent as the most noticeable change in the Stalking Punishment Act amendment. While acknowledging the positive aspect of raising awareness among stalkers and the public, they also express concerns about the increased likelihood of prosecution, leading to a more thorough review of the existence of stalking in each case.

4) Police Officers' Perception of Stalking Punishment Act Amendments

The study examined police officers' awareness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amendments. Among the eight major amendments, the deletion of the provision regarding crimes without the victim's consent was most significantly felt by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stalking-related tasks. Over half of the participating police officers responded positively to all eight Stalking Punishment Act amendments, with the "strengthening of sanctions for non-compliance with emergency measures" receiving the highest response rate (83.69%, 472 officers). The deletion of the provision regarding crimes without the victim's consen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valuation among the three groups of police officers. Specifically, 76.30% of local police officers and 80.82% of stalking specialized police officers evaluated the deletion positively, while only 53.79% of female investigators thought it would be helpful for stalking victim protection. The group of female investigators tended to evaluate the protective effec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amendment the lowest among the three groups.

Although not included in the recent Stalking Prevention Act amendments, the introduction of a "victim protection order system" was evaluated as the most helpful measure for enhancing victim protection (83.69%, 472 officers). The opinions of these police officers, who are the first to encounter stalking victims, could be valuable for future amendments to the Stalking Prevention Act.

3. Status and Challenges of Stalking Legislation

1) Legislative Background and Key Provisions of the Stalking Legislation

The Stalking Legislation defines “stalking behavior” and “stalking crime” separately, categorizing stalking behavior into five types. Stalking behavior is defined as “engaging in behavior that falls under the stalking type towards the other party, their cohabitant, or family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causing the other party to feel anxiety or fear, going against their will.” Stalking becomes a crime when persistence or repetition is added to this behavior. The law establishes special procedural regulations for handling stalking cases (emergency measures, urgent emergency measures, provisional measures) and introduces provisions for victim-focused investigations and penalties for stalking crimes. Despite the enactment of the Stalking Legislation, the law was revised in July 2023 due to ambiguous interpretations of stalking behavior and shortcomings in victim protection. The amended law strengthens regulations on online stalking, enhances the effectiveness of protective measures through methods such as attaching location tracking devices, and introduces new provisions such as notification of changes or cancellations of provisional measures for victims.

2) Controversies Regarding the Constituent Elements of Stalking Crimes

Concerning the constituent elements of stalking crimes, there are issues with the description method of stalking behavior types. The enumerated method of describing stalking behavior types fails to encompass various stalking types, and there is a problem with the law not being able to address evolving stalking behavior types. Another controversy involves the strict criteria for determining stalking behavior and crimes. The requirement of “going against the other party's will” implies intent, making it challenging to judge stalking crimes with unclear perpetrators or imprecise victim information. Since stalking is about causing “anxiety” or “fear”, actual feelings of anxiety or fear must be induced, creating difficulty in cases where it is challenging to prove persistence over a certain period.

3) Controversies Regarding the Stalking Case Processing Procedure

Under the current Stalking Legislation, when stalking occurs, emergency measures (Article 3), urgent emergency measures (Article 4), and provisional measures (Article 9) can be implemented. However, the police-prosecutor-court approval process for these measures causes delays in implementing protective measures due to the difficulty in determining all elements of stalking behavior on the spot. Urgent emergency measures mainly focus on restraining offline actions, making them unsuitable for responding to online stalking. There have been suggestions to simplify the post-approval process for urgent emergency measures. In Japan, they have streamlined the process through warning and protection orders, providing a potential reference. Although provisional measures have seen some improvements through recent legal amendments, there is still a need for enhancement, considering the low approval rate and the limited types of provisional measures available for quick intervention.

4) Controversi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Stalking Victims

The Stalking Legislation restricts the concept of victims to those suffering "direct" harm, creating a problem as it limits protection to cases where there is a direct victim. Due to this limitation, situations where stalking harm occurs through third parties or where individuals closely related to the victim, such as coworkers, cannot receive protection remain unregulated. While the amended Stalking Legislation introduced provisions for protecting the personal safety of victims, prohibiting the disclosure of the victim's identity and private life, and providing special arrangements for victim attorneys, there are issues in police practices as they restrict the scope of personal safety measures to the "victim" only. The legislation lacks provisions for protecting victim information, which is crucial considering the nature of stalking crimes, where perpetrators and victims often know each other. It may be worthwhile to refer to provisions in the Sexual Violence Crime Act that apply regulations similar to the witness protection law, allowing the

o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hibiting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granting access to identity card management.

5) Controversies Regarding Stalking Crime Penal Provisions

The punishment for stalking crimes is divided into simple stalking acts and carrying weapons during stalking. Apart from these, most provisions deal with the penalties for non-compliance with measure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Austria, various types of behaviors are subject to aggravated penalties in stalking crimes. There is a need for regulations that impose aggravated penalties for cases resulting in death or injury, actions against minors, and prolonged stalking. The recent legal revision abolished the unpunishable crime without the victim's consent. Since the victim's opinion is not solicited, providing opportunities for the victim to testify in the investigative and trial process is necessary. Given the emphasis on non-contact with the victim, there should be opportunities for reconciliation attempts through the criminal settlement system.

4. Strengthening Measures Against Stalking Crimes

1)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the Four Criminogenic Factors of Stalking

Upon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investigative trial records, risk assessment, psychological tests, and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in this study, the criminogenic factors of stalking perpetrators can be summarized into four major categories. Firstly, cognitive distortion plays a significant role. The criminal acts of stalking offenders often stem from distorted thoughts and attitudes that support the crimes, involving persistent approaches or contacts against the victim's will, based on a mindset that justifies their actions, even if they acknowledge the actions as crimes. The cognitive distortions during stalking incidents likely contribute to disinhibition, allowing the crimes to occur.

Socio-affective functioning refers to skills related to maintain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dequately, such as forming intimacy, communication skills, and empathy. Problems in the Socio-affective functioning of stalking perpetrators appear to vary according to specific subtypes. Non-rejected stalkers generally experience frequent emotional distress, such as sadness or discomfort, lack interest in daily activities, have lower levels of physical function and activity, and exhibit a diminished sexual interest. Moreover, they tend to have paranoid tendencies, feeling insulted and humiliated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contrast, rejected stalkers, specifically those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raits, may exhibit more issues related to antisocial behavior, substance abuse, aggression, etc.

The lack of self-regulation skills is linked to inappropriate coping skills under stressful situations. Notably, there is a high prevalence of substance abuse, especially alcohol, categorized as maladaptive coping methods under stressful situations. In stalking cases, instances of violent confrontations during conflict situations are often associated with alcohol use. The perpetrators themselves recognize the deficiency in their self-management skills, linking the problem to excessive reliance on alcohol during stressful situations.

By using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 specific patterns of psychopathology among these individuals were identified, with the most significant issues found in areas such as depression, delusions, borderline traits, antisocial traits, alcohol-related problems, and suicidal ideation. Notably, non-rejected stalkers exhibit higher levels of depressive symptoms, emotional distress, and suicidal ideation, indicating a potential association with depression.

The psychopathological issues of stalking perpetrators influence their stalking behavior, impair emotional regulation, and weaken their coping abilities under stress. Factors such as suicidal thoughts linked to depression or plans for violent and homicidal acts associated with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should be considered as explicit risk factors for stalking perpetrators in risk management.

2) Approach to Stalking Perpetrator Risk Management

Effectively managing the risk factors of stalking perpetrators during the investigation, trial, or probation stages, when they are not in custody but within society, is crucial. Risk management involves protective measures for the victim's safety, such as restraining orders or monitoring through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s to trace or control the perpetrator's movements. However, equally important is the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the criminogenic factors of stalking perpetrators and the development of a risk management plan based on these factors.

To facilitate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risk assessment tools, a classification of stalking subtypes is necessary. The purpose of subtype classification is to better understand stalking behavior and identify behavior patterns among subgroups. Both previous research findings and the empirical investigation in this study suggest four major subtypes of stalking: 1) Rejected Stalker, 2) Intimacy Seeker, 3) Incompetent Suitor, and 4) Resentful Stalker. If practitioners encounter difficulty classifying all four types, it is recommended to at least distinguish between 1) Rejected Stalker and 2) Non-Rejected Stalker (Intimacy Seeker, Incompetent Suitor, Resentful Stalker) for risk management purposes. Non-rejected stalkers or intimacy pursuers, in particular, pose a higher risk of violence as they engage in stalking behaviors against intimate partners or acquaintances rather than strangers.

After confirming the subtype of stalking, the risk assessment process involves using stalking risk assessment tools to evaluate each risk factor, calculate scores, and present risk levels. Risk factors can be assessed by practitioners, such as police or probation officers, based on investigation, trial records, or interview record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the stalking perpetrator and the victim, as well as the specifics of the case, must be systematically evaluated, with scores calculated for each area. The assignment of risk levels can be subjective, either using the total risk score or allowing experienced assessors to allocate risk levels based on their judgment.

Calculating risk levels is essential for understanding the severity of the case, but the primary focus should be on monitoring how each risk factor changes over regular assessments and developing appropriate risk management plans accordingly. Practitioners should collaborate across various agencies, including law enforcement and victim support organizations, to share risk management plans, ensuring a coordinated effort in managing stalking cases.

Given the unpredictable nature of stalking incidents, with perpetrators' behavior being highly variable during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sses, regular risk assessments are necessary. For high-risk cases, assessments should be conducted at least every 1-2 months or more frequently if the risk is particularly elevated.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rejected subtype (those who have been rejected) in terms of imminent violence and the intimacy pursuer subtype in terms of the ongoing nature of the case. Risk factors should be periodically evaluated to determine if the stalking incidents are getting more violent or if tension levels are escalating.

During risk factor assessment, it is crucial to check for the presence of violence in the stalking case. Factors indicating a potential escalation to violence include high levels of anger on the perpetrator's side, ongoing threats to the victim, a history of substance abuse, and persistent symptoms of antisocial 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s. From the victim's perspective, an unsafe living environment exposing the victim's whereabouts or inconsistent attitudes and behaviors in dealing with the perpetrator may also signal an increased risk of violating protective measures. In such cases, close monitoring and heightened surveillance levels are necessary, focusing on maintaining victim safety.

3) Specialized Psychological Intervention for Stalking Offenders

Psychological issues discussed as triggers for stalking offenders' criminal tendencies should be addressed as quickly as possible. Especially when the offender is undergoing investigation or trial while not in custody, psychological intervention

to forcibly control their criminal intent is necessary to prevent additional harm to the victim. While voluntary intervention is preferable, the nature of stalking offenders, characterized by cognitive distortions, may lead to a lack of self-awareness and even support or justification of their crimes. Therefore, at the police stage, it is essential to enforce psychological intervention through measures like the introduction of "counseling delegation" for provisional measures. In the offender's post-conviction stage (probation, correction, etc.), including psychoeducation orders or completion orders of psychological treatment, psychological intervention is crucial for preventing recidivism.

Whether psychological intervention for stalking offenders occurs at the police, probation, or correction stages, it is important to conceptualize psychological issues based on the four major areas of stalking crimes and evaluate and manage them as a case.

4) Improvement Measures for Stalking Victim Protection at the Police Stage

In comparison to the application for detention or arrest warrants, emergency measures usually go through the prosecutor's request and subsequent court approval, with changes or rejections being rare in practice.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speed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t is suggested to allow the police to directly request post-approval from the court for emergency measures, especially in cases where access prohibition is unavoidable or there are justifiable reasons for exceptions. To specify conditions for establishing access prohibition, an additional criterion of "without justifiable reason" is recommended. Introducing a victim protection order system, where victims can directly request court protection orders for their safety, separate from the offender's criminal proceedings, is deemed necessary.

5)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he current Stalking Punishment Act distinguishes between "stalking behavior"

and “stalking crime”, requiring proof of five conditions: acting against the other person's will, without justifiable reason, falling into seven specified types of behaviors, causing fear or distress, and being continuous or repetitive. As meeting all five conditions for stalking crime is challenging, there is a need to review and refine the content to better address the characteristics of stalking crimes.

1) Change the condition “against the other person's will” to “without the other person's consent” to address the difficulty in confirming the other person's will and the potential disparity in perceptions. 2) Include additional stalking behavior types, such as applying for services for the other person or committing animal cruelty against the other person's pets or service animals. 3) Introduce a catch-all provision like Germany's, covering behaviors similar to those listed. 4) Expand the concept of “the other person” to include those closely related, such as family, cohabitants, and coworkers, for effective protection. 5) Remove the term “continuous” and incorporate it into the aggravated punishment clause to address the repetition and continuity within the framework of aggravated punishment.

To ensure swift response and application of emergency measures, improvements are needed in procedural steps. 1) Remove the “with a likelihood of continuous conduct” from the emergency measures criteria. 2) Add “prohibition of access via mail” to the types of emergency measures. 3) Include the police in the notification recipients for changes in provisional measures since they can promptly respond to the situation.

For stalking offenders with mental health issues or a history of alcohol abuse, additional sanctions like “hospitalization or assignment to other medical facilities” and “counseling delegation to counseling centers” should be introduced. Finally, it is recommended that we should expand the concept of the victim to include those closely related, introduce a victim protection order system, and strength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r the victim in the Stalking Punishment Act.

부록

1. 수사재판기록조사지

스토킹사건 수사재판기록조사 코딩지

대상자 번호 _____

조사자 ID _____

I. 가해자 사회인구학적 정보		
1	성별	①남자 ②여자
2	나이	_____세
3	직업	_____
4	월수입	_____
5	혼인상태	①미혼 ②기혼 ③동거 ④이혼(별거) ⑤사별 ⑥기타
6	동거인 유형	①배우자 ②부모 ③형제 ④자녀__명 ⑤혼자 거주 ⑥기타
7	만성적인 약물 혹은 음주 남용 여부	①없음 ②있음(사용 약물 등 종류_____) ③확인 불가
8	과거 정신질환 이력	①없음 ②있음(병명:_____) ③확인 불가
9	전과 이력	①있음 ___횟수 ②없음
II. 범죄개요		
1	사건번호 (판결문기준)	연도_____ 번호_____
2	죄명1 (기소범죄명 기준)	_____
3	죄명2	_____
4	죄명3	_____
5	죄명4	_____
6	스토킹유형 (Mullen 등)	①거절당한 자(rejected) ②친밀관계 추구자(intimacy seeker) ③무능한 구애자(incompetent suitor) ④분개한 자(resentful) ⑤성적 약탈자(sexual predator)

7	스토킹처벌법 상의 행위 유형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⑥기타 처벌법 상에 없는 행위_____		
8	스토킹 시 (성)폭력범죄 동반여부	①동반(구체적 유형_____) ②비동반		
9	스토킹 지속기간 (기록기준)	_____ 년 _____개월 _____일		
10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조치 부과	①긴급응급조치 ②응급조치 ③잠정조치		
11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여부	①긴급응급조치 위반 ②응급조치 위반 ③잠정조치 위반 ④위반하지 않음		
12	판결(선고)과정 및 형량	①1심: _개월	②2심: ____개월	③3심:_____개월
13	추가 처분 부과	①이수명령_____(시간) ②수강명령_____(시간) ③전자감독_____(년) ④기타 _____		
III. 피해자 정보				
1	피해자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③모름		
2	피해자 나이	_____세		
3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①모르는 사람/불특정 ②일면식 있는 사람 ③잘 아는 사람(친구, 직장 내 지인 등)(구체적 작성____) ④현재 부부, 연인 ⑤과거 부부, 연인 ⑥가족(부부제외), 친척 등 ⑦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이 ⑧유명인(정치인, 연예인, 스포츠인 등) ⑨기타(구체적으로 작성_____)		
4	피해자 수	_____명		

IV. SAM 코딩 및 사건 특이사항 등 기록
1. 별지의 SAM을 코딩하세요. 2. 수사재판기록상, 스토킹 사건이나 가해자 특이사항을 기록하세요. 3. 추후 심층면담 등에서 질문하거나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 기입하세요.

2. 심층면담질문지

스토킹사범 심층면담 질문지

기관명		연구참여자	CODE: 001
면담일	2023. . .	면담시간	: ~ :
면담자			

도입질문-라포형성, 질문 이해력 간단히 확인

-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어제 잠은 잘 주무셨나요? 몸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 교도소에서 생활한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생활은 전반적으로 어떠한가요? 불편함과 어려움은 없나요? 혹시 약 드시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무엇 때문에 약 먹는지 질문하고, 특히 정신과 약물 복용 여부 확인)

- 혹시 스토킹 범죄가 어떤건 지 아세요? 어떤 일로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아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럼, 본인 사건이 스토킹범죄 사건이라고 생각하세요?

- (도입정리-명료화) 오늘 면담하시게 된 이유가 스토킹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스토킹범죄에 집중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불편한 사항은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최대한 '**솔직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연구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어린 시절 및 범죄 동기

- (스토킹) 사건이 있을 무렵, 평소 생활은 어떠했나요? 직업은 있었나요? 사귀던 사람이 있었나요? 부모나 가족 등과 사이는 어떠했나요?

- (어린 시절) 어렸을 때,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둘 다)과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부모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세요?

- (애착의 형태) 어렸을 때 혹은 청소년기에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였다거나, 자주 혼을 났다거나, 폭력을 당했던 적이 있나요?

- (가정폭력)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주 싸우시거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 (성격) 본인의 성격이 어땠던 것 같아요? 특히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어떠했나요? 다른 사람을 의심하거나 다른 사람이 필요없다고 느끼는 편인가요? 고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편인가요? 혹시 이성을 만나는 게 불편하거나 다가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 (감정조절) 혹시 피해자나 아니면 누군가를 생각하면 화를 참기 힘든 적이 있나요? 분노감이나 원한의 감정이 들면 바로 분풀이하고 싶은 적이 있나요? 혹시 분노조절이 잘 안 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나요? 평소 싸움에 휘말리는 편인가요?

- (여성에 대한 생각) 여성은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히 표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여성은 남성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좋아하는 여성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게 두려운가요? 거절을 당할 경우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거절할 경우 화가 많이 나나요?

2. 스토킹범죄 진행과정
(사건개요에 대한 예시 질문, 대상자의 반응에 따라 완급 조절)

- 사건이 발생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 당시 피해여성이 사귀던 사람인가요? 모르는 사람인가요? (사귀는 사람의 경우) 사귀던 사람이 헤어지자고 했나요? 헤어지자고 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런 기분

과 사건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피해여성이 모르는 사람의 경우) 피해여성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피해여성이 뭔가 필요로 한 게 있었나요? 혹시 성적 이야기를 하였나요?

- 피해여성에게 합의를 요구하지는 않았나요?
- 경찰의 피해자보호조치를 알고 있었나요? 위반한 적이 있나요? 왜 위반했나요?
- 스토킹 처벌법을 왜 위반했는지 알고 있나요?

3. 피해자에 대한 인식

-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

4. 스토킹 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교정시설에서 하고 있는 교육(심리치료)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참여경험이 있다면, 열심히 참여했나요? 혹시 가기 싫거나 지루하지는 않았나요? 강사는 어떠했어요? 교육생들 분위기는 어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도움이 되지 않았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 다 질문) 본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출소하면 재범안할 자신있나요? 그럼, 재범을 막기 위해 교육에서 뭐를 배우고 싶어요? 심리치료프로그램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까요?

-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 다 질문) 비슷한 사건을 겪은 다른 수용자들에게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기 위해 어떤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까요?

면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용생활 잘 마무리 하시고
출소 이후에 본인이 계획한 대로 좋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3. 경찰 대상 설문지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방안 강화]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3년 기본연구과제로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방안 강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경험하고 느낀 바를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신다면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적인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어 설문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구책임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정숙 선임연구위원
(yoonjsk@kicj.re.kr)
외부공동연구자: 경찰대학 한민경 교수(m.han@police.ac.kr)

* 지역경찰관, 스토킹전담경찰관, 여청수사관인 경우에 한해 설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설문조사에는 10~15분 가량 소요됩니다.

1-1 2023년 7월 11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평소 스토킹 관련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다음의 스토킹처벌법개정사항을 **어느 정도 체감**하십니까?

항목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	별로 체감하지 못한다	약간 체감한다	매우 체감한다	잘 모르겠다
1) 반의사불벌죄 삭제	①	②	③	④	⑤
2) 스토킹행위 유형 (제2호 제1호 바목 및 사목) 추가	①	②	③	④	⑤
3) 응급조치 시 처벌 서면경고	①	②	③	④	⑤
4)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취소· 변경·미신청 시 통지·고지	①	②	③	④	⑤
5)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 연장·변경·취소 신청	①	②	③	④	⑤
6) 잠정조치 기간 연장	①	②	③	④	⑤
7)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제재 강화	①	②	③	④	⑤
8)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잘 모르겠다
1) 반의사불벌죄 삭제	①	②	③	④	⑤
2) 스토킹행위 유형 (제2호 제1호 바목 및 사목) 추가	①	②	③	④	⑤
3) 응급조치 시 처벌 서면경고	①	②	③	④	⑤
4)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취소· 변경·미신청 시 통지·고지	①	②	③	④	⑤
5)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 연장·변경·취소 신청	①	②	③	④	⑤
6) 잠정조치 기간 연장	①	②	③	④	⑤
7)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제재 강화	①	②	③	④	⑤
8)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②	③	④	⑤

1-3 다음 사항이 **추후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반영된다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잘 모르겠다
1)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추가	①	②	③	④	⑤
2)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 상담위탁 추가	①	②	③	④	⑤
3)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	①	②	③	④	⑤
4) 접근 금지 반경을 100미터 이내에서 300미터 이내로 확대	①	②	③	④	⑤
5) 검사 청구 없이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을 법원에 직접 신청	①	②	③	④	⑤
6)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시 가중처벌	①	②	③	④	⑤
7) 응급조치 내용에 현행범인의 체포 명시	①	②	③	④	⑤
8) 긴급응급조치 결정 주체에 사법경찰리 추가	①	②	③	④	⑤

2-1 귀하는 다음의 스토킹 관련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스토킹이라는 개념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다.	①	②	③	④
2) 스토커는 성가신 존재이지만 범죄자는 아니다.	①	②	③	④
3) 스토킹은 극단적인 형태의 구애일 뿐이다.	①	②	③	④
4) 실제 폭력이 없다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5) 스토킹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6) 낯선 사람에 의한 스토킹만이 오직 진정한 스토킹이다.	①	②	③	④

2-2 귀하는 다음의 스토킹 관련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데이트를 많이 하는 여성은 스토킹 당할 가능성이 높다.	①	②	③	④
2) 여성이 그냥 남성을 무시하면 남성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3) 스토킹의 피해자는 종종 전 남자 친구가 보복하고자 하는 여성이다.	①	②	③	④
4) 여성이 명확히 '아니오'를 말할 수 없다면 '스토킹'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	①	②	③	④
5) 여성이 여지를 준다면 남성은 계속 구애할 권리가 있다.	①	②	③	④
6) 스토킹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민감한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7) 스토커는 여지가 있을 때에만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2 귀하는 다음의 스토킹 관련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여성들은 끈질기게 구애하는 것을 애정표현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여성들이 말한 한 가지가 종종 다른 것을 뜻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3) 어떤 여성은 실제 스토킹 당하기를 원하고, 이를 칭찬으로 여긴다.	①	②	③	④
4) 반복적으로 누군가를 따라다니고, 전화를 걸고, 선물을 남기는 것은 실제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비록 성가시더라도 대부분의 여성은 스토킹으로 인해 조금은 기분이 좋아진다.	①	②	③	④
6) 누군가가 계속해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선물을 준다면 스토킹은 훨씬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된다.	①	②	③	④

SQ0 귀하는 현재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① 지구대·파출소 ☞ **3-1-1**로 이동

② 여성청소년계(스토킹전담경찰관) ☞ **3-2-1**로 이동

③ 여성청소년수사팀 ☞ **3-3-1**로 이동

3-1-1 아래와 같은 스토킹 사건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170]

A(가해자)는 B(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을 방문하여 B가 해당 편의점 직원임을 알고 있으나 B는 A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A는 10여 회에 걸쳐 B가 근무하는 편의점 앞 주차장에 A 소유의 승용차를 세워 두고 B를 몰래 지켜보는 등 B에게 접근하였다.
A는 편의점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는 B를 발견하고 몰래 B의 뒤를 따라가고, 편의점 맞은편에서 B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편의점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를 발견하고 B에게 접근하여 욕설을 하고 B를 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 112 시스템 등록
☐ 맞춤형 순찰
☐ 스마트워치 지급
☐ 홈캠·CCTV 설치
☐ 임시숙소 이동
☐ 민간 신변경호 실시
☐ 가해자 상담 연계
☐ 기타(직접 기입:)

170) 아래에서는 지역경찰관에게 제시된 문항만을 제시하였으며, 스토킹전담경찰관 및 여청수사관에게 제시된 스토킹범죄 시나리오는 지역경찰관에게 제시된 것과 동일한 가운데, 응답항목만 달리한다. 여성청소년계(스토킹전담경찰관)의 경우 1) 112 시스템 등록, 2) 맞춤형 순찰, 3) 스마트워치 지급, 4) 홈캠·CCTV 설치, 5) 임시숙소 이동, 6) 민간 신변경호 실시, 7) 가해자 상담 연계, 8) 기타의 8가지를, 여청수사관의 경우 1)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 2) 잠정조치 2호(주거 등 접근 금지), 3) 잠정조치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잠정조치 3의2호(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 잠정조치 4호(유치), 6) 구속, 7) 기타의 7가지를 응답항목으로 두었으며, 피해자-가해자 간 관계 및 신체적 폭력 수반 여부를 교차한 12개의 스토킹범죄 시나리오가 제시되는 순서는 임의로(random) 변경하였다.

3-1-2 아래와 같은 스토킹 사건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A(가해자)는 B(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B와 알게 되었다. A가 B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B는 A에 대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다. A는 식당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는 B를 발견하고 몰래 B의 뒤를 따라가고, 식당 맞은편에서 B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식당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를 발견하고 B에게 접근하여 욕설을 하고 B를 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 112 시스템 등록
☐ 맞춤형 순찰
☐ 스마트워치 지급
☐ 홈캠·CCTV 설치
☐ 임시숙소 이동
☐ 민간 신변경호 실시
☐ 가해자 상담 연계
☐ 기타(직접 기입:)

3-1-3 아래와 같은 스토킹 사건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A(가해자)는 자신과 동거 및 교제하고 있던 B(피해자)가 다른 이성을 만난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한 것을 계기로 헤어졌다. 헤어진 B의 의사에 반하여 A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며 B의 집과 직장을 수차례 찾아갔다. B가 A를 만나주지 않자 A는 B의 직장 앞에서 B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발로 B의 종아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재차 발로 넘어져 있는 B의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 112 시스템 등록
☐ 맞춤형 순찰
☐ 스마트워치 지급
☐ 홈캠·CCTV 설치
☐ 임시숙소 이동
☐ 민간 신변경호 실시
☐ 가해자 상담 연계
☐ 기타(직접 기입:)

3-1-4 아래와 같은 스토킹 사건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A(가해자)는 같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인 B(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유발하였다고 생각한 후 불만을 품어오던 중 B의 집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항의하였다가 B로부터 "다시 찾아오면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A는 B의 접근거부 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의 연락처로 3일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100여 회를 발송하고 전화 50여 회를 시도하였다.

☐ 112 시스템 등록
☐ 맞춤형 순찰
☐ 스마트워치 지급
☐ 홈캠·CCTV 설치
☐ 임시숙소 이동
☐ 민간 신변경호 실시
☐ 가해자 상담 연계
☐ 기타(직접 기입:)

3-1-5 아래와 같은 스토킹 사건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A(가해자)는 B(피해자)와 3개월 가량 교제하던 중 A가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한 B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헤어진 B의 의사에 반하여 A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며 3일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100여 회를 발송하고 전화 50여 회를 시도하였다.

☐ 112 시스템 등록
☐ 맞춤형 순찰
☐ 스마트워치 지급
☐ 홈캠·CCTV 설치
☐ 임시숙소 이동
☐ 민간 신변경호 실시
☐ 가해자 상담 연계
☐ 기타(직접 기입:)

3-1-6 아래와 같은 스토킹 사건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B(피해자)는 A(가해자)로부터 전세금 반환을 이유로 돈을 빌렸으나 A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는 B의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B의 의사에 반하여 B의 집과 직장을 수 차례 찾아갔다. A는 B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의 직장 앞에서 B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발로 B의 종아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재차 발로 넘어져 있는 B의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 112 시스템 등록
☐ 맞춤형 순찰
☐ 스마트워치 지급
☐ 홈캠·CCTV 설치
☐ 임시숙소 이동
☐ 민간 신변경호 실시
☐ 가해자 상담 연계
☐ 기타(직접 기입:)

3-1-7 아래와 같은 스토킹 사건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A(가해자)는 B(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을 방문하여 B가 해당 편의점 직원임을 알고 있으나 B는 A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A는 10여 회에 걸쳐 B가 근무하는 편의점 앞 주차장에 A 소유의 승용차를 세워 두고 B를 몰래 지켜보는 등 B에게 접근하였다.
A는 B가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찾아가 "혹시 저랑 만나볼 생각이 있으신가요?"라고 질문하였으나 B가 "귀찮게 하지 말라"고 답하자 욕설을 하며 B가 서 있는 계산대로 넘어가 발로 B의 종아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재차 발로 넘어져 있는 B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 112 시스템 등록
☐ 맞춤형 순찰
☐ 스마트워치 지급
☐ 홈캠·CCTV 설치
☐ 임시숙소 이동
☐ 민간 신변경호 실시
☐ 가해자 상담 연계
☐ 기타(직접 기입:)

3-1-8 아래와 같은 스토킹 사건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A(가해자)는 B(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B와 알게 되었다. A가 B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B는 A에 대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다. A는 B가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B의 종아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재차 발로 넘어져 있는 B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 112 시스템 등록
☐ 맞춤형 순찰
☐ 스마트워치 지급
☐ 홈캠·CCTV 설치
☐ 임시숙소 이동
☐ 민간 신변경호 실시
☐ 가해자 상담 연계
☐ 기타(직접 기입:)

3-1-9 아래와 같은 스토킹 사건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A(가해자)는 자신과 동거 및 교제하고 있던 B(피해자)가 다른 이성을 만난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한 것을 계기로 헤어졌다.
헤어진 B의 의사에 반하여 A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며 3일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100여 회를 발송하고 전화 50여 회를 시도하였다.

☐ 112 시스템 등록
☐ 맞춤형 순찰
☐ 스마트워치 지급
☐ 홈캠·CCTV 설치
☐ 임시숙소 이동
☐ 민간 신변경호 실시
☐ 가해자 상담 연계
☐ 기타(직접 기입:)

3-1-10 아래와 같은 스토킹 사건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A(가해자)는 같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인 B(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유발하였다고 생각한 후 불만을 품어오던 중 B의 집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항의하였다가 B로부터 "다시 찾아오면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A는 아파트 복도에서 B를 마주치자 발로 B의 종아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재차 발로 넘어져 있는 B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 112 시스템 등록
☐ 맞춤형 순찰
☐ 스마트워치 지급
☐ 홈캠·CCTV 설치
☐ 임시숙소 이동
☐ 민간 신변경호 실시
☐ 가해자 상담 연계
☐ 기타(직접 기입:)

3-1-11 아래와 같은 스토킹 사건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A(가해자)는 B(피해자)와 3개월가량 교제하던 중 A가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한 B로부터이별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헤어진 B의 의사에 반하여 A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며 B의 집과 직장을 수차례 찾아갔다.
B가 A를 만나주지 않자 A는 B의 직장 앞에서 B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발로 B의 종아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재차 발로 넘어져 있는 B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 112 시스템 등록
☐ 맞춤형 순찰
☐ 스마트워치 지급
☐ 홈캠·CCTV 설치
☐ 임시숙소 이동
☐ 민간 신변경호 실시
☐ 가해자 상담 연계
☐ 기타(직접 기입:)

3-1-12 아래와 같은 스토킹 사건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B(피해자)는 A(가해자)로부터 전세금 반환을 이유로 돈을 빌렸으나 A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는 B의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B의 의사에 반하여 B의 집과 직장을 수차례 찾아갔다.
A는 B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는 3일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100여 회를 발송하고 전화 50여 회를 시도하였다.

☐ 112 시스템 등록
☐ 맞춤형 순찰
☐ 스마트워치 지급
☐ 홈캠·CCTV 설치
☐ 임시숙소 이동
☐ 민간 신변경호 실시
☐ 가해자 상담 연계
☐ 기타(직접 기입:)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항목입니다.

SQ1 성별

① 남 ② 여

SQ2 연령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SQ3 현 부서 근무기간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 미만 ④ 5년 이상

SQ4 임용연도 (예: 2014)

_____

SQ3 현 부서 근무기간

① 순경 ② 경장 ③ 경사
④ 경위 ⑤ 경감 이상

연구총서 23-B-18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 강화 방안

발 행 | 2023년 12월
발 행 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 행 인 | 하 태 훈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j.re.kr
정 가 | 15,000원
인 쇄 |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I S B N | 979-11-986225-3-2 9336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제 및 복제를 금함.